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책임연구원 김영지

공동연구원 김희진

NYPI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 책임연구원 :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전선영 · 김평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 국 문 초 록

한국정부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그 이행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정부는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의 권고사항 이행노력을 중간 점검하고 이후 추진계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중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지표산출을 위한 기준으로서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권고사항 추진 상황을 계량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권고사항 이행과제’를 도출하여, 선정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정부가 권고사항을 어느정도 이행했는지 ‘이행률’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 규범의 아동·청소년 권리 이행기준을 검토하고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현황 파악을 통해 최종적으로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협의회 구성·운영,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및 민간단체 의견조사, 전문가 워크숍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행과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9개 영역에 총 148개의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을 도출하였다. 영역별로는 일반이행조치 36개, 일반원칙 11개, 시민권과 자유 5개, 폭력 및 학대 14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5개,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14개,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9개, 특별보호조치 40개, 기타분야 4개 등이다. 148개 정책과제는 18개 부처의 96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다.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과제 풀을 개발하는 기초연구로서, 향후 제안된 이행과제(안)에 대한 소관부처별 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 작업을 거쳐 권고사항 이행과제 정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후속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 권고사항 이행과제



## 연구 요약

### 1. 연구목적

- 정부는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의 권고사항 이행노력을 중간 점검하고 이후 추진계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아동권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중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지표산출을 위한 기준으로서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연구내용

- 국제적 규범의 아동·청소년 권리 이행기준 검토
-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현황 파악
-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과제(안) 도출

### 3. 연구결과

-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9개 영역에 총 148개의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을 도출하여 제시함. 영역별로는 일반이행조치 36개, 일반원칙 11개, 시민권과 자유 5개, 폭력 및 학대 14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5개,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14개,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9개, 특별보호조치 40개, 기타분야 4개 등임. 148개 정책과제는 18개 부처의 96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됨.
- 향후 제안된 이행과제(안)에 대한 소관부처별 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 작업을 거쳐 권고사항 이행과제 정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후속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II,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과정 .....	7
1.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방향 .....	9
2.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과정 .....	10
III,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안) .....	15
1. 일반이행조치 .....	17
2. 일반원칙 .....	38
3. 시민권과 자유 .....	45
4. 폭력 및 학대 .....	48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58
6.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	67
7.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	76
8. 특별보호조치 .....	82
9. 기타분야 .....	99
IV. 요약 및 제언 .....	103
참고문헌 .....	107

부 록 .....	115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협약 조항 문구 포함) .....	117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안) 및 소관부처 .....	153
3. 전문가 의견조사지 .....	177
4.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객관식 응답 .....	183
5.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주관식 응답 .....	211
6.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319

# 표 목 차

<표 II-1>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구성틀 ..... 12



# 제 I 장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 1 장 서 론<sup>1)</sup>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약속으로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현재 전세계 195개국이 비준한 국제법이다. 한국정부는 1991년 본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그 이행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한국정부는 1994년 제1차, 2000년 제2차, 2008년 제3·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6월까지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담은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 기관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조치들과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해 왔으나, 법적으로 독립적 조사 권한을 가진 모니터링 기구 필요성 제기에 따라 2015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신설 조직인 아동·청소년인권팀에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우리사회는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의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권리 실행을 위한 조치와 진전사항 등을 중간 점검할 시점에 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방대한 아동권리협약 조항과 권고사항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권리협약 조항 내용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국적 이행방안의 구체적 방향과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 추진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 중의 하나로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을 선정하고 2017년까지 권고사항 이행 9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5).

1) 이 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중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산출을 위한 기준으로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권고사항 추진 상황을 계량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권고사항을 이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으로서 ‘권고사항 이행과제’를 도출하여 선정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정부가 권고사항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이행률’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계량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은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해야 많은 과업들 중 특정 과제를 ‘이행과제’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협약 및 권고사항 이행의 범위와 내용을 단순화시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중요하다고 판단된 우선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고사항 이행과제 추진노력을 촉진시키고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소규모 단기로 진행되는 과제 특성 상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과제 풀을 개발하는 기초연구 수행을 연구범위로 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산출 시 선정된 이행과제를 기준으로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기초연구를 통해 제안된 이행과제(안)에 대해 후속적으로 소관부처별 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 작업을 거쳐 권고사항 이행과제 정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 (1) 국제적 규범의 아동·청소년 권리 이행기준 검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등을 검토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의 국제적 이행 기준을 파악하였다. 협약과 권고사항 등은 이행과제 검토 및 선정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준거자료라 할 수 있다.

### (2)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현황 파악

향후 2017년까지 수행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2011년 유엔의 권고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연구인 두 개의 보고서(김경준, 이호균, 서여정, 김광혁, 김형욱, 윤상석 외, 2014;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와 아동권리협약의 8개 정책영역별로 최근의 법·제도 개선사항 및 정책·사업 추진계획 등을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아동과 청소년분야의 중장기계획 뿐만 아니라 정책영역별 각종 대책과 계획 등이 포함된다. 특히,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추진한 아동권리모니터링 결과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 성격의 연구물로서, 2014년 현재 16개 부처의 권고사항 관련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34개 NGO 자문단의 의견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의 후속연구 성격으로 2014년도에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 (3)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과제(안) 도출

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적 이행 기준 대비 한국적 이행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권고사항과 관련된 법·제도·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관계자 검토를 통해 우리사회가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까지 추진해야 할 실천과제의 방향과 내용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행과제(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의 의무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듯이 국제규범의 국내적 실천을 위한 진지한 검토를 통해 이행 가능여부와 실천계획을 포함한 실질적인 이행계획이 필요하다. 최종 도출된 이행과제(안) 목록은 부록 2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국제문서와 아동권리모니터링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분석한다.

### (2) 전문가 의견조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51명을 대상으로(학계 32명, 현장 19명)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에

대해 2차에 걸쳐 의견을 취합하였으며, 2014년도 아동권리 모니터링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에 참여한 민간단체 35곳에 검토를 요청하여 최종 13개 단체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과 결과는 부록 3~5번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선행작업이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2014년도 아동권리 모니터링 과정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후속작업인 본 연구에서는 학계 전문가 구성 비중을 높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가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므로 향후 정부부처가 협약 이행과제 도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취합된 전문가 의견을 모두 '부록'에 제시하였다.

### (3)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전문가협의회 구성·운영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을 위해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국제적 권고사항 분석 및 한국의 이행과제 초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단계별 검토과정을 통해 수정·보완함으로써 최종 이행과제(안)을 제안하였다.

### (4) 전문가 워크숍 개최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과제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두 차례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행과제를 수정·보완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 제 Ⅱ 장

---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과정

1.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방향
2.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과정



## 제 II 장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과정<sup>2)</sup>

### 1.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방향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를 개발한다는 것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안과 관련된 법·제도 및 정책·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영역별 개선과제를 제안해야 하는 매우 방대한 작업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국가별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모든 삶의 영역과 관련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방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인 ‘권고사항 이행률’ 점검을 위한 대상으로서 ‘권고사항 이행과제’를 선정하는,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활용도를 주요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2011년도 심의의견의 권고사항 문단별 내용에 충실하여 이행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아동권리협약 전반의 이행방안 마련보다는 협의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3·4차 한국정부 정기보고서에 대해 발표한 권고사항은 협약 클러스터별로 총 88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권고사항 자체가 많은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슈가 있고, 개선의 최종 목표수준과 타임스케줄에 있어서도 완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하나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개선과제들 중 어떤 것을 핵심적인 이행과제로 선정할 것인지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대한 의견도 다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의 주요 방법으로 광범위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많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이행과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2) 이 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하였다. 또한 ‘이행률 점검’이라는 이행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방향 제시보다는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이행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학계와 현장 전문가 및 민간단체에서 제시한 모든 의견은 부록 자료로 제시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부처별 ‘권고사항 이행과제’를 수립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과정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을 위한 단계별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전문가 의견조사는 107개<sup>3)</sup> 권고사항에 대해 아동권리협약의 해당조항, 2011년도 권고사항, 2012년과 2014년에 소관부처가 제출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2014~2015년 NGO 의견 등을 자료로 제시한 후, 권고사항의 진전노력, 중요도(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준거하여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실현가능성 등을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고,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수행기간은 단기(2016년까지 완료과제), 중기(2017년 5·6차 국가보고서 제출시기까지 완료과제), 장기(2017년 이후 완료할 수 있는 과제), 기타 중에 선택하게 하였다.

107개 권고사항 평균값을 보면, 진전노력 정도는 5점 만점에 270점으로 낮게 나타나 전문가들은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후 우리사회의 이행노력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권고사항의 중요도는 4.28점, 실현가능성은 3.38점으로 나타나 중요도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수행가능성은 단기, 중기, 장기 등 3개 문항 기준으로 2.11점을 나타내어 2017년까지 수행할 중기 과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록 4> 참조).

이행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협의회에서는 선행연구와 분야별 정책 관련자료 등을 통해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검토하여 ‘권고사항 이행과제 초안’을 작성한 후, 전문가 자문과 두 차례의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수정·보완과정을 거쳤다. 이후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3) 본 연구의 선행 작업이라 할 수 있는 2014년도 국제아동인권센터의 권고사항 모니터링 보고서(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2014)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의견 문서의 88개 권고사항 항목을 주제 중심으로 10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하나의 권고사항 문단에 여러 정책주체의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세부 정책 주제별로 소관 부처나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누락없이 검토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중복적이거나 여러 조항에 걸친 포괄적인 권고(주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논평이나 다른 국제문서를 고려하라는 권고사항들)로서 하나의 과제로 도출하기 애매한 내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와 같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과제를 도출하는 초기 작업 시 권고문서의 충실한 검토와 담당 부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는 작업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107개 권고사항 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추가 보완작업을 실시하였으며(<부록 5> 참조), 이 과정에서 107개 권고사항별 정책과제는 핵심적인 우선과제 1~2개 내외로 선정하는 것은 원칙으로 작업하였다. 최종 보완된 정책과제(안) 158개를 대상으로 2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와 동일한 대상으로 진행된 2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1차 조사와 같이 권고사항에 대해 아동권리협약의 해당조항, 2011년도 권고사항, 2012년과 2014년에 소관부처가 제출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2014~2015년 NGO 의견 등을 기본 참고자료로 제시하였고 158개 정책과제에 대한 적절성을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정책과제보다 더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자유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158개 과제에 대한 적절성은 최저 3.57점, 최고 4.71점, 평균 4.27점으로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전문가협의회에서는 2차 의견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상대적으로 적절성 점수가 낮은 과제에 대한 삭제 및 통합 조정 등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하였다.

2차 의견조사와 더불어 158개 과제(안)에 대해 본 연구의 2014년도 선행작업인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작업과정에 참여한 35개 민간단체 의견수렴도 추가로 추진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과제 초안 작성 시 앞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제시된 민간단체 의견을 참고하였으나 당시 다양한 자문의견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과제로 적절히 구현되었는지 한 번 더 검증받는 절차를 거치고자 하였다. 35개 민간단체 중 대부분은 선행작업 시 제시한 의견과 동일하므로 이의 적극적 반영을 강조한다는 의견을 주었고, 13개 단체는 제시된 정책과제(안)에 대한 수정사항 및 보충의견, 새로운 정책과제 추가 의견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2차 전문가 의견조사와 민간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148개의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을 제시하였다. 영역별로는 일반이행조치 36개, 일반원칙 11개, 시민권과 자유 5개, 폭력 및 학대 14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5개,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14개,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9개, 특별보호조치 40개, 기타분야 4개 등이다.

표 II-1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구성틀

영역	세부 영역	유엔 권고사항 문단번호(para.)	본 연구의 일련번호
I. 일반이행조치(협약 4, 42, 44(6)조)	1. 기존 권고사항	6~7	-
	2. 유보	8~9	1~2
	3. 입법	10~11	3~4
	4. 조정	12~13	5~6
	5. 국가행동계획	14~15	7
	6. 독립 모니터링	16~17	8~9
	7. 자원의 할당	18~19	10~16
	8. 자료수집	20~21	17
	9.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22~23	18~20
	10. 국제협력	24~25	21~22
	11. 아동권리와 재계	26~27	23~26
II. 일반원칙(협약 2, 3, 6, 12조)	1. 비차별	28~29	27~29
	2.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30~31	30
	3.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32~33	31
	4. 아동견해의 존중	34~35	32~36
III. 시민권과 자유(협약 7, 8, 13-17, 19, 37(a)조)	1. 출생신고	36~37	37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8~39	38~39
	3.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40~41	40
	4. 체벌	42~43	41~43
	5.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44~46	44~49
V.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협약 5, 18(1-2), 9-11, 19-21, 25, 27(4) 및 39조)	1. 가정환경상실아동	47~48	50~53
	2. 입양	49~50	54~59
VI.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1. 장애아동	51~52	60~63
	2. 건강 및 보건 서비스	53~54	64
	3. 정신건강	55~56	65
	4. 청소년 보건	57~59	66~68
	5.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60~61	69
VII.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협약 28, 29, 31조)	1. 직업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하는 교육	62~63	70~74

영역	세부 영역	유엔 권고사항 문단번호(para.)	본 연구의 일련번호
VIII. 특별보호조치(협약 22, 30, 38, 39, 40, 37 (b)-(d) 및 32-36조)	1.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64~67	75~76
	2. 이주 상황의 아동	68~69	77~78
	3.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71	79~84
	4. 성적착취	72~73	85~90
	5. 인신매매	74~75	91
	6.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 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76~77	92~93
	7.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78~79	94~96
	8. 소년사법운영	80~81	97~102
	9.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82~83	103
IX. 기타분야	1. 국제 인권조약의 비준	84	104
	2. 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85	105
	3. 후속조치 및 배포	86~87	106~107
	4. 차기 보고서	88	-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11.10.6.).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CRC/C/KOR/CO/3-4).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 참고.

\* 권고사항 일련번호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2014)의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결과 보고서’의 기준을 활용하였고, 2015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폭력 및 학대’를 별도의 영역으로 독립하여 구성함.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2015. 3)).



## 제 Ⅲ 장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안)

1. 일반이행조치
2. 일반원칙
3. 시민권과 자유
4. 폭력 및 학대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6.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7.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8. 특별보호조치
9. 기타분야



# 제 III 장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안)<sup>4)5)</sup>

### 1. 일반이행조치

#### 1) 유보조항

(1) [권고사항1.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최대한으로 고려하도록 보장한다는 협약 제21조(a)항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

권고사항 1	진전노력 정도(5점)	3.21	중요도(5점)	4.2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sup>6)</sup>	1.78	실현가능성(5점)	3.92

#### ① 과제 1. 아동권리협약 제21조(a)항 유보철회 외교적 절차 추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2011. 8. 5.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제11조 ‘가정법원의 허가’), 민법에서도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4) 이 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과 김희진 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민희 교수(평택대학교), 박선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가 집필하였다.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2015)의 틀에서 ‘아동의 정의’ 영역의 제외된 8개 영역(1. 일반이행조치, 2. 일반원칙, 3. 시민권과 자유, 4. 폭력 및 학대, 5.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6.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7.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8. 특별보호조치)과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의 기타사항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총 9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은 1, 2, 3영역을, 이민희 교수는 3과 4의 일부, 그리고 9영역을, 김희진 연구위원은 4의 일부와 5영역, 그리고 6의 일부 영역을, 박선영교수는 6의 일부와 8영역을 집필하였다.

5) 이 장에서 ‘권고 1에서 107’까지의 번호는 앞의 각주 2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문(88개 문단으로 구성)을 선행 연구진이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107개의 번호로 매긴 것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번호와 다르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대비 본 연구의 권고번호 현황은 <표 II-1> 참조). 또한 이 연구는 선행연구인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2014),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의 모니터링 결과에 기반하여 후속 연구로 진행한 것으로, 2014년도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부처 자료와 민간단체 의견 등을 참고자료로 공유하고 있다.

6)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수행기간은 단기(2016년까지 완료과제), 중기(2017년 5·6차 국가보고서 제출시기까지 완료과제), 장기(2017년 이후 완료할 수 있는 과제) 등으로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2012. 2. 10.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협약조항의 유보철회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교부를 통해 유보조항 철회절차를 추진하도록 한다.

- (2) [권고2.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이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의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 제40조 제2항 (b)(v)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

진전노력 정도(5점)	1.63	중요도(5점)	3.96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5	실현가능성(5점)	2.71

① 과제 1.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 등 단심제 적용 법조항에 ‘18세 미만 아동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조항 추가 등 아동의 상소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가능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아동권리협약 제40조는 아동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 제110조 제4항(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과 ‘군사법원법’ 제534조(전시·사변 시의 특례규정)에 따르면 간첩죄, 유해음식물 공급죄, 초병·포로에 대한 죄 등에 대해서는 단심제를 적용하고 있어, 한국정부는 관련 협약조항 비준을 유보하였다.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을 상소권 제한 이유로 들고 있으나,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재심받을 권리 부여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위 관련 조항의 단심제 적용 예외로 하고 협약 유보조항 철회가 필요하다. 이의 현황과 문제점 및 헌법과 군사법원법 등의 개정 요건과 가능성 등 기본적인 검토 자체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자 회의 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 입법 (권고사항 10~11항)

- (1) [권고3. 협약의 전반적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가 불충분하고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이를 보완할 추가적인 법 제정을 포함,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권고]

진전노력 정도(5점)	2.33	중요도(5점)	4.17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3	실현가능성(5점)	3.46

① 과제 1.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필요 여부 검토 연구(협약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용된 외국판례 연구 등) 및 국제인권규범의 재판 적용례 촉진

대한민국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 판결에서 협약이 인용되는 현황은 미약하다(홍관표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1993년 12월부터 2014년 6월 15일까지 2건으로 나타남). 입법, 행정, 사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들에게 조약 기구의 결정과 일반권고의 통합 및 적용이 의무화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헌법 조항을 보완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우종길, 2011) 외국의 사례분석을 포함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사법판결에서의 협약 적용 활성화를 위해 법관의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적극적 수용자세 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들이 소송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이인석, 2011).

② 과제 2. 로스쿨, 사법연수원 등 사법관계자(변호사, 판·검사 등) 양성과정의 아동인권교육과정 제도화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관계자들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공익변호사단체 등에서 로스쿨 입학 예정자나 사법연수원 입소 예정자,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나 로스쿨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에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과 아동인권 관련 과목을 의무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권고4.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합치되도록 검토하고, 청소년 미혼모가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고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위험과 학업중단강요 및 강요에 의한 입양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29	중요도(5점)	4.2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9	실현가능성(5점)	3.63

① 과제 1.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양육이 불가능한 청소년 임신부의 낙태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조항 개정 검토

우리나라 형법에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조항이 있으며(제269~270조), 모자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 동의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보건의학 적 이유로 심각하게 모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대부분의 혼전임신 청소년의 경우 음성적 낙태로 생명의 위험을 받거나 태아 유기, 입양 강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기준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 임신의 경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성범죄(성매매 포함) 피해 청소년의 경우 신속한 낙태가 필요한 경우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계는 낙태 합법화는 단순한 낙태 허용을 넘어 낙태에 대한 의료 심리적 지원을 가능케 하고 십대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의료혜택 제공 등과 같은 다층적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기초로 보고 있으나(양현아, 2012: 91) 종교계 중심의 반대의견도 있어 사회적 합의 과제가 있다.

② 과제 2. 초·중등교육법에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조항 신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임신 및 출산관련 결석 또는 휴가’조항 신설 등 제도적 대책 마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임신 이유로 자퇴를 강요받은 여고생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정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에서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시정 권고하고 관련 부처들에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정책마련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0.8.30.). 교육부는 권고를 수용하여 2010년과 2013년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규칙을 개정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0.12.28.; 교육부, 2013.10.1.). 그러나 학교규칙은 학교장 재량사항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등

에 학교장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퇴학이나 자퇴 권유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산휴가(주 5일 수업제의 경우 최대 63일)를 질병결석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정해숙·최윤정·최자은, 2014: 276-278).

### 3) 조정 (권고사항 12~13항)

- (1) [권고5.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 및 강화하고,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기구 수립]

진전노력 정도(5점)	2.63	중요도(5점)	4.5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52	실현가능성(5점)	3.75

- ① 과제 1.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 등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고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상설 사무국 설치 검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아동복지법 제10조).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 업무 한가지만으로도 방대한 업무이므로 위원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상설 사무국 설치를 검토하도록 한다.

- ② 과제 2.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상근 전문연구원 채용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인력이 없어 아동권리와 협약 관련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기적 과제인 상설 사무국 설치와 함께 단기적으로 아동복지법상 배치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전문위원 채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 4항 :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전문

위원회, 아동안전전문위원회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 (2) [권고6.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 간, 국가 및 지역 단체 간 아동권리 관련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08	중요도(5점)	4.5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6	실현가능성(5점)	3.29

- ① 과제 1. 아동 및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의 정책조정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정책실무위원회)와 청소년정책위원회(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통한 소통 및 조정 강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정책실무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위원회(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가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되도록 하여 연령기준 상 많은 정책대상을 공유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분야가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의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 청소년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 4) 국가행동계획 (권고사항 14~15항)

- (1) [권고7. 협약의 전 부문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시행하고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및 감시체제를 제공할 것. 또한, 후속 국가행동계획 준비 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명명된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 및 중간평가 보고서를 고려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8	중요도(5점)	4.50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74	실현가능성(5점)	3.71

① 과제 1.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으로서 제1차(2015~2019)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협약에 기반한 이행점검 강화 : 매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실시 및 이행 촉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로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아동이 처한 현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실천하는 노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발달·생존·보호·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 및 정책성과를 보고·평가·공개할 예정으로(관계부처 합동, 2015: 18-19), 이행성과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과 달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인권관련 국가행동계획과 관련이 깊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13~’17)과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12~’16) 이행 과정에서도 아동 인권 관점의 실행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5) 독립모니터링 (권고사항 16~17항)

(1) [권고8.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옴부즈퍼슨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5	중요도(5점)	4.7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70	실현가능성(5점)	3.88

① 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의 조직 및 인원 확대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2014년도로 사업종료되었으며, 201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에 아동·청소년인권팀이

신설되어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인권팀은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연구, 모니터링, 권고와 의견표명뿐만 아니라 진정사항의 조사 및 구제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현재 팀 단위 5인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인권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2) [권고9.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 설립 촉구]

진전노력 정도(5점)	2.83	중요도(5점)	4.7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70	실행가능성(5점)	3.83

① 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을 전담하는 소위원회 설치를 통해 독립적 권한을 갖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역할 수행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인권 침해사건 심의·의결을 위해 침해구제 제1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사안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제1항 : 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에 근거하고 있다.

② 과제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인권위원 진출 경로 마련

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 부족 등의 이유로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재승인 심사 등급결정을 2016년 상반기로

연기하였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1월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포함 가능)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를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수정안)을 확정하여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개정 추진을 권고한 상황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 2015.1) 이의 조속한 실행 촉구가 필요하다.

## 6) 자원할당 (권고사항 18~19항)

- (1) [권고10. 당사국의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맞도록 협약이행을 위한 자원수준을 검토하고 증가시킬 것]

진전노력 정도(5점)	1.88	중요도(5점)	4.75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0	실현가능성(5점)	2.92

- ① 과제 1. 아동예산의 정의와 산출식을 명확히 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아동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매년 변화추이를 점검·평가하고 이슈화

아동정책 분야 총예산(‘14년 국비 기준)은 49조 1,377억원으로 GDP 대비 3.4% 수준이며, 교육과 보육을 제외한 아동예산은 약 28조원으로 GDP 대비 0.2%로 OECD 및 국내 노인(2.1%), 장애인(0.6%)에 비해 낮다(보건복지부·관계부처 합동, 2015: 102). 이는 아동정책 재정 범위를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정책영역 범주 중 아동가족분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인데 아동예산 규모는 이를 산출하는 주체에 따라 다른 상황으로 아동예산 변화추이 점검·평가를 위해서는 아동예산 범위에 대한 표준화된 산출기준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정책부서 이원화로 인해 청소년정책 분야의 18세 미만 예산 누락이 없도록 고려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 예산을 최대한 파악해 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에서 아동연령 분리통계를 산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매년 아동·청소년 예산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증대하고 있는지 발표하는 등 이슈화가 필요하다.

- (2) [권고1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으로 자원배정을 평가할 것 - 이를 위해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예산을 총괄평가하고, 아동권리 관련 항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재정배분을 설정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1.75	중요도(5점)	4.7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9	실현가능성(5점)	2.67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예산의 지역별 현황 및 재정자립도와 아동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연구 실시

아동·청소년 예산의 지역별 차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황에 대한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별 아동·청소년 예산 현황과 재정상황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과 복지욕구 등을 비교·분석하는 기초연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과제 2. 실태 파악 후 지역별 격차가 큰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검토

2005년 지방분권화추진계획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총 533개 사업 중 13개 부처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이양된 복지사업의 경우 국가의 책무성이 강한 생계불능의 취약계층지원예산이 대부분이었고 지방비 부담 증가, 도·농간 인프라 격차 및 지방간 재정력 격차 등 지방의 사회복지정책 환경의 어려움과 맞물려 사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사업의 경우 지자체 재정여건이나 단체장의 관심여부에 따라 지역별 예산 격차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편차가 큰 실정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고려 관점의 정책실현 노력이 필요하다(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129-132; 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50). 2015년부터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등 3가지 사업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바 있어 지방비 부담이 큰 그 외 사업들의 환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아동복지 지방이양사업 국고환원에 대한 지자체 의견조회 결과 아동복지시설 등 8개 사업에 대해 국고환원 필요 의견 제시)

-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사회보장위원회 2015.8.11) 관련 논의

- (3) [권고12. 국가예산 수립 시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시성을 제공하고, 분야별 투자가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추적체계를 활용하여 투자효과에 있어 남·여아 간의 차이 측정 촉구]

진전노력 정도(5점)	1.96	중요도(5점)	4.4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52	실현가능성(5점)	2.79

① 과제 1. 아동·청소년영향평가 및 아동·청소년친화예산제도 도입 연구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확대하고 투입된 자원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영향평가제도 및 아동·청소년친화예산제도를 도입을 위한 검토연구가 필요하다. 여성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2010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2006년 국가재정법에 조항 마련) 도입함으로써 정부 정책과 예산의 양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한 성주류화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여성가족부, 2015.8) 이러한 사례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아동·청소년영향평가 및 친화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아동·청소년 중장기계획의 관련 사업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13~’17) 추진과제 5-3-1.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2-1-4.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 추진과제 5-5-2. 아동영향평가 도입

※ 여성분야 사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여성가족부, 2015.1: 3)
- 성인지예·결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6)

## ② 과제 2.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인지예산 생산 시 18세 미만 아동 예산 생산 의무화 검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투자효과에 있어 남·여아 간의 차이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성인지예산 작업 시 18세 미만 아동 연령 예산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권고13. 재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기반 예산 수립을 도입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1.67	중요도(5점)	4.4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58	실현가능성(5점)	2.58

## ① 과제 1. 아동권리관점의 재원배분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 평가 실시

아동권리관점에서 재원배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평가하고 아동친화적 예산 확대를 촉진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영향평가 및 아동·청소년친화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제도화가 가능한 장기적 과제라 할 수 있다.

② 과제 2. 아동·청소년 투자수익률 등 성장세대에 대한 자원투입 성과를 수치화한 자료 개발을 통해 정부(기획재정부, 국회 등)와 국민 관심 촉구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의 결과를 수치화하는 것은 어려움과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지만 국가예산수립 관련 주체들과 국민적 관심 환기를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 작업을 통해 설득과 촉구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분야 연구 중 청소년 체험활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연구하거나 청소년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을 연구하는 등의 사례 참고)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을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의원, 국가재정 정책자문위원, 기획재정부 등 국가예산의 주요 결정주체와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5) [권고14. 아동을 포함한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보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1.71	중요도(5점)	4.2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48	실현가능성(5점)	2.50

① 과제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시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도 확대(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교육 및 효과적 모델 개발)

정부와 자치단체는 사업개발과 예산배정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시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관심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지역 예산 배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 청소년참여예산제도 사례들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청소년참여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매뉴얼 등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6) [권고15. 빈곤·취약계층, 난민, 이주노동자 등의 자녀를 위한 전략적인 예산 방안을 수립하고, 경제위기, 자연재해 또는 다른 긴급 상황에서 예산이 지켜지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1	중요도(5점)	4.5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0	실현가능성(5점)	3.38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예산수립 과정의 모니터링 강화 : 입법부 및 행정부 예산결산 과정 감시활동 후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결정, 부처별 예산 요구서 작성·제출,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 예산안이 수립되는 단계별로 입법부 및 행정부의 예산 과정에 대한 아동인권적 관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용자원의 최대한도로 아동이익 최우선의 고려 원칙이 반영되었는지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여 아동·청소년 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특히, 예산안 편성 전에 실시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예산 확대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빈곤·취약계층, 난민, 이주노동자 등의 자녀를 위한 전략적 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개발 및 이슈화 작업이 필요하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이 언급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자원할당과 예산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

(7) [권고16. '07년 '아동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임'에 관한 '일반 논평의 날 (Day of General Discussion)'에서 도출된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1.88	중요도(5점)	3.96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8	실현가능성(5점)	2.46

① 과제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아동·청소년 권리관점 반영 촉구(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에 아동·청소년친화예산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제시, 국회 차원의 '아동권리예산 토론의 날'등 공론의 장 마련)

위 권고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19항 '자원의 할당' 분야의 모든 이행과제 개발

시 고려해야 할 포괄적 검토사항이라 할 수 있다. 예산 배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 고려’의 원칙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자원 배분 관련 최고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입안자들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중요하다. 특히 국회 차원의 관심 확대를 위해 아동예산 관련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가 아동 투자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내적으로도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OHCHR, 2014).

### 7) 자료수집 (권고사항 20~21항)

- (1) [권고17.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자료수집 체계를 설립할 것 - 자료에서 포착될 수 있는 경향에 대한 다각적 연구에 착수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38	중요도(5점)	4.50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7	실현가능성(5점)	3.25

- ① 과제 1. 주요 국가통계자료에서 아동(18세 미만) 및 청소년(9~24세) 연령기준별 통계자료 생산 제도화 : 법조항 반영

아동복지법상 ‘아동’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과 관련한 연령기준별 통계가 부족하여 객관적 실태 파악이 어려운 사항이 많다. 여성분야의 성인지통계와 같이 주요 연령기준별 통계 생산을 법적 의무조항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과제 2.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부부처 조사의 체계화를 통해 중복과 누락 방지(3년 주기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5년 주기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통합되어 있던 시기에 ‘아동·청소년종합 실태조사’가 한차례 실시되었고, 아동부처와 청소년부처가 이원화된 이후에는 분리되어 실시되

고 있다(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1년, 2014년 실시,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년 실시). 두 개의 조사는 겹치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가구조사이므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통합 조사시스템 구축 가능성 및 조사내용의 상호검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별 실태조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아동·청소년 삶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청소년가치관조사,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등).

### 8) 보급, 인식 제고, 교육 연수 (권고사항 22~23항)

#### (1) [권고18.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9	중요도(5점)	4.7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74	실현가능성(5점)	3.75

#### ① 과제 1.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사 양성기관의 인권교육과정 개발 및 확대, 교사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과정의 인권교육 시수 확대를 통해 교사의 인권역량 강화

학교 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는 교사의 인권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원 양성과정, 교원 임용시, 임용 후 교원으로서의 현직 수행에 이르기까지 인권교육 관련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인권관련 교과목의 개설과 함께 교원임용시험의 평가항목에 인권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한다.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전문연구 등에 인권교육 시간을 포함시키고 특히 원감, 교감, 교장 자격연수의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에서 학생 인권보장의 책임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학교장의 인권역량과 마인드가 중요하다(김철홍, 2013).

#### ② 과제 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한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교육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 관련법은 2007년부터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2014년 발의된 인권교육지원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인권교육 재원 확보,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 업무 지원을 위한 인권교육원의 역할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인권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2) [권고19.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8	중요도(5점)	4.63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78	실현가능성(5점)	3.71

① 과제 1.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제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교사, 보육교사, 시설관계자 등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체계화(아동 및 청소년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관련 법조항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 명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인권교육 실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와 보수교육과정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종사자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앞에서 살펴본 인권교육지원법이 제정될 경우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권고20.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7	중요도(5점)	4.5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77	실현가능성(5점)	3.67

- ① 과제 1. 발달연령을 고려한 포스터, 소책자, 만화책, 음성파일, 동영상, 각종 생활도구 개발·배포 및 범국민 대상 공익광고

2014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권리협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15.2%에 불과했다(김경준, 김희진, 이미희, 김윤나, 2014).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민간단체 등에서 이미 여러 가지 협약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한 바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부모,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성인 등 전 국민적 협약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쇄매체 뿐만 아니라 공익광고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며, 언론과 대중매체 관계자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협약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9) 국제 협력 (권고사항 24~25항)

- (1) [권고21.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 목표인 국민총생산 대비 0.7%에 2015년까지 도달하고 가능하면 이를 넘어서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3	중요도(5점)	4.0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54	실현가능성(5점)	2.96

- ① 과제 1. ODA 규모의 지속적 확대 노력 및 ODA사업의 아동인권 관점 시행(사업효과에 대한 아동인권적 관점의 평가 실시)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16~’20) 확정하여 ODA 재원 규모를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2030년까지 OECD DAC회원국 평균 수준의 ODA 규모인 0.30% 달성을 전제로 목표 도출)(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 기획재정부 국제개발정책팀, 2015.11.10.).

※ 2014년 잠정 ODA/GNI 비율 : 우리나라 0.13%,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0.29%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부가 국제개발협력기초계획 등 정책 방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ODA 사업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ODA 사업이 아동인권 관점에서 시행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이라는 국제사회 흐름에 맞게 지속가능한 평화, 발전, 인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5).

(2) [권고22. 개발도상국과 개발협력 관련 협약체결 시 아동권리실현을 주요 우선 순위로 다루고 상대국의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참고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29	중요도(5점)	3.5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42	실현가능성(5점)	3.04

① 과제 1. 해당 국가의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ODA 분배 기준으로 활용하고 ODA 프로그램의 아동권리 관련 성과와 영향 평가(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반영)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는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고 밝힘으로써 아동 인권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ODA 수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ODA 분배 기준으로 활용하고 아동권리 관련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국제개발협력 평가 관련 조항에 반영하도록 한다.

10) 아동권리와 재계 (권고사항 26~27항)

(1) [권고23.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1.96	중요도(5점)	4.17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54	실현가능성(5점)	3.13

① 과제 1. 아동노동 등에 대한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 이행 여부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및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공개

유엔인권이사회가 2011년 6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채택함으로써 기업에 인권경영 책임이 있다는 점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아동노동 관련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책임을 이행하도록 상당주의의무 이행 여부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공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도록 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기업은 적절한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상당주의의무 : 아동노동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종합해서 이에 따라 행동하며 그 행동에 대한 반응을 추적하고, 아동노동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에 관해 소통을 할 책임을 맡음. 구체적으로 1) 아동노동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는 최고 경영진의 정책 약속이 대내외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하고, 2) 그러한 정책 약속이 기업운영정책과 절차에 반영이 되어야 하며, 3) 아동노동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를 하고, 4) 그 평가를 종합하여 아동노동을 중지하고, 예방하고, 아동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취하며, 5) 기업이 아동노동을 야기하거나 아동노동에 기여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6) 이러한 행동과 구제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응을 추적하고, 7) 장기적이고, 적절하며, 접근 가능한 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강제 노동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소통을 하는 것(김종철, 2014)

(2) [권고24.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무역협정 및 국내법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정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1.88	중요도(5점)	4.13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54	실현가능성(5점)	2.92

① 과제 1. ‘아동노동 착취없는(아동친화기업) 제품’인증 및 활용 촉진

인권친화적 기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아동노동 착취없는 제품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아동친화 기업 제품활용을 촉진하도록 한다. 아동학대나 착취가 없는 공정무역 상품 등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아동친화제품에 대해 인증명칭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용을 촉진한다.

② 과제 2. 관세법을 개정하여 아동인권 침해 물품 수입 및 수출 금지 명문화 검토

아동인권 침해 물품의 범위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관세법 등 관련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아동인권 침해 물품의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3) [권고25.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조치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00	중요도(5점)	4.00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41	실현가능성(5점)	3.17

① 과제 1. 기업대상 아동권리 감수성 프로그램 실시 및 아동권리를 기업 경영원칙에 적극 반영하는 아동친화기업 확산 유도

2013년 한겨레경제연구소가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와 함께 아동친화경영 우수기업을 시상한 사례가 있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 경영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기업과 공공기관, 대기업을 포함해 500여개 상장기업에 보급하고 대기업 대상의 인권경영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5.11.11.). 기업대상의 인권경영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 발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 ① 인권경영 체제구축, ② 고용상 비차별,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④ 강제노동 금지, ⑤ 아동노동 금지, ⑥ 산업안전, ⑦ 공급망 관리, ⑧ 현지주민 인권, ⑨ 환경권, ⑩ 소비자인권

(4) [권고26.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1.88	중요도(5점)	3.83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64	실현가능성(5점)	2.96

① 과제 1. 자유무역협정 관련 아동 인권영향평가 방안 개발 및 제도화 연구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이행과정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 인권영향평가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연구를 실시하도록 한다.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르면 기업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보장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한다.

## 2. 일반원칙

### 11) 비차별 (권고사항 28~29항)

(1) [권고27. 협약 제2조에 합치되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08	중요도(5점)	4.4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9	실현가능성(5점)	3.33

① 과제 1. 인종 및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사회적 인식 확대로 차별금지법 제정

2006년경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주로 성적 지향과 관련된 국민적 인식부족으로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차별금지법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안내와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대해 '수용' 의견을 밝혔고, 2013년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101번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과제의 두번째 추진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제시하였다. 이의 이행을 위해 차별금지

법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성과를 내도록 한다.

(2) [권고28.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3	중요도(5점)	4.7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4	실현가능성(5점)	3.58

① 과제 1. 사회적 약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 가이드 개발 및 홍보 : 서비스 제공 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예 : 기초생활수급자 정보공개로 인한 차별로부터 아동보호)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득수준, 가족형태 및 유형, 보호자의 직업 등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차별 발생 우려가 있다. 학교 급식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정보나 수학여행비가 무료인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기도 하는 등(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83) 학교나 지역사회 복지 관련 기관 등의 인권감수성 향상이 필요하다. 사회전반적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노력과 인권적 문화 정착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인권 민감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보장 가이드 개발·보급을 통해 서비스 담당자 대상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

(3) [권고29.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하여 미혼모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3	중요도(5점)	4.5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5	실현가능성(5점)	3.92

① 과제 1. 임신단계에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핫라인 개설  
 청소년의 경우 임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학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자기 결정권,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2013). 미혼모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미혼모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임신단계의 초기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미혼모 관련 제도, 서비스,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며, 가능한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자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도록 한다(김지연, 황여정 외, 2013: 309).

② 과제 2. 청소년한부모가 입양이나 아동 유기 대신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 현실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아동양육비는 월 15만원으로, 이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또는 150%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양아동 양육비가 15만원이라는 점을 볼 때, 친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지원이 충분하면 친권 포기자나 아동시설 입소 아동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85).

12) 생명, 생존 및 발달 (권고사항 30~31항)

(1) [권고30. 아동의 가정 내 및 교육제도 하에서 아동의 자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아동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및 사회복지요원이 지원되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58	중요도(5점)	4.7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1	실현가능성(5점)	3.83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서비스(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CYS-net), Wee센터,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예산 확대 및 프로그램 활성화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예산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청소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통합적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정신건강 문제 접근 시 개인의 심리적 요인만이 아닌 경쟁적 사회구조와 회복적 사회시스템 부재라는 구조적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치료적·병리적 접근의 심리상담이나 검사 프로그램이 아닌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등을 병행하여 긍정적 역량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13) 아동이익 최우선 (권고사항 32~33항)

- (1) [권고31. 법률·행정·사법절차·정책·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 최상의 최우선 원칙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 모든 사법·행정 결정의 법적 추론도 이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함]

진전노력 정도(5점)	2.83	중요도(5점)	4.75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4	실현가능성(5점)	3.58

- ① 과제 1. 법률·행정·사법절차·정책·프로그램 및 사업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의 적용 방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권리’ 내용 연구)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원칙을 정책화한 것이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법·제도, 정책, 행정행위 등이 이들의 이익과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김영지, 김경준, 이민희, 김지혜, 2013: 313). 앞의 권고 12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에서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2013년과 2014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초연구 수행 이후 구체적 제도화 및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14) 아동견해 존중 (권고사항 34~35항)

- (1) [권고32.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33	중요도(5점)	4.83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9	실현가능성(5점)	3.54

- ① 과제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진술 및 참여권 보장 확대 : 13세 미만 아동의 진술권 보장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의견을 듣도록 함. 절차보조인 제도 등)

입양특례법과 가사소송법, 민법 등은 13세 이상 아동 입양 시 해당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권고56번 참조), 아동복지법 제15조, 18조, 19조는 각종 아동보호 조치와 친권상실, 후견인 선임 등의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아동복지법의 의견청취 연령기준은 없음). 대부분 아동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13세 이상 기준이 활용되고 있으나 아동 참여권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의 의견표명권에 나이제한을 두지 않으며 회원국이 법과 관행으로 나이제한을 도입하여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기 초기부터도 아동의 놀이, 몸짓, 표정, 낙서나 그림 등 비언어 형태의 의사소통방법을 인식하고 존중함으로써 이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UNCRC, 2009: para. 21). 대법원이 2015년 2월에 마련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대법원, 2015.2.6.) 법원은 모든 가사사건에서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미성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현행은 13세 이상 자녀 의견청취만 의무) 절차보조인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객관적인 이익을 파악하여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개정안 제16조, 제20조). 가사소송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도록 관련법들의 근거조항 마련을 검토하도록 한다.

- (2) [권고33.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동 청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 등 조치를 취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5	중요도(5점)	4.67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1	실현가능성(5점)	3.75

- ① 과제 1. 학교 및 사법·행정절차에서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의 장애가 되는 법규정 및 기존 참여보장 법규정 이행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개선 방안 제시(예 : 초·중등교육법 상 학칙 제·개정 과정에의 학생참여, 징계 재심청구권 등이 보장되는지 여부 실태조사)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징계 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초·중등교육법

제18조),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동법 제18조의 2), 학칙 제·개정 시 학교의 장은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조 4항).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의 규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응답은 61.5%로 나타나 학교 현장의 학생참여 현황파악과 참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김경준, 김희진 외, 2014).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는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 참여권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의 학생참여 대상학교에 사립학교를 포함해야 할 것이며 학생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 [권고34. 부모, 교육자, 정부, 사법부 등에 아동의 청문권과 아동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7	중요도(5점)	4.3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68	실현가능성(5점)	3.71

① 과제 1. 아동 참여권에 대한 교육·홍보 자료 개발·보급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인들이 아동·청소년을 인권과 참여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일반논평 제12호를 통해 회원국이 변호사, 판사, 경찰,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돌보미, 복지시설 종사자 및 교도관, 교사,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종사원, 시 공무원, 정부 공무원, 시설 담당자 등 아동·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들에 대해 협약 제12조(참여권)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오피니언 리더와 미디어 등을 활용한 대중 캠페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어 아동·청소년의 완전한 참여를 실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UNCRC,

2009: para. 49).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무능력한 통제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전환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권과 시민권의 주체로서 동등한 사회발전의 동반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 대상의 참여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관련 자료에는 참여의 의의와 필요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장면별(교육, 행정, 사법 등) 아동·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와 방법,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파트너십 형성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권고35.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13	중요도(5점)	4.46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5	실현가능성(5점)	3.42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실시 : 참여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의 견해 반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에 따르면 의사결정자는 아동에게 사안의 결과와 아동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참여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가능하다면 아동·청소년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UNCRC, 2009: para. 45, 134). 단위학교 학급회 및 학생회, 지역교육청의 학생참여위원회, 지역사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의회, 청소년특별회의, 아동총회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과정에서 성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 각 참여프로그램의 활동 결과, 참여 수준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참여가 명목적·형식적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참여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도록 한다.

(5) [권고36. 아동의 청문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09년)를 고려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9	중요도(5점)	4.5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4	실현가능성(5점)	3.54

① 과제 1. 일반논평 제12호의 참여권 이행방안을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교육자료로 개발·보급

일반논평 제12호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참여권)의 의미와 실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서라 할 수 있다. 법적·철학적 논의부터 다양한 상황에서의 아동·청소년 참여권의 실행요건 등이 제시되어 있다(가족, 대리보호, 보건의료, 교육 및 학교, 놀이·레크리에이션·스포츠·문화 활동, 직장, 폭력상황에서, 예방전략의 개발에서, 이민과 보호 요청과정에서, 비상 상황에서, 국가적 상황과 국제적 상황 등에서의 참여권). 일반논평 제12호의 내용을 정부 및 행정기관, 아동·청소년 단체에 보급하고 아동·청소년 친화적 버전의 자료의 개발·보급, 참여권의 의미와 실행방법에 대한 워크숍 개최,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 대상 연수과정에 반영 등이 필요하다(UNCRC, 2009: para. 7). 참여권은 장유유서의 유교적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현실 속에서 가장 이해가 부족한 아동·청소년 인권 영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국내·외 우수 참여 실천사례나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역량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나 공익광고 등을 통해 국민적 인식 제고를 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3. 시민권과 자유

#### 15) 출생신고 (권고사항 36~37항)

- (1) [권고37. 협약 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모의 법적 지위 및 또는 출신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하고,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명시되도록 보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04	중요도(5점)	4.50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7	실현가능성(5점)	3.29

- ① 과제 1. 출생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등록제 형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출생등록은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으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적 시스템

(의료보험 등) 내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미등록 아동은 손쉽게 불법인신매매, 불법입양, 유기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전산망을 이용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에서 전산망을 통해 출생 후 3일 이내에 모의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전송함으로써 출생신고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미혼모 등 출생등록을 알리지 않고자 하는 경우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여성·아동미래비전 자문위원회, 2013: 136-137; 박선영, 송효진, 구미영, 김정혜, 2014: 72-77).

- ② 과제 2.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특종신고편철’ 제도를 보완하여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부’를 관리하고, 이주아동을 위한 별도의 ‘등록부’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적과 별도로 출생등록 실시 검토

난민 지위를 신청한 부모의 자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무국적자의 자녀 등은 출생등록 제도에 접근할 수 없는 집단으로,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보육서비스, 건강보험, 인터넷 등록 등 각종 서비스 접근이 차단되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출생등록을 국적부여와 별도로 실시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거나 외국인 아동의 출생에 관한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김경준, 이호균 외, 2014: 74-79;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103-104).

## 16) 사상 양심, 종교 자유 (권고사항 38~39항)

- (1) [권고38.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협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모든 경우에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도록 조치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25	중요도(5점)	4.2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0	실현가능성(5점)	3.25

- ① 과제 1. 학교 종교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대체과목 마련을 통해 종교교육 선택권을 보장 등) 및 이행여부와 종교차별 실태 주기적 점검

2014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종교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59.4%는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지 않아도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여(김경준, 김희진 외, 2004)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내 종교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이의 이행여부와 종교차별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하도록 한다.

(2) [권고39. 식단 등 특정종교의 구체적 요구사항 및 제약을 고려하고 배려하도록 조치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08	중요도(5점)	3.8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5	실현가능성(5점)	3.13

① 과제 1. 종교적 신념(이슬람교 등)이나 식습관(채식주의)에 따른 학교급식 메뉴의 배려(다양성 고려 및 강제 급식지도 지양)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종교적 이유로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적 급식 지도가 필요하다. 음식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의무적 급식 지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 조치로 종교적 이유로 인한 식습관을 고려한 대체 급식 메뉴 구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대구 죽전초등학교 이슬람권 다문화학생 맞춤형 급식(내일신문 대구경북, 2015.9.24)

17) 평화 결사, 집회 자유 (권고사항 40~41항)

(1) [권고40. 법률·교육부 발행지침·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1.83	중요도(5점)	4.4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9	실현가능성(5점)	3.08

① 과제 1. 학생자치활동(학급회의,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 : 예산 지원 및 의견청취 후 학급 및 학교운영에의 반영도 제고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 서울, 광주, 전라북도 등은 모두 ‘의사 표현의 자유’ 조항과 ‘자치’ 및 ‘참여’ 관련 조항을 통해 자발적 결사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학교규칙 수준에서는 학교별로 다양한 수준의 조항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적 현황과약은 어렵다. 학칙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개정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의사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어느 수준으로 담아낼 것인지 구성원간 논의가 필요하다.

중요한 참여활동으로서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먼저, 학생회·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급 자치활동 시간 확보(월 2회 이상 권장)’, ‘학생자치 모델학교 운영·지원(초·중·고 100교, 교당 200만원 지원)’,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민주적 토론·합의 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학교 대토론회 정착’, ‘우리학교 선거법 제정’,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및 안전개진 허용’을 추진한다.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인식이 중요한 만큼 교원의 학생자치 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역별 학생자치 협력학교 네트워크 및 학생자치 담당교사 연구동아리 조직·운영’, ‘민주적 학교경영을 위한 학교관리자 워크숍’, ‘학생자치 지도 전문성 신장 연수’ 등을 운영한다. 학교·지역사회의 학생참여 확대를 위해 ‘학생사회참여 발표대회’, ‘학생참여예산제 단계적 정착’ 등을 추진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5.2.5.).

## 4. 폭력 및 학대

### 1) 체벌 (권고사항 42-43항)

- (1) [권고41. 가정·학교·기타기관에서 체벌을 전면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04	중요도(5점)	4.5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9	실현가능성(5점)	3.36

① 과제 1. 체벌 전면금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및 학교규칙의 체벌 관련 규정 실태 조사

동법시행령 31조 8항은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만 금지하는 것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간접체벌이 확대되어 이어지는 현실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간접체벌의 범위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모든 일선학교의 개별적 현황을 알기 어려우며, 신체체벌 중심의 현재 법규 자체도 준수되고 않아 교실에서 폭력이 행사되고 있다. 체벌 전면금지를 위한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과 법조항 개정조치가 필요하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안)의 ‘체벌 대체 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에 따르면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간접적 체벌 :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과 같은 교육적 훈육)은 허용하도록 하고, 간접적 체벌은 학교 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지, 또 그 수렴결과의 수준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합당한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② 과제 2. 민법과 아동복지시설, 교정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법에 체벌 금지 조항 명확화 및 관련법의 홍보와 교육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여 체벌 허용 우려가 있다. 가정 내 징계 또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지 않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야 함을, 즉 가정에서도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민간단체 의견조사 과정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제안 의견).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의 책무) 제2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므로(제3조 3항) 이 조항이 가정을 비롯하여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의 아동복지시설과 교정시설 및 청소년시설에 적용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체벌 금지는 천명되었으나 기합이나 폭력 등 체벌 문제가 발생해 온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교정·보호시설 관련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부재하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5조 2항 또한 2015년 3월 개정되어 2015년 9월 시행 예정이므로 이미 2014년 9월부터 시행되어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이 법령들의 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조항도 재검토하여 관련 신설 조항 마련이 요구되며 마련된 법 조항들이 선언적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관련법 개정 방안들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권고42. 체벌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해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 교육 캠페인 실시]

진전노력 정도(5점)	3.14	중요도(5점)	4.50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85	실현가능성(5점)	3.86

① 과제 1. 현행 아동학대 방지 공익광고 매월 1회 송출 확대 및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벌의 부정적 영향 및 긍정적 훈육 효과에 대한 범국민적 교육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는 부모교육 교재 개발 및 수정보완, 맞춤형 교육 실시, cyber contents 개발 및 사이버교육 운영 등의 가정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왔으나 범국민적 차원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5월 한국방송공사를 통한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고 살아갑니다’의 제작 송출과 같은 공익광고를 매월 1회 지속적으로 공중파 방송에 송출하여 전국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체벌로 인한 아동 성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나 긍정적 훈육 사례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국민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홍보대사들을 위촉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한다. NGO는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와 함께 NGO 및 학부모단체, 학교 등 유관기관의 연대를 통한 범국민적 캠페인 운동의 전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과제 2. 체벌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훈육방법에 대해 생애주기적 부모교육 의무화(혼인신고단계,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 지원 단계, 초·중등학교 부모교육 단계 등)

보건복지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훈육방법에 대해 혼인신고단계나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 지원 단계, 초·중등학교 부모교육 단계 등에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및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들을 지정해서 일정한 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3) [권고43.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및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 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며,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5	중요도(5점)	4.2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9	실현가능성(5점)	3.32

① 과제 1. 대안적 훈육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긍정적 사례 발굴·보급(학생자치법정, 회복적 프로그램 효과 검증 등)

NGO의 2014년도 의견에 따르면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상벌점 배점기준의 모호성과 점수로의 계량화를 통하여 학생의 모든 행위를 통제하려는 방법으로 진정한 교육적 자세가 아닌 것으로 제언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학교생활문화과는 그린마일리지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나 회복적 프로그램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린마일리지에 대한 효과성을 면밀히 측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벌점에 대하여 대안적인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벌점을 감해주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여 자율적, 자치적 행위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성찰에 따른 자율적 조치가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

※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집(5권)에 따르면 그린마일리지 배점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이 자의적으로 상·벌점을 매길 우려가 있고, 벌점이 상한제에 오르게 되는 학생의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겨 낙인효과 등의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을 하였다.

## ② 과제 2. 시·도교육청의 학교체벌 신고 및 중재 체제 도입 및 사전 교육 및 홍보의 내실화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2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8항의 내용에 관하여 전국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법을 어겨 학교체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즉시 신고체제가 가동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도입하되,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학교생활문화과 및 관련기관에 신고되기 전에 가해교사 피해학생, 학부모, 교장과의 화해와 조정의 교육적 중재 과정 체제를 도입하여 내실이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교원정책과는 교원자격취득 준비 과정이나 교원자격취득자의 신입교원 교육 및 연수 시 학교체벌 관련 법규와 취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징계 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2) 학대·방임·폭력 (권고사항 44-46항)

(1) [권고44. 아동학대 신고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할 법적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57	중요도(5점)	4.6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0	실현가능성(5점)	3.89

### ① 과제 1.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화와 위반 시 대책 마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신고인의 개인정보와 신고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접수 및 신고,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임이 드러나 실제 위해가 가해지거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이러한 피해발생 시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보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징역이나 벌금 등 신고자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 위반 시 처벌내용에 대한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과정에서의 비밀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 ① 제35조 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과제 2. 전국 아동관련 시설·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의무 교육과 연수 실시

정부에서는 2011년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들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의 확대와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상향조정 등의 노력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아동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 및 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관련한 구체적 교육 내용과 시간 등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의무교육 시간과 내용이 관련법이나 지침에 제시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적 의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직접적인 권고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아동인권 NGO 및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아동관련 시설 및 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부모, 보호자,

수사기관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제고가 아직까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권고4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증설하고, 학대피해자를 위한 재활지원 등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07	중요도(5점)	4.6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5	실행가능성(5점)	3.79

① 과제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 시·군·구 인구비례에 따른 확대 설치 및 전문가 배치

아동학대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확대하여 현재 54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급증하는 신고율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지역별로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우선적으로 추가 확대·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2015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증설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만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근거로 가장 취약한 지역부터 관련 기관 및 시설들이 증설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② 과제 2. 학대피해 아동·청소년 쉼터와 공동생활가정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학대피해자를 위한 일차적인 지원으로써 먼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주시설과 이들의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예산이 총 국비 252억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593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국비의 대부분이 범죄피해자기금으로 책정되어서 향후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7)</sup>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증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 등은 바람직한 개선이나 특히 현재 예산의 한계를 고려하여, 향후 확대 재원은 범죄피해자기금과 구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7) 한국일보, 아동학대예방 예산이 불안한 이유, 한국일보 웹 사이트

<http://www.hankookilbo.com/v/618f7e758048436ea53c0c837e64cc26>에서 2015년 7월 20일 인출.

(3) [권고46.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2	중요도(5점)	4.00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6	실현가능성(5점)	3.18

① 과제 1. 아동학대 및 폭력, 성범죄 예방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지속 실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해당 권고사항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아동·청소년의 학대 및 폭력 예방과 사후조치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정책과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전문가의견조사 및 아동·청소년인권관련 NGO의 의견 조사결과, 아동·청소년이 학대 및 폭력, 성범죄 등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성범죄 양상, 그리고 이러한 폭력과 범죄가 아동과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 또 관련법과 처벌내용, 학대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적 인식제고가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4) [권고47. 아동폭력보고서(A/61/299) 권고사항 이행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철폐를 우선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2	중요도(5점)	4.2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57	실현가능성(5점)	3.00

① 과제 1. 유엔 아동폭력보고서의 12가지 권고사항 기준으로 정부의 폭력대책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방향 개선 실시

2011년 제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보육, 보육담당자의 기술과 이들에 대한 훈련, 그리고 아동에 대한 처우의 질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하며 지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위원회는 “이러한 시설 내 학대 및 방임 사건을 다루기 위한 진정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하며,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동을 위한 추적제도의 부재에도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동 보육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전문가의 아동권리에 대한 정기적 교육, 관련 국공립 및 사립 기관들의 보육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평가체제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결국 최근의 아동보육기관들에서의 아동 학대 및 폭력 사례는 위원회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사후에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자격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함께 철저한 정부의 아동 관련기관들에 대한 폭력대책 및 평가체제를 점검하여, 확고하고 엄격한 아동보호의 정책방향에 대한 자치단체별, 관련기관별 평가체제가 도입되도록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는 이와 관련하여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 유엔아동폭력보고서(U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2006)는 "아동에게 가하는 그 어떤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은 예방되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은 국제적인 보고서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가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미리 방지 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과 예방대책의 수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 ※ 유엔아동폭력보고서 12가지 권고사항 :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무와 조치 강화,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 금지, 예방 최우선, 비폭력가치 및 인식 촉진, 아동 관련 직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 회복 및 사회 재통합 서비스 제공, 아동의 참여 보장, 접근이 쉽고 아동친화적인 신고체계 및 서비스, 책임성 강화와 면책금지, 아동폭력에 대한 양성적 관점, 체계적인 국내 데이터 수집, 연구 개발 및 시행, 국제적 책무 강화(NGO Advisory Council for follow-up to the U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2011/2011)

(5) [권고48. 다음의 내용을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할 것 -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개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금지하는 법 도입, 자료 수집, 분석, 보급 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 관련 연구]

진전노력 정도(5점)	3.07	중요도(5점)	4.57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8	실현가능성(5점)	3.32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국가행동계획 수립(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 폭력분야의 광범위한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

지난 수년 간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폭력성이 사회문제로 확산되자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폭력의 요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가정, 학교, 사회, 미디어 등의

폭력요인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정부 부처가 요인에 따른 맞춤형 대책의 법제도 개선 및 강화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먼저 심한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을 완화시키는 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친교 프로그램, 즐겁고 재미있는 비폭력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등의 교육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폭력과 학대에 대한 처벌 위주의 법적 대처보다는 현장에서 긍정적인 실효를 거두고 있는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고 사례를 보급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 학대 및 폭력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2014. 1. 28. 제정, 2014. 9. 29. 시행)하고,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 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종합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도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아동복지법 제11조) 있으며 매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결과에 따른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문제가 된 사각지대에 나타나는 아동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정책대응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3)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81.9%가 가정, 아동학대 가해자의 83.9%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의 주원인으로는 양육기술 미숙(32.6%),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22.4%), 부부 및 가족 갈등(9.4%), 성격 및 기질 문제(7.1%)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대응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6) [권고49. 아동폭력에 관하여 UNICEF, UNOHCHR, WTO, ILO 등 관련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5	중요도(5점)	3.8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6	실현가능성(5점)	3.00

① 과제 1. 아동폭력 관련 국제기구들과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연계·협력 체계의 구축

정부차원에서 UNICEF, UNOHCHR, WTO, ILO 등 관련 국제기구 및 NGO들과 구체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그들의 권고 및 보고서를 요약 번역하여 국내의 관련 기관들에 보급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적 인식 수준에 도달하도록 부단한 홍보와 교육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014년 복지부는 1993년 발효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준비 지원을 위해 전담팀 인력을 확보하고, 입양과 관련하여 입양특례법의 개정과 입양허가제를 도입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해외입양을 위한 국제적 서비스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나 이에 참여할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외교부 인권사회과와 협력하여 관련 인력수급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Korean NPO for UNCRC에 가입되어 있는 기관들과 연대하고 이들을 지원하여 국제적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교부 차원에서도 2012년에 유엔아동기금 아동보호분야 협력 강화 및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폭력 사무총장특별대표와의 대화 참여 지속, 2014년 제69차 유엔 총회 3위원회 아동 괴롭힘 및 폭력 방지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UNICEF와 아동보호분야에 관한 협력 강화 및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아동폭력 관련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있으나 이에 관하여 외교부 인권사회과는 아동인권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과와 함께 국제적인 기구들과의 협력을 위한 정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1) 가정환경상실아동(권고사항 47-48항)

- (1) [권고50. 대안양육기관의 서비스 질,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 아동권리 교육,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 유형 등에 대한 체계적, 정기적 검토]

진전노력 정도(5점)	2.89	중요도(5점)	4.5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4	실현가능성(5점)	3.68

#### ① 과제 1. 대안양육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권리 의무교육 실시

아동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과 같은 대안양육기관의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취약

계층 가정에서 성장하여 학대 및 방임피해와 같은 인권침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종사자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며, 아동들을 대상으로 권리에 기반한 실천(right based approach)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및 권리기반 실천에 대한 의무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권리기반실천을 통해 아동들 역시 대안양육 기관에서의 생활 및 성장과정에서 자신이 권리주체자(right holders)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며, 성인기 이후 삶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권리주체자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② 과제 2. 대안양육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대안양육기관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적절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검토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아동의 성장환경으로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 양육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요구된다.

- (2) [권고51.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를 보장하고, 학대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진료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8	중요도(5점)	4.2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7	실현가능성(5점)	3.21

① 과제 1. 학대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쉼터확대와 상담서비스의 지역별 접근성 강화

가정에서의 학대 및 폭력을 피해 아동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과 같은 대안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에게는 의료 및 상담과 같은 다각적인 서비스가 요구된다. 따라서, 단순히 학대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써의 쉼터 뿐 아니라 상담서비스를 위한 전문치료사 배치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이러한 회복지원 공간과 서비스가 전국에 설치되어 지역별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 ② 과제 2. 시설 내 아동학대 모니터링 및 조사를 위한 별도의 인원, 기구·조직 마련

대안돌봄시설에서의 학대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한 지도·감독과 전수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를 위한 전담기구나 인력이 지정·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최소인원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상, 별도 전담조직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각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지정하여 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 및 사후조사 및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 생활시설에서의 학대발생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학대발생 사후처리에 있어 아동의 안전과 더불어, 아동의 의견과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3) [권고52.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이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5	중요도(5점)	4.43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5	실현가능성(5점)	3.39

## ① 과제 1. 원가족 복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개입 강화

비록 아동이 불가피하게 대안돌봄시설에서 거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환경으로서 원가족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사회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대안양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일시적인 시설보호가 영구화되지 않도록 원가족으로의 복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환기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원가족 복귀는 강화된 가족 기능을 전제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가족 기능에 대한 엄밀한 사정(assessment)과 긍정적인 가족 기능 향상을 위한 노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종사자의 상담과 지도 등에 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 아동복지법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 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 아동복지법 제57조(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과제 2. 원가족 찾기 및 원가족 교류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확대

실제 원가족으로의 복귀여부와 관계없이,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의 원가족 및 친부모에 대한 개입과 아동과의 교류프로그램은 아동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이다. 심지어 아동들은 부모와의 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될길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Chapman, Wall, & Barth, 2004), 이러한 가족 간의 유대를 기반으로 시설에서의 생활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원가족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가족 간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지지에 기초한 부모의 정기적인 방문은 가족 간 유대를 유지시킬 뿐 아니라 가족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행동과 방식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Pecora, Whittaker, Maluccio, Barth, Depanfilis, & Plotnick, 2009).

(4) [권고53. 200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 대안돌봄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4	중요도(5점)	4.2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9	실현가능성(5점)	3.25

① 과제 1. 대안양육 지속 및 원가정 복귀 결정을 포함한 전문적인 가정복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 및 기구 마련

대안양육의 한 유형인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중양)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의 가정위탁 배치, 친가정과의 연락 및 가정 복귀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양육생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또 기출청소년 및 학대피해 청소년을 위한 쉼터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전문적인 기구가 부재하다. 아동의 대안양육 필요성과 원가족과의 분리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고, 이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가정복귀 가능성과 이에 대한 준비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구·조직의 설치가 관련법과 예산부채로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및 기구·조직을 시설 및 지역사회 내에 지정할 필요가 있다.

## 2) 입양(권고사항 49~50항)

- (1) [권고54. 중앙입양원이 헤이그협약 제6조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권한을 규정하고,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14	중요도(5점)	4.07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6	실현가능성(5점)	3.54

### ① 과제 1. 중앙입양원의 해외입양 기관과의 연계 및 입양아동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령 정비

2015년에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은 입양 해당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해 입양아동의 국적 취득에 대해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에는 이외 해외 입양기관과의 구체적인 연계 및 협력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해외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입양 후 적응 뿐 아니라 과양의 경우까지 고려하여, 해외입양아동에 대한 관계기관과 정부의 보호가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해외입양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입양가정에서의 적응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내용과, 이와 관련한 해외입양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법령과 지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입양특례법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 ②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권고55. 중앙입양정보원의 서비스에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96	중요도(5점)	3.8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61	실현가능성(5점)	3.89

### ① 과제 1. 해외 입양아동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지원을 위한 외국어 능통 직원 채용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사후서비스로써 해외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와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제26조의 중앙입양원의 기능으로써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해외입양인들과 입양가정, 그리고 입양관계 기관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상담지원, 그리고 다각적인 국제협력을 위해서 영어, 불어 등의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 채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수 언어에 한해서 해당 언어 구사가 능숙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입양특례법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 입양특례법 제26조(중앙입양원의 설립) : ④ 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3) [권고56.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과하며,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96	중요도(5점)	3.8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61	실현가능성(5점)	3.89

① 과제 1. 입양과정에서의 아동의견 청취 제도 강화

정부에서는 입양특례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입양아동의 입양동의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여 입양절차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을 더욱 효과적으로 입양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관련 사법기관 및 담당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며, 또 향후 장애아동, 다문화 및 이주가정 아동, 난민아동과 같은 특수한 상황의 아동의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사항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 입양특례법 제12조(입양의 동의) : ④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권자의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가사소송법 제45조의8(입양허가의 절차): ①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과제 2. 입양과정에서의 아동의 의견청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및 효과적인 의견청취 방안 마련

현재 입양특례법과 가사소송법, 그리고 민법에는 13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만 입양과정에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민법에는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 대부분의 입양이 이보다 훨씬 어린 영·유아나 아동에 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도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심문 및 조사과정에 아동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의 배석 및 조력을 통해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 2015.2. 대법원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견청취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므로 추이 파악 필요

※ 민법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4) [권고57.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입양 보내고자 할 때 미혼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실질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46	중요도(5점)	4.25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61	실현가능성(5점)	3.75

① 과제 1. 미혼모의 입양 또는 직접 양육 의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관련 정보(양육 지원 정보 등) 제공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른 입양숙려제 실시로 미혼모는 아동출생일부터 1주일 동안 입양과 직접 양육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나, 1주일이라는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법 조항에서는 미혼모의 자녀 직접 양육 또는 입양의사에 대해서, 또 친생부모의 아동 직접 양육 시 지원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충분한 상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접 양육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양육 돌봄, 본인 학업 지속,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미혼모의 직접 양육 또는 입양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더불어, 입양숙려기간동안 산모 및 영아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지원금에 대해서도 직접양육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 입양특례법 제13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양기관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입양기관은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과제 2. 미혼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확대

과거 미혼모 출산 시 입양을 당연히 했던 사회분위기에서 이제는 미혼모의 직접 자녀양육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정책변화는 친부모와 생활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동에게 가장 최우선환경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사업은 아직 시작단계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미혼모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미혼모의 자녀 양육, 학업 지속 및 취업, 돌봄서비스,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5) [권고58. 해외입양을 포함한 모든 입양이 명확한 임무권한을 가지고 사법적 감독과 규제를 담당할 역량을 가진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86	중요도(5점)	4.36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52	실현가능성(5점)	4.14

① 과제 1. 아동 입양 시 사법기관(가정법원)의 허가 절차와 민법상 입양의 경우 ‘입양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입양을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허가하도록 함에 따라 입양절차에서의 사법기관의 감독과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민법에서의 입양 역시 개정절차를 통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양특례법과 민법이 다른 시기에 다른 주무부처에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내용이 충돌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현소혜, 2013). 민법상 입양에서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입양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아동을 입양할 양친이 될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민법에 따른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신청의 경우 특례법에 따른 국내 입양절차를 따르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별도의 양부모 자격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현소혜, 2013). 이러한 입양이라는 동일 사안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나 또 해석의 차이로 인해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권고59.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1993년) 비준을 고려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79	중요도(5점)	4.2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43	실현가능성(5점)	4.36

① 과제 1.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지자체, 입양기관의 역할에 대한 체제 정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 입양 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불법)입양을 통한 유괴나 인신매매를 방지하며,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으로<sup>8)</sup> 정부는 2013년 5월에 헤이그협약에 서명하였으며, 현재 비준을 준비 중에 있다.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 1993년 5월 29일 채택하여 1995년 5월 1일 발표되었으며, 현재 협약당사국은 90개국이다. 전문과 총 4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가정 보호가 원칙이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입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책임으로 규정하며 수령국 중앙당국이 입양신청자의 적격여부 및 입양 적합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동 출신국에 송부하면, 출신국 중앙당국은 아동의 신원 및 입양적합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입양동의 확보 및 입양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입양 담당기관은 중앙당국이 담당하며, 일정범위 내에서 중앙당국의 업무를 공적기관이나 인가단체(비영리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입양국의 입양결정은 다른 체약국에서도 효력을 인정한다(보건복지부, 2013.5.27.).

6. 장애, 기초보전 및 복지

1) 장애아동(권고사항 51-52항)

(1) [권고60. 위원회의 일반논평 9호(CRC/CGC/9)를 고려하고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5	중요도(5점)	4.3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9	실현가능성(5점)	3.29

8) 중앙입양원. 헤이그 협약의 의미. [http://kadoption.or.kr/adoption/adoption\\_hague\\_mean.jsp](http://kadoption.or.kr/adoption/adoption_hague_mean.jsp)에서 2015년 7월 20일 인출.

## ① 과제 1.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수 확대와 이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보육사업기획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가 소관부처이나 현재까지는 모든 장애아동 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추진 실적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장애아동이 자신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기관의 수를 확대하여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이 현실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특수교육기관의 직접적인 설립과 더불어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각 급 학교에 특수교사의 배치 인원을 확대하여 특수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겸하게 하는 것도 논의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특수교육기관 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② 과제 2.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복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장애유형을 분석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기 쉬운 경증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 유형별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배포할 필요가 있다. 통합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특수교육 및 보육 기관 및 종사자 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각 급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 영·유아 및 아동의 장애 유형별 지원 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특수교사 외에도 모든 교사(통합학급 교사 중심)와 종사자들이 장애아동의 교육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아동 전담 교육 및 보육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확대·배치가 필요하다.

## (2) [권고61. 장애아동의 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와 감독관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조치를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2	중요도(5점)	4.2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2	실현가능성(5점)	3.39

## ① 과제 1. 특수교사 증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확대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특수교사 증원노력을 하고 있으나<sup>9)</sup> 향후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특수교사 임용 및 배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수교원 연수 시 직무연수 시수와 내용에 대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제 2. 특수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특수교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수교사 처우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특수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 예산 대비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특수교사의 유형과 업무내용, 장애아동 1인당 특수 교사의 수, 특수교사 양성 방법 및 특수교사의 처우에 대한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특수교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한다.

(3) [권고62.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04	중요도(5점)	4.2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4	실현가능성(5점)	3.43

① 과제 1. 장애 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 내실화와 이를 위한 특수교육 예산 증액

특수교육 대상자인 장애 아동·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교육이 2012년부터 만3세부터 고등학교까지 15년간 전면 실시되고 있다<sup>9)</sup>. 더욱 내실 있는 교육과

9) 교육부 (2013). 2013년 상반기 특수교사 465명 추가 임용으로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개선.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l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Y&boardSeq=42250&mode=view>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특히 장애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제공을 위해, 관련예산을 포함한 특수교육 예산이 더욱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 ② 과제 2. 장애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비 재원에 대해 관련법/시행규칙 명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지원법 등에서의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충분치 않은 예산 지원으로 지자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sup>11)</sup> 향후 예산지원의 현실화를 위하여 관련법과 지침 등에 재원과 예산에 대한 내용이 더욱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권고63.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93	중요도(5점)	4.3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9	실현가능성(5점)	3.36

## ① 과제 1. 장애아동 통합교육 내실화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통합교육을 내실화를 위해 교급별 우수사례를 개발·확산시키고, 이를 기초로 한 교수·학습자료와 매뉴얼 등의 개발·보급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교육기관 설치·운영과 통합교육 방식 및 내용에 있어 부모와 아동의 관점을 우선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10) 교육부 (2012). 만3세부터 고교까지 장애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No=10&currentPage=0&encodeYn=Y&boardSeq=30277&mode=view>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11) 관련기사: 뉴시스 전북 (2015.3.16). 장애아동 정부 예산부족으로 지원 톱…부모 불만 증폭. [http://www.news1.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6\\_0013538627&cID=10808&pID=10800](http://www.news1.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6_0013538627&cID=10808&pID=10800)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주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장애아동 및 가족의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및 장애아동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확대·설치하여야 한다. 더불어,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를 포함한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 및 교육과 발달지원서비스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개별 장애아동이 이후 제도권 통합교육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 2) 건강 및 보건의 서비스(권고사항 53-54항)

- (1) [권고64. 보건예산을 증액하고 저소득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시설 체계를 구축하고, 전 지역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인적 자원 지원을 늘리는 조치를 이행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14	중요도(5점)	4.3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9	실현가능성(5점)	3.36

- ① 과제 1. 이주·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내 무상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그리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주 및 다문화가정과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조기 무상 건강검진부터 응급치료까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의료서비스 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예방적 차원의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 3) 정신건강 (권고사항 55-56항)

- (1) [권고65. 아동의 우울증 및 자살원인에 대한 조사에 기반하여 아동정신 건강 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자살예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개발에 투자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6	중요도(5점)	4.5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2	실현가능성(5점)	3.36

- ① 과제 1.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문제가 쉽게 외현화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검사 및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상담 및 치료와의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낙인의 우려 없이 관련 진단 및 검진과 서비스 수혜가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자료와 개인정보 취급에도 매우 주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련 지침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검사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 및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학교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학교에서의 낙인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주 및 다문화 가정과 장애 등 특수한 상황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들 중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② 과제 2.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요인 조사 및 정신건강 종합대책 수립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evidence-based)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위험군을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생활시설(장애아동 포함),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정신건강 검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종합대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시설의 아동·청소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서비스와 교육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4) 청소년보건 (권고사항 57-59항)

- (1) [권고66. 담배, 알코올, 인터넷 중독 등 건강상의 위협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 캠페인을 확대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32	중요도(5점)	4.2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0	실현가능성(5점)	3.64

-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음주, 약물 오남용,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중독 예방 교육 확대 실시

현재 보건교육을 통해 학교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흡연, 흡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학급 및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국 약 50개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아동·청소년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도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흡연과 음주의 부작용과 위협에 대해 전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이에 대한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련 교육 및 캠페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아동·청소년의 의존 및 중독문제와 관련하여 스마트폰 중독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그 위험성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이의 중독 위험성에 대한 광고 및 캠페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학교에서의 교육은 보건 및 상담교사와 같은 전담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 더욱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 외 아동·청소년관련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2) [권고67. 아동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식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29	중요도(5점)	3.8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6	실현가능성(5점)	3.57

## ① 과제 1. 유해식품 판매 및 광고 모니터링과 사후처리 강화

아동·청소년 건강에 유해한 다양한 식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을 더욱 확대·실시하고, 더불어 이러한 식품판매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처리를 더욱 내실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고카페인 및 고열량 함유 음료 및 음식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건강에 유해한 식품에 대한 판매와 방송광고(PPL등의 간접광고 포함)를 더욱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내 스쿨존이나 그린푸드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의 불량식품 판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 및 적발 사례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sup>12)</sup> 더욱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현재의 지도·계도수준의 사후처리를 좀 더 실효성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 [권고68. 학교 교육 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조치]

진전노력 정도(5점)	2.93	중요도(5점)	4.1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6	실현가능성(5점)	3.50

## ① 과제 1. 인권에 기반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발 및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현재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성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인식과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성교육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들이 성과 생명 등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해외사례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현재의 아동·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의식수준과 너무 괴리되거나 지나치게 가치편향적이지 않도록 다양한 관계자의 검토와 개입이 요청된다.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수준과 발달을 고려하여 다양한 단계와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되, 아동·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12) 정책뉴스(2015.5.8). 위생불량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20곳 적발. 정책브리핑 웹 사이트 [http://www.korea.kr/policy/society\\_view.do?newsId=148794885&call\\_from=naver\\_news](http://www.korea.kr/policy/society_view.do?newsId=148794885&call_from=naver_news)에서 2015년 7월 29일 인출. 기사내용 요약 : 전국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조리판매업소 2만 8517개소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 적발

5) 사회보장생활수준 (권고사항 60-61항)

- (1) [권고69. 아동복지재원 배정 관련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하며,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9	중요도(5점)	4.5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2	실현가능성(5점)	3.11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복지재원 배정 및 관련 예산 지원 규정 법률 명시

OECD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중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할 때, 한국의 GDP대비 해당지출은 0.8%수준으로 평균인 3%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김경준, 김희진 외, 2014). 정부에서는 2014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아동빈곤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에는 이 기본계획에 빈곤아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빈곤,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사업 실시에 있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에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관계부처 합동, 2015: 99)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아동·청소년 복지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배정과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이 관련 법률에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을 말한다.

## 7.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 1) 직업훈련 생활지도 포함, 교육 (권고사항 62-63항)

(1) [권고70. 협약 제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2001)를 고려하여 교육 및 시험제도를 평가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04	중요도(5점)	4.5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76	실현가능성(5점)	2.83

① 과제 1. 교육체제 대안 마련을 위한 범국민적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운영(가칭 국가교육혁신위원회) : 초중등교육과정, 대학입시, 미래교육 비전에 대한 교육 3주체 및 전문가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대안 논의

교육체제 대안 마련을 위한 범국민적 사회적 합의기구의 설립·운영(가칭 국가교육혁신위원회)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먼저 현행 교육 및 시험제도를 평가하기 전에 실제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현행 교육 및 시험 제도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이와 함께, 범 학계 및 각계의 현행 교육 및 시험 제도와 관련된 현장 전문가들에게도 현행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함께 현행 교육제도에 대한 평가 방법 및 대안에 관한 과학적 논의체계를 마련하여 무엇보다 현행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학교 서열화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제도를 입법한다.

이러한 국가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은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에서 주도하되 아동의 인권차원에서 정부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아동인권관련 민간단체, 학벌사회 및 청년실업 등과 관련하여 노동계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교육병폐를 혁신하도록 한다.

(2) [권고71. 사교육 의존에 대한 근본원인과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 강화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13	중요도(5점)	4.7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71	실현가능성(5점)	2.75

① 과제 1. 고교평준화를 위한 서열화 관련 모든 제도 점진적 철폐

현행 대한민국 학벌사회로부터의 모든 교육적 문제의 근본원인은 심한 대학의 서열화에 있어 초중등교육과정부터 극심한 서열화 경쟁이 있으므로 교육부의 대입제도과는 궁극적으로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을 모델로 대학교평준화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문제의 원인을 타파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서열 상위대학들과 이 학교 출신의 기득권자들의 극심한 저항과 방해로 국론의 분열이 우려되고 대학교평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대학교 평준화제도의 도입 전까지는 초등,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고교평준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 아동인권 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신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최대한 계발될 수 있는 진정한 교육권과 이들의 여가 및 문화 향수권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더욱이, 학교의 서열화제도는 학벌사회는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계층의 선순환 이동을 저해하고, 사회계층 간 양극화 갈등을 심화하고 극렬하게 조장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권리를 함께 공유하지 못하게 유린하는 악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개선되고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를 위하여 비록 교육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아동인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과가 주체적으로 주도하여 교육부와 관련 시민단체 및 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고교평준화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제도를 제정 및 개정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초등교육부터 경쟁을 부추기는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하고, 특목고를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특수목적으로만 운영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강력하게 폐지시키며, 이와 함께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점차적으로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NGO가 제안한 것처럼 최근 진로교육법(2015. 06.22)의 제정에 따라 진로상담교사와 진로교육확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유학기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공교육에서 진로탐색과 적성에 맞는 직업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학업중단학생 유발의 한 원인이 되는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의 문을 더 넓혀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다시 인문계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학업부적응에 이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

② 과제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준수여부 모니터링 및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행 점검

2014년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은 공교육에서만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2015년부터 시행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는 선행교육을 규제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선행교육규제법을 사교육 시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선행학습을 제한하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하여야 공교육 정상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며 학원은 단지 공교육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의 보충교육의 장소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3) [권고72. 협약 제31조에 따라 여가·문화·오락 활동에 아동권리를 보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25	중요도(5점)	4.7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59	실현가능성(5점)	3.13

① 과제 1.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의 내실화 및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수행평가 제도 법제화 및 시행여부 모니터링

교육부에서 마련한 긍정적인 제도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가 아동의 여가 및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행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다 여가 및 활동의 기회와 권리를 증진해주도록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고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제도를 법제화하여 철저히 제도를 이행하고, 시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활동 프로그램인 ‘에딘버러 프로그램(한국명; 국제성취포상제)’을 이수한 학생이거나, 노르웨이에서와 같이 개인의 활동참여기록부 제도를 도입하여 주중, 주말, 방학 기간 동안 봉사활동이나 기타 다양한 활동들을 국가가 인정해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가·문화·오락 활동 제도의 활성화를 마련한다.

② 과제 2. 학원의 일요일 휴업제 도입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정부는 1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아동의 여가 및 활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급학교 진학관련 시설학원의 일요일 휴업제를 법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학원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학생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진흥과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함께 동참하여야 한다.

※ 2014년 NGO의 보고에 따르면 학원법에서 학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구체적인 시간에

관하여서는 시·도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일부 시·도는 제한시간 기준을 24:00로 잡아 시간 규제조항을 무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2조(정의) 1호를 개정해서 현행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이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학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일요일을 제외한 일 수”로 한정하고 점차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일 수”로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권고73.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루도록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50	중요도(5점)	4.4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6	실현가능성(5점)	3.33

① 과제 1. 특성화고등학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제도 신설 및 시행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직업의 기회를 얻고자 해도 입학기준이 높아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게 됨으로써 결국 학급에서의 학력차는 더욱 벌어져 학업 및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학교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와 직업교육정책과는 중등교과 과정에서 직업 및 진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인문계 고등학교의 통폐합을 통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필요한 수를 확보하고, 대학진학보다 취업을 희망하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욕구를 조사하여 이에 맞는 질 높은 맞춤형 특성화고를 확대하는 법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특성화고교의 교사확보를 위한 고등교육 전공자들을 강사로 채용하고, 장기적인 교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독일의 유명한 학교와 기업의 연계 제도인 dual system을 도입하여 시범운영하도록 한다.

② 과제 2. 부처별 저소득층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에 기반한 사업 확대 방안 마련(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현재 한국은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수가 대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육이 사각지대에 있게 될 위험이 크고 이는 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결국 국공립유치원의 부족은 사립유치원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므로 국공립 보육기관의 확대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국공립 영유아교육기관 입학의 우선권과 무상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중복 투자되고 있는 교육복지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학교 등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정책과의 지역아동센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의 방과후아카데미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지도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설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교과목 교육은 방과후학교에서 전담하고, 학교 밖 기관들에서는 다양한 문화활동과 진로활동, 봉사활동, 예체능활동 등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②항 2호에서는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부의 방과후학교지원과가 담당해야 할 업무라 예산의 중복투자가 되고, 학습은 교원자격을 소지한 교사가 하는 것이 법제도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는 시행령 제33조의4 ②항 2호를 삭제하고 본연의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② 방과후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5.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11.11.18]

(5) [권고74. 학생 간 괴롭힘, 따돌림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교실과 학교운동장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3	중요도(5점)	4.8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9	실현가능성(5점)	3.50

① 과제 1. 학생 간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예방교육 및 피해자와 가해자간 화해와 공감능력 증진과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후 전국학교에 보급

현재 학교폭력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와 정부와 민간의 대책들이 모두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예방교육에 대한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화된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화해와 공감능력의 증진도 추상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다 구체적인 예방교육 내용과 화해와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여성가족부의 매체환경과와 협력해서 마련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위주의 대처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전국 학교에 보급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② 과제 2. 초등교육과정의 PC 및 스마트폰 교육 확대 강화와 사이버폭력 처벌기준 강화 및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선도교육 제도 마련

교육부의 학교생활문화과는 모든 예방교육은 조기교육이 가장 효과가 크므로 초등교육과정에 서부터 PC와 스마트폰 등에서의 사이버 상에서의 에티켓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제로 가장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학교와 중등교육차원에서 사이버폭력의 처벌기준을 제도적으로 보다 강화하고, 선도교육 제도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NGO에서 제안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지침을 폐지하는 것도 인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적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8. 특별보호조치

### 1) 망명신청 및 난민 아동(권고사항 64-67항)

- (1) [권고75.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등록이 되도록 하고, 망명희망자와 가족에게 재정·교육·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50	중요도(5점)	3.93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7	실현가능성(5점)	2.96

#### ① 과제 1.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마련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등록과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그 이유와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국적문제 등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위한 공개적인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와 캠페인 등이 광범위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발달 단계별로 출생등록, 보육지원, 의무 및 무상교육, 의료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가치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2) [권고76.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을 가급적 배제하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설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최대구금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39	중요도(5점)	3.75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2	실현가능성(5점)	2.86

① 과제 1. 난민 아동의 구금배제 원칙을 관련법, 지침 등에 명시

난민 및 망명희망자에 대한 구금배제 원칙에 대해 유엔난민기구구금에 관한 지침<sup>13)</sup>에서 아동에 대한 내용(9.2. Children)을 활용하여 이들의 구금배제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보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호자가 없는 난민아동은 구금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그러나 보호자 유무에 관계없이 이러한 난민아동에 대한 구금여부와 법적 보호,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아동권리차원의 접근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관련법과 지침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 과제 2. 난민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에 따른 시설보호에 대한 상세 규칙/지침 마련

난민아동의 인도적 체류와 보호를 위해서는 유엔난민기구구금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일차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절차 하에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UNHCR, 2012). 이를 위해서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후견인이나 조연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내용 역시 관련 지침에 명시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 연구 및 현재 한국 내 체류하고 있는 난민 아동 실태와 현황 조사를 통하여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법 제정이나 혹은 법 개정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2) 이주상황아동(권고사항 68~69항)

- (1) [권고77. 불법체류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의 교육을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5	중요도(5점)	4.07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5	실현가능성(5점)	3.00

13) UNHCR(2012), Detention Guidelines : Guidelines on the Applicable Criteria and Standards relating to the Detention of Asylum-Seekers and Alternatives to Detention. <http://www.refworld.org/pdfid/503489533b8.pdf>,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① 과제 1. 난민 및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교육권보장 제도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개정(2013년 10월)으로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sup>14)</sup>, 학교장 재량에 따라 초중등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의무교육처럼 난민 및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이 완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김철효, 최서리, 2013). 따라서 난민 및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관련 서류(출입국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등) 제출 없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학교생활 적용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필요한 지원도 필요하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75조 : 제19조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권고78.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50	중요도(5점)	3.8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6	실현가능성(5점)	2.96

① 과제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모색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일 뿐 아니라, 최근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호관이 우리나라에서의 인종차별의 심각성과 함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촉구<sup>15)</sup>하는 등 동 국제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사회적

14) 미등록 이주아동들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이 가능하게 된 최초 근거는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권보장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김철효, 최서리, 2013), 이후 2006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을 통해서, 그리고 2008년에는 시행령 재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김철효, 최서리, 2013, p.102).

15) 관련 기사: YTN(2014.10.9). 유엔 권리, "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YTN 웹 사이트 [http://www.ytn.co.kr/\\_In/0104\\_201410091857263819](http://www.ytn.co.kr/_In/0104_201410091857263819)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합의를 위한 첫 단계로써 관련 공익광고, 캠페인을 통한 홍보, 그리고 관련 학계 및 NGO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사회적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기초로 한 사회적 논의를 공론화하여야 한다.

### 3) 아동 노동, 경제적 착취(권고사항 70~71항)

(1) [권고79.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50	중요도(5점)	3.96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5	실현가능성(5점)	3.00

① 과제 1. 취약계층 근로청소년의 실태파악 및 지원 확대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노동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근로청소년 종합실태 파악 및 노동시장 진입요인 분석, 소득수준별 생계지원 시스템 및 근거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직업교육,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근로기준법 적용 모니터링, 경제적 지원 및 의료적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권고80. 18세 미만 아동의 야간근무 금지, 최저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9	중요도(5점)	4.1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0	실현가능성(5점)	3.21

① 과제 1.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고용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의무화함으로써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 여부와 이들의 근로형태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야간근로가 금지되는 고용사업장 인가 요건을 강화하며, 위반 시(야간근로, 최저임금 미지급 등) 이에 대한 처벌 강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범 고용사업장 발굴 및 포상을 통한 청소년 고용사업장이 아동·청소년의 근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② 과제 2.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침해 구제 활성화 방안 마련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노동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 (3) [권고81. 아동의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을 제정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1	중요도(5점)	4.1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4	실현가능성(5점)	3.21

## ① 과제 1. 청소년의 임금지급 보장을 위한 근로 감독 체계 강화와 관련제도 법제화

관련법(청소년보호법 등)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임금 지급 보장을 위한 근로 감독 체계 강화(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양성 및 배치 등)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의 처벌과 양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한다.

## (4) [권고82. 아동의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5	중요도(5점)	4.1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1	실현가능성(5점)	3.25

## ① 과제 1.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알바신고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안심알바신고센터의 학교 및 지역사회 내 설치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 다수 근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엄격한 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 홍보와 일제 신고기간을 통해 변칙적 근로환경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철저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② 과제 2.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청소년 고용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더불어 청소년 근로와 노동환경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와 처벌 내용에 대해 사업주가 잘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고용주와 지역사회, 그리고 근로청소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할 수 있다.

- (5) [권고83. 아동의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 및 재발을 돕는 효과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8	중요도(5점)	4.2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7	실현가능성(5점)	3.32

① 과제 1.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및 피해자 신속 지원

모든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사업주와 고용인은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안심알바신고센터에 상호명을 공개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동 센터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성추행 문제 발생 시 지역사회 내 사법기관과 의료 및 보호시설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한다.

- (6) [권고84. 18세 미만 아동연예인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폭력과 성추행 문제에 대한 조치]

진전노력 정도(5점)	2.61	중요도(5점)	4.1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6	실현가능성(5점)	3.18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연예인 근로보호를 위한 구체적 처벌 조항 명시

2014년 7월에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새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15세 전후를 기준으로,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활동시간을 제한하고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우려 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포함한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 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과제 2. 연예기획 종사자 대상 청소년 연예인 근로보호 교육 및 성관련 범죄 예방 교육 의무화

연예기획사 종사자 역시 청소년 고용사업주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근로보호 교육과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의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내용(야간공연금지, 성추행예방 및 학습권 보장 등)과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성적 착취(권고사항 72~73항)

(1) [권고85.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32	중요도(5점)	4.7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75	실현가능성(5점)	3.68

① 과제 1.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종합대책 수립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의 발견에서 치료,

보호에 관한 일원화된 서비스 통합지원 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와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배포한다.

② 과제 2.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예방교육 강화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배포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포털 사이트 등에 성폭력 범죄 집중 신고 기간 및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주간을 운영한다. 또한 보육시설과 각급교육기관에서 아동의 성폭력 범죄 피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2) [권고86. 성적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46	중요도(5점)	4.57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82	실현가능성(5점)	3.64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 및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집행유예 제도를 폐지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효과적인 수사 및 기소를 위해 전담 조사관을 임명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보호 및 교육관련 종사자와 공무원과 같은 특정 직업 종사자가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가중처벌을 포함한 관련 직업 종사 금지 조항을 강화한다.

② 과제 2. 인터넷/모바일 성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PC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한 청소년의 성매매 및 조건만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최근 주된 성매매 유입경로로 알려진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환경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3) [권고87.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처벌이 형사사법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21	중요도(5점)	4.6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64	실현가능성(5점)	3.68

- ① 과제 1.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법기관에 대한 전문 교육 실시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논의가 더욱 공론화되고 이를 통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사법기관에서의 전문교육이 요구되는데, 구체적으로 아동 성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인력을 포함한 사법기관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담당 수사관, 형사, 검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 (4) [권고88. 형사책임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해 노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50	중요도(5점)	4.3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6	실현가능성(5점)	3.32

- ① 과제 1. 고위험군 성범죄자 대상의 효과적인 치료·재활 실시

성범죄자의 교화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성범죄자의 위험 수준과 성범죄 유형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성범죄자들의 의무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 (5) [권고89.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1	중요도(5점)	4.2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93	실현가능성(5점)	3.39

- ① 과제 1. 성폭력 피해 남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성폭력 피해 여자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 피해 남자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 치료 및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같이

아동성폭력피해 지원시설이 지역별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 (6) [권고90. 인신매매 및 성착취 피해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하여 지원활동이 다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57	중요도(5점)	3.6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30	실현가능성(5점)	3.14

- ① 과제 1. 다국어 상담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시설 확충

성매매 피해 외국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국어 전문 통역서비스가 가능한 ‘외국인 지원 시설’을 권역별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의료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 및 생활시설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 5) 인신매매(권고사항 74~75항)

- (1) [권고91.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기준을 고려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11	중요도(5점)	4.14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86	실현가능성(5점)	3.50

- ① 과제 1. 「인신매매의정서」와 같은 여성아동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 비준 추진

「인신매매의정서」 등 관련 국제협약 비준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와 같은 범죄피해의 심각성을 더욱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부처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방송매체를 포함한 홍보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는 등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당국의 비준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 ② 과제 2. 국제적인 아동·청소년 인신매매·성매매 알선 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

국제적 인신매매,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범죄 알선에 대한 국가 간 공조수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며, 더불어 이에 대한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형법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에 대한 내용과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국가 간 조사와 처벌 등과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매매 및 인신매매 근절과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본 법률에서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보다 상세한 내용과 국제적인 성매매 및 인신매매 단속과 처벌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상세화될 필요가 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共助)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6)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권고사항 76~77항)

- (1) [권고92.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2조와 제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07	중요도(5점)	4.1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81	실현가능성(5점)	3.54

### ① 과제 1. 아동 대상 성매매, 성적 착취, 아동이용 음란물 등에 대한 단속 강화와 법정형 상향 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배포, 아동·청소년매매 및 성매매, 이와 관련한 강요행위 및 알선영업행위 등 개별 범죄행위와 관련한 단속 및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다(제12조~제17조).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와 관련해서 현재의 양형기준이 적절한지, 그리고 더욱 강화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기초로 지속적인 제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배려하도록 법조항(제25조)에 나타나 있는데, 이 경우 전담 사법제도와 전문 인력을 배치·운영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② 과제 2.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 사례 분석 및 모니터링 강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판결 및 판례, 양형 등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타 국가사례와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처벌기준과 적정성에 대한 제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권고93.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4조 제2항에 의거,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해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07	중요도(5점)	4.11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85	실현가능성(5점)	3.57

① 과제 1. 해외 아동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한국인에 의해 해외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홍보 및 공익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아동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이 요구된다.

② 과제 2. 해외 아동 성매매·성범죄에 대한 공조수사 체계 강화

해외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범위반 시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체계를 마련하고, 이러한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7)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권고사항 78~79항)

- (1) [권고94.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하여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6	중요도(5점)	3.46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2	실현가능성(5점)	3.32

- 해당사항 없음.

※ 선택의정서 위반을 금지하기 위한 법조항 내용 발굴

- (2) [권고95. 모든 법률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9	중요도(5점)	3.46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0	실현가능성(5점)	3.39

- 한국은 해당사항이 없음.

※ 법률적 사항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안보교육이나 병영체험활동, 나라사랑교육사업 등이 전문적 검토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부 군사훈련 체험성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3) [권고96. 모든 군사법, 소책자 및 기타 군사 지침서들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되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36	중요도(5점)	3.57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0	실현가능성(5점)	3.61

① 과제 1. 아동 무력분쟁 참여 금지에 대한 교육자료 발간 배포

국방부 소관 법률 소책자 및 군사지침서들의 내용에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에 일치되는 아동 무력분쟁 참여 금지에 대한 교육내용을 추가하여 배포하도록 한다.

## 8) 소년사법운영 (권고사항 80~81항)

- (1) [권고97.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 법원을 설립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64	중요도(5점)	4.1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44	실현가능성(5점)	3.32

### ① 과제 1. 소년전문법원 설치

소년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에 관한 기초 자료 조사 및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하여 소년전문법원 설치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근거로 전문적인 소년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년전문법원 설치를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② 과제 2. 소년 사건 처리 절차 및 구금과정에서의 처우 개선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서 관련기관간의 자료를 공유하여 중복적인 질문과 피해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김미숙, 김혜련, 김광혁, 양심영, 이주연, 하태정, 2012), 일련의 사건 처리 및 구금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겪지 않도록 처우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 (2) [권고98. 형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지원을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제공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9	중요도(5점)	4.25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1	실현가능성(5점)	3.50

### ① 과제 1. 아동·청소년 피의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심리적 지원 제도화

아동·청소년 피의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피의자 수사 시 신뢰 관계자 동석 및 가족의 참관을 허용하고,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가와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

- (3) [권고99.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화시설 또는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고, 안전하고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받고,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음식·교육·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39	중요도(5점)	4.29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0	실현가능성(5점)	3.71

① 과제 1. 소년수용자의 처우 개선 및 가족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소년 수용자가 면회, 서신, 전화 등을 통해 필요시 수시로 가족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소년원 시설환경 및 처우(급식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여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제거하도록 한다. 과밀수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인원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정하고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배포한다.

② 과제 2. 소년수용자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지도 및 직업훈련 의무화

소년수용자의 직로적성검사를 통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소년수용자가 적절한 진로지도와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한 직업세계의 경향과 소년수용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소년원 내 보다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도록 한다. 적극적인 진학 및 진로지도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회재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 (4) [권고100.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93	중요도(5점)	4.00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0	실현가능성(5점)	3.46

① 과제 1. 보호소년·위탁소년 대상의 청원, 진정 제도 운영 활성화

보호소년이나 위탁소년이 자신의 처우와 배치에 관하여 수시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러한 청원, 진정 제도에 대하여 교육하고 공지하도록 한다.

(5) [권고101. 아동의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유박탈 대신 보호관찰·상담·사회봉사·집행유예 등 대안을 장려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25	중요도(5점)	4.25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78	실현가능성(5점)	3.71

① 과제 1. 소년사범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활용 확대

소년사범의 구금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활용 현황 및 그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② 과제 2. 재범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의무화

소년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호관찰소나 소년원과 같은 소년 선도기관 및 해당 프로그램에 심리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 한다.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소년사범을 대면하고 지원하는 인력들이 심리·정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권고102. 유엔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 간 패널과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비정부기구 등 패널 회원기구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패널 회원기구로부터 소년사범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75	중요도(5점)	3.68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08	실현가능성(5점)	3.21

① 과제 1. 소년사범분야에서의 국제적 기구의 조연과 지원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소년사범분야에서의 국제적 기구와의 협력관계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세미나와 관련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담당자가 해외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 9)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권고사항 82~83항)

- (1) [권고103.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아동이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프라이버시, 존엄성 등)를 받도록 하며, 유엔 사법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3.07	중요도(5점)	4.43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11	실행가능성(5점)	3.57

## ① 과제 1. 범죄 피해 유형별 피해 아동 지원 확대

스마일센터와 같은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을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더불어 피해 아동의 상황에 따른 법적·심리적, 주거·의료적 지원도 확대·실시한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 지원 안내 및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스마일센터 뿐 아니라 일반 학교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와 같은 곳에 배포함으로써, 범죄 피해 지원이 지역사회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 교사, 관련 공무원, 청소년관련 종사자들(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 등)이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태와 지원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연수 및 교육 시 활용한다.

## ② 과제 2. 범죄피해 및 목격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범죄 피해 목격자 보호와 지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사회적으로 더욱 관심을 갖도록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 목격자가 신변노출로 인한 2차 피해나 범죄피해 목격에 따른 심리적 문제를 겪지 않도록 개인 정보 보호와 심리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9. 기타분야

### 1) 국제 인권조약 비준 (권고사항 84항)

(1) [권고104.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08	중요도(5점)	4.33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46	실현가능성(5점)	3.17

① 과제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추진(협약 가입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 점검 착수)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관하여 국제협약과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하도록 관련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상충되는 국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의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자국민과 동등한 법적지위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과 상충되는 것을 이유로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법무부의 인권정책과와 외국인정책과 그리고 외교부의 인권사회과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사회보장, 사법제도, 고용제도, 과세, 선거 및 교육제도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에의 가입 여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2년 이후 ‘UN 강제실종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 및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입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2015년에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추가로 연구진행을 예정하고 있어 조속한 가입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NGO의 의견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있어서도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전입학 절차상 제출서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주아동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이주아동의 전입학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도 동 협약의 비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 2)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권고사항 85항)

- (1) [권고105.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내에서 협약과 다른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해 아세안여성아동위원회와 협력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13	중요도(5점)	3.67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2.22	실현가능성(5점)	3.21

- ① 과제 1. 인권관련 지역 국제기구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 소통채널 명확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동권리협약 최종권고 이행을 위한 계획(2014년~2016년) 수립에만 머물지 말고 정부, 특히 외교부 인권사회과가 주도적으로 외교부 아세안협력과와 함께 이를 지원하고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내에서 협약과 다른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해 아세안여성아동위원회와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속히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아동인권 NGO 들과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요청된다.

## 3) 후속조치 및 배포 (권고사항 86~87항)

- (1) [권고106. 정부, 국회, 지역기관 등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달하여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42	중요도(5점)	4.25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88	실현가능성(5점)	3.46

- ① 과제 1. 사안별 담당 부처 담당과에 권고사항 통보 후 이행사항 취합·점검(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협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 강화 필요) 및 위원회 권고사항 홍보물 제작 및 전국 관련 기관 배포

제3·4차 통합 정기보고서, 서면답변 및 위원회 권고사항이 번역되어 인터넷과 여타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 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전문가 단체 및 아동에 널리 제공하여 본 협약과 이행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도록 한다. 아동권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는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에

송부하고 이행계획에 관하여 요청하였고, 2014년에 권고사항에 관한 추진실적 및 계획에 관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관련부처들의 협조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실적 중간보고에 대한 NGO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회의결과에 관한 해당 내용을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청소년정책과, 법무부 인권정책과 외교부 인권사회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각 부처에서 정책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시 권고사항들이 빠짐없이 고려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련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2) [권고107. 위원회 권고사항 등이 번역되어 인터넷 및 기타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단체, 아동 등에게 널리 제공되도록 하며 협약 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

진전노력 정도(5점)	2.83	중요도(5점)	4.42
수행기간(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1.50	실현가능성(5점)	3.92

① 과제 1. 다양한 형태의 협약 권고사항 홍보전략 개발·시행 (공익광고 및 동영상, 스마트폰 SNS, 아동·청소년 친화적 인쇄매체 등)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공익광고와 동영상으로 제작으로 TV나 뉴미디어 등의 매체들을 이용하여 전국의 모든 관련 기관들과 전 국민에 홍보하도록 예산을 확보·실시하도록 한다.



## 제 IV 장



# 요약 및 제언



## 제 IV 장

### 요약 및 제언<sup>16)</sup>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중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산출을 위한 기준으로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9개 영역에 총 148개의 ‘권고사항 이행과제(안)’를 제시하였다. 148개 정책과제는 18개 부처의 96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다(<부록 2> 참조).

이 연구의 결과는 광범위한 현장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권고사항 이행과제 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산출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에 대해 정부정책 수행주체인 부처별 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정부보고서 작성지침이 요구하듯이 해당 과제 수행이 어렵다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어려움에 대한 충실한 분석도 필요하다. 정부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수적 계획을 수립하기 쉽고 민간부문에서는 협약 제4조가 제시하고 있듯이 ‘가용자원의 최대 한도까지’ 권리 실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의 의견을 받아들인 ‘권고사항 이행사항 정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권고사항 이행과제’를 도출한 기본자료는 2014년도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107개로 세분화한 권고사항이다. 권고사항을 누락없이 검토하고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초기 모니터링단계에서는 의미있는 작업이나 장기적으로는 주요 정책주체 중심으로 권고사항을 재구성하여 통합적 이행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권고사항 이행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정책과제도 단계별 이행과정이 있으므로 부처별 과제 설정 시 단계별 목표수준과 타임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6) 이 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 합동 (2013.5.28).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관계부처 합동 (2015). 제1차('15~'19) 아동정책기본계획(안). 세종: 보건복지부.
- 교육부 (2012). 만3세부터 고교까지 장애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Y&boardSeq=30277&mode=view>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 교육부 (2013). 2013년 상반기 특수교사 465명 추가 임용으로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개선.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Y&boardSeq=42250&mode=view>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 교육부 (2013.10.1.). '학생 임신·이성교제 이유로 징계 못한다' 보도 관련 설명.
- 국가인권위원회 (2015.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수정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010.12.28.). 청소년 미혼모 퇴학, 전학 규정 삭제.
- 국가인권위원회 (2010.8.30.).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법령 정비틀.
- 국가인권위원회 (2015.11.11.). 인권위, 기업과 인권 교육 실시... 인권경영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 기획재정부 국제개발정책팀 (2015.11.10.). 정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 확정.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5.9.16). 국무조정실에 정책의견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 전달.
-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2014).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4-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경준, 이호균, 서여정, 김광혁, 김형욱, 윤상석 외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연구보고 14-R14-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미숙, 김혜련, 김광혁, 양심영, 이주연, 하태정 (201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2012-52).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지, 김경준, 이민희, 김지혜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연구보고 13-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종철 (2014).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아동노동 연루와 관련해서.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포럼 자료집: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과 아동인권 -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한국의 역할모색**, 1-11.
-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연구보고 13-R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철홍 (2013). 인권교육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99-232.
- 김철효, 최서리 (2013). **대한민국 내 무국적의 현황**. 서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 내일신문 대구경북 (2015.9.24). 대구 죽전초등학교 이슬람권 다문화학생 맞춤형 급식. 내일신문 대구경북 웹 사이트 <http://blog.daum.net/sakgane/1868>에서 2015년 10월 인출.
- 뉴스시스 전북 (2015.3.16.). 장애아동 정부 예산부족으로 지원 뚝...부모 불만 증폭. 뉴스시스 웹 사이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6\\_0013538627&cID=10808&pID=108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6_0013538627&cID=10808&pID=10800)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 대법원 (2015.2.6). 대법원, 24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 박선영, 송효진, 구미영, 김정혜 (2014).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연구보고서 16-2).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

- 부, 국제아동인권센터.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3.5.27).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 사회보장위원회 (2015.8.1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2.5). 2015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 발표 -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교복 입은 시민’ 육성.
- 양현아 (2012).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와 국내이행 실태.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심포지엄 자료집: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62-94.
- 여성·아동미래비전전문위원회 (2013). 여성·아동 미래비전. 서울: 대한민국국회.
- 여성가족부 (2015.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8).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서울: 여성가족부.
- 우종길 (2011).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내 후속조치.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심포지엄 자료집: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45-255.
- 유승민의원 대표발의 (2014). 인권교육지원법안.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58차 회기- 2011년 9월 19일~10월 7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정책자료 2011-04).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이인석 (2011). 사법부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심포지엄 자료집: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87-297.
- 정책뉴스 (2015.5.8). 위생불량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20곳 적발. 정책브리핑 웹 사이트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94885&call\\_from=naver\\_news](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94885&call_from=naver_news)에서 2015년 7월 29일 인출.
- 정해숙, 최윤정, 최자은 (2014).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2014 연구보고서 4).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중앙입양원. 헤이그 협약의 의미. 중앙입양원 웹 사이트 <http://kadoption.or.kr/adoptio>

- n/adoption\_hague\_mean.jsp에서 2015년 7월 20일 인출.
- 한국일보. 아동학대예방 예산이 불안한 이유. 한국일보 웹 사이트 <http://www.hankookilbo.com/v/618f7e758048436ea53c0c837e64cc26>에서 2015년 7월 20일 인출.
- 현소혜 (2013). 개정 「민법」 상 입양과 「입양특례법」 상 입양: 체계정합성의 관점에서. **가족법연구**, 27(1), 85-114.
- 홍관표 (2015).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 본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2(1), 81-102.
- Chapman, M. V., Wall, A., & Barth, R. P. (2004). Children's Voices: The perceptions of children in foster car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3), 293-304
- NGO Advisory Council for follow-up to the U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2011). *FIVE YEARS ON: A global update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UN: NGO Advisory Council for follow-up to the U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윤주희 역 (2011). **아동폭력보고서 그 후 5년: 국제아동폭력 현황보고**.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2014). *Towards better investment in the rights of the child: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A/HRC/28/33)*. Geneva: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 Pecora, P. J., Whittaker, J. K., Maluccio, A. N., Barth, R. P., Depanfilis, D., & Plotnick, R. D. (2009).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ew York: Aldine Transaction.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09). General Comment No. 12 -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CRC/C/GC/12).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HCR (2012). Detention Guidelines : Guidelines on the Applicable Criteria and Standards relating to the Detention of Asylum-Seekers and Alternatives to Detention. <http://www.refworld.org/pdfid/503489533b8.pdf>.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5).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 (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YTN (2014.10.9.). 유엔 관리, “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YTN 웹 사이트 [http://www.ytn.co.kr/\\_ln/0104\\_201410091857263819](http://www.ytn.co.kr/_ln/0104_201410091857263819)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

# 부 록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안) 및 소관부처
3. 전문가 의견조사지
4.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객관식 응답
5.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주관식 응답
6.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부 록

##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협약 조항 문구 포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58차 회기

2011년 9월 19일~10월 7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사

### 최종견해: 대한민국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1년 9월 21일 열린 제1644차와 제1645차 회의에서 (CRC/C/SR.1644 및 CRC/C/SR.1645 참조) 대한민국의 제3,4차 통합 정기보고서 (CRC/C/KOR/3-4)를 심의했으며, 2011년 10월 7일 열린 제1668차 회의 (CRC/C/SR.1668 참조)에서 다음의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 I. 도입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의 보고지침에 따라 제3, 4차 통합 정기보고서(CRC/C/KOR/3-4) 및 쟁점목록에 대한 서면답변(CR/C/KOR/Q/3-4/Add.1)을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분석적이고 자기비판적인 성격을 높이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의 대표단과 가진 건설적인 대화에 대해 감사히 여긴다.

## II. 대한민국이 취한 후속조치 및 이룩한 성과

3. 위원회는 다음 법안의 채택을 환영한다.

- (a) 2011년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
- (b) 2011년 9월 개정된 민법
- (c) 2011년 3월 개정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d) 2011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e) 2010년 3월 개정된 가사소송법
- (f)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g) 201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 (h) 2011년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4.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다음의 조약을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

- (a) 2008년 12월 11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 (b) 2006년 10월 18일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5. 위원회는 또한 다음의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 (a) 2010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III. 주요관심분야 및 권고사항

### A.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 제 4 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42 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 제 44 조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기존 권고사항

6. 위원회는 당사국의 2차 보고서(CRC/C/70/Add.14, 2002년 6월 26일),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1차 보고서(CRC/C/OPSC/KOR/CO/1, 2008),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1차 보고서(CRC/C/OPAC/KOR/CO/1, 2008)를 심의하여 작성한 위원회의 우려 및 권고사항(CRC/C/15/Add.197, 2003년 3월 18일)의 일부를 해결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우려 및 권고사항의 일부가 불충분하게 다루어지거나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7.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권고사항,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의 설립, 체벌의 전면적인 금지, 그리고 아동이 겪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 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유보

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9조 3항에 대한 유보를 2008년 10월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원칙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보장한다는 21조 (a)항에 대한 유보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이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를 유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9. 위원회는 협약의 완전한 적용에 장애가 되는 21조 (a)항과 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 입법

10. 위원회는 당사국 헌법이 협약을 국내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의 전반적인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가 불충분하고 당사국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한정된 예외상황 이외의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임신한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을 안전하지 않은 불법낙태 및/또는 학업중단 강요 및/또는 아이 입양 강요 등의 위협에 노출시켜 임신한 청소년이 처한 난국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다.

11. 위원회는 추가적인 관련법 제정을 포함,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낙태관련 법률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합치하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여기에는 청소년 미혼모가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고, 불법낙태의 위험과 아이를 입양시키라는 강요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 조정

12. 본 위원회는 당사국 내 협약이행 업무의 조정이 저하되었음을 우려하며, 이는 무엇보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08년 이래 운영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각기 다른 정부부처에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이 이행되어 정책분절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위원회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발족에 주목하나, 청소년 정책 조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여전히 우려한다.
1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하여 강화고, 오히려 가급적이면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적절한 관련기구를 수립하라.
  - b)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간, 그리고 관계 국가 및 지역 단체간 아동권리 관련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하라. 이 과정에서 협약의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이 취하는 모든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라.

## 국가행동계획

14. 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7-2011이 2007년 5월에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포괄적이고 권리기반의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의 결여를 계속하여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 계획 만료 후를 위한 후속 국가행동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관련 파트너들과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협약의 전 부문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과, 이를 위해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및 감시체제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덧붙여, 위원회는 시민사회 및 아동과 투명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2011년 이후 후속 국가행동계획 준비를 신속히 시작하도록 촉구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명명된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 문서 및 중간평가 보고서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 독립 모니터링

16. 위원회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설립 및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위촉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 제도가 국가적 수준에서 협약의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 a)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법적 지위를 갖추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 받음.
  - b)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이 적극적으로 아동권리위반을 감시 및 조사하고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없음.
  - c)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임무권한은 당사국이 시행하는 연례성과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위원회는 또한 2009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21% 축소된 것과 이전의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전문화를 이루지 못한 것에 우려한다.

17.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명확한 임무권한을 갖도록 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과 센터와 옴부즈퍼슨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협약위반을 감시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독립적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호(2002)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및 아동권리 관련 전문성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 자원의 할당

18. 위원회는 사회분야 이행에 배정된 재원이 2008년 대비 16.5% 증가했음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이용 가능한 재원 대비 현재 배정된 재원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2009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서 2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재원의 수준에 있어 지역당국간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19.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좀더 걸맞도록 협약이행을 위해 배정된 재원 수준을 검토하고 증가시켜라.
- b) 아동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고 지역당국 및 지리적 위치에 따른 아동간의 격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으로 재원배정을 평가하라. 이를 위해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필요 정도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아동권리관련 항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재정배분을 설정하라.
- c) 국가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 아동권리접근법을 활용하라. 즉 예산 내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 위원회는 또한 분야별 투자가 어떻게 “아동의 최상의 이익원칙”에 부합하는 지를 가늠하는 영향평가에 이 추적체계를 활용하여, 투자효과에 있어 여아 및 남아 간의 차이를 측정하도록 촉구한다.
- d) 가능하다면, 재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기반 예산수립을 도입하라는 유엔권고안을 따르라.
- e) 특히 아동을 포함하는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보장하라.
- f) 사회적 약자 우대 조치를 필요로 하는 빈곤 혹은 취약계층 아동, 예를 들어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전략적인 예산 방안을 수립하고, 경제위기, 자연재해 또는 다른 긴급상황에서도 이 예산이 지켜지도록 하라.
- g) “아동권리를 위한 재원 - 국가의 책임”에 관한 2007년 일반논의의날에서 도출된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하라.

## 자료수집

20. 위원회는 당사국의 자료수집방법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협약의 범주에 포함되는 분야별로 자료가 나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의 상대적 빈곤과 극심한 빈곤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당사국에 존재하나, 빈곤아동에 대한 자료가 없고 빈곤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 및 예산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한다.

21. 위원회는 협약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무엇보다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 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설립할 것을 대한민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자료에서 포착될 수 있는 경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과과정에 인권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 사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23. 위원회는 인식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그 중에서도 특히다음의 방안을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 a)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켜라.
  - b)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라.
  - c)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하라.

## 국제협력

24. 대한민국이 점진적으로 국제원조에 대한 기여를 증가시켜 왔음을 인식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제원조 기여가 약 0.13%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당사국이 2015년까지 도달하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국민총생산 대비 0.7%라는 목표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 목표인 국민총생산 대비 0.7%에 2015년까지 도달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넘어서도록 독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과 체결하는 국제협력협약에서 아동권리의 실현을 중요 우선순위가 되도록 할 것을 권장하며, 이 과정에서 협약 상대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 아동권리와 재계

26.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인 당사국 재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환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재계는 환경문제에만 집중하는 듯 하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 중 특히 노동기준 및 최저임금을 다루는 부문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나, 당사국 영토 내 혹은 해외에서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경감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체계의 부재를 지적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의 우려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 a)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의회가 강제아동노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아동권리 위반에 연루된 상황이다.
- b) 당사국 기업들은 여러 국가에서 무엇보다 주거의 권리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임대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체결할 계획이라고 보고되었다.
- c) 당사국이 이미 체결했거나 체결을고려중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 전에 인권영향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 “보호, 존중, 구제” 체계 보고서를 채택한 유엔인권이사회의 2008년 결의안 8/7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설 실무그룹에 지시한 2011년 6월 16일 결의안 14/7은 기업과 인권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모두 아동의 권리가 포함될 것을 언급하며, 이에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대한민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의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법 체계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기업사회책임 모델의 도입을 더욱 촉진하라. 여기에 보고를 위해 아동권리 지표와 매개변수가 포함되도록 장려해야 하며, 기업이 아동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b) 상품 유입을 감시하여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무역협정 및 국내법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라.
- c)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업이 토착민이나 인권 및 아동권리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행하는 해외 정부와 협력하라.
- d)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하라.

B.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제 2 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분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하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 비차별

28.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안이 2007년 12월 국회에서 검토되지 않고 폐기된 것과 차별의 법률적 정의가 성적지향 및 국적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유감을 표시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 다양한 형태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러한 차별의 대상에는 다문화 또는 이주노동자가정, 탈북자가정, 난민가정 출신 아동 및 장애 아동과 미혼모, 특히 청소년 미혼모가 포함되며, 이들은 국가지원조치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
2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a) 협약 2조에 완전히 합치되는 법률의 채택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 b) 인식제고 및 대중교육 캠페인을 비롯,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 c)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 미혼모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라.

##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4년 자살예방기본계획 등을 통해 청소년과 아동 자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심각하게 높은 자살률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31.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아동의 가정 내에서 그리고 교육제도 하에서 아동의 자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당사국에 촉구하며,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적, 행정적 방안 이행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정책과 방안에 충분한 예방조치와 후속절차가 포함되고, 모든 관련 아동에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의 사회복지요원이 지원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아동관련 법령 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고, 아동 관련 사법, 행정결정 및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 본 원칙이 드물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한다.
33. 위원회는 당사국 내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및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모든 사법, 행정 결정의 법적 추론도 이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아동견해의 존중

34.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회의를 개최한 것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상의 절차나 사회적 태도 모두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그들 자신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계속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35. 위원회는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12조에 합치하도록 다음의 사항을 제시한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 (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라.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아동의 청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 (b)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청문권과 아동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라.
  -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 (d) 아동의 청문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2009년)를 고려하라.

## C.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 19, 37(a) 조)

### 제 7 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 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 제 8 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음이 없이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안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 13 조

1.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제 14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정,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 제 15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 제 16 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 17 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문화적,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 교환 및 보급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 아동도서의 보급과 제작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 19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가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타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 제 37 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중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 출생신고

36. 위원회는 당사국의 현 법률 및 관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물학적 부모가 보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데 있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양부모나 정부당국요원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 미혼모 관련 상황을 포함, 적절한 사법감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입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 망명희망자, 또는 비정규 이주 상태의 사람에게는 출생신고가 사실상 또는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한다.

37. 협약 7조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의 법적 지위 및/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이러한

과정에서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히 명시되도록 보장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촉구한다.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내 의무종교교육을 금지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보나, 실제로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계속하여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학교에 자발적으로 입학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학생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현 계획안이 종교의 다양성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충분히 촉진하지 않고, 식단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비롯, 특정 종교를 가진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더 나아가 협약 14조 3항에 따라 실제로 그리고 모든 경우에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전적으로 존중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또한 종교적 다양성의 존중을 촉진하고 식단조건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특정 종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의 형성을 이러한 조치의 목적으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40. 위원회는 과거 권고사항(CRC/C/15/Add.197, para.37)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여전히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도시 및 농촌지역 아동들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41.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반복하며, 협약 12조부터 17조에 비추어 당사국이 법률, 교육부 발행 지침 및 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아동이 교내 등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촉구한다.

## 체벌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돌봄 환경에서 체벌이 여전히 성행한다는 과거 우려사항

(CRC/C/15/Add.197, para. 38)을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b) 차별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라. 그리고 학교차별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
- c) 차별 피해자 아동이 차별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44. 위원회는 당사국 내 육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제한적으로 정의되어있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내 괴롭힘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해왔다는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을 환영하나, 그 수가 제한적이며 재원과 인력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의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45.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자의 신원 및 안전을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교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하라.
- b) 지역 시설을 포함, 더 많은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을 제공하는 등 이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하라.
- c)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하라.

46. 유엔사무총장의 아동폭력보고서(A/61/299)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독려한다.

- a)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의 이행을 비롯, 성별에 특히 유념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를 우선시하라.
- b) 특히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강조한 다음의 사항을 비롯하여, 아동폭력보

고서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라.

- (i)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의 개발
  - (ii)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의 도입
  - (iii) 자료 수집, 분석, 보급 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관련 연구의제 통합
- c)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관련 기구,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 학문화기구(UNESCO), 유엔난민기구(UHCR),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비정부기관 파트너와 협력하고 이들 기구의 기술적 지원을 구하라.

D.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협약 5, 18(1-2), 9-11, 19-21, 25, 27(4) 및 39조)

제 5 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을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하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에 따른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여하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하여)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여하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여타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 10 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이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여타 권리에 부합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 제 11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협정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 19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가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타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 제 20 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 제 21 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법정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기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나. 국제입양은, 아동의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장장치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25 조

당사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여타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 제 27 조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 39 조

당사국은 여하한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여하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 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정환경상실아동

47. 위원회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족과 같은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과 이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건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대안돌봄시설에 대한 평가는 오직 행정운영만을 평가하며, 보육, 보육담당자의 기술과 이들에 대한 훈련, 그리고 아동에 대한 처우의 질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하며 지적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러한 시설 내 학대 및 방임사건을 다루기 위한 진정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하며,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동을 위한 추적제도의 부재에도 우려를 표한다.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서비스의 질,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등에 대해 받는 정기적인 교육, 공립 및 사립 대안돌봄기관 내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유형을 협약 25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 b)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를 보장하고, 학대 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진료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 c) 대안돌봄 환경 내 아동이 부모를 찾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한다.
  - d) 2009년 11월 20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 대안돌봄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하라.

## 입양

49. 위원회는 발효되면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도록 한 당사국의 입양특례법 및 민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본 안이 발효되기 전 과도기간의 아동입양의 경우에 대해 염려하며, 다음의 사항에 여전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
- a) 명시적으로 임무권한이 부여된 입양관련 규제감독 중앙기구 및 주무당국이 해외입양절차에 개입할 의무를 성문화한 법률의 부재
  - b) 13세 미만 아동의 입양 시 아동 의사청취의 부재
  - c) 압도적 대다수의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가 입양되며, 청소년 미혼모의 동의 없이 이들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d) 하여, 입양 후 서비스의 부족, 특히 해외 입양아동과 생물학적 출신에 대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언어문제 해결을 포함.
  - e) 당사국이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음

50. 위원회는 아동특례법이 발효되기 전 입양의 경우에도 충분하고 동일한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자국의 해외입양제도가 특히 21조를 포함한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합치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해외입양제도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촉구한다.

- a) 한국 중앙입양정보원이 헤이그 협약 6조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임무권한을 규정하고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라. 여기에는 입양 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을 수 있는 해외 입양된 이들이 이러한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b)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과하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가장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하라.
- c) 청소년 미혼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들의 자녀를 입양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동의가 사실상 또는 실질적으로 강요에 인한 것이 아니도록 하라.
- d) 해외입양을 포함 모든 입양이 명확한 임무권한을 가지고 사법적 감독과 규제를 담당할 역할을 가진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라.
- e)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라.

E.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제 6 조

-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 2.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18 조

-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3 조

-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기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운이, 활용 가능한 재운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3. 장애아동의 특별한 곤란을 인식하며, 본 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동참과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다음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 제 24 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다. 환경오염의 위협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무엇보다도 용이하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 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운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본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 제 2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력과 상황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여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 27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는 능력과 재정의 범위 내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아동

51. 위원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에만 제공되고, 물리치료 및 직업훈련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아동, 특히 여성장애아동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 특수교육 교사와 감독관의 부족, 그리고 장애아동의 대부분이 장애가 없는 아동들과 분리되어 특수학교나 학급에서 교육받는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5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06년 채택된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9호 (CRC/C/GC/9)를 고려하고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a) 모든 장애아동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라.
  - b) 장애아동의 교육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애아동이 교육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며 교사와 감독관에 적절한 교육연수를 제공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하라.
  - c) 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을 좀더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라.
  - d) 가능한 경우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 건강 및 보건 서비스

53.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건예산을 증액하고 건강보험 제공을 위해 특별예산을 배정한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의료수급자 지원사업, 공공 금연캠페인, 그리고 영유아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총예산 대비 보건예산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대형병원과 소규모 지역병원 간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의 가용성과 진료수준에 격차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54. 위원회는 당사국에 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고, 저소득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시설 체계를 구축하라는 과거 권고안(CRC/C/15/Add.197, para. 49(a))을 반복한다. 또한 전 지역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 지원을 늘리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 정신건강

55. 위원회는 특히 전국에 걸쳐 32개의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 전반적인 아동정신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아동, 특히 여아의 우울증 비율과 자살률이 증가해왔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자살위험자 조기발견과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도입한 것에 주목하나, 이러한 진단검사가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56.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 우울증 및 자살 근본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기반하여 아동정신 건강관리 정책을 개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자살행동, 특히 여아의 자살행동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활동과 외래 및 입원환자 정신보건 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며,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시설수용은 최대한 피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자살위험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히 상의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보장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정신건강접근법에 추가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이를 대체하여 자살관련 사회적, 가정적 요소를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 청소년 보건

57. 위원회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이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에서 비롯된 비만 및 여타 건강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에 우려를 표시한다.

58.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의무 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안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 및 생식 보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내 교육이 여전히 부족함을 우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계획되지 않은 청소년 임신율이 높고 이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의 낙태율 역시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한다.
59. 위원회는 담배,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언론 등을 통해 정보 및 교육캠페인을 늘릴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캠페인이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소비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돕도록 하며, 아동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식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60. 위원회는 헌법 제34조 3, 4, 5항에 따라 여성,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당사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아동복지증진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한다.
61. 위원회는 적절한 수준에서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아동복지재원 배정관련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당사국이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국은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 F.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협약 28, 29, 31조)

#### 제 28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마. 학교에의 정기적인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기여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 29 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개발.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개발
  - 다.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개발
2. 본 조 또는 제28조의 여하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인제나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직업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하는 교육

62. 위원회는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려는 당사국의 노력과 아동이 놀이, 오락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교육제도 내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과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염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사교육비로 인해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아동 권리의 충분한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괴롭힘, 특히 외국 출신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의 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것과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 휴대폰과 인터넷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63.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협약 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1 (2001)을 고려하여, 현 교육 및 관련 시험 제도를 평가하라.
- b)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의 근본 원인과 사교육에서 비롯되는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라.
- c)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 d) 당사국의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룩하는 데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라.
- e) 학생간 괴롭힘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시도에 아동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교실과 학교 운동장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어야 한다.

### G.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8, 39, 40, 37(b)-(d) 및 32-36조)

#### 제 22 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이는 여하한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제 30 조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아니한다.

#### 제 38 조

1. 당사국은 아동에게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 하여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39 조

당사국은 여하한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여하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 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40 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 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 받지 아니한다.
  -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사항을 보장 받는다.

-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는다.
  -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법정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3)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 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위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 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나.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서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여타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 제 37 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 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 32 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협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여타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다. 본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 제 33 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34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여하한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제 35 조

당사국은 여하한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36 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서라도 해가 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64. 위원회는 당사국 법률이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난민아동과 망명희망아동에게 시민 지위 증명서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망명희망자와 인도적 지위자의 노동시장 접근 제약과 생계보조금 부족으로 이들 자녀의 취약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의 학교입학이 부모의 체류상태에 따라 결정되어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의

교육접근이 제한돼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난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이나 망명희망자와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난민의 권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한다.

65. 위원회는 난민 및 망명희망자의 자녀를 포함,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등록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망명희망자와 인도적 지위자의 가족에 충분한 재정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공무원, 특히 난민 및 망명희망자와 접촉하는 이들에게 난민의 권리에 대한 특별교육연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66. 또한, 위원회는 난민아동, 망명희망아동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당사국 이민법에 따라 구금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 경우 아동에게 부적절한 시설에 구금되며, 본국송환 명령 집행이 미정인 경우 구금일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구금에 대한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조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67. 위원회는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한다.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이러한 아동이 가능한 한 그들의 권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며, 최대구금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설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 이주 상황의 아동

68. 위원회는 당사국이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도록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채택하고 불법체류자 자녀의 학교 입학과 전학을 허용하도록 2008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아동의 등교율이 여전히 낮고, 자녀가 초, 중학교를 다니도록 해야 하는 부모의 법적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부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한다.

69. 위원회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교육에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이

협약 조항에 합치되도록 할 것을 독려한다.

##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 위원회는 아동착취방지를 위한 2005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 수립을 환영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

- a) 근로아동의 수 증가
- b) 아동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15세가 넘는 아동을 야간 근무시키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주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관련 기준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 c)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과 같은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 불충분
- d) 노동 감독 불충분
- e) 만연한 언어적, 성적 학대 및 폭력 발생으로 인한 근로아동 문제 악화
- f) 연예인이나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의 수 증가

71.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 b) 야간근무금지의 효과적인 시행과 최저임금 지급 등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라.
- c)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하라.
- d)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하라.
- e)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묻고 재발을 돕는 효과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

## 성적착취

72. 위원회는 아동 성 착취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에 임시 및 긴급 생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직업훈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2008년 개정안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성범죄 피해아동의 상담, 보호, 치료 및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윈스톱지원센터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한다.

- a) 아동 성폭력 급증과 높은 음란물 소비율
- b)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 c) 남아 또는 남성 대상 및 외국어로 진행되는 피해자 재활 서비스 부족

- d) 아동학대 범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의 삭감
73.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내법이 협약 35조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2조 및 3조에 합치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a)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 b)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성적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 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 아동 성적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라.
  - c)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수준의 처벌이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라.
  - d) 형사책임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
  - e)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신매매 및 성 착취 피해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하며 이러한 지원활동이 다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 인신매매

74. 위원회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채택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 법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으나, 다수의 여성 및 아동이 성 착취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한국을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신매매법의 기소율 및 유죄율이 낮다는 사실에 특히 우려를 표시한다.
7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기준을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76.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이 의정서 2조와 3조에 명시된 범죄 모두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반복한다(CRC/C/OPSC/KOR/CO/1, para. 30). 또한, 위원회는 앞서(para. 35) 언급된 제3자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방지할 조치의 부재가 아동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선택의정서 3조 1항과 관련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외국에서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의 확립을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대한민국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CRC/C/OPSC/KOR/CO/1, para. 38).

77. 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반복한다.

- a) 당사국의 국내법이 선택의정서 2조와 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 b) 선택의정서 4조 2항에 의거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라(CRC/C/OPSC/KOR/CO/1, para. 39).

###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78. 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 참여 혹은 강제 징집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CRC/C/OPAC/KOR/CO/1, para.12).

7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권고 사항을 반복한다.

- a)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하라.
- b)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라 (CRC/C/OPAC/KOR/CO/1).
- c) 모든 군사법, 매뉴얼 및 여타 군사 지침서들이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되도록 하라(CRC/C/OPAC/KOR/CO/1, para.13).

### 소년사법운영

80. 위원회는 당사국 내 청소년 비행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재범률 등 청소년 범죄율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비행아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을 다루기 보다 성인 구금시설에 비행아동을 구금하는 등, 아동 범죄자를 사회가 효과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조치 대신 징계조치를 늘리는 식으로만 청소년 범죄 대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청소년전담검사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들이 실제 소년사법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받지 않아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81. 위원회는 청소년 범죄 및 높은 수준의 재범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소년사법제도를 특히 37조, 39조 및 40조를 비롯한 협약과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리야드 가이드라인), 피구금소년보호규칙(하바나규칙), 형사사법제도 하에서의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 청소년 사법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2007) 등을 포함한 여타 관련 기준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a)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하라.
- b) 형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 지원을 법적 절차 초반과 전반에 걸쳐 제공하라.
- c)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화시설 혹은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절대로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고, 안전하고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받고,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음식,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라.
- d)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 e)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유박탈 대신 다이버전(diversion),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 다른 대안을 장려하라.
- f) 유엔 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간 패널과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유엔아동 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비정부기구 등 패널 회원기구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패널 회원기구로부터 소년사법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구하라.

##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8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6세 이하 아동 피해자와 목격자가 영상물 녹화로 진술을 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심문 및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부적절하다.

- a) 관계자들이 영상물 녹화에 능숙하지 않아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b) 법원이 영상 진술자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 c) 피해자와 목격자가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환경에서 반대심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 d)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의 합의가 요구된다.
- e) 피해자 프라이버시를 위한 보호장치가 불충분하다.
- f) 경찰관과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 g) 의료진 및 법집행관이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83. 위원회는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피해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이 더 존중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적절한 법 조항과 규정을 통해 모든 피해아동과 범죄목격자 아동, 즉,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 등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와 목격자 아동이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이 아동범죄피해자와 증인관련문제에서의 유엔 사법지침(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의 부록)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 H. 국제 인권조약의 비준

84.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의 실현을 더욱 강화하도록,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포함, 모든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 I. 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8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내에서 협약과 여타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해 아세안여성아동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 J. 후속조치 및 배포

86. 위원회는 특히 정부, 국회, 지역기구 및 기타 지방정부에 본 권고사항을 전달하여 이를 고려하고 추가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권고사항이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87.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3, 4차 통합 정기보고서, 서면답변 및 위원회가 채택한 관련 권고사항(최종견해)이 대한민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인터넷과 여타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 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전문가 단체 및 아동에 널리 제공되도록 하여,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본 협약과 이의 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K. 차기 보고서

88.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제5, 6차 통합정기보고서를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10년 10월 1일에 채택된 협약별 보고지침(CRC/C/58/Rev.2)에 주의하고, 향후 보고서가 본 지침을 준수하

여 60쪽을 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고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분량 제한을 넘기는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당사국에 보고서를 검토하고 위에 언급된 지침에 맞추어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만약 당사국이 보고서를 검토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조약기구의 검토를 위한 보고서의 번역이 보장될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안) 및 소관부처

### 1.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8-9 (유보 조항)	1	1)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보장한다는 협약 제21조(a)항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  과제 1. 아동권리협약 제21조(a)항 유보철회 외교적 절차 추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외교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2	2)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이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의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 제40조 제2항 (b)(v)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  과제 1.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 등 단심제 적용 범조항에 18세 미만 아동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조항 추가 등 아동의 상소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가능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국방부 인권담당관
10 - 11 (입법)	3	1) 협약의 전반적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가 불충분하고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이를 보완할 추가적인 법 제정을 포함,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권고  과제 1.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필요 여부 검토 연구(협약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용된 외국판례 연구 등) 및 국제인권규범의 재판 적용례 촉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4	과제 2. 로스쿨, 사법연수원 등 사법관계자(변호사, 판·검사 등) 양성과정의 아동인권교육과정 제도화  2)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합치되도록 검토하고, 청소년 미혼모가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고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위험과 학업중단강요 및 강요에 의한 입양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과제 1.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양육이 불가능한 청소년 임신부의 낙태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조항 개정 검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과제 2. 초·중등교육법에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조항 신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임신 및 출산관련 결석 또는 휴가'조항 신설 등 제도적 대책 마련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12 - 13 (조정)	5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 및 강화하고,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기구 수립 과제 1.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 등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고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상설 사무국 설치 검토 과제 2.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상근 전문연구원 채용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6	2)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 간, 국가 및 지역 단체 간 아동권리 관련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할 것 과제 1. 아동 및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의 정책조정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정책실무위원회)와 청소년정책위원회(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통한 소통 및 조정 강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14 - 15 (국가 행동 계획)	7	1) 협약의 전 부문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시행 하고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및 감시체제를 제공할 것 또한, 후속 국가행동계획 준비 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명명된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 및 중간평가 보고서를 고려할 것 과제 1.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으로서 제1차(2015~2019)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협약에 기반한 이행점검 강화 : 매년 시행 계획 추진실적 평가 실시 및 이행 촉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16 - 17 (독립 모니터링)	8	1)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 하고, 옴부즈퍼슨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 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을 전담하는 소위원회 설치를 통해 독립적 권한을 갖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역할 수행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아동·청소년인권팀
	9	2)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 설립 촉구 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팀의 조직 및 인원 확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인권정책과, 아동·청소년인권팀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18 - 19 (자원 할당)		<b>과제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인권위원 진출 경로 마련</b>	
	10	1) 당사국의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맞도록 협약이행을 위한 재원수준을 검토하고 증가시킬 것  <b>과제 1. 아동예산의 정의와 산출식을 명확히 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아동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매년 변화추이를 점검·평가하고 이슈화</b>	교육부 예산담당관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청소년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11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으로 자원배정을 평가할 것 -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예산을 총괄 평가하고, 아동권리 관련 항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재정배분을 설정할 것	교육부 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b>과제 1. 아동·청소년 예산이 지역별 현황 및 재정자립도와 아동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연구 실시</b>  <b>과제 2. 실태 파악 후 지역별 격차가 큰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검토</b>	
	12	3) 국가예산 수립 시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시성을 제공할 것 - 분야별 투자가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추적체계를 활용하여 투자효과에 있어 남·여아 간의 차이 측정 촉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교육부 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b>과제 1. 아동·청소년영향평가 및 아동·청소년친화예산제도 도입 연구</b>  <b>과제 2.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인지예산 생산 시 18세 미만 아동 예산 생산 의무화 검토</b>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13	4) 재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 기반 예산 수립 도입할 것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사회재정성과 교육부 예산담당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교육부 예산담당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제 1. 아동권리관점의 재원배분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 평가 실시	
		과제 2. 아동·청소년 투자수익률 등 성장세대에 대한 자원투입 성과를 수치화한 자료 개발을 통해 정부(기획재정부, 국회 등)와 국민 관심 촉구	
	14	5) 아동을 포함한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보장할 것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교육부 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과제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시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도 확대(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교육 및 효과적 모델 개발)	
	15	6) 빈곤·취약계층, 난민, 이주노동자 등의 자녀를 위한 전략적인 예산 방안을 수립하고, 경제위기, 자연재해 또는 다른 긴급 상황에서 예산이 지켜지도록 할 것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교육부 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립지원과·가족지원과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법무부 난민과
		과제 1. 아동·청소년 예산수립 과정의 모니터링 강화 : 입법부 및 행정부 예결산 과정 감시활동 후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16	7) '07년 '아동권리를 위한 재원 - 국가의 책임'에 관한 '일반 논평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에서 도출된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할 것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 복지예산과 교육부 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과제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아동·청소년 권리관점 반영 촉구(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에 아동·청소년친화 예산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제시, 국회 차원의 '아동권리예산 토론의 날'등 공론의 장 마련)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20 - 21 (자료 수집)	17	1)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자료수집 체계를 설립할 것 - 자료에서 포착될 수 있는 경향에 대한 다각적 연구에 착수할 것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통계청 통계정책과, 인구동향과, 복지통계과
		과제 1. 주요 국가통계자료에서 아동(18세 미만) 및 청소년(9~24세) 연령기준별 통계자료 생산 제도화 : 법조항 반영	
		과제 2.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부부처 조사의 체계화를 통해 중복과 누락 방지(3년 주기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년 주기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22 - 23 (보급, 인식 제고, 교육 연수)	18	1) 학교 교과 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할 것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과제 1.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사 양성기관의 인권 교육과정 개발 및 확대, 교사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과정의 인권교육 시수 확대를 통해 교사의 인권역량 강화	
		과제 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한 인권교육 제도화	
19	2)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할 것	교육부 교원복지연수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청년취업지원과, 근로기준정책과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과제 1.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제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교사, 보육교사, 시설관계자 등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체계화(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관련 법조항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 명시)		
	3)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할 것		
20	과제 1. 발달연령을 고려한 포스터, 소책자, 만화책, 음성파일, 동영상, 각종 생활도구 개발·배포 및 범국민 대상 공익광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아동·청소년인권팀	
	과제 1. 발달연령을 고려한 포스터, 소책자, 만화책, 음성파일, 동영상, 각종 생활도구 개발·배포 및 범국민 대상 공익광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아동·청소년인권팀	
24 - 25 (국제 협력)	21	1)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 목표인 국민총생산 대비 0.7%에 2015년까지 도달하고 가능하면 이를 넘어서도록 할 것	기획재정부 국제개발정책팀 외교부 개발정책과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과제 1. ODA 규모의 지속적 확대 노력 및 ODA사업의 아동인권 관점 시행(사업효과에 대한 아동인권적 관점의 평가 실시)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26 - 27 (아동 권리와 재계)	22	2) 개발도상국과 개발협력 관련 협약체결 시 아동권리 실현을 주요 우선순위로 다루고 상대국의 아동권리 위원회 최종견해를 참고할 것 <b>과제 1. 해당 국가의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ODA 분배 기준으로 활용하고 ODA 프로그램의 아동권리 관련 성과와 영향 평가(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반영)</b>	외교부 개발협력국
	23	1)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법 체제를 마련할 것 <b>과제 1. 아동노동 등에 대한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 이행 여부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및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공개</b>	외교부 인권사회과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24	2)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무역협정 및 국내법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정할 것 <b>과제 1. '아동노동착취없는(아동친화기업) 제품' 인증 및 활용 촉진</b> <b>과제 2. 관세법을 개정하여 아동인권 침해 물품 수입 및 수출 금지 명문화 검토</b>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25	3)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조치할 것 <b>과제 1. 기업대상 아동권리 감수성 프로그램 실시 및 아동권리를 기업 경영원칙에 적극 반영하는 아동친화기업 확산 유도</b>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26	4)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할 것 <b>과제 1. 자유무역협정 관련 아동 인권영향평가 방안 개발 및 제도화 연구</b>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법무부 인권정책과 외교부 인권사회과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

## II.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28 - 29 (비차별)	27	1) 협약 제2조에 합치되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과제 1. 인종 및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사회적 인식 확대	법무부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28	2)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과제 1. 사회적 약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 가이드 개발 및 홍보 : 서비스 제공 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예 :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공개로 인한 차별로부터 아동보호)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이민통합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자립지원과
	29	3)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하여 미혼모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  과제 1. 임신단계에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핫라인 개설 과제 2. 청소년 한부모가 입양이나 아동 유기 대신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 현실화(현재 15만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30 - 31 (생명, 생존 및 발달)	30	1) 아동의 가정 내 및 교육제도 하에서 아동의 자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아동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및 사회복지요원이 지원되도록 할 것  과제 1.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서비스(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 Wee센터,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예산 확대 및 프로그램 활성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32 - 33 (아동 이익 최우선)	31	1) 법률·행정·사법절차·정책·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 최상의 최우선 원칙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 모든 사법·행정 결정의 법적 추론도 이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함  과제 1. 법률·행정·사법절차·정책·프로그램 및 사업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의 적용 방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권리' 내용 연구)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법무부 형사기획과, 소년과, 여성아동인권과, 대검 형사2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34 - 35 (아동 견해 존중)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32	1)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 <b>과제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진술 및 참여권 보장 확대: 13세 미만 아동의 진술권 보장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의견을 듣도록 함)</b>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33	2)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동 청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 등 조치를 취할 것 <b>과제 1. 학교 및 사법·행정절차에서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의 장애가 되는 법규정 및 기존 참여 보장 법규정 이행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개선 방안 제시(예 : 초중등교육법 상 학칙제·개정 과정에의 학생참여, 징계 재심청구권 등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b>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34	3) 부모, 교육자, 정부, 사법부 등에 아동의 청문권과 아동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할 것 <b>과제 1. 아동 참여권에 대한 교육·홍보 자료 개발·보급</b>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법무부 소년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35	4)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b>과제 1.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실시 : 참여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의 견해 반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b>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36	5) 아동의 청문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09년)를 고려할 것 <b>과제 1. 일반논평 12호의 참여권 이행방안을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교육자료로 개발·보급</b>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Ⅲ.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 39(a)조)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36 - 37 (출생 신고)	37	1) 협약 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모의 법적 지위 및 또는 출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 되도록 조치하고,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명시되도록 보장할 것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과제 1. 출생 의뢰기관에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 등록제 형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 과제 2.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특종신고편철'제도를 보완하여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부'를 관리하고, 이주아동을 위한 별도의 '등록부'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적과 별도로 출생등록 실시 검토	
38 - 39 (사상 양심 종교 자유)	38	1)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협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모든 경우에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도록 조치할 것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39	2) 식단 등 특정종교의 구체적 요구사항 및 제약을 고려하고 배려하도록 조치할 것 과제 1. 종교적 신념(이슬람교 등)이나 식습관(채식주의)에 따른 학교급식 메뉴의 배려(다양성 고려 및 강제 급식지도 지양)	
40 - 41 (평화 결사 집회 자유)	40	1) 법률·교육부 발행지침·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과제 1. 학생자치활동(학급회의,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 : 예산 지원 및 의견청취 후 반영도 제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학교생활문화과

IV. 폭력 및 학대 (협약 19, 24(3), 28(2), 34, 37(a), 39)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41	1) 가정·학교·기타기관에서 체벌을 전면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할 것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권익정책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제 1. 체벌 전면금지를 위한 초·중·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및 학교규칙의 체벌 관련 규정 실태 조사	
		과제 2.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교정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법에 체벌 금지 조항 명확화 및 관련법의 홍보와 교육	
42 - 43 (체벌)	42	2) 체벌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해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 실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과제 1. 현행 아동학대 방지 공익광고 매월 1회 송출 확대 및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벌의 부정적 영향 및 긍정적 훈육 효과에 대한 범국민적 교육	
		과제 2. 체벌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훈육방법에 대해 생애주기적 부모교육 의무화(혼인신고단계,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 지원 단계, 초·중등학교 부모교육 단계 등)	
	43	3)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및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며,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시·도교육청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교원정책과
		과제 1. 대안적 훈육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긍정적 사례 발굴·보급(학생자치법정, 회복적 프로그램 효과 검증 등)	
		과제 2. 시·도교육청의 학교체벌 신고 및 중재 체제 도입 및 사전 교육 및 홍보의 내실화	
44 - 46 (학대, 방임, 폭력)	44	1) 아동학대 신고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할 법적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제 1.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화와 위반 시 대책 마련			
과제 2. 전국 아동관련 시설·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의무 교육과 연수 실시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45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증설하고, 학대피해자를 위한 재활지원 등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제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 시·군·구 인구비례에 따른 확대 설치 및 전문가 배치 과제 2. 학대피해 아동·청소년 쉼터와 공동생활가정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46		3)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과제 1. 아동학대 및 폭력, 성범죄 예방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지속 실시	
47		4) 아동폭력보고서(A/61/299) 권고사항 이행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철폐를 우선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제 1. 유엔 아동폭력보고서의 12가지 권고사항 기준으로 정부의 폭력대책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방향 개선 실시	
48		5) 다음의 내용을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할 것 -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개발 -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금지하는 법 도입 - 자료 수집, 분석, 보급 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 관련 연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과제 1.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국가행동계획 수립(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 폭력분야의 광범위한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	
49		6) 아동폭력에 관하여 UNICEF, UNOHCHR, WTO, ILO 등 관련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제 1. 아동폭력 관련 국제기구들과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연계·협력 체계의 구축	

V.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협약 5, 9-11, 18(1-2), 20, 21, 25 및 27(4))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47 - 48 (가정 환경 상실 아동)	50	1) 대안돌봄기관의 서비스 질,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 아동권리 교육,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 유형 등에 대한 체계적, 정기적 검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b>과제 1. 대안양육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권리 의무 교육 실시</b>	
		<b>과제 2. 대안양육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b>	
	51	2)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를 보장하고, 학대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진료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b>과제 1. 학대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쉼터확대와 상담서비스의 지역별 접근성 강화</b>	
		<b>과제 2. 시설 내 아동학대 모니터링 및 조사를 위한 별도의 인원, 기구·조직 마련</b>	
	52	3)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이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b>과제 1. 원가족 복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개입 강화</b>	
		<b>과제 2. 원가족 찾기 및 원가족 교류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확대</b>	
	53	4) 200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 대안돌봄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b>과제 1. 대안양육 지속 및 원가정 복귀 결정을 포함한 전문적인 가정복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 및 기구 마련</b>	
	49 - 50 (입양)	54	1) 중앙입양정보원이 헤이그협약 제6조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권한을 규정하고,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
<b>과제 1. 중앙입양원의 해외입양 기관과의 연계 및 입양아동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령 정비</b>			
55		2) 중앙입양정보원의 서비스에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할 것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b>과제 1. 해외 입양아동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지원을 위한 외국어 능통 직원 채용</b>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56	3)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과하며,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할 것 <b>과제 1. 입양과정에서의 아동의견 청취 제도 강화</b> <b>과제 2. 입양과정에서의 아동의 의견청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및 효과적인 의견청취 방안 마련</b>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57	4)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입양 보내고자 할 때 미혼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실질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도록 할 것 <b>과제 1. 미혼모의 입양 또는 직접 양육 의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관련 정보(양육 지원 정보 등) 제공</b> <b>과제 2. 미혼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확대</b>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58	5) 해외입양을 포함한 모든 입양이 명확한 임무권한을 가지고 사법적 감독과 규제를 담당할 역량을 가진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b>과제 1. 아동 입양 시 사법기관(가정법원)의 허가 절차와 민법상 입양의 경우 '입양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b>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59	6)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1993년) 기준을 고려할 것 <b>과제 1. 헤이그협약 기준을 위한 정부, 지자체, 입양기관의 역할에 대한 체제 정비</b>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외교부 조약과

VI.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51 - 52 (장애 아동)	60	1) 위원회의 일반논평 9호(CRC/CGC/9)를 고려하고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b>과제 1.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수 확대와 이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b>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b>과제 2.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b>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61	2) 장애아동의 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와 감독관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조치를 할 것	
		<b>과제 1. 특수교사 증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확대</b>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b>과제 2. 특수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b>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62	3)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것	
		<b>과제 1. 장애 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 내실화와 이를 위한 특수교육 예산 증액</b>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b>과제 2. 장애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비 재원에 대해 관련법/시행규칙 명시</b>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63	4)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b>과제 1. 장애아동 통합교육 내실화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b>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53 - 54 (건강 및 보건 서비스)	64	1) 보건예산을 증액하고 저소득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시설 체계를 구축하고, 전 지역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인적 자원 지원을 늘리는 조치를 이행할 것
<b>과제 1. 이주·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가정 등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내 무상 건강 검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b>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55 - 56 (정신 건강)	65	1) 아동의 우울증 및 자살원인에 대한 조사에 기반하여 아동정신 건강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자살예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개발에 투자할 것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57 - 59 (청소년 보건)		과제 1.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 과제 2.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요인 조사 및 정신건강 종합대책 수립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66	1) 담배, 알코올, 인터넷 중독 등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 캠페인을 확대할 것 ----- 과제 1.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음주, 약물 오남용,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중독 예방 교육 확대 실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67	2) 아동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식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 ----- 과제 1. 유해식품 판매 및 광고 모니터링과 사후처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68	3) 학교 교육 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조치 ----- 과제 1. 인권에 기반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발 및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60 - 61 (사회 보장, 생활 수준)	69	1) 아동복지재원 배정 관련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하며,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 ----- 과제 1. 아동·청소년 복지재원 배정 및 관련 예산 지원 규정 법률 명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Ⅶ.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28, 29, 30, 31조)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62 - 63 (직업 훈련 생활 지도 포함 교육)	70	1) 협약 제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2001)를 고려하여 교육 및 시험제도를 평가할 것	
		<b>과제 1. 교육체제 대안 마련을 위한 범국민적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운영(가칭 국가교육혁신위원회) : 초중등교육과정, 대학입시, 미래교육 비전에 대한 교육 3주체 및 전문가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대안 논의</b>	국무조정실 교육부 대입제도과, 공교육진흥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
	71	2) 사교육 의존에 대한 근본원인과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 강화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	
		<b>과제 1. 고교평준화를 위한 서열화 관련 모든 제도 점진적 철폐</b>	교육부 대입제도과, 공교육진흥과, 학교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b>과제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준수여부 모니터링 및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행 점검</b>	교육부 대입제도과, 공교육진흥과, 학교정책과
	72	3) 협약 제31조에 따라 여가·문화·오락 활동에 아동권리를 보장할 것	
		<b>과제 1.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의 내실화 및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수행평가제도 법제화 및 시행여부 모니터링</b>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b>과제 2. 학원의 일요일 휴업제 도입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b>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73	4)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루도록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b>과제 1. 특성화고등학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제도 신설 및 시행</b>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과제 2. 부처별 저소득층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에 기반한 사업 확대 방안 마련(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74	<p>5) 학생 간 괴롭힘, 따돌림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p> <p>-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교실과 학교운동장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p> <p>과제 1. 학생 간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예방교육 및 피해자와 가해자간 화해와 공감능력 증진과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후 전국학교에 보급</p> <p>과제 2. 초등교육과정의 PC 및 스마트폰 교육 확대 강화와 사이버폭력 처벌기준 강화 및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선도교육 제도 마련</p>	<p>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p> <p>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교육과정운영과</p>

Ⅷ.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2, 33, 35, 36, 37(b-d), 38-40)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64 - 67 (망명 신청 및 난민 아동)	75	1)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등록이 되도록 하고, 망명희망자와 가족에게 재정·교육·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 <b>과제 1.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마련</b>	법무부 난민과
	76	2)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을 가급적 배제하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설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최대구금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 <b>과제 1. 난민 아동의 구금배제 원칙을 관련법, 지침 등에 명시</b> <b>과제 2. 난민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에 따른 시설보호에 대한 상세 규칙/지침 제정</b>	법무부 난민과 법무부 이민조사과
68 - 69 (이주 상황 아동)	77	1) 불법체류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의 교육을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할 것 <b>과제 1. 난민 및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제도화</b>	법무부 법무심의관 법무부 난민과 교육부 학교복지정책과
	78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 <b>과제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모색</b>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법무부 인권정책과
70 - 71 (아동 노동, 경제적 착취)	79	1)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b>과제 1. 취약계층 근로청소년의 실태파악 및 지원 확대</b>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80	2) 18세 미만 아동의 야간근무 금지, 최저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할 것 <b>과제 1.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고용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b> <b>과제 2.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침해 구제 활성화 방안 마련</b>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81	3) 아동의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을 제정할 것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b>과제 1. 청소년의 임금지급 보장을 위한 근로 감독 체계 강화와 관련제도 법제화</b>	
	82	4) 아동의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할 것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b>과제 1.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알바신고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b> <b>과제 2.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b>	
83	5) 아동의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 및 재발을 돕는 효과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b>과제 1.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및 피해자 신속 지원</b>		
84	6) 18세 미만 아동연예인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폭력과 성추행 문제에 대한 조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b>과제 1. 아동·청소년 연예인 근로보호를 위한 구체적 처벌 조항 명시</b> <b>과제 2. 연예기획 종사자 대상 청소년 연예인 근로보호 교육 및 성관련 범죄 예방 교육 의무화</b>		
72 - 73 (성적 착취)	85	1)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b>과제 1.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종합대책 수립</b> <b>과제 2.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예방교육 강화</b>	
	86	2) 성적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 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아동 학대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부 록		과제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 및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법무부 형사기획과 법무부 형사법제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제 2. 인터넷/모바일 성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87	3)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처벌이 형사사법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과제 1.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법기관에 대한 전문 교육 실시	법무부 형사기획과 법무부 형사법제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88	4) 형사책임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해 노력할 것	
		과제 1. 고위험군 성범죄자 대상의 효과적인 치료·재활 실시	법무부 보호관찰과 법무부 특정범죄자 관리과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89	5)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	
		과제 1. 성폭력 피해 남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90	6) 인신매매 및 성착취 피해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하여 지원활동이 다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과제 1. 다국어 상담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시설 확충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74 - 75 (인신매매)	91	1)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	
		과제 1. 「인신매매의정서」와 같은 여성아동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 비준 추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외교부 인권사회과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b>과제 2. 국제적인 아동·청소년 인신매매 성매매 알선 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b>	법무부 형사기획과 법무부 국제형사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76 - 77 (OPS C)	92	1)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2조와 제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 <b>과제 1. 아동 대상 성매매, 성적 착취, 아동이용 음란물 등에 대한 단속 강화와 법정형 상향 조정</b> <b>과제 2.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 사례 분석 및 모니터링 강화</b>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법무부 형사법제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93	2)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4조 제2항에 의거,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해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할 것 <b>과제 1. 해외 아동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b> <b>과제 2. 해외 아동 성매매·성범죄에 대한 공조수사 체계 강화</b>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법무부 범죄서선진화과 법무부 인권정책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법무부 형사법제과 법무부 국제형사과
	94	1)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하여 아동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할 것 <b>권고사항 해당사항 없음.</b>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95	2) 모든 법률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할 것 <b>권고사항 해당사항 없음.</b>	국방부 법무부
78 - 79 (OPA C)	96	3) 모든 군사법, 소책자 및 기타 군사 지침서들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되도록 할 것 <b>과제 1. 아동 무력분쟁 참여 금지에 대한 교육자료 발간 배포</b>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80 - 81	97	1)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소년 사법 운영)		과제 1. 소년전문법원 설치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법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
		과제 2. 소년 사건 처리 절차 및 구금과정에서의 처우 개선	법무부 소년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98	2) 형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 지원을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제공할 것 과제 1.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심리적 지원 제도화	법무부 형사기획과 법무부 소년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99	3)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화시설 또는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고, 안전하고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받고,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음식·교육·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과제 1. 소년수용자의 처우 개선 및 가족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법무부 소년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제 2. 소년수용자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지도 및 직업 훈련 의무화	법무부 직업훈련과 법무부 사회복귀과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00	4)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과제 1. 보호소년·위탁소년 대상의 청원, 진정 제도 운영 활성화	법무부 소년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101	5) 아동의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유박탈 대신 보호관찰·상담·사회봉사·집행유예 등 대안을 장려할 것 과제 1. 소년사범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활용 확대
	과제 2. 재범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의무화		법무부 소년과 법무부 보호관찰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102	6) 유엔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 간 패널과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비정부기구 등 패널 회원기구들이 개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p>발한 기술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패널 회원기구로부터 소년사법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p> <p><b>과제 1. 소년사법분야에서의 국제적 기구의 조업과 지원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b></p>	<p>법무부 인권정책과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p>
82 - 83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103	<p>1)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아동이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프라이버시, 존엄성 등)를 받도록 하며, 유엔 사법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p> <p><b>과제 1. 범죄 피해 유형별 피해 아동 지원 확대</b></p> <p><b>과제 2. 범죄피해 및 목격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b></p>	<p>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p> <p>법무부 인권구조과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p>

IX. 기타 권고사항


권고 사항 번호	전체 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안)	소관부처(안)
84 (국제 인권 조약 비준)	104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할 것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법무부 인권정책과, 외국인정책과
		<b>과제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추진(협약 가입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 점검 착수)</b>	
85 (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105	1)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내에서 협약과 다른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해 아세안여성아동위원회와 협력할 것	법무부 인권정책과 외교부 아세안협력과 외교부 인권사회과
		<b>과제 1. 인권관련 지역 국제기구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 소통채널 명확화</b>	
86 - 87 (후속 조치 및 배포)	106	1) 정부, 국회, 지역기관 등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달하여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것	외교부 인권사회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법무부 인권정책과
		<b>과제 1. 사안별 담당 부처 담당과에 권고사항 통보 후 이행사항 취합·점검(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협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 강화 필요) 및 위원회 권고사항 홍보물 제작 및 전국 관련 기관 배포</b>	
	107	2) 위원회 권고사항 등이 번역되어 인터넷 및 기타매체를 통해 일반대중,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단체, 아동 등에게 널리 제공되도록 하며 협약 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인권팀
		<b>과제 1. 다양한 형태의 협약 권고사항 홍보전략 개발·시행 (공익광고 및 동영상, 스마트폰 SNS, 아동·청소년 친화적 인쇄매체 등)</b>	

### 3. 전문가 의견조사지

#### 1) 1차 전문가 의견조사 안내문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방안」  
1차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 관련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2008년 제3.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107건의 권고를 받았으며,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까지 아동권리협약과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검토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사를 통해 최종 정리된 정책과제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중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점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사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2008년 제3·4차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107건의 권고를 받았음</li> <li>•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까지 아동권리협약과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li> </ul>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검토</li> <li>• 아동,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li> <li>•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제시</li> </ul>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에 걸쳐 전문가 의견 수렴</li> <li>- 권고사항에 대한 1차 의견 조사: 6/18~6/23</li> <li>- 도출된 정책과제에 대한 2차 의견 조사: 6/26~6/30</li> </ul>

이번 1차 조사에서는 전문가집단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 해당하는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1인당 검토부담을 줄이기 위해 2개 그룹으로 임의 구분한 것으로, 담당이 아닌 다른 영역에 대한 의견 제시도 가능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영역	권고사항 수	응답 그룹	조사항목
• 일반이행조치	26	A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전 노력 정도(5단계)</li> <li>• 중요도(5단계)</li> <li>• 실현가능성(5단계)</li> <li>• 과제수행 타임스케줄(3단계)</li> <li>• 기타 의견(자유 서술)</li> </ul>
• 일반원칙	10		
• 시민권과 자유	4		
•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5		
• 기타 권고사항	4		
• 폭력 및 학대	9	B그룹	
•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10		
• 장애기초보전 및 복지	10		
• 특별보호조치	29		
<b>합계</b>	<b>107</b>	<b>A그룹: 49개 B그룹: 58개</b>	

응답에 주신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의 자료로만 사용되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조사를 통해 도출된 최종 정책과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충실한 응답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6월 23일(화)까지 1차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 6.

※ 협조요청 공문 및 참고자료 원출처 정보(인용필요 시 원자료 페이지 참고 및 출처표기 유의)  
공문: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전문가의견조사 협조요청](#)

자료 1.: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2015\),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  
자료 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 전체 보고서](#)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자 박사, 김희진 박사 (☎ 044-415-2136, 2106)
조사수행	• 입소스 주식회사 신성혜 차장, 김형민 연구원 (☎ 02-6464-5473, 5135, 5333)

[\[조사 참여하기\]](#)

## 2) 1차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 화면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내용

영역	I.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권고 내용	1)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최대로 고려하도록 보장한다는 협약 제 21조(a)항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		

### 필수자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2014년)

#### I.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 <유엔아동권리협약>

##### 제 4 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42 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 제 44 조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유보조항 (권고사항 8, 9번)

##### <제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2011년)>

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9조 3항에 대한 유보를 2008년 10월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을 최대로 고려하도록 보장한다는 21조 (a)항에 대한 유보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이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를 유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9. 위원회는 협약의 완전한 적용에 장애가 되는 21조 (a)항과 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소관부처	권고사항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소관부처 의견)	
	2012년	2014년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특례법 및 민법을 개정하여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아동의 입양이 성립되도록 개선하였으며,</li> <li>- 개정 법을 시행 이후에 협약 제21조(a)항에 대한 유보 철회 예정</li> <li>-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12.8), 민법 개정 시행('13.7)</li> </ul>	<p>&lt; 아동복지정책과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에서 아동의 권익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입양을 허가하도록 입양특례법 개정(12년8월 시행)</li> <li>◎ 헤이그 협약 비준 이행입법 마련 후 유보철회 계획</li> </ul>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입양 허가제를 도입하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13. 7. 1. 이후 유보를 철회할 예정임</li> </ul>	<p>&lt; 법무심의관실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허가제를 도입한 개정 민법이 '13. 7.부터 시행되고 있음</li> </ul>

© 협약 유보 철회 등 외교적 조치는 법무부 소관 사항이 아님

▶ NGO 의견 및 제언 (2014년) ◀

○ 부모가 아동 출생신고 및 가정법원 허가 등을 통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입장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아동을 유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책이 아동복지법령에 마련되어야 함  
 - 아동복지법 제4조 : 아동에 대한 보호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참고자료

해당영역 보고서 : [참고자료\\_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_1. 일반이행조치.pdf](#)

전체 보고서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_전체 보고서](#)

※ 위 권고사항에 대해 필수자료와 참고자료를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해주시시오.

1. 2011년 UN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위 권고사항의 진전노력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미흡					매우 우수	
1	2	3	4	5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위 권고사항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준거하여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함	
1	2	3	4	5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위 권고사항의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가능					매우 가능	
1	2	3	4	5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위 권고사항을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과제수행 기간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 단기 - 2016년까지 완료해야 할 과제
- 중기 - 2017년(5.6차 국가보고서 제출시기)까지 완료해야 할 과제
- 장기 - 2017년 이후 완료할 수 있는 과제
- 기타(적어주세요)

5. 위 권고사항에 대해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소관부처 추가제시 등).

### 3)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안내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1차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권고사항별 이행과제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해당 권고사항을 고려했을 때, 제시된 정책과제의 적절성을 5점 척도로 평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항별로 평가할 정책과제수는 최소 1개에서부터 최대 2개입니다.

※ 연구의 성격 : 본 연구는 보건 복지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률'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권고사항별 이행과제 설정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엔 권고사항(2011년 권고) 이행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권고사항에 초점을 둔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협약 전반의 이행과제에 비해 다소 협의의 연구범위를 갖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 보셨던 필수자료와 참고자료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이미 권고사항별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 소요시간은 1차 조사 보다 줄어든 30~40분으로 예상됩니다.  
정책과제 평가 후 자문비 지급을 위한 정보 입력까지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가 저희 업체를 거쳐 수집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빈칸으로 두시면 연구원에서 직접 인적정보를 여쭙 예정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영역	권고사항 수	응답 그룹	조사항목
• 일반이행조치	26	A그룹	• 정책과제별 적절성(5점 척도)
• 일반권직	10		
• 시민권과 자유	4		
•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5		
• 기타 권고사항	4		
• 폭력 및 학대	9	B그룹	
•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10		
•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10		
• 특별보호조치	29		
<b>합계</b>	<b>107</b>	<b>A그룹: 49개 B그룹: 58개</b>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의 자료로만 사용되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조사를 통해 도출된 최종 정책과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충실한 응답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7월 8일(수)까지 2차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 7.

※ 협조요청 공문 및 참고자료 원출처 정보(인용필요 시 원자료 페이지 참고 및 출처표기 유의)  
공문: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전문가의견조사 협조요청

자료 1. :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2015\).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  
자료 2.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 전체 보고서](#)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박사, 김희진 박사 (☎ 044-415-2136, 2106)
조사수행	• 입소스 주식회사 신성혜 사장, 김형민 연구원 (☎ 02-6464-5473, 5135, 5333)

[\[조사 참여하기\]](#)

#### 4)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 화면

( 1 / 50 )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2차 전문가 의견조사

2차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그룹 A**이며, 응답하실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조사에서 응답하셨던 동일한 영역(권고사항)별로 1차 도출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권고사항을 고려했을 때, 선정된 정책과제의 적절성을 5점 척도로 평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항별로 평가할 정책과제 수는 최소 1개에서부터 최대 2개입니다.

1차 조사에서 보셨던 권고사항에 대한 필수자료와 참고자료를 각 페이지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영역	권고사항 수	응답 그룹	조사항목
* 일반이행조치	26	A그룹	* 정책과제별 적절성(5점 척도)
* 일반원칙	10		
* 시민권과 자유	4		
*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5		
* 기타 권고사항	4		
* 폭력 및 학대	9	B그룹	
*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10		
*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10		
* 특별보호조치	29		
<b>합계</b>	<b>107</b>	<b>A그룹: 49개</b> <b>B그룹: 58개</b>	

조사는 한 번에 완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사 중간에 로 창을 닫으시면 응답하신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며 재접속 시 마지막으로 응답을 입력한 페이지부터 제시됩니다.

조사 참여하기

※ 다음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내용 중 **I.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필수자료와 참고자료를 읽으신 후,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참고자료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내용**

영역	I.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외교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권고 내용	1) (전체연번 1)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최대로 고려하도록 보장한다는 협약 제21조(a)항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		

※ 다음은 위 권고사항에 대한 정책과제들입니다. 각 과제들이 해당 권고분야의 정책과제로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과제 1. 아동권리협약 제21조(a)항 유보철회 외교적 절차 추진**

- 2012년 입양허가제 실시에 따라 관련 협약조항의 유보철회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준비 관련 입양관련 제반 개선과제는 V.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영역 과제로 다룸

매우 적절하지 않음		←-----→			매우 적절함	
1	2	3	4	5		
○	○	○	○	○		

※ 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제시된 정책과제보다 더 중요하여 우선 시행해야 하거나 더 적절한 과제가 있다면 적어 주세요. (정책과제명, 필요시 간단한 설명 등)

**필수자료**

해당영역 권고사항 자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결과(2014년)\_I. 일반이행조치.pdf

**참고자료**

해당영역 보고서 : 참고자료\_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_1. 일반이행조치.pdf

전체 보고서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_전체 보고서

\* Next 버튼을 누를 경우 현재 페이지의 응답은 자동적으로 저장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NEXT** ▶

#### 4.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객관식 응답

##### I. 일반이행조치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유보조항 (8~9)	1 권고 사항	•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최대한으로 고려하도록 보장한다는 협약 제21조(a)항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	진전노력정도	3.21	0.93
			중요도	4.21	0.72
			실현가능	3.92	0.83
			수행기간	1.78	0.67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권리협약 제21조(a)항 유보철회 외교적 절차 추진	과제 적정성	4.22	0.74
	2 권고 사항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이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의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 제40조 제2항 (b)(v)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	진전노력정도	1.63	0.71
중요도			3.96	0.81	
실현가능			2.71	1.12	
수행기간			2.35	0.78	
이행 과제		• 과제 1.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 등 단심제 적용 법조항에 18세 미만 아동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 추가 등 아동의 상소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가능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과제 적정성	3.96	0.93
입법 (10~11)		3 권고 사항	• 협약의 전반적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가 불충분하고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이를 보완할 추가적인 법 제정을 포함,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권고	진전노력정도	2.33
	중요도			4.17	0.70
	실현가능			3.46	0.93
	수행기간			2.23	0.75
	이행 과제	• 과제 1.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필요 여부 검토 연구(협약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용된 외국판례 검토 포함)	과제 적정성	4.43	0.84
		• 과제 2. 로스쿨, 사법연수원 등 사법관계자(변호사, 판·검사 등) 양성과정의 아동인권교육과정 제도화		4.65	0.49
	4 권고 사항	•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합치되도록 검토하고, 청소년 미혼모가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고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위험과 학업중단강요 및 강요에 의한 입양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정도	2.29	0.91
			중요도	4.29	0.81
			실현가능	3.63	0.82
			수행기간	2.09	0.61
이행	• 과제 1.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양육이 불가능한 청소년 임	과제 적정성	3.61	1.08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과제 산부의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조항 개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 2. 초·중등교육법에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조항 신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임신 및 출산관련 결석 또는 휴가’조항 신설 등 제도적 대책 마련</li> </ul>		4.00	0.90
조정 (12-13)	5	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 및 강화하고,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기구 수립</li> </ul>	진전노력정도	2.63	1.17
			중요도	4.58	0.50
			실현가능	3.75	0.94
			수행기간	1.52	0.59
이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 1.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 등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고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상설 사무국 설치 검토</li> <li>과제 2.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상근 전문연구원 채용</li> </ul>	과제 적정성	4.43	0.73	
			4.22	0.85	
6	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 간, 국가 및 지역 단체 간 아동권리 관련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할 것</li> </ul>	진전노력정도	2.08	1.10	
		중요도	4.54	0.66	
		실현가능	3.29	1.04	
		수행기간	1.96	0.71	
이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 1. 아동 및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의 정책조정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정책실무위원회)와 청소년정책위원회(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통한 소통 및 조정 강화</li> </ul>	과제 적정성	4.09	1.00	
7	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의 전 부문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시행 하고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및 감시체제를 제공할 것 또한, 후속 국가행동계획 준비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명명된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 및 중간평가 보고서를 고려할 것</li> </ul>	진전노력정도	2.88	1.08	
		중요도	4.50	0.59	
		실현가능	3.71	0.75	
		수행기간	1.74	0.69	
이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 1.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으로서 제1차(2015~2019)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협약에 기반한 이행점검 강화 : 매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과정에 민간 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구조 마련</li> </ul>	과제 적정성	4.26	0.81	
8	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옴부즈퍼슨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li> </ul>	진전노력정도	2.75	1.07	
		중요도	4.71	0.46	
		실현가능	3.88	0.74	
		수행기간	1.70	0.63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16-17)	이행 과제	• 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을 전담하는 소위원회 설치를 통해 독립적 권한을 갖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역할 수행	과제 적정성	4.61	0.66
	9 권고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 설립 촉구	진전노력정도	2.83	1.20
			중요도	4.71	0.46
			실현가능	3.83	0.82
			수행기간	1.70	0.70
이행 과제	• 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을 전담하는 소위원회 설치를 통해 독립적 권한을 갖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역할 수행	과제 적정성	4.43	0.79	
	• 과제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인권위원 진출 경로 마련		4.43	0.73	
10 권고 사항	이행 과제	• 당사국의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맞도록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수준을 검토하고 증가시킬 것	진전노력정도	1.88	0.85
			중요도	4.75	0.44
			실현가능	2.92	1.02
			수행기간	2.30	0.82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예산의 정의와 산출식을 명확히 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아동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매년 변화추이를 점검·평가하고 이슈화	과제 적정성	4.48	0.67
11 권고 사항	이행 과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으로 재원배정을 평가할 것 -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예산을 총괄 평가하고, 아동권리 관련 항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재정배분을 설정할 것	진전노력정도	1.75	0.68
			중요도	4.71	0.46
			실현가능	2.67	0.92
			수행기간	2.39	0.78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청소년 예산이 지역별 현황 및 재정자립도와 아동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연구 • 과제 2. 실태 파악 후 지역별 격차가 큰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검토	과제 적정성	4.13	0.87
			4.13	0.92	
12 권고 사항	이행 과제	• 국가예산 수립 시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시성	진전노력정도	1.96	0.86
			중요도	4.42	0.72

구분	연 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자원할당 (18-19)		을 제공할 것 - 분야별 투자가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는 지를 추적체계를 활용하여 투자효과에 있어 남·여아 간의 차이 측정 촉구	실현가능	2.79	1.02
			수행기간	2.52	0.67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청소년영향평가 및 아동·청소년친화예 산제도 도입 연구 (eg. 성인지예산제도) • 과제 2.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인지예산 생산 시 18 세 미만 아동 예산 생산 의무화	과제 적정성	4.43	0.66
				4.26	0.92
	13 권고 사항	• 재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기반 예산 수립 도입할 것	진전노력정도	1.67	0.76
			중요도	4.42	0.78
			실현가능	2.58	0.93
			수행기간	2.58	0.65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권리관점의 재원배분 평가지표 개발을 통 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 평가 실시 • 과제 2. 아동·청소년 투자수익률 등 성장세대에 대한 자원투입 성과를 수치화한 자료 개발을 통해 정부(기획 재정부, 국회 등)와 국민 관심 촉구	과제 적정성	4.48	0.79
				4.17	1.03
	14 권고 사항	• 아동을 포함한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보장할 것	진전노력정도	1.71	0.91
			중요도	4.29	0.75
			실현가능	2.50	1.22
			수행기간	2.48	0.68
	이행 과제	• 과제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시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도 확대(아동·청소 년 대상 관련 교육 및 효과적 모델 개발)	과제 적정성	4.30	0.82
	15 권고 사항	• 빈곤·취약계층, 난민, 이주노동자 등의 자녀를 위한 전 략적인 예산 방안을 수립하고, 경제위기, 자연재해 또는 다른 긴급 상황에서 예산이 지켜지도록 할 것	진전노력정도	2.71	0.95
			중요도	4.58	0.50
			실현가능	3.38	0.82
수행기간			2.30	0.70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청소년 예산수립 과정의 모니터링 강화 : 입법부 및 행정부 예산결산 과정 감시활동 후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과제 적정성	4.22	0.95	
16 권고 사항	• 07년 '아동권리를 위한 재원 - 국가의 책임'에 관한 '일반 논평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에서 도출 된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할 것	진전노력정도	1.88	0.85	
		중요도	3.96	0.86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실현가능	2.46	0.93
			수행기간	2.38	0.80
			과제 적정성	4.26	0.69
			과제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아동·청소년 권리관점 반영 촉구(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에 아동·청소년친화예산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제시, 국회 차원의 ‘아동권리예산 토론의 날’ 등 공론의 장 마련)		
자료 수집 (20-21)	17 권고 사항	•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자료수집 체계를 설립할 것 - 자료에서 포착될 수 있는 경향에 대한 다각적 연구에 착수할 것	진전노력정도	2.38	0.77
			중요도	4.50	0.66
			실현가능	3.25	0.90
			수행기간	2.17	0.76
	이행 과제	• 과제 1. 주요 국가통계자료에서 아동(18세 미만) 및 청소년(9~24세) 연령기준별 통계자료 생산 제도화 : 범조항 반영(e.g. 양성평등기본법 ‘성인지통계’)  • 과제 2.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부부처 조사의 체계화를 통해 중복과 누락 방지(3년 주기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년 주기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과제 적정성	4.57	0.79
				4.61	0.58
보급, 인식제고, 교육연수 (22-23)	18 권고 사항	• 학교 교과 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할 것	진전노력정도	2.79	0.98
			중요도	4.71	0.55
			실현가능	3.75	0.74
			수행기간	1.74	0.81
	이행 과제	• 과제 1.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사 양성기관의 인권교육과정 개발 및 확대, 교사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과정의 인권교육 시수 확대를 통해 교사의 인권역량 강화  • 과제 2.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의무시행되는 인성교육의 범위에 인권교육의 적극 개입	과제 적정성	4.52	0.79
				3.96	1.11
	19 권고 사항	•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할 것	진전노력정도	2.88	0.95
			중요도	4.63	0.58
			실현가능	3.71	0.75
			수행기간	1.78	0.74
이행 과제	• 과제 1.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제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교사, 보육교사, 시설관계자 등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체계화	과제 적정성	4.43	1.04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20	권고 사항	•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할 것	진전노력정도	2.67	1.05
				중요도	4.58	0.58
				실현가능	3.67	0.87
				수행기간	1.77	0.75
	이행 과제	• 과제 1. 발달연령을 고려한 포스터, 소책자, 만화책, 음성파일, 동영상, 각종 생활도구 개발·배포 및 범국민 대상 공익광고	과제 적정성	4.26	0.86	
			진전노력정도	2.63	1.06	
			중요도	4.04	0.75	
			실현가능	2.96	1.00	
국제협력 (24-25)	21	권고 사항	•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 목표인 국민총생산 대비 0.7%에 2015년까지 도달하고 가능하면 이를 넘어서도록 할 것	중요도	4.04	0.75
				실현가능	2.96	1.00
				수행기간	2.54	0.72
				과제 적정성	4.09	0.85
	이행 과제	• 과제 1. ODA 규모의 지속적 확대 노력 및 ODA사업의 아동인권 관점 시행(사업효과에 대한 아동인권적 관점의 평가 실시)	과제 적정성	4.09	0.85	
			진전노력정도	2.29	0.95	
			중요도	3.58	0.97	
			실현가능	3.04	1.20	
	22	권고 사항	• 개발도상국과 개발협력 관련 협약체결 시 아동권리실현을 주요 우선순위로 다루고 상대국의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참고할 것	중요도	3.58	0.97
				실현가능	3.04	1.20
				수행기간	2.42	0.78
				과제 적정성	4.00	0.85
	이행 과제	• 과제 1. 해당 국가의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ODA 분배 기준으로 활용하고 ODA 프로그램의 아동권리 관련 성과와 영향 평가(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반영)	과제 적정성	4.00	0.85	
			진전노력정도	1.96	0.75	
			중요도	4.17	0.82	
			실현가능	3.13	0.95	
아동 권리와 재계 (26-27)	23	권고 사항	•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법 체제를 마련할 것	중요도	4.17	0.82
				실현가능	3.13	0.95
				수행기간	2.54	0.59
				과제 적정성	3.87	0.97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노동 등에 대한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 이행 여부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및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책자 발간	과제 적정성	3.87	0.97	
			진전노력정도	1.88	0.99	
			중요도	4.13	0.85	
			실현가능	2.92	0.83	
	24	권고 사항	•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무역협정 및 국내법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정할 것	진전노력정도	1.88	0.99
				중요도	4.13	0.85
				실현가능	2.92	0.83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수행기간	2.54	0.66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노동착취없는(아동친화기업) 제품'인증 및 활용 촉진	과제 적정성	4.17	0.65
		• 과제 2. 관세법을 개정하여 아동인권 침해 물품 수입 및 수출 금지 명문화		4.17	0.89
25	권고 사항	•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조치할 것	진전노력정도	2.00	0.98
			중요도	4.00	0.93
			실현가능	3.17	1.09
			수행기간	2.41	0.67
	이행 과제	• 과제 1. 기업대상 아동권리 감수성 프로그램 실시 및 아동권리를 기업 경영원칙에 적극 반영하는 아동친화기업 확산 유도	과제 적정성	4.39	0.66
26	권고 사항	•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할 것	진전노력정도	1.88	0.90
			중요도	3.83	0.96
			실현가능	2.96	1.08
			수행기간	2.64	0.66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 인권영향평가 방안 개발 및 적용사례 발표	과제 적정성	4.09	1.00

## II. 일반원칙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비차별 (28-29)	27 권고 사항	• 협약 제2조에 합치되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진전노력정도	2.08	0.83
			중요도	4.42	0.83
			실현가능	3.33	0.92
			수행기간	2.09	0.75
	이행 과제	• 과제 1. 인종 및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사회적 인식 확대	과제 적정성	3.86	1.25
	28 권고 사항	•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진전노력정도	2.63	0.92
			중요도	4.71	0.46
			실현가능	3.58	0.93
			수행기간	2.14	0.71
	이행 과제	• 과제 1. 사회적 약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 가이드 개발 및 홍보 : 서비스 제공 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예 : 기초생활수급자 정보공개로 인한 차별로부터 아동보호)	과제 적정성	4.50	0.86
29 권고 사항	•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하여 미혼모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	진전노력정도	2.63	1.06	
		중요도	4.54	0.59	
		실현가능	3.92	0.72	
		수행기간	1.95	0.72	
	이행 과제	• 과제 1. 임신단계에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핫라인 개설	과제 적정성	4.14	1.08
		• 과제 2. 청소년 한부모가 입양이나 아동 유기 대신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 현실화(현재 15만원)	4.36	0.85	
생명, 생존 및 발달 (30-31)	30 권고 사항	• 아동의 가정 내 및 교육제도 하에서 아동의 자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아동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및 사회복지요원이 지원되도록 할 것	진전노력정도	2.58	1.02
			중요도	4.79	0.51
			실현가능	3.83	0.70
			수행기간	1.91	0.75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서비스(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CYS-net), Wee센터,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예산 확대 및 프로그램 활성화	과제 적정성	4.00	0.93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아동이익 최우선 (32-33)	31	권고 사항 • 법률·행정·사법절차·정책·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 최상의 최우선 원칙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 모든 사법·행정 결정의 법적 추론도 이 원칙에 기 반을 두어야 함	진전노력정도	2.83	1.05	
			중요도	4.75	0.44	
			실현가능	3.58	0.78	
			수행기간	2.14	0.71	
	이행 과제	• 과제 1. 법률·행정·사법절차·정책·프로그램 및 사 업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의 적용 방안 및 가이드 라인 개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아동 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권리’ 내용 분석)	과제 적정성	4.45	0.96	
아동견해 존중 (34-35)	32	권고 사항 •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 도록 개정할 것	진전노력정도	2.33	0.92	
			중요도	4.83	0.38	
			실현가능	3.54	0.88	
			수행기간	2.09	0.75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행정 절차 에서 아동의 의견진술 및 참여권 보장 확대 : 13세 미 만 아동의 진술권 보장	과제 적정성	4.41	0.85
	33	권고 사항 •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 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동 청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 등 조치를 취할 것	진전노력정도	2.75	0.90	
			중요도	4.67	0.48	
			실현가능	3.75	0.68	
수행기간			1.91	0.67		
	이행 과제	• 과제 1. 학교 및 사법·행정절차에서 아동·청소년 참 여권 보장의 장애가 되는 법규정 및 기존 참여보장 법 규정 이행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개선 방안 제시 (예 : 초중등교육법 상 학칙제·개정 과정에의 학생참 여, 징계 재심청구권 등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	과제 적정성	4.41	0.80	
34	권고 사항 • 부모, 교육자, 정부, 사법부 등에 아동의 청문권과 아동 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할 것	진전노력정도	2.67	0.96		
		중요도	4.38	0.65		
		실현가능	3.71	0.81		
		수행기간	1.68	0.78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 참여권에 대한 교육·홍보 자료 개발·보 급	과제 적정성	4.23	0.75	

구분	연 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35	권고 사항	•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진전노력정도	2.13	0.99
				중요도	4.46	0.78
				실현가능	3.42	0.97
				수행기간	2.35	0.71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실시 : 참여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의 견해 반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과제 적정성	4.36	0.85	
	36	권고 사항	• 아동의 청문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09년)를 고려할 것	진전노력정도	2.79	1.02
				중요도	4.54	0.59
				실현가능	3.54	0.78
				수행기간	2.04	0.82
	이행 과제	• 과제 1. 일반논평 12호의 참여권 이행방안을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교육자료로 개발·보급	과제 적정성	4.18	0.91	

### III. 시민권과 자유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출생 신고 (36-37)	37	<p>권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모의 법적 지위 및 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 되도록 조치하고,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명시되도록 보장할 것</li> </ul> <p>이행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1. 출생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등록제 형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li> <li>• 과제 2.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특종신고편철'제도를 보완하여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부'를 관리하고, 이주아동을 위한 별도의 '등록부'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적과 별도로 출생등록 실시 검토</li> </ul>	진전노력정도	2.04	1.04
			중요도	4.50	0.93
			실현가능	3.29	1.12
			수행기간	2.27	0.77
사상 양심 종교 자유 (38-39)	38	<p>권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협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모든 경우에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도록 조치할 것</li> </ul> <p>이행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1. 학교 종교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대체과목 마련을 통해 종교교육 선택권을 보장 등) 및 이행여부와 종교차별 실태 주기적 점검</li> </ul>	진전노력정도	2.25	0.85
			중요도	4.29	0.62
			실현가능	3.25	1.15
			수행기간	2.00	0.84
	39	<p>권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단 등 특정종교의 구체적 요구사항 및 제약을 고려하고 배려하도록 조치할 것</li> </ul> <p>이행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1. 종교적 신념(이슬람교 등)이나 식습관(채식주의)에 따른 학교급식 메뉴의 배려(다양성 고려 및 강제 급식지도 지양)</li> </ul>	진전노력정도	2.08	1.02
			중요도	3.88	0.85
			실현가능	3.13	1.15
			수행기간	2.05	0.84
40	<p>권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교육부 발행지침·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li> </ul> <p>이행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1. 학생자치활동(학급회의,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 : 예산 지원 및 의견청취 후 반영도 제고</li> </ul>	진전노력정도	1.83	0.82	
		중요도	4.42	0.97	
		실현가능	3.08	1.21	
		수행기간	2.29	0.72	
평화 결사 집회 자유 (40-41)	40	<p>권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교육부 발행지침·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li> </ul> <p>이행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1. 학생자치활동(학급회의,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 : 예산 지원 및 의견청취 후 반영도 제고</li> </ul>	진전노력정도	1.83	0.82
			중요도	4.42	0.97
			실현가능	3.08	1.21
			수행기간	2.29	0.72
41	<p>권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교육부 발행지침·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li> </ul> <p>이행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1. 학생자치활동(학급회의,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 : 예산 지원 및 의견청취 후 반영도 제고</li> </ul>	진전노력정도	1.83	0.82	
		중요도	4.42	0.97	
		실현가능	3.08	1.21	
		수행기간	2.29	0.72	

V. 폭력 및 학대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체벌 (42-43)	41 권고 사항	• 가정· 학교· 기타기관에서 체벌을 전면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할 것	진전노력정도	3.04	0.84
			중요도	4.54	0.69
			실현가능	3.36	0.99
			수행기간	2.19	0.74
	이행 과제	• 과제 1. 체벌을 전면금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및 학교규칙의 체벌 관련 규정 실태 조사 • 과제 2.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교정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법규정에 체벌 금지 조항 명확화	과제 적정성	4.37	0.93
				4.60	0.72
	42 권고 사항	• 체벌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해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 실시	진전노력정도	3.14	0.80
			중요도	4.50	0.58
			실현가능	3.86	0.97
			수행기간	1.85	0.83
	이행 과제	• 과제 1. 현행 아동학대 방지 공익광고 매월 1회 송출 확대 및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벌의 부정적 영향 및 긍정적 훈육 효과에 대한 범국민 교육 • 과제 2. 체벌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훈육방법에 대해 생애주기적 부모교육 의무화(혼인신고단계,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 지원 단계, 초·중등학교 부모교육 단계 등)	과제 적정성	4.37	0.72
				4.23	0.97
43 권고 사항	•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및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며,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진전노력정도	2.75	0.93	
		중요도	4.21	0.74	
		실현가능	3.32	0.90	
		수행기간	2.39	0.69	
이행 과제	• 과제 1. 대안적 훈육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긍정적 사례 발굴·보급(학생자치법정, 회복적 프로그램 효과 검증 등) • 과제 2. 시·도교육청 학교체벌 신고시스템 강화 및 내실화	과제 적정성	3.97	0.93	
			3.63	1.00	
44 권고 사항	• 아동학대 신고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할 법적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	진전노력정도	3.57	0.88	
		중요도	4.64	0.56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학대, 방임, 폭력 (44-46)			실현가능	3.89	0.92
			수행기간	2.00	0.77
	이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 1.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비밀엄수 의무화와 위반 시 처벌 규정 명시</li> <li>과제 2. 전국 아동관련 시설·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학대 및 폭력 관련 의무 교육 및 연수 실시</li> </ul>	과제 적정성	4.33	0.84
				4.30	0.99
	45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증설하고, 학대피해자를 위한 재활지원 등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li> </ul>	진전노력정도	3.07	1.02
			중요도	4.61	0.63
			실현가능	3.79	0.99
			수행기간	2.25	0.80
	이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 시·군·구 인구비례에 따른 확대 설치 및 전문가 배치와 자원 확보 방안 마련</li> <li>과제 2. 학대피해 아동·청소년 쉼터와 공동생활가정 확대</li> </ul>	과제 적정성	4.33	0.84
				4.07	0.98
	46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할 것</li> </ul>	진전노력정도	2.82	0.72
			중요도	4.00	0.67
			실현가능	3.18	0.90
			수행기간	2.36	0.73
	이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 1.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처벌 관련법 준수 여부 모니터링</li> <li>과제 2. 아동학대 및 폭력 예방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지속 실시</li> </ul>	과제 적정성	3.97	0.89
				4.23	0.86
	47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폭력보고서(A/61/299) 권고사항 이행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철폐를 우선할 것</li> </ul>	진전노력정도	2.82	0.67
중요도			4.21	0.63	
실현가능			3.00	0.72	
수행기간			2.57	0.63	
이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1. 유엔 아동폭력보고서의 12가지 권고사항 기준으로 정부의 폭력대책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방향 평가 실시</li> </ul>	과제 적정성	4.07	0.83	
48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의 내용을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개발</li> </ul> </li> </ul>	진전노력정도	3.07	0.86	
		중요도	4.57	0.69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금지하는 법 도입</li> <li>- 자료 수집, 분석, 보급 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 관련 연구</li> </ul>	실현가능	3.32	0.86
			수행기간	2.18	0.61
	이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1.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국가행동계획 수립(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 폭력분야의 광범위한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li> </ul>	과제 적정성	4.37	0.93
	49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폭력에 관하여 UNICEF, UNOHCHR, WTO, ILO 등 관련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할 것</li> </ul>	진전노력정도	2.75	0.89
			중요도	3.82	0.72
실현가능			3.00	1.02	
수행기간	2.26	0.81			
이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1. 아동폭력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연계·협력 체제의 확대 및 강화</li> </ul>	과제 적정성	3.90	0.76	

## V.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가정환경 상실 아동 (47-48)	50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돌봄기관의 서비스 질,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 아동권리 교육,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 유형 등에 대한 체계적, 정기적 검토</li> </ul>	진전노력정도	2.89	0.96
			중요도	4.54	0.64
			실현가능	3.68	1.06
			수행기간	2.04	0.79
	이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1. 대안양육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li> <li>• 과제 2. 대안양육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권리 의무교육 실시</li> </ul>	과제 적정성	4.17	0.97
				4.59	0.78
	51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를 보장하고, 학대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진료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li> </ul>	진전노력정도	2.68	0.98
			중요도	4.29	0.71
			실현가능	3.21	0.99
			수행기간	2.07	0.77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입양 (49-50)	이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 1. 양육시설 내 아동학대 모니터링 및 조사위헌 별도 인원, 기구/조직 마련(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li> <li>과제 2. 회복지원을 위한 심터확대와 상담서비스의 지역별 접근성 강화</li> </ul>	과제 적정성	4.07	0.92
				4.34	0.81
	52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안돌봄시설 내 아동이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li> </ul>	진전노력정도	2.75	1.11
			중요도	4.43	0.57
			실행가능	3.39	0.99
			수행기간	2.25	0.75
	이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 1. 원가족 복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개입 강화</li> <li>과제 2. 원가족 찾기 및 원가족 교류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확대</li> </ul>	과제 적정성	4.10	1.01
				4.10	0.98
	53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 대안돌봄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li> </ul>	진전노력정도	2.64	0.91
			중요도	4.29	0.71
			실행가능	3.25	0.89
			수행기간	2.29	0.71
이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 1. 대안양육 및 원가정 복귀 결정의 적절성 검토 및 전문적인 가정복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기구 마련</li> </ul>	과제 적정성	4.03	0.98	
54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입양정보원이 헤이그협약 제6조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권한을 규정하고,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li> </ul>	진전노력정도	3.14	0.93	
		중요도	4.07	0.81	
		실행가능	3.54	1.00	
		수행기간	1.96	0.74	
	이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 1. 중앙입양원의 해외입양 기관과의 연계 및 입양 아동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li> </ul>	과제 적정성	4.10	0.98
	55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입양정보원의 서비스에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할 것</li> </ul>	진전노력정도	2.96	0.88
			중요도	3.82	0.94
			실행가능	3.89	0.88
수행기간			1.61	0.79	
이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 1. 중앙입양원의 해외입양 기관과의 연계 및 입양 아동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li> </ul>	과제 적정성	4.07	0.96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56 권고 사항	•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과하며,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할 것	진전노력정도	3.36	1.06
			중요도	4.21	0.79
			실현가능	3.75	0.84
			수행기간	1.79	0.74
	이행 과제	• 과제 1. 입양과정에서의 아동의 의견 청취(입양 동의 의사 등) 제도 강화  • 과제 2. 입양과정에서의 아동의 의견청취 연령(현재 13세) 기준 하향 조정 및 효과적인 의견청취 방법 마련	과제 적정성	4.24	0.83
				4.14	0.74
	57 권고 사항	•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입양 보내고자 할 때 미혼모의 동의를 있어야 하며, 동의가 실질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도록 할 것	진전노력정도	3.46	0.96
			중요도	4.25	0.70
실현가능			3.75	0.93	
수행기간			1.61	0.74	
이행 과제	• 과제 1. 미혼모의 직접 양육 또는 입양 의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 후 이에 따른 지원정보(양육 지원 정보 등) 제공  • 과제 2. 미혼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확대	과제 적정성	4.31	0.85	
			4.38	0.94	
58 권고 사항	• 해외입양을 포함한 모든 입양이 명확한 임무권한을 가지고 사법적 감독과 규제를 담당할 역량을 가진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진전노력정도	3.86	0.89	
		중요도	4.36	0.78	
		실현가능	4.14	0.85	
		수행기간	1.52	0.75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 입양 시 사법기관(가정법원)의 허가 절차 마련	과제 적정성	3.97	1.05	
59 권고 사항	•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1993년) 비준을 고려할 것	진전노력정도	3.79	0.96	
		중요도	4.29	0.76	
		실현가능	4.36	0.73	
		수행기간	1.43	0.57	
	이행 과제	• 과제 1.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지자체, 입양기관의 역할에 대한 체제 정비	과제 적정성	4.34	0.81

VI.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장애 아동 (51-52)	60	권고 사항 • 위원회의 일반논평 9호(CRC/CGC/9)를 고려하고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진전노력정도	2.75	0.93
			중요도	4.39	0.63
			실현가능	3.29	0.94
			수행기간	2.39	0.69
	이행 과제	• 과제 1. 특수교육기관의 수 확대를 통한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 • 과제 2. 장애아동에 대한 보편적/개별적 지원체계 확대	과제 적정성	4.39	0.92
				4.54	0.64
	61	권고 사항 • 장애아동의 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와 감독관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조치를 할 것	진전노력정도	2.82	0.86
			중요도	4.29	0.66
			실현가능	3.39	1.03
			수행기간	2.32	0.67
	이행 과제	• 과제 1.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교사 전문성 강화 • 과제 2. 특수교사 처우 개선	과제 적정성	4.32	0.90
				4.32	0.77
	62	권고 사항 •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것	진전노력정도	3.04	0.84
				4.21	0.57
			실현가능	3.43	0.96
			수행기간	2.14	0.85
이행 과제	• 과제 1. 장애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 확대와 특수교육 예산 증액 방안 마련 • 과제 2. 장애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비 재원에 대해 관련법/시행규칙(영유아보육법 또는 특수교육법) 명시	과제 적정성	4.36	0.91	
			4.29	0.90	
63	권고 사항 •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정도	2.93	0.94	
		중요도	4.32	0.61	
		실현가능	3.36	1.06	
		수행기간	2.29	0.81	
	이행 과제	• 과제 1.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차별방지를 위한 통합교육 확대 실시 • 과제 2. 통합교육 장애아동의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과제 적정성	4.43	0.74
				4.46	0.64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건강 및 보건 서비스 (53-54)	64	권고 사항  이행 과제	• 보건예산을 증액하고 저소득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시설 체계를 구축하고, 전 지역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인적 자원 지원을 늘리는 조치를 이행할 것  • 과제 1. 이주아동·청소년, 한부모 및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에서의 무상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진전노력정도	3.14	0.93
				중요도	4.39	0.74
			실현가능	3.36	0.99	
			수행기간	2.29	0.71	
정신 건강 (55-56)	65	권고 사항	• 아동의 우울증 및 자살원인에 대한 조사에 기반하여 아동정신 건강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자살예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개발에 투자할 것	진전노력정도	2.86	0.80
				중요도	4.54	0.64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사 및 이에 따른 정신건강종합대책 수립  • 과제 2.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체계 구축	실현가능	3.36	1.03
				수행기간	2.32	0.77
		과제 적정성	4.14	1.04		
				4.21	1.07	
청소년 보건 (57-59)	66	권고 사항	• 담배, 알코올, 인터넷 중독 등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 캠페인을 확대할 것	진전노력정도	3.32	0.94
				중요도	4.29	0.71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 음주 및 약물 오남용,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중독 예방 교육 확대 실시	실현가능	3.64	0.95
				수행기간	2.00	0.86
		과제 적정성	4.25	0.93		
67	권고 사항	• 아동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식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	진전노력정도	3.29	0.85	
			중요도	3.89	0.79	
			실현가능	3.57	0.88	
			수행기간	1.96	0.85	
	이행 과제	• 과제 1. 유해식품 판매와 광고 규제 및 위반 시 처벌강화	과제 적정성	4.32	0.94	
	68	권고 사항	• 학교 교육 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조치	진전노력정도	2.93	0.72
중요도				4.14	0.71	
실현가능				3.50	0.84	
수행기간				1.96	0.69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사회보장, 생활 수준 (60-61)	이행 과제	• 과제 1. (인권적 시각에 초점을 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통한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과제 적정성	4.32	0.86
			권고 사항	• 아동복지지원 배정 관련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하며,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	진전노력정도
	중요도	4.54	0.69		
	실현가능	3.11	1.13		
	수행기간	2.32	0.67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복지지원 배정 및 관련 예산 지원 규정 법 를 명시  • 과제 2. 빈곤아동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 및 기본계획 수립 · 추진	과제 적정성	4.46	0.79
			4.43	0.84	

## Ⅶ.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70 권고 사항	• 협약 제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 평 1호(2001)를 고려하여 교육 및 시험제도를 평가할 것	진전노력정도	2.04	0.81
			중요도	4.58	0.58
			실현가능	2.83	1.01
			수행기간	2.76	0.44
	이행 과제	• 과제 1. 교육체제 대안 마련을 위한 범국민적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 · 운영(가칭 국가교육위원회) : 초중등교 육과정, 대학입시, 미래교육 비전에 대한 교육 3주체와 전문가 평가와 대안 논의	과제 적정성	3.82	1.01
			71 권고 사항	• 사교육 의존에 대한 근본원인과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 강화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	진전노력정도
	중요도	4.79	0.41		
	실현가능	2.75	1.03		
	수행기간	2.71	0.64		
	이행 과제	• 과제 1. 고교평준화를 위한 서열화 관련 모든 제도 점 진적 철폐  • 과제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준수여부 모니터링 및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행 점검	과제 적정성	3.91	1.23
			4.18	0.96	

구분	연 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직업훈련 생활지도 포함 교육 (62-63)	72	권고 사항  • 협약 제31조에 따라 여가·문화·오락 활동에 아동권리를 보장할 것	진전노력정도	2.25	0.85
			중요도	4.71	0.46
			실현가능	3.13	0.95
			수행기간	2.59	0.59
	이행 과제	• 과제 1.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의 내실화 및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모니터링 제도 신설  • 과제 2 학원의 일요일 휴업제 도입을 위한 학원법 개정	과제 적정성	4.00	1.02
				3.95	1.00
	73	권고 사항  •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루도록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진전노력정도	2.50	0.98
			중요도	4.42	0.93
			실현가능	3.33	1.05
			수행기간	2.36	0.73
	이행 과제	• 과제 1. 특성화고등학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제도 신설 및 시행  • 과제 2. 부처별 저소득층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기반한 사업 확대 방안 마련(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과제 적정성	4.09	0.97
				4.32	0.89
74	권고 사항  • 학생 간 괴롭힘, 따돌림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진전노력정도	2.63	1.10	
		중요도	4.88	0.34	
		실현가능	3.50	0.93	
		수행기간	2.09	0.75	
	이행 과제	• 과제 1. 학생간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예방교육 및 피해자와 가해자간 화해와 공감능력 증진  • 과제 2. 초등교육과정 PC 및 스마트폰 교육과 사이버 폭력 처벌기준 강화	과제 적정성	4.45	0.74
				4.00	1.02

## VIII. 특별보호조치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망명 신청 및 난민 아동 (64-67)	75 권고 사항	•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등록이 되도록 하고, 망명희망자와 가족에게 재정·교육·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	진전노력정도	2.50	1.00
			중요도	3.93	0.81
			실현가능	2.96	0.92
			수행기간	2.37	0.84
	이행 과제	• 과제 1. 난민 및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외국인 등록 및 의무교육, 의료, 생계비 지원과 이를 위한 근거 마련  • 과제 2. 난민 및 (미등록) 이주 아동의 권리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과제 적정성	4.43	0.63
				4.32	0.72
이주 상황 아동 (68-69)	76 권고 사항	•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을 가급적 배제하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설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최대 구금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	진전노력정도	2.39	0.92
			중요도	3.75	0.75
			실현가능	2.86	0.93
			수행기간	2.32	0.82
	이행 과제	• 과제 1. 난민아동에 대한 구금배제 원칙에 대해 관련법/규칙/지침 등 명시  • 과제 2. 난민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에 따른 시설보호에 대한 상세 규칙/지침 마련	과제 적정성	4.32	0.82
				4.21	0.79
이주 상황 아동 (68-69)	77 권고 사항	• 불법체류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의 교육을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할 것	진전노력정도	2.75	1.14
				4.07	0.81
			실현가능	3.00	1.05
			수행기간	2.15	0.86
	이행 과제	• 과제 1. 난민 및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전·입학제도 마련 및 교육비 지원	과제 적정성	4.36	0.83
	78 권고 사항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	진전노력정도	2.50	0.79
중요도			3.89	0.79	
실현가능			2.96	0.96	
수행기간			2.36	0.73	
이행 과제	• 과제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을 위한 관련제도 검토와 사회적 합의 도출방안 마련	과제 적정성	4.18	0.94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아동노동, 경제적 착취 (70-71)	79 권고 사항	•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 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진전노력정도	2.50	0.96	
			중요도	3.96	0.74	
			실현가능	3.00	1.02	
			수행기간	2.25	0.80	
	이행 과제	• 과제 1.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요인 분석 및 이에 따 른 청소년 노동정책 마련  • 과제 2. 저소득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생계지원 확대	과제 적정성	4.00	0.94	
				4.32	0.82	
	80 권고 사항	• 18세 미만 아동의 야간근무 금지, 최저임금 지급 등 근 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할 것	진전노력정도	2.79	0.83	
			중요도	4.18	0.77	
			실현가능	3.21	1.07	
			수행기간	2.00	0.82	
	이행 과제	• 과제 1.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근로 기준(야간근로 금지, 최저임금 지급) 적용 여부에 대한 고용사업장 모 니터링 강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 과제 2.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침해 구제 활성화 방안 마련	과제 적정성	4.43	0.84	
				4.46	0.74	
81 권고 사항	• 아동의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을 제정할 것	진전노력정도	2.71	0.71		
		중요도	4.18	0.77		
		실현가능	3.21	1.07		
		수행기간	2.14	0.80		
이행 과제	• 과제 1. 청소년의 임금지급 보장을 위한 근로 감독 체 계 강화와 관련 제도(청소년 근로감독관 등) 및 법률 제정	과제 적정성	4.32	0.86		
82 권고 사항	• 아동의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할 것	진전노력정도	2.75	0.80		
		중요도	4.14	0.80		
		실현가능	3.25	1.11		
		수행기간	2.11	0.74		
	이행 과제	• 과제 1. 청소년 노동 보호를 위한 알바신고센터의 권역 별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	과제 적정성	4.11	0.88	
				4.07	0.98	
		• 과제 2.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성적 착취 (72-73)	83 권고 사항	• 아동의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 및 재발을 돕는 효과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정도	2.68	0.77
			중요도	4.21	0.83
			실현가능	3.32	1.16
			수행기간	2.07	0.66
	이행 과제	• 과제 1.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소상공인 포함)의 폭력 및 성희롱예방 교육 실태 점검 및 예방활동 활성화	과제 적정성	4.25	0.93
	84 권고 사항	• 18세 미만 아동연예인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폭력과 성추행 문제에 대한 조치	진전노력정도	2.61	0.74
			중요도	4.11	0.74
			실현가능	3.18	1.16
			수행기간	1.96	0.76
	이행 과제	• 과제 1. 18세 미만 아동연예인의 근로 보호 대책 방안 (야간공연금지, 성추행예방 및 학습권 보장 등) 마련	과제 적정성	4.32	0.86
		• 과제 2. 연예기획사 종사자 및 청소년 연계인 대상 근로보호 교육 및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4.18	0.98
	85 권고 사항	•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진전노력정도	3.32	0.77
중요도			4.71	0.53	
실현가능			3.68	0.98	
수행기간			1.75	0.75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과제 적정성	4.39	0.79
		• 과제 2. 아동의 성폭력 재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방안 마련		4.54	0.69
		• 과제 3.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예방교육 강화		4.43	0.88
86 권고 사항		• 성적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진전노력정도	3.46	1.00
			중요도	4.57	0.57
			실현가능	3.64	0.95
	수행기간		1.82	0.82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 및 전담조사관 제도 마련	과제 적정성	4.39	1.03
		• 과제 2. 인터넷/모바일 성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통합 대책 마련		4.39	0.92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87 권고 사항	•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처벌이 형사사법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진전노력정도	3.21	0.96
			중요도	4.61	0.63
			실현가능	3.68	0.98
			수행기간	1.64	0.78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을 위한 법개정 • 과제 2. 아동 성범죄 전담 수사 인력을 포함한 사법기관에 대한 전문 교육 강화	과제 적정성	4.46	0.88
				4.57	0.74
	88 권고 사항	• 형사책임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해 노력할 것	진전노력정도	2.50	0.84
			중요도	4.32	0.77
			실현가능	3.32	0.98
			수행기간	1.96	0.81
이행 과제	• 과제 1. 고위험군 성범죄자 치료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제고 • 과제 2. 성범죄자의 위험수준에 따른 교육·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의무화	과제 적정성	4.46	0.74	
			4.54	0.69	
89 권고 사항	•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	진전노력정도	2.61	0.96	
		중요도	4.21	0.88	
		실현가능	3.39	1.26	
		수행기간	1.93	0.87	
이행 과제	• 과제 1.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남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과제 적정성	4.50	0.64	
90 권고 사항	• 인신매매 및 성착취 피해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하여 지원활동이 다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진전노력정도	2.57	0.79	
		중요도	3.68	1.02	
		실현가능	3.14	1.08	
		수행기간	2.30	0.72	
이행 과제	• 과제 1. 다국어 상담 및 의료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시설 확대	과제 적정성	4.04	0.92	
인신매매 (74-75)	91 권고 사항	•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기준을 고려할 것	진전노력정도	3.11	1.03
			중요도	4.14	0.76
			실현가능	3.50	1.11
			수행기간	1.86	0.80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이행 과제	• 과제 1. 「인신매매의정서」와 같은 여성아동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 비준 추진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과제 적정성	4.25	0.80
		• 과제 2. 국제적인 아동·청소년 인신매매 성매매 알선 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		4.25	0.75
OPSC (76-77)	92 권고 사항	•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2조와 제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진전노력정도	3.07	0.98
			중요도	4.18	0.82
			실행가능	3.54	1.07
			수행기간	1.81	0.83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 대상 성매매, 성적 착취, 아동이용 음란물 등에 대한 단속 강화와 법정형 상향 조정 • 과제 2.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 및 법정형 등에 대한 법원 판결 사례 모니터링 강화	과제 적정성	4.57	0.63
				4.39	0.99
	93 권고 사항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4조 제2항에 의거,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해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할 것	진전노력정도	3.07	0.94
			중요도	4.11	0.74
실행가능			3.57	1.00	
수행기간			1.85	0.91	
이행 과제	• 과제 1. 해외 아동 성매매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 과제 2. 해외 아동 성매매·성범죄에 대한 공조수사 체계 마련	과제 적정성	4.00	0.90	
			4.18	0.82	
OPAC (78-79)	94 권고 사항	•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하여 아동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할 것	진전노력정도	2.86	0.93
			중요도	3.46	0.92
			실행가능	3.32	1.06
			수행기간	2.12	0.95
	이행 과제	• 권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과제 적정성	-	-
	95 권고 사항	• 모든 법률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할 것	진전노력정도	2.89	0.92
			중요도	3.46	0.88
			실행가능	3.39	0.92
수행기간			2.00	0.96	
이행 과제	• 권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과제 적정성	-	-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소년사법 운영 (80-81)	96 권고 사항	• 모든 군사법, 소책자 및 기타 군사 지침서들이 아동무 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 되도록 할 것	진전노력정도	3.36	0.95
			중요도	3.57	0.92
			실현가능	3.61	0.92
			수행기간	2.00	0.96
	이행 과제	• 과제 1.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되는 내용 (아동무력분쟁 참여 금지)에 대한 교육자료 발간·배포	과제 적정성	3.57	0.92
	97 권고 사항	•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진전노력정도	2.64	1.03
			중요도	4.18	0.72
			실현가능	3.32	1.06
			수행기간	2.44	0.64
	이행 과제	• 과제 1. 소년전문법원 설치 • 과제 2. 소년 사건 처리 절차 및 구금과정에서의 처우 개선	과제 적정성	4.39	0.79
				4.57	0.63
98 권고 사항	• 형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지 원을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제공할 것	진전노력정도	2.89	0.83	
		중요도	4.25	0.75	
		실현가능	3.50	0.88	
		수행기간	2.11	0.75	
이행 과제	• 과제 1.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심리적 지원(가족 참관 허용, 전문가 상담 등) 확대 • 과제 2. 소년분류심사원 미 위탁 소년에 대해서도 법률 지원 제공방안 마련	과제 적정성	4.71	0.53	
			4.39	0.79	
99 권고 사항	•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화시설 또는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고, 안전하고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받고,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음식·교육·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정도	3.39	0.79	
		중요도	4.29	0.71	
		실현가능	3.71	0.90	
		수행기간	2.00	0.68	
이행 과제	• 과제 1. 소년수용자의 처우(시설환경 및 급식 등)개선 및 가족연계 활성화 • 과제 2. 소년수용자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지도 및 직업 훈련 강화	과제 적정성	4.46	0.69	
			4.61	0.57	
100 권고 사항	•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 대 하여 주기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진전노력정도	2.93	0.77	
		중요도	4.00	0.82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82-83)			실현가능	3.46	1.00	
			수행기간	2.00	0.73	
	101	권고 사항	• 과제 1. 보호소년·위탁소년 대상의 청원, 진정 제도 운영 활성화 • 아동의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유박탈 대신 보호관찰·상담·사회봉사·집행유예 등 대안을 장려할 것	과제 적정성	4.29	0.81
				진전노력정도	3.25	0.89
				중요도	4.25	0.70
				실현가능	3.71	0.94
				수행기간	1.78	0.64
	102	권고 사항	• 과제 1. 소년사범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활용 확대 • 과제 2. 재범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과제 적정성	4.32	0.82
					4.39	0.79
	103	권고 사항	• 유엔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 간 패널과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비정부기구 등 패널 회원기구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패널 회원기구로부터 소년사법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	진전노력정도	2.75	0.65
				중요도	3.68	0.90
				실현가능	3.21	0.99
				수행기간	2.08	0.80
	103	이행 과제	• 과제 1. 소년사법 분야에서의 국제적 기구의 조인과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마련 • 과제 2.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중 심신장애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방안	과제 적정성	4.11	0.88
				4.18	0.98	
103	권고 사항	•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아동이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프라이버시, 존엄성 등)를 받도록 하며, 유엔 사법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	진전노력정도	3.07	0.86	
			중요도	4.43	0.63	
			실현가능	3.57	0.79	
			수행기간	2.11	0.58	
	103	이행 과제	• 과제 1. 범죄피해 및 목격자 지원과 범죄피해 유형별 피해자지원 매뉴얼 개발 및 다각적 활용 방안 마련(피해자관련 시설뿐 아니라 일반 학교나 기관 등에서의 활용) • 과제 2. 범죄피해 및 목격자에 대한 법적·심리적, 주거·의료적 지원 강화	과제 적정성	4.46	0.79
					4.39	0.83

## IX. 기타 권고사항

구분	연번	권고사항 및 이행과제	질문 문항	응답 평균치	표준 편차	
국제 인권조약 비준 (84)	10 4	권고 사항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할 것	진전노력정도	2.08	0.93	
			중요도	4.33	0.64	
			실현가능	3.17	0.92	
			수행기간	2.46	0.78	
	이행 과제	• 과제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가입 추진(협약 가입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 점검 착수)	과제 적정성	4.55	0.60	
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85)	10 5	권고 사항 •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내에서 협 약과 다른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해 아세안여성아동위원 회와 협력할 것	진전노력정도	2.13	0.74	
			중요도	3.67	1.05	
			실현가능	3.21	0.93	
			수행기간	2.22	0.74	
	이행 과제	• 과제 1. 인권관련 지역 국제기구 협력을 위한 기반 마 련 : 소통채널 명확화	과제 적정성	3.91	0.97	
후속 조치 및 배포 (86-87)	10 6	권고 사항 • 정부, 국회, 지역기관 등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달하여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것	진전노력정도	2.42	0.97	
			중요도	4.25	0.85	
			실현가능	3.46	1.02	
			수행기간	1.88	0.90	
		이행 과제	• 과제 1. 사안별 담당 부처 담당과에 권고사항 통보 후 이행사항 취합·점검(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협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 강화 필요) 및 위원회 권고사항 홍보물 제작 및 전국 관련 기관 배포	과제 적정성	4.27	0.83
	10 7	권고 사항 • 위원회 권고사항 등이 번역되어 인터넷 및 기타매체를 통해 일반대중,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단체, 아동 등에게 널리 제공되도록 하며 협약 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	진전노력정도	2.83	0.96	
			중요도	4.42	0.78	
			실현가능	3.92	0.78	
수행기간			1.50	0.67		
	이행 과제	• 과제 1. 다양한 형태의 협약 권고사항 홍보전략 개발· 시행 (공익광고 및 동영상, 스마트폰 SNS, 아동·청소년 친화적 인쇄매체 등)	과제 적정성	4.36	0.95	

## 5.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주관식 응답

전체연번 1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보장한다는 협약 제21조(a)항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적 아동인권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이행여부의 가부만을 스크린 할 것이 아니라 정책수립 및 실시 과정 내에서 협약조건을 이행하는데 갖는 특수한 문제 사례나 어려움을 발굴하여 이를 국제사회 및 국내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하다고 봄.</li> <li>• 최근 이로 인해 발생한 소위 "baby box" 등의 신생아 유기문제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이를 위한 홍보, 계몽, 제도적 보완 등이 요망됨.</li> <li>• 협약 비준 요망.</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국내법과 정책, 관련기관간 역할 등 보완.</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 절차의 주무부처로 보건복지부 외 법무부가 포함되어야 함.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절차를 일부 담당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li> <li>•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유보라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되어지므로 빠른 시일에 권고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li>•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마련 필요. * 유보조항 21조 (a) 항은 헤이그협약 비준과 함께 5/6차 보고서 작성 시 까지 철회 될 가능성 있으나 유보조항 40조 2항 (b) (v) 는 국방부 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li> <li>• 아동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입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함.</li> <li>• NGO 의견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유엔 권고의 이행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권고를 준수하다가 아동의 가장 중요한 권익을 침해하는 유기가 발생할 수 있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함. 어쩌면 유기되지 않을 권리가 가장 중요한 최상의 권리가 아닐까 생각함. 불가피한 유기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아동이 유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보완 입법 반드시 필요.</li> <li>• 유보조항 철회는 국제인권법의 기준을 국내에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조치임</li> <li>• 소관부처에서 제시한 일정에 따라 과업이 명확히 실행되어야 할 것임.</li> <li>• 입양을 희망하는 당사자들 간의 사적인 거래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의한 입양허가제가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고, 법 개정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였다고 봄. NGO의 의견 및 제언은 입양허가제와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아동을 유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봄. 코멘트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음. 합법적인 절차를 기피할 수 없도록 현행 출생신고제가 출산과 동시에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법적인 절차를 기피하고 싶어하는 친생부모의 권리보다는 출생한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가 더 중요함.</li> <li>• 입양허가제를 도입하였으나, 현행 출생신고제도(부모에 의한 임의적 신고)가 자동등록제도(출생강제 의무등록)로 변경되어야 불법 입양을 막을 수 있고, 출생한 아동의 권리를 막을 수 있음. 또한 법원에서 입양에 대한 심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미혼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필요.</li> <li>• 기존 입양기관들이 대안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같이 모색해주면 협의 방안을 찾기 쉬울듯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법적인 입양절차에 따른 입양을 할 수 없는 환경의 아동유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li> </ul>

	<p>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출생 후 바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출생등록제가 도입되어야 함. 아동유기에 대해서는 추적조사하여 일벌백계함으로 아동유기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하여 여러 차례 건의와 발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가 도입을 주저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후속 과제 실시 대안양육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체계 정비(요보호 아동 접수, 아동 및 보호자 사정, 배치결정 및 사후관리) 시급. 협약의 권고사항에 따라 과제를 부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대안양육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한 “아동보호의 전달체계 개편 방향” 연구 결과 발표 및 후속 작업 추진 필요.</li> <li>• 현 단계에서는 한국정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를 비준하기 위한 외교적 절차추진이 협약 제 21조 (a) 항 유보철회를 위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라고 사료됨.</li> <li>• 미혼모 지원 정책 강화 아동양육 선지원 후 양육비 회수 조치.</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착취범죄로 인한 출산 아동 입양의 문제: 성매매로 인한 임신의 경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 발생,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 현행 법에서는 입양이 어려운 상황 발생.</li> </ul>

전체연번 2	<p>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이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의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 제40조 제2항 (b)(v)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p>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법 체계에서 아동에게 당장 부여하기 어려운 법적 권리라 하더라도 이를 우회하여 성인에게 준하는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아동이 사법기관 등에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면 법적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성인에 준하는 권리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조치.</li> <li>• 이 사항은 유보된 상태를 유지해도 무방할 듯함.</li> <li>• 국가가 법령 개정 의사 없음</li> <li>• 병역의무연령 이전 아동에 대한 상소권 보장을 위한 노력필요</li> <li>• 헌법 개정의 어려움이 따르는데다 해당 부처 간의 소통 부재 및 부처 이기주의 불식의 어려움 예상.</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조항의 비준 여부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위헌 여부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GO 의견에 따라 병역의무자 편입 연령 조정할 경우 유보조항 철회 조기에 가능할 것임.</li> <li>• 형사 피의자인 아동의 인권도 꼭 보장 해 주어야 함.</li> <li>• 유엔아동권리협약비준 이후, 민간단체 (NPO 연대) 들이 40조 2항 (b)(v) 의 유보철회를 위해 관련부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 차례 노력하였으나, 본 조항의 유보철회는 매우 쉽지 않다는 결론임. 국방부와 관련부처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함.</li> <li>• 안보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보장이라는 의지의 문제임. 아동상소권보장은 국민의 합의사항이라고 볼 수 없음</li> <li>• 극히 예외적인 상황 즉 비상계엄 시 상소권 제한 필요성 때문에 유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NGO 의견에 찬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에서도 명확한 입장과 논리 정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li> <li>•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나 병역의무를 19세 이상에게 부과하면 해결 가능하리라 봄. 선거법상 선거가능 연령이 19세 이상이고, 성인의 나이 또한 19세 이상이므로 연령을 통일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함.</li> <li>• 법률의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며,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안보상황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없고, 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상소권 보장이 국민적 합의까지 필요한 사항인지 의문이며,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도 아님..</li> <li>• 정부가 민간단체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헌법 개정운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아동이라는 용어자체가 헌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헌법 개정을 위한 여러가지 접근이 필요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 존중, 대체 복무제 마련 군 사법공무원 등에 대한 국제인도주의법 및 국제인권법 교육 강화.</li> </ul>
<p>NGO (기관 의견)</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에 대한 기본 검토를 포함하여 법개정 가능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모든 조사, 연구 및 검토 결과를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li> <li>•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의 유보를 즉시 철회함과 동시에 국내 사법절차 소진 후 권리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아동 권리협약 제 3 선택의정서 비준을 하루 속히 할 것.</li> </ul>

전체연번 3	협약의 전반적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가 불충분하고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이를 보완할 추가적인 법 제정을 포함,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권고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법령제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사법체계나 법의 집행에 있어 아동권리협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략 및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 및 사법부에서 동 협약에 대한 너른 이해를 갖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함.</li> <li>• 교육, 계몽 홍보의 문제로 단기간에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음.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 필요함.</li> <li>• 아직은 직접 인용 등은 미흡한 상황임.</li> <li>• 모든 조항에 관한 이행지원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나 사회전반의 인식제고노력을 통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됨.</li> <li>• 낙태찬성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바, 협약내용을 아국 정부가 모두 수용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li> <li>• 사법부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홍보와 교육프로그램 마련 필요하고 교육이수를 의무화 해야 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낙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성부나,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관여도 필요하다고 생각됨.</li> <li>•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용이 기능해 지려면 아동청소년 관련 다양한 법률이 재정비되거나 협약이행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필요함. 당사국 법원이 협약조항을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는 판사, 변호사 등 법 전문인들과 경찰, 검찰 등 관련 전문가들의 협약 이해와 적용에 관한 교육이 전제 되어야 함.</li> <li>• 대학때 부터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 필요</li> <li>• 유엔 권고를 전면 수용할 수는 없으나, 권고를 반영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이를 반영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인용 실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미성년자의 임신 등 현실적인 이유에 근거한 낙태 추가 허용 반영 필요.</li> <li>• 청소년의 성적활동을 금기시하고 처벌하는 위주의 교육 내용과 학칙 등을 같이 고쳐야 함.</li> <li>• 사법절차에 관례되는 전문가 그룹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인식도 증진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됨.</li> <li>• 위 사안은 정책적인 의지의 문제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제도 등에서도 국제인권법이 무시되고 있고, 법조인 사회 등에 국제인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생긴 사안으로 법무부의 정책적 의지가 우선되어야 가능하며,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아동권을 포함한 모든 국제인권법에 대한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법조인들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요구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을 추가 제정하는 것보다 현존하는 법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개입이 요구됨. 예)국제법이 국내사법절차에 적용되는 비율에 대한 국제비교 순위를 통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압박방법.</li> <li>• 양성과정 뿐 만 아니라 사법관계자 임용 후 보수교육과정에서도 아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하여 지속적으로 실시되도록 해야 함.</li> <li>• 국회의 입법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아동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매뉴얼 마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분하여 대상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처분 등 실제로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국제법에 준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급.</li> <li>• 현재 헌법해석으로도 가능할 여지 있음. 따라서 국내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연구도 추가될 필요 있음.</li> </ul>

전체연번 4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합치되도록 검토하고, 청소년 미혼모가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고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위험과 학업중단강요 및 강요에 의한 입양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법상 청소년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공임신중절이 확실히 생명존중과 배타되는 행위이긴 하나 사회적 합의를 모아 그 예외적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li>• 기 발생한 미혼모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임신중절의 방법 등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할 아주 장기적인 문제이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음. 서두를 문제는 아님.</li> <li>• 학업중단 강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입법노력과 적극적 조치가 요망됨</li> <li>• 인공임신 중절을 합법화하라는 요구는 우리 사회의 여건상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앞의 조항과 마찬가지로 협약을 수용하는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li> <li>•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볼 때,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가 대안학교 청소년 추가, 학교 밖 청소년들도 고려해줄 것</li> </ul>
--------	---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이 누려야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이에 대한 확실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입법이 포함.</li> <li>• 청소년 임신/출산, 미혼모 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로 심한 낙인과 배제현상을 조성. 비록 그들의 학습권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학교 내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시선과 배척으로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워 학교를 떠나는 상황. 아동,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임. 미혼모라는 낙인 이전에, 그들이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인간임을 인식.</li> <li>•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등 제반권리 적극 보장 장치 마련 필요</li> <li>• 낙태 가능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청소년 임신 등은 반드시 낙태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li> <li>• 미혼모에 대한 처우는 임신과 출산 당사자인 청소년 뿐 아니라 아동, 여성에 대한 차별과 중첩되는 차별이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 아동의 출산과 양육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쌍방과 사회의 책임이라는 교육과 그에 따른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함</li> <li>• 대다수 청소년이 학생이고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학업중단 및 사회진출 장애 등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교육부 소관 부서의 관련 업무 추진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li> <li>•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함.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서 그 절차상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충분히 육아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강제입양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임. 이에 앞서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청소년대상 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함.</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서 그 절차상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충분히 육아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강제입양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야 함. 이에 앞서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청소년대상 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함.</li> <li>•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른 청소년 임신부가 성폭력에 의한 임신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낙태가 가능함. 청소년 임신부에 대해 일정한 임신주수까지는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가능함. 청소년 임신부에 대한 쉼터를 확대하여 양육과 입양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제도 확충이 필요함.</li> <li>• NGO의 의견과 보건복지부의 상이한 의견차가 보여짐. 아동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의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조항 신설은 무의미함. 청소년 미혼모의 학교 이탈률이 높은 이유는 학생과 교사의 차별적 인식 때문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함.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임신 및 출산관련 결석 또는 휴가'조항 신설은 적절함.</li> <li>• 미혼모라고 하여 학교에서 차별을 방지하는 법 자체를 입법해야 하고 그 법에는 출산과 휴가 등을 주는 것을 포함 하여야 함.</li> <li>• 초중등교육법에 학생 미혼모 학습권보장 조항 신설은 우선적 필요한 사항이지만,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임신 및 출산 관련 결석 또는 휴가조항 신설이 생활기록부에 관련사항이 기록되어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li> <li>• 성평등 교육의 재검토. 성의 도덕화가 아니라 청소년의 성적 주체로서의 자기결정권과 성적 책임을 얘기하는 방식으로.</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착취범죄로 인한 출산 아동 입양의 문제: 성매매로 인한 임신의 경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 발생,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 현행 법에서는 입양이 어려운 상황 발생.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과제3.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 교사, 상담교사 등에 대한 인권교육, 비밀엄수 의무화 등</li> <li>• 특별히 성범죄(성매매 포함)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경우 신속하게 낙태를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현재는 성폭력의 경우 시일이 늦다는 문제, 성매매의 경우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li> </ul>

전체연번 5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 및 강화하고,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기구 수립
--------	--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되, 참고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 여러 부처의 아동 청소년권리 관련 국가중장기 계획 및 위원회 등의 기구 통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li>• 위원회의 위치, 실질적 조정 기능의 확보, 충분한 사무국 인원 및 예산 확보 등 최고지도자 및 법률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사안이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됨.</li> <li>• 2014년 2월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된 이래 뚜렷한 성과가 없었음. '15년부터 분기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명확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임.</li> <li>•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보장하고 필요한 실무기능 보강 요망</li> <li>• 종합적 아동 정책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li> <li>•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서 유엔아동협약의 아동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청소년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그 내용상 권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역할정립이 요망되며 이를 전제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전문연구원 채용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를 다시 부활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입법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함.</li> <li>•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활성화로 부처 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아동관련법과 정책, 제도가 정비되어 현장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적절히 연결되어 아동의 권리가 보호, 존중 충족 되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함.</li> <li>•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기관화 필요</li> <li>•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아동(복지부)-청소년(여가부)-학생(교육부) 정책 주무부처의 대통합이 필요함.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에 맞게 아동과 청소년 연령 구분 필요. 아동은 초등생, 청소년은 중고생으로 정의 필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든지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등도 일관성 있게 통합 필요</li> <li>•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실체가 불분명한 조직임.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는 기구가 필요하며, 별도의 기구 설립이 어렵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li> <li>•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산발적인 아동정책 수행부처들의 업무를 모니터링 및 정책을 조정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자문위원회 형태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조속히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상설로 이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함.</li> <li>•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책무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할듯함. 지속가능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담당 실무자가 명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다른 나라의 옴브즈퍼슨제도처럼(옴브즈퍼슨은 아니지만)...사무국을 갖고 권위를 갖도록 해야 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설사무국의 위치와 역할, 기능 및 권한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무국의 구성 등에 대해 신중히 조사한 뒤 설치 필요. 상근 전문연구원의 채용이 상설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 후 채용할 것</li> <li>• 아동권리를 위해서는 실무위원회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안에 두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li> <li>• 국가인권위 내 아동관련정책을 강화 정체가 의심스런 유명무실한 위원회 말고 상설적이고 평가를 받는 기구를 신설할 필요</li> </ul>
<p>NGO (기관 의견)</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착취 범죄 관련자 포함 의무 문서화</li> </ul>

전체연번 6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 간, 국가 및 지역 단체 간 아동권리 관련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할 것
--------	--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 이분화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적어도 권리부문에 대해서는 통합적 행보를 분명히 보여야 함. 이와 관련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아동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고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아동권리부문을 통합하여 관장하도록 함.</li> <li>• 이 사안은 국내의 역사를 볼 때 불가능한 영역으로 판단함.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함.</li> <li>• 아동/청소년은 인구집단을 다루는 것이므로 이 문제는 지난한 사안임.</li> <li>•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 간, 그리고 관계 국가 및 지역 단체 간 아동권리 관련 기능 및 관계가 명확히 안되고 있으며, 협약의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이 취하는 모든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 못하고 있음. 청소년희망센터 역시 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형태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보다 활성화 되어져야 하나 현재 그 지위 및 정체성에 있어서도 안정적이지 못함.</li> <li>• 아동에 관련한 대상별 접근의 특성상 다양한 부처가 관련되므로 부처를 넘나드는 기능조정과 확고한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li> <li>•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실행시키면 된다고 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모호한 법적, 연령적 분리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이를 위한 기초연구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아동 청소년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기구의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임).</li> <li>• 통합할지, 두 체제로 분리해서 갈지, 아동,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보다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분리해 갈 때 사업의 중복 및 중첩성 문제 해결 필요, 그러나 분리되어 갈 때 기본 계획 수립, 정책영향평가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전담 공무원 배치 필요. 이들의 업무 규정과 업무 지침 마련 등 체계 확립. 지방자치단체 아동 공무원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li> <li>•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주무부서를 한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봄.</li> <li>•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이 수립되어 실행단계로 접어 들. 그러나 부처 간 산발적으로 계획/시행되고 있는 아동관련 사업의 통합/조정 기능을 현실화 하지 못하면,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많은 제한점을 초래할 것임.</li> <li>• 조정위원회 수준보다는 가급적 아동관련 기능을 단일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함.</li> <li>•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복지부 소관 아동만을 위한 정책임(우리나라 모든 부처들의 현실일 것임) 대한민국의 아동, 대한민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의 재정립, 대통합이 필요함.</li> <li>• 임시적인 위원회 남발하지 말고 각 부처의 아동, 청소년 업무를 조정하는 상시적 체제를</li> </ul>

	<p>마련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이 권고한 내용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아동정책을 수행하는 타 부처 간의 그리고 중앙과 지역 간의 아동권리 관련 기능과 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것임. 흩어져있는 아동관련 정책을 조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상설화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며, 중앙과 지역 간의 조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에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li> <li>• 정부부처간 힘의 역학으로 인해 조정이 쉽지 않는데 이 문제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 좋을 듯 함. 정권에 따라 부처의 변동이 심한 것도 문제</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을 책임지고 다룰 수 있도록 부처를 일원화해야 함.</li> <li>• 일원화 필요</li> <li>• 돌봄 차원의 보건과 복지만이 아니라 아동의 자율성과 인권향상을 위한 접근의 강화</li> </ul>
<p>NGO (기관 의견)</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각 다른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어 혼란과 예산낭비를 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소관부처 통합이 필요함(예: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을 일치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여 청소년복지관련 법률과 아동복지관련 법률의 통합도 모색해볼 필요 있음.</li> </ul>

전체연번 7	협약의 전 부문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시행 하고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및 감시체제를 제공할 것 또한, 후속 국가행동계획 준비 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명명된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 및 중간평가 보고서를 고려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3자 협력을 통한 아동청소년권리 국가행동계획을 새롭게 짜는 혁신적 발상과 행위가 필요함. 기존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아동청소년권리 관련 특화된 국가행동계획을 세 부처가 협력하여 수립할 것을 제안</li> <li>• 아동정책기본계획이 거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백과사전식 계획으로 실현가능성 및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이 계획이 수립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함.</li> <li>•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고임</li> <li>• 재정이 열악한 NGO이기에 기본적으로 재정 도음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마련의 어려움이 따를 듯</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정책기본계획이 국가행동계획의 역할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 보다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함. 여기에 반드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행은 아동인권증진에도 유익한 영향을 주지만, 아동 청소년의 발달단계특성상 유엔아동권리이행을 위한 별도의 NAP 작성의 필요성 강조. 정확한 NAP은 협약이행 모니터링과 영향평가에 근간이 될 수 있음.</li> <li>•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도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음 각 부처 산재된 기본계획이 바로 유엔이 권고한 국가행동계획이라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부처 이기주의로 산재되어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li> <li>• 무엇보다도 아동, 청소년 관련 당사자 단체나 지원단체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li> <li>•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아동청소년관련 지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li> <li>• 법무부가 총괄하여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그 진행여부에 대한 평가, 자문 등 정책이 지속가능하도록 규제하는 장치 필요</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청소년 단체의 참여와 협력 강화</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전문가 필수 포함</li> <li>•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행·평가 과정에 아동 당사자와 국내 시민사회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평가에 있어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발표한 인권지표에 따라 구조지표, 절차지표, 결과지표를 모두 고려하고 반영할 것.</li> </ul>

전체연번 8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옴부즈퍼슨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청소년옴부즈만 도입관련 연구 이후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었음. 지금이라도 아동청소년 옴부즈만(옴부즈퍼즌)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li> <li>•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분과의 확대, 인력 및 예산의 보완, 민간기구들과의 협력 등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할 것임.</li> <li>• 좀 더 진전된 노력이 필요</li> <li>•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에 관한 안정성 미확보, 잦은 이관 문제 해결 반드시 필요</li> <li>• 현 상황 검토 및 모니터링 센터 또는 운영기관의 지위를 확립할 필요</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므로 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은 확보되었으나, 위원회 기구가 축소 된 상황에서 모니터링센터와 옴부즈만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제공이 미약할 경우, 지속성/전문성 있는 적절한 환경조성에 한계가 있을 것임.</li> <li>•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관된 점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원과 조직, 예산 지원이 필요함. 직제령 수준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이나 시행령에 아동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전문적 심의를 위해 장차소위와 같이 별도 아동권리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함.</li> <li>•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모니터링 기구의 통합 필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처 성격 상 옴부즈퍼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원장이 겸임 또는 산하 센터장이 겸임</li> <li>• 교육청 및 각 지자체에서 만든 학생인권조례나 인권조례에 의거한 아동권리 담당관의 업무와 역할을 지지하고 강화할 것</li> <li>• 아동권리 모니터링 업무가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된 것은 매우 바람직함. 다만 5명의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인적, 재정적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지부들과의 공조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동인권전문위원회가 자유권위원회 산하의 부설 위원회로 설치가 되었으나 이를 독자적인 위원회로 부상시켜야 할 것임.</li> <li>•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관한 것은 긍정적이거나, 5인의 인력과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사료됨. 조속한 시일 내에 분과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적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li> <li>•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미약함. 아동을 위한 전문가 추가 배치 및 업무 체계화 고려되어야 함. 국가인권위가 아닌 행정부의 아동권리정책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기관 설치 요구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적인 인권침해 구제와 달리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 소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성격으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아동인권전문위원회가 설치되었음. 아동청소년인권 소위원회가 되려면 근거법이 필요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설치가 가능하였음. 아동청소년 인권의 경우도 근거가 될 수 있는 아동기본법(신의</li> </ul>

	<p>진 의원 대표발의 2014. 7)이 통과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독립적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재정 및 인력을 확충해야 함.</li> <li>• 독립된 소위원회 설치와 함께 이 업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업무 담당조직을 팀 수준에서 과 수준으로 인원 및 조직 확대 필요.</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성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함. 또한 인적, 재정적 자원이 열악함. 따라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실효성을 가지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li> </ul>

<b>전체연번 9</b>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 설립 촉구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업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권리관련 국가행동계획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새롭게 판을 짜는 형태로 가면서 아동권리관련 분과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 이때 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꼭 두는 기구가 아닐 수도 있음</li> <li>• 인력 확대 등 필요</li> <li>• 실효성 있는 위원회 설치 운영요망</li> <li>• 정권에 따라 변수가 있으나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과제 실현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인권위 안에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전문위원회가 있어 각 정부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봄.</li> <li>• 당사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회의 적극 지원이 필요함.</li> <li>•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과 아동권리위원회 설치의 국가인권위원회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의 노력과 정부 의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음.</li> <li>• 국회 설득 노력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li> <li>• 현행처럼 정치적으로 친정부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인권위 위원 임명 시 아동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고려할 필요 있음.</li> <li>• 아동권리분과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분야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인권위원 인선절차 보장</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지원 전문가 필수 참여</li> <li>• 국가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법개정에 해당 부처의 구체적인 역할을 상정할 것.</li> </ul>

전체연번 10	당사국의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맞도록 협약이행을 위한 재원수준을 검토하고 증가시킬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예산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를 넓히는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접근의 기회를 부여하고 확대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시 중).</li> <li>•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기 위한 다각적 노력(민, 관, 학 등)이 요망됨.</li> <li>• 권고사항에 대한 범부처적 노력이 미흡함</li> <li>• 각 부처의 소관 혹은 한계가 있다고 책임회피하고 있음. 기본계획에서부터 담당부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여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임.</li> <li>• 장기적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li> <li>• 정부의 긴축 재정 방향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간이 필요할 듯</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 정책부서 및 행정 집행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약간 우려. 즉 현실성을 과연 높일 수 있나? 있다면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고민됨.</li> <li>• 핵심 아동지표가 필요함. 그래야 이를 커버하는 사업, 예산 등이 확정 될 수 있음.</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복지에 대한 재원을 삭감하는 것은 미래의 동남을 키우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음. 늘 복지의 우선은 아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li> <li>• 아동권리실현을 위한 당사국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배정에 있어 지역당국 및 지리적 위치에 따른 격차가 생길 때, 아동들의 복지혜택의 차등이 생기며, 기회제공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이는 아동인권의 기본 원칙인 비차별의 원칙에 위배됨.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정치가들의 아동에 대한 이해와 아동인권실현에 대한 의지가 요청 됨.</li> <li>• 정부 답변자료 보완 필요</li> <li>•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예산도 포함할 필요. 각 부처 사업이 따로 놓고 있는 것은 문제임. 턱없이 부족하지만 통합 관리 가능하다고 봄.</li> <li>• 아동권리를 위한 재원은 아동복지로 명명된 것만이 아니라 알바임금, 전반적인 노동자임금, 여성에 대한 처우 등과 맞물려 있음. 사회 전반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강화와 동반돼야 함.</li> <li>• 지자체에 이관된 아동관련 예산의 국고환수부터 시급하다고 판단됨.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아동예산의 차등이 발생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아동학대예산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이 아니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기금에서 각출되고 있는 상황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예산만큼은 국고로 환원하여야 중앙정부가 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적정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고,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필요아동의 복지예산을 장애인, 노인복지 예산 수준과 비교 (우리나라 정책여건상 장애인, 노인복지에 비해 정치적으로 소외)</li> </ul>

<p>전체연번 11</p>	<p>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으로 자원배정을 평가할 것 -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예산을 총괄 평가하고, 아동권리 관련 항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재정배분을 설정할 것</p>
<p>학계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예산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하여 청소년 혹은 아동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li> <li>• 재정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함.</li> <li>• 해당부처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영향평가제를 비롯한 예산 검토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li> <li>• 정부의 예산 마련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센티브 도입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li> <li>• 국가 환원이 능사인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혹은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 여부는 논란이 되는 사항임.</li> </ul>
<p>현장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정부 단위 요보호 및 일반아동 인구 대비한 예산 평가 필요.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한 예산을 산출하여 필요한 국고보조금 책정하여 투자할 것.</li> <li>• 보육예산의 증가에 비해 아동 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비용은 늘어나지 않는 것은 문제.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정확보는 지방정부 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게 됨.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함.</li> <li>• 기획재정부는 아동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아동권리실현을 위하여 국고보고금 비율을 제고 해 주기 바람.</li> <li>• 답변 내용에서 정부부처의 노력의 정도 향후 의지를 읽을 수 있음. 정부자료 보완필요. 아동권리관점 자원배분 평가지표 개발 보급 및 매년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 각 기관 평가 실시 필요.</li> <li>• 아동청소년관련 예산은 궁극적으로 아동권리 관련 재원이라고 할 수 있음.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이 통합되어 관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보이는 부분도 있을 듯. 기획재정부 디브리엔 시스템에 의해 통합 계산해볼 필요가 있음.</li> <li>•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이면서 균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함</li> <li>• 앞에 기술한 내용과 중복됨. 또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상시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예산을 평가해야 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아동에게 배정된 예산이 아동권리 실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해 보아야 할 것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보호 아동에 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에 기반한 자원 배정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li> </ul>
<p>NGO (기관 의견)</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히 아동청소년지원이나 학교 밖 아동청소년 지원이 아니라 성착취 범죄 피해 아동 지원 예산 확보되어야 함</li> <li>•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실시하여야 함</li> <li>• 과제 3.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법정 인력배치율을 매년 조사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 항목에 반영 ※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평가에는 반영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에는 누락되어 있어 이행력이 저조</li> </ul>

전체연번 12	<p>국가예산 수립 시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시성을 제공할 것</p> <p>- 분야별 투자가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추적체계를 활용하여 투자효과에 있어 남·여아 간의 차이 측정 촉구</p>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및 청소년투자수익률 공식을 개발하여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미래성장세대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음.</li> <li>• 일단 입법부, 기재부를 포함한 행정부 등을 중심으로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초보적인 수준의 구체적 노력이 T/F형태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li> <li>• 이러한 인식이 아직 없음.</li> <li>• 분야별 투자가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추적체계를 활용하여 투자효과에 있어 남·여아 간의 차이 측정 등을 해당부처에서 소관 및 책임회피 보다,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임.</li> <li>• 아동을 위한 자원 추적 체계 마련이 우선할 필요가 있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영향평가와 아동친화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의 배분과 사용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해외 사례의 경우, 아동영향평가와 예산 추적(budget tracking)은 다른 개념임. Budget tracking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이 복지사업에 투자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 후 성공여부를 평가해 시가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하도록 하는 서울시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ImpactBond; SIB)과 같은 제도도 고려필요 아래링크참고 <a h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71&amp;newsid=02171366609397456&amp;DCD=A00707&amp;OutLnkChk=Y">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71&amp;newsid=02171366609397456&amp;DCD=A00707&amp;OutLnkChk=Y</a></li> <li>• 아동복지법 15조1-5와 같은 행위 발생 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조처가 좀 더 긴급하고 상세하게 진행되었으면 하고 교육활동 종사자에게 홍보되었으면 한다. 이런 법 조항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li> <li>•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심의 복지를 벗어나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보편적 아동복지로의 발돋움을 위한 당국국의 노력이 필요함. 이에 따른 예산과 지원이 전제조건이 됨.</li> <li>• 기재부 답변 보완 요청. 예산편성지침에 상기 권고사항 반영하도록 해야 함.</li> <li>• NGO 의견에 찬성 복지부에서 법제화하여 추진 필요(아동권리 인지 예산)</li> <li>• 아동에게 낙인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지원이 필요함.</li> <li>• 앞서 기술한 내용과 같음.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아와 여아의 차이뿐만 아니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령 이주아동, 재난과 폭력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 등에 대한 특화된 예산 검토</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 피해 지원 예산 영향 평가 등 이 주제를 분명한 예산 항목 도입</li> </ul>

전체연번 13	재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기반 예산 수립 도입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언적 명제보다 아동청소년 투자수익률 등 실제 성장세대에 대한 자원투입이 갖는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외화시켜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 및 일반 시민 대상 설득의 과정이 요구됨.</li> <li>• 앞서와 같이 입법부 예결산 과정에서 추적해 보는 T/F형태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li> <li>• 인식이 없음.</li> <li>• 반복되는 내용으로 해당 부처에서 자기 부처의 업무로 보다 인식해야 할 것임.</li> <li>• 예산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것으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항임.</li> <li>• 재정 분배의 키를 지니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걸림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경제부의 생각이 변화하고 아동 청소년을 위한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기획에 함께 참여하여 재원 확보에 힘써야 함.</li> <li>• 당사국 정부가 국가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아동권리접근법을 활용하는 문제는 요원하게 느낌. 더욱이 예산수립과정에서 투명성과 아동을 포함하는 참여제도의 보장은 현재로서는 실행이 매우 어려운 사안을 사료되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는 일임.</li> <li>• 정부 부처 답변 보완 필요. 권고이행력 담보와 한국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해당 과 수준이 아니라 해당 부처 수준에서 답변자료 보완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 있음.</li> <li>•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도입 가능할 것으로 보임.</li> <li>• 예산의 수립과 집행결과까지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접근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li> <li>•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책 서비스 체계의 개편이 요망됨.</li> <li>• 앞의 기술과 동일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종합통계를 마련하여 자원투입 후 성과측정을 위한 기반자료 확립 필요</li> <li>• 투자수익률 자원 투입 성과를 수치화하는 기준이 뭉치 모호함</li> <li>• 인적 자원, 투자수익 등의 용어 사용을 자제</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 피해 지원 평가 항목 도입, 평가 실시</li> <li>• 특히 보호필요아동 중에서도 특히 더욱 취약한 아동을 중심으로 특성에 맞는 중점지원체계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도록 지표 개발</li> </ul>

<b>전체연번 14</b> 아동을 포함한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보장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청소년 예산참여제도에 대한 앞의 제안과 동일.</li> <li>•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거의 없음.</li> <li>• NGO 의견 및 제언 (2014년)과 거의 일치함.</li> <li>• 수준별 단계별 접근 필요.</li> <li>• 재정 마련에 관한 정부 부처들의 무관심이 걸림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음. 아직 시기상조로 판단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 예산참여에 함께한다면 좀 더 그들의 눈에 맞춘 예산 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함.</li> <li>• 전장에 언급과 동일함.</li> <li>• 아동 청소년의 국가 및 지자체 등의 다양한 정책 참여 제도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권고사항이 매우 추상적으로서 실현가능성이 낮음.</li> <li>• 장기적으로 검토가능.</li> <li>• 적어도 국회 차원의 '아동권리예산 토론의 날' 같은 공론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li> <li>• NGO의견과 동일.</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외 중앙정부가 아동 관련 예산 수립 시 아동청소년 및 시민사회의 참여 방안 고민 필요.</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임(이해가능하며, 접근가능하게)</li> <li>•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 피해 지원 분야 관항목에 포함</li> <li>• 보호필요 아동, 시설종사자 등은 일정 인원을 반드시 포함</li> </ul>

<b>전체연번 15</b> 빈곤·취약계층, 난민, 이주노동자 등의 자녀를 위한 전략적인 예산 방안을 수립하고, 경제 위기, 자연재해 또는 다른 긴급 상황에서 예산이 지켜지도록 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난민(국제이주민)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및 자원배분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격에 맞는 투자와 자원배분을 할 필요가 있음.</li> <li>• 국민안전처 설치 등으로 인해 높아진 국민적 관심으로 일부 해결된 부분이 있으나, 아동권리 관점에서는 매우 부족함.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함.</li> <li>•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음</li> <li>• 예산의 적정규모 유지 필요.</li> <li>•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시간이 필요할 듯</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의 이슈화, 대국민적 공감화 작업 필요</li> <li>• 아동권리에 관한 핵심지표가 명확해져야 가능한 사업임.</li> </ul>

<p>현장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있는 것 같지만 아래로 내려와 아동청소년 한명 한명에게 지원되는 액수는 아직도 부족함.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li> <li>•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그들의 기본적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을 보호, 존중, 충족시켜줄 책임을 가짐.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는 아동의 부모의 출신, 국적 여부 등의 조건에 따라 아동의 기본권을 방임하거나 간과하는 일에 주목해야함. 또한 이들과 관련된 법이 제정된다 해도, 정책, 제도, 예산이 함께 제공되지 않으면 이들의 권리실현은 미사여구에서 끝나게 됨.</li> <li>•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편성방향 언급 필요. 기재부의 부실한 답변태도 문제화 필요.</li> <li>•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 필요</li> <li>•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통제와 단속 위주의 정책 하에서 아동 이주자와 난민이 보호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음. 부모나 후견인의 신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아동권리의 내용을 확충하고, 낙인효과가 없는 특별한 보호를 강구해야 함</li> <li>• 빈곤이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 아동, 특히 불법취업노동자 자녀에 대한 보호대책이 좀 더 보강되어야 할 것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및 지방의회에 대한 아동예산 및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조직 및 활동지원 등이 필요함.</li> </ul>
<p>NGO (기관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li> <li>• 자원할당(예산분배)을 위한 근거법률 마련</li> <li>•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 피해 지원 분야 관항목에 포함</li> </ul>

전체연번 16	'07년 '아동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임'에 관한 '일반 논평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에서 도출된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학교 교육 일반도로 생각하려는 의식을 지양해야 함. 다양한 미래 핵심역량을 성장세대에게 성장과정에서 국가가 어떻게 갖도록 지원할지에 대한 넓은 시각과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과 관점이 없어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봄.</li> <li>• 쉽지 않은 과제임.</li> <li>• 인식이 매우 낮음.</li> <li>• 부처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함. 협약의 성격이 국제법처럼 효력이 없고 권고사항이라 법무부까지도 책임회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국내법에 반영하거나 국가 정책으로 크게 다루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연' '어떻게'가 모든 정책과제에 해당되는 사항일 것임</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비준 당사국인 한국정부는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주요 이슈에 비교적 민감하므로, UN 인권이사회가 2015년 주요이슈로 '아동에 대한 투자 (toward better investment in the rights of the child) 에 대한 인식 증진이 가능하다고 봄. 이 권고사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 (지자체포함), 기업, NGO, 시민단체 등 의 협력이 필요.</li> <li>•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과 권고안 등을 아동관련 부처에서 공유하는지 조차 의심스러움. 이들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번역과 배포부터 책임지는 부처가 있어야 함.</li> <li>•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아동권리 감수성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어야 국가적인 책임의식이 높아질 것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촉구만으로 부족하고, 의무화해야함</li> <li>•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 등에 대해 국내에서 동일 주제의 토론회 등을 개최</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전체연번 17	<p>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자료수집 체계를 설립할 것</p> <p>- 자료에서 포착될 수 있는 경향에 대한 다각적 연구에 착수할 것</p>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배경을 갖는 성장세대가 등장함에 따라 이 권고사항은 앞으로 점차 그 비중과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됨. 문제는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음.</li> <li>• 일단 &lt;아동백서&gt; 형태의 자료 수집, 통계청을 통한 국가 통계 분석 등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li> <li>•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함</li> <li>• 자료 수집에 대한 기초 계획이 제대로 서지 않은 상황이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듯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및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시 유형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기초 안이 적확하게 마련되어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예컨대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바, 이와 같은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중복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주기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5년 주기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기타 정부 부처 조사의 통합 방안 마련 필요. 통계청 및 다양한 부처에서 생산되는 아동 관련 통계를 국제 및 지역 비교가능하게 표준화 필요. 아동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짧은 주기로 발표하여 단기 정책 효과성 검증 필요.</li> <li>•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한국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내리고 있으나, 부처별로 아동을 정의하는 연령에 차이를 보이고, 정책이나 사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함.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부처별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통합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시급히 구축 필요.</li> <li>• 장기적 검토.</li> <li>• 정부 차원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이미 많다고 보는데, 어떤 관점에서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임. 기존의 수집 정보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함.</li> <li>• 정부처간의 조정과 협의 필요함.</li> <li>•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민간에게 위탁하는 한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연령 및 청소년기본법의 연령구분에 대한 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li> <li>• 조사 자료의 배포 및 홍보의 강화</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1에서 제시된 나이와 성별 이외 민족(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기 위하여), 거주지역, 장애 여부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적절하고 충분하게 개별화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생산해야할 것.</li> </ul>

전체연번 18	학교 교과 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차원의 중요성도 중요성이거니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등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교육과정에서 이를 체화시켜 실질적으로 확대 강화하려는 노력이 대단히 적은 편임. 이에 대한 교육과정 개편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li> <li>• 이념 투쟁으로 변질된 경향이 있음. 이념을 떠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li> <li>•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li> <li>• 아직까지 인권교육이 체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표준화된 교과서 모델을 비롯한 평가, 의식 및 감성, 태도 및 행동을 변화, 형성하도록 하는데는 매우 미흡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인권교육 수준은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인들이 많이 있기에 학교 안의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강화시키는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li> <li>• 당사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 내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력이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최근 학교 내 인성교육, 안전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 교육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산발적으로 비체계적인 일회성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점 우려됨.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의 일환으로 인권을 알리고 인권을 실현하는 현장중심의 아동권리교육이 체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함.</li> <li>•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제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필요</li> <li>• 즉시 도입 필요</li> <li>• 인권교육은 강화되어야 하나, 그 과정이 중요함. 지속적인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이 난립하고 있음.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초급부터 고급까지 단계와 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li>• 엔지오들이 각 기관의 역량대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함. 최근 학교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지는 모양새임.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교과 속에서 아동권리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 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과 과정에 인권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현재는 도덕, 윤리 등의 교과에 포함되어 있음. 개별 교과과정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li> <li>• 인권교육의 적극개입-&gt; 인권교육의 의무화, 교육내용의 다양화(노동권, 집회 시위의 자유, 등등 포괄적인 인권교육 필요)</li> <li>• 학교교육과정 마련 시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li> <li>• 양성과정이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필요 양성과정의 수준별, 단계별 교육 마련</li> </ul>
NGO (기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 피해 지원 분야 포함</li> <li>• 과제 2.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의무 시행되는 인성교육의 범위에 인권교육의 적극 개입</li> <li>•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 피해 지원 분야 포함</li> <li>•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li> <li>• 인권교육을 교과과정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음.</li> <li>• 인성교육과 관계없이 인권교육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1회성의 형식적 교육이 아닌, 단계적으로 인권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 체계적 및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li> </ul>

전체연번 19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권리에 관한 연수대상을 성인과 아동 청소년 2트랙으로 나누어 좀 더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 특히 성인의 경우 직접적 이해당사자(학부모, 교사, 인권관련 단체 등)를 대상으로 하는 깊이 있는 연수과정이 요구되고 그 기회도 확대되어야 함.</li> <li>•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들, 하지만 타 부처에서의 인식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임.</li> <li>•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li> <li>• 각 부처 경쟁하듯이 업무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부처 간의 업무를 통합, 조정, 협의하는 과업이 향후 수행되어야 할 것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자 뿐 아니라 관리자도 포함</li> <li>• 법 만능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복지 담당 공무원, 경찰, 판사, 검사, 사법기관 공무원 등 아동과 주로 접하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훈련 자료 개발 필요.</li> <li>•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전문직 종사자들이 인권교육/훈련이 필수임에도, 소수의 종사자들만이 기본적인 인권교육을 경험한 수준임.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컨텐츠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관들과 현장에 나가 강의하는 강사들 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소통 체계가 필요함.</li> <li>• 교사 등 아동관련 모든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대학에서부터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관련 각종 시험 및 교육에 인권교육 의무화 필요.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권 교육 활동 포함 필요.</li> <li>• 장기 추진 필요 과제</li> <li>• 연수과정은 양적으로 늘어났는지 모르나 질적인 것에 대한 의문이 큼. 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인권교육이 졸속으로 시간 때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재 내용 등이 국제기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li> <li>• 보육교사, 교사, 시설종사자 등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 권리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내용의 평가와 보완. 수정 절차 필요</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 피해 지원 분야 포함</li> <li>• 소관부처- 외교통상부도 포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음</li> </ul>

전체연번 20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집행부서의 의지, 그것이 핵심적이며 가장 중요함.</li> <li>• 지속 과제로서 다양한 방법/전략 모색 필요함. 또한 정부가 담당할 영역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를 구체적 전략이 필요함.</li> <li>•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함.</li> <li>• 수동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예산 투입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인식전환의 홍보 방안, action campaign 등의 형태 필요.</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히려 중요한 stakeholder 들을 위한 홍보에 노력을 쏟을 필요가 있음. 예 학교장/교육장/교육감; 정치인들, 고급 관료 들, 문화예술인사 등</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달 인권의 날 지정 등으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강의 등을 대국민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 있음.</li> <li>• 유연아동권리협약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자료 및 공익광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 국민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아동권리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의 구축이 필요함. (정부 공익광고, 언론매체, 유엔기구, 기업홍보 관련부서, 학교, 지자체 등)</li> <li>• 노력 필요.</li> <li>• 교과서에 적극적으로 수록하고, 아동관련 전문직 양성 과정에 필수교육내용으로 포함할 것.</li> <li>• 메스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li> <li>• 다양한 교육이 다양한 주제와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화 하는 것이 필요할 듯</li> </ul>	
NGO (기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D, 기자 등 언론종사자들의 협약 인지도가 매우 낮고 미디어에서의 아동 노출이 증가 된다는 것을 고려해 미디어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에게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활동 필요</li> </ul>	

전체연번 21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 목표인 국민총생산 대비 0.7%에 2015년까지 도달하고 가능하면 이를 넘어서도록 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개발협력관련 법령 등에서는 실질재원 확보에 대한 근거는 어느 정도 마련된 셈. 그러나 실질 재원을 의회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듯 함.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실천할 필요가 있음.</li> <li>•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매우 미흡함.</li> <li>• 민간의 노력은 많아지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는 사항들이 법적으로 보완되어져야 할 것임.</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DA 규모에만 치중하지 않고, ODA 관련 사업이 현장에서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한 면밀한 검토필요. 무엇보다 과거에 국제협력을 받아 발전한 나라로서 많은 이력이 교육/훈련되고 현장에 파견되어 투자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 있음. 그 성과를 대중에게 알리고 연대를 촉구하게 될 때</li> </ul>	

	<p>ODA 증액과 함께 대중의 호응과 협력을 얻게 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 아동 지원의 양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한국을 홍보하는 등이 아니라 현지 아동의 필요와 권리에 부응하는 것인지 점검해야 함.</li> <li>•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2015년까지 0.25% 달성도 힘들 것이라 판단. 0.7% 목표는 도저히 불가능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제가 좀 더 구체화 되었으면 함. (예: 전체 예산의 ~% 이상 확보, ODA사업선정 평가지표에 아동인권내용 포함 등)</li> </ul>
NGO (기관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 피해 지원 분야 포함</li> </ul>

<b>전체연번 22</b>	개발도상국과 개발협력 관련 협약체결 시 아동권리실현을 주요 우선순위로 다루고 상대국의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참고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개발지원 등을 포함하여 유무상원조계획에 아동권리실현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을 제안. 특히 국가행동계획에서도 포함시켜야 함.</li> <li>• 원조가 수원국의 뜻에 좌우되고 있음.</li> <li>• 원조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필요.</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원칙과 전제에는 적극 찬성하고 동의하되, 때때로 수원국가의 문화, 역사, 종교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li> <li>• 아직 국내에서 조차 이러한 개념이 충분하지 않음.</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국가의 아동권리 실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ODA 분배에 참고 필요. 특히 개발협력 협약 체결 시 아동권리 향상 목표를 제시하고, 해당 국가가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체계 마련 필요</li> <li>• 국제협력사업을 주관하는 국가 부처나, 국제협력사업 수행자들 중 아동사업전문가가 흔치 않으며, 자국의 협약이행 수준을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발사업수행국의 아동권리이행 수준이나, 주요한 아동인권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NGO의 대안 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문 등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사업계획이나 개발에 참고 자료화해야 할 것임.</li> <li>• 우선순위에서 아동, 특히 여아의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함.</li> <li>• 앞의 의견과 동일. 해외원조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 민간기관들은 해당 국가의 권리이행 여부를 검토하면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li> <li>• 코이카, 수출입은행 등 국제개발영역에서의 이해제고를 위한 노력필요, 교육 등.</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적 평가보다 사전적 조치와 관련된 정책과제 포함 필요</li> </ul>
NGO (기관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 피해 지원 분야 포함</li> </ul>

전체연번 23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법 체제를 마련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필요성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실천을 견인해 내는 전략이 필요. 유럽의 CSR계획 등 외국의 사례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li> <li>• 관계 부처의 인식, 관심이 부족함. 끊임없는 의견 개진이 필요함.</li> <li>•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음.</li> <li>•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담당부서가 있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사례연구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li> <li>• 사회공헌활동에서 이끌어내려 노력해야지 부정적인 접근은 반감을 일으킬 수 있음. 병행이 되어야 할 것임.</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쟁지역 관련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공시의무 규정 마련. 인권에 기반을 둔 공적 기금 투자지침 마련(연금법 개정). 아동노동 등에 대한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 이행 여부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공기업의 투자 및 운영 단계에서 인권을 반영한 경영평가 및 공시규정 마련. 공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의무화 등의 조치 필요.</li> <li>• 외국기업의 인권 침해 사례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책자나 홍보 할 필요 있음.</li> <li>• 아동,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이 ILO가 제시하는 아동, 청소년 노동에 관한 기준을 숙지하고 적용하므로, 국내 아동청소년들의 노동문제와 해외 아동노동분제를 풀어가는 책무성을 이행하기 바람.</li> <li>• 정부 부처답변 보완 필요.</li> <li>• 관련 제도 정비 필요.</li> <li>•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토지매입, 대규모 토목공사, 공장에서의 비인격적 처우 등으로 많은 인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가 늘어가고 있음. 인권침해적인 물품의 생산과 교역도 문제가 됨. 이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지적을 청취해야 함. 국제인권법의 보편적 관할권과 국가의무의 역외적용원칙을 고려하는 대응이 필요함</li> <li>• 기업이 아동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더욱 증진하여야 할 것임.</li> <li>• 한국 내 기업의 인권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유엔에서는 기업과 인권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인권영향평가를 하라는 권고가 나온 상태임. 국가는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을 위한 준비 필요함 (정부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인권 감수성이 내재화되어야 함. 공무원 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인 이행노력필요)</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노동이나 노동 착취와 같은 기업에 대한 벌금제 등 강력한 처벌 필요</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성 상품화를 증대시키는 기업(인터넷, 모바일 포함) 감시, 방지 대책 법체계 마련</li> </ul>

<p>전체연번 24</p>	<p>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무역협정 및 국내법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정할 것</p>
<p>학계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정무역형태에서 아동(특히 여성청소년)착취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에는 공정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노동집약적 서비스 및 재화생산국의 국내(도메스틱) 차원에서는 여전히 아동노동착취 및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li> <li>• 기업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상황임</li> <li>• 강제노동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외교부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도 담당해서 논의, 협의, 추진할 내용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몇 가지 관련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li> </ul>
<p>현장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을 개정하여 아동인권 침해와 관련된 물품의 수입 및 수출 금지 명문화 필요. <a href="http://withgonggam.tistory.com/1355">http://withgonggam.tistory.com/1355</a></li> <li>• 확실한 주무부처의 확립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를 위한 외교적 활동 적극 필요</li> <li>• 전장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함.</li> <li>•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증제처럼 '아동노동없는 제품'이란 인증 같은 것을 만들고 활용할 필요 있음.</li> <li>• 코트라 차원에서 어느 국가의 어느 품목이 아동노동을 이용한 것인지 기업들에게 잘 홍보하여야 할 것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인권 침해 물품 수입이나 제작 판매하는 업체에 처벌 조항 신설해야 함.</li> <li>• 일반 소비자가 식별가능하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강화</li> </ul>
<p>NGO (기관 의견)</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개정으로 진행될 경우 아동인권침해 물품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 경우 오히려 기업의 아동인권침해 사안에 적극적 대처가 어려울 수 있음. 아동인권 침해 물품에 대한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매년) 공시하도록 할 것</li> <li>• 아동청소년의 성 상품화 방지, 포르노 처벌 방안마련, 처벌 강화 등</li> </ul>

전체연번 25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조치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동남아시아 및 중국 등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대륙 및 국가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례들을 수합하여 사례전파를 할 필요가 있음(예컨대 중국의 사례까지 포함).</li> <li>•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홍보, 필요 시 법령/규칙 등 제정 필요할 수도 있음.</li> <li>• 국가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못함.</li> <li>•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시 준수할 수 있는 아동보호정책을 도입할 것</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공헌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 필요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인권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한국의 위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이기에 외국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발생하게 한 기업은 벌금이나 아니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li> <li>• 정부 부처 보다는 코이카나 코드라가 융통성 있게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아동인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해외에서 활발하게 아동인권사업을 수행하는 NGO 들이나 유니세프 등과의 정보교환과 기술지원을 받아 시행 가능함.</li> <li>• 해외 투자기업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체계 마련 필요.</li> <li>• 관련 법령에 조문 포함 필요.</li> <li>• 기업에 대한 아동권리 감수성 훈련을 강화할 것.</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과 아동친화기업을 포괄하는 정책 및 평가 인증 제도 개선안 마련해야 함</li> <li>• 불이행시 처벌규정 필요</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팅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하는 기업 등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체계 마련 비용 의무화</li> </ul>

전체연번 26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가 갖는 경제적 이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쌍방의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하는 심층적인 보고서 채택이 요구됨.</li> <li>• 국가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못 함.</li> <li>•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부처에 추가.</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해 볼만하긴 하지만, 국내 당국자들의 역량이 이러한 수준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음</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동의 인권을 유린하는 기업이라면 강력한 처벌조항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들 필요 있음.</li> <li>•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이해와 아동인권 감수성이 민감하지 못하므로, 관련성이 많은 업무를 하는 부서 조차도 소관업무 아님을 주장. 이 이슈는 보건복지부 통상협력 담당부서가 책임을 지고 보건, 의료 관련 사안 뿐 아니라, 아동과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협상을 할 때, 아동의 권리 특히 아동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대한 고려를 필수적으로 삼아야 할 것임.</li> <li>• 인권영향평가의 틀을 만들고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부터 만들어야 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발표가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입법 필요</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영역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구제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반 기업의 활동을 모니터링 및 규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할 것. 이 과정에서 아동 당사자와 국내 시민사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li> </ul>

전체연번 27	협약 제2조에 합치되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제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차별금지가 왜 중요한지 대국민 설득 프로세스가 우리사회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li> <li>• 성소수자 문제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 그리고 이념 논쟁으로 변질된 사항 등으로 인해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함.</li> <li>• 추가 실제 이루어지는 내용 확인 필요.</li> <li>• 차별금지의 실효성 있는 집행 요망.</li> <li>•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필요.</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종과 성소수자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방안일 수 있음.</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종 및 성적지향 등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인종과 성적지향 등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음.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li> <li>• 어떠한 경우에도 남녀노소, 성적 취향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함. 국회의 입법이 필요함.</li> <li>• 편견에 의한 차별은 정보의 부족, 지식의 부족, 교육/훈련의 부족에서 기인함.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정보, 지식의 부족이 편견과 차별을 초래하고, 특히 학교 내 교사의 부적절한 대응은 피해 학생 뿐 아니라, 가해 학생과 학생 (청소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보수 기독교 단체와 정부 부처와, NGO들 간의 열린 토론회를 통해 서로 간의 의견과 신념의 차이를 좁혀가면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을 추진.</li> <li>• 정치적 편향을 가진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극복이 관건임. 성적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기독교단체의 반대 논리에 대해 사회적 이슈화하여 활동제한 필요.</li> <li>• 쟁점 부분을 제외하고 조속 제정 필요.</li> <li>•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일부 종교인의 반대로 계속 무산되어 왔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금지법 및 아동인권법 등의 신속 제정이 필요</li> <li>• 인식확대라는 두루뭉술한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꼭 입법 하여야 함.</li> <li>• 혐오표현 및 증오범죄에 대한 교육 강화 언론과 대중매체에서 많이 유포되는 편견과 차별의 표현 모니터링 강화</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금지법 제정</li> </ul>

전체연번 28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외계층 및 사회적 배려 대상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국가차원의 조치가 종합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교육부 관련 조치가 있어 왔으나 이를 다른 부처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책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국가행동계획 혹은 정책기본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함.</li> <li>•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관련한 사항도 여전히 아직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사항임.</li> <li>•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사업을 비롯한 다문화 가족정책으로 소관부처라고 생각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모두 이주노동자이거나 한국 국적자가 아닐 경우에도 사회복지서비스(가정위탁서비스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사회적 편견과 차별 종식을 위한 문화구축.</li> <li>• 사회적약자 아동에 대한 인권보장 가이드 개발 및 홍보 필요.</li> <li>• 권고사항을 두 가지로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주아동 문제는 법 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현행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음, 취약계층 아동</li> </ul>

	<p>관련해서는 일부 해프닝성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식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페인(가령 초기에 했던 살색 크레파스 안 쓰기)에만 그치지 말고, 체계적인 차별주의에 대한 교육이 교육 내용에 포함돼야 함.</li> <li>•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아동권리 감수성 훈련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기본법의 제정 필요</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관련법령, 서비스지원체계 검토 분석</li> <li>•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분야 포함</li> </ul>

<b>전체연번 29</b>	<b>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하여 미혼모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b>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청소년에 대한 유엔차원의 강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을 주지하고 하루 빨리 미혼모 청소년 대상 관련 지원을 구체적으로 수립, 실시할 것을 제안.</li> <li>• 미혼모 자체에 대한 대책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예방적 조치 등이 미흡함. 특히 교육부의 노력이 필요함.</li> <li>• 재정적 부담이 적은 것부터 시행하고 점차 지원확대 요망.</li> <li>• 직접 기관에서 일하는 전문가로부터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잘 되어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들었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모 이전에 예방교육에 충분한 역량,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임. 사전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사항에 대해 결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당분간 미혼모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성 문제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함.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서 금기 시 되어 있는 상황임.</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역량 강화 필요. 당사자를 지지하는 NGO 활동 증진. 국가의 지원체계와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li> <li>• NGO 의견을 적극 수용할 필요</li> <li>• 출산과 양육이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교육의 강화, 미혼모를 낙인찍지 않고 아동과 여성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 하지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처우와 보장의 내용이 미흡하면 교육 내용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li> <li>• 양육비, 주택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함.</li> <li>• 모든 것은 정책적 의지라는 생각이 듦.</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핫라인에서 위기임신 관련 상담 및 연계 체계 마련이 더 시급한 과제임. 핫라인 개설 시 비용대비 효과성 의문.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아동보호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의거하여 청소년 미혼모 관련 지원 과제 마련될 필요가 있음.</li> <li>• 청소년에 출산에 대한 임신단계부터의 확실한 지원과 본인이 원한다면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지원 필요 - 입법 필요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전체연번 30	아동의 가정 내 및 교육제도 하에서 아동의 자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아동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및 사회복지요원이 지원되도록 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자살률을 현재의 기준에서 OECD 평균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모색해야 함. 중복의 생명존중에 대한 조례처럼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제정과 그에 따른 실천적인 다양한 행동계획을 수립, 실시해야 함.</li> <li>• 여성가족부 소관 부처 추가.</li> <li>•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씻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을 위해 조속한 조치 필요</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론 심리상담도 필요하지만 학업중단 평가 및 여러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심리상담 접근 보다 때로는 활동을 통한 자연스러운 사회성 향상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때가 많았음. 상담 및 진단검사도 아이들이 이제는 너무 많이 해서 지겹다고 하고 중,고등학교 입학초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치료적, 병리적 접근보다 상담도 비형식적, 아웃리치, 포괄적(교사, 부모 포함) 상담 접근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음. 여러 지역 교육기관 및 청소년 기관을 연계하는 허브역할을 하는 교육복지센터의 전국적 확대도 필요함(교육청 담당).</li> <li>• 그동안의 사업성과에 대한 점검을 우선해야 함.</li> <li>• 예산 확대 및 프로그램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 기관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이 오히려 문제임. 무작정 예산 늘리기/활성화가 아님.</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게는 꾸준히 자기 편이 되어서 이야기 해 주고 받아주는 상담심리사나 사회복지사의 영향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학교나 지역에 전문가를 상주 시키는 것은 꼭 필요하고 이것은 각 부처가 통합 운영하여 중복을 피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li> <li>•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하여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수와 부포도가 수도 권지역과 지방에 적절히 설치되어야 할 것임.</li> <li>• 경쟁적 사회구조와 회복적 사회시스템 부재라는 사회구조적 접근도 필요.</li> <li>• 교육부, 복지부 이외에 여성가족부도 포함하여 통합 추진될 필요.</li> <li>• 심리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됨. 세상은 그대로 두고 내면의 세계를 바꾸면 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자살 요인이 되는 폭력, 가난, 질병, 차별 등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함</li> <li>• 시도별 정신보건센터가 있으나 인력이나 예산 등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에서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 관련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개선안 마련 필요.</li> <li>• 분절된 아동 청소년 심리 상담서비스체계의 통합 종합하여 한곳에 가면 아동청소년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 상담의 실질화(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자의 경우 교육이나 상담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직접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어야 할 것.)</li> <li>•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 지원체계 시급히 마련해야 함.(전문상담소가 전국에 한 곳도 없음. 사이버아웃리치 등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ul>

전체연번 31	<p>법률·행정·사법절차·정책·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 최상의 최우선 원칙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p> <p>- 모든 사법·행정 결정의 법적 추론도 이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함</p>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정책에 있어 아동 청소년을 최우선으로 두도록 하고 이의 이니셔티브를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간협력차원에서 가져가도록 해야 함</li> <li>• 행정부 내 부처들(특히 교육부, 기재부 등)의 인식이 매우 낮은 상황임. 그 외에 지자체도 필요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위층에서 부터 이런 주제를 천명하게 하여 이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법률, 행정, 사법절차,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음. 일반논평 14번에 대한 연구 및 해외 사례 연구 필요.</li> <li>• 법무부는 소년원, 교정원, 보호관찰 관련 아동 청소년 보호공무원들에게 아동·청소년 인권교육/훈련을 통하여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함. 이러한 교육/훈련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시행되어야 할 사업임.</li> <li>• 권고가 구체적이지 못함.</li> <li>• 관련 개별 법률에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선언적인 문구로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 검토</li> <li>• 법집행공무원 등의 양성과정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필수화되어야 함. 알지도 못하면서 업무수행에서 아동권리 최상의 원칙을 지킬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li> <li>• 1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참여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신설되고 있으나, 아동 관련 모든 분야에서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나아가 13세 이상의 아동 외에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연령별 성숙도에 맞는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 제4장(부모와 자) 제3절(친권)에 “아동의 권리” 명시</li> <li>•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포함시켜야 함.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선번호인 의무, 법률, 사법기관에서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및 성매수자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 통계 발표 의무화</li> </ul>

전체연번 32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언적으로라도 이 권고사항은 중기과제로 포함시켜야 하며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라도 갖고 가서 꼭 실현해야 함.</li> <li>• 좀 더 권고사항에 충실하여 체계성을 가지고 업무 추진해야 함. 여성가족부 소관부처 추가되어야 함.</li> <li>• 선언적 규정을 넘어선 실효성 담보가 필요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아동청소년의 청원권과 청문권 보장.</li> <li>• 초중등 학생회와 분리된 별도 청소년모임의 참여는 참여의 형식화 할 뿐임. 전국 및 시도별 학생회 조직화 지원 등을 통한 학생의 참여기회 제도화 필요.</li> <li>• 아동의 적극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li> <li>• 학생인권조례와 배치되는 교육부의 조치부터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해야 함.</li> <li>•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아동총회 등 관련 사업의 운영상 법적 근거 등을 정비하고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참여활동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li> <li>• 아동의견 청취, 아동견해 존중을 위한 법 조항들은 마련되었으나 사회분위기 전반적으로 아동의 의사존중 문화 확산 및 아동청소년 관련 종사자들이 아동의 의사를 경청하는 자세와 절차 등 세부적인 교육이 필요함.</li> <li>• 앞 문항과 동일.</li> <li>• 인권기반 문화조성이 우선되면 좋을 듯. 공익광고 등.</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제12조 아동견해 존중에서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모두 고려하라고 하였으므로 특별히 연령기준을 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li> <li>• 모든 아동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진술을 반영하는 체계 마련 필요. 특별히 13세 미만아동에게 한정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음</li> <li>• 아동의 성장 정도 및 특성에 맞는 진술권 보장이 필요</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과 성숙도를 모두 고려하여 전문가에 의한 지원제도 마련) : 13세 미만 아동의 진술권 보장</li> <li>• 청소년보호법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법률 개정(예: 제37조의8(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li> <li>• 과제 2.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조치 시, 아동과 원가족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li> </ul>

전체연번 33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동 청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 등 조치를 취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장면에서의 청소년자치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현재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상으로도 근거 마련).</li> <li>•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li> <li>• 지자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전국적 규모는 아니며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청소년인권조례로 향후 변경되어야 할 것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필요</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 과정과 사법 절차 등에서 청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필요. 학교 학칙 개정 및 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일부 학교에만 적용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및 학칙 개정에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해야 함.</li> <li>• 2006년 9월에 발표된 유엔아동폭력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학교에서의 모든 징계, 체벌 등은 금지하도록 하며, 아동에게 가하는 폭력, 징계, 체벌, 학대는 긍정적, 비폭력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국제적 기준을 지키도록 권고한 내용을 숙지해야 함. "아동청소년에게 가하는 어떤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는 것과, 모든 폭력은 예방되어야 한다." 는 기준을 지켜야 함.</li> <li>• 아동의 청문권이 보장되는 구체적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소개할 필요가 있음. 원칙적으로 알고 있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면, 문제발생시 대처할 수가 없음.</li> <li>• 앞 문항과 동일.</li> </ul>
NGO (기관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되지 않을 경우 공식적, 효과적인 구제수단 마련</li> <li>•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학칙 개정</li> </ul>

전체연번 34	부모, 교육자, 정부, 사법부 등에 아동의 청문권과 아동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어도 예비교사 양성과정(사범대, 교육대, 일반대학 교직과정)에 아동권리에 대한 교과를 필수교과로 지정한다면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li> <li>• 가정 내 부모들의 인식, 영유아 교육기관, 각급 교육기관에서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li> <li>• 많은 진전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한 영역.</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교육자, 정부, 사법부 등 다양한 직업집단별로 맞춤형 자료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의무교육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임.</li> <li>• 늘 제시되는 정책과제, 그러나 늘 밀리게 되는 홍보 예산, 아동 참여권이 아닌 아동, 청</li> </ul>

	<p>소년 참여권으로의 명칭 변경 필요, 매년 아동청소년의 어떤 한 영역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 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통해 최소 하나만이라도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에 대한 모색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짐.</p>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권 즉 아동의 청원권과 청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수이며, 아동인권교육과정이 필수 이행 될 수 있도록 법률조항을 신설하고 제도적으로 의무화 할 필요.</li> <li>• 해당 부처가 권고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임. 권고내용에 대한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할 듯.</li> <li>•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li> <li>• 학교의 징계에 대한 규율을 공유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음. 학교들이 이에 대한 절차와 규정 등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참여권 관련 교육 및 자료개발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문임. 아동권리교육 또는 인권교육 과정에 아동의 참여권 관련 내용을 꼭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li> <li>• 아동 당사자와 교사 등 아동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번 교사 등 대상 인권교육에 관련내용 포함</li> </ul>

<b>전체연번 35</b>	<p>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p>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투자수익률을 포함하여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이 아동의 성장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장기 연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li> <li>• 아동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li> <li>•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고</li> <li>• 아동총회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 및 실시가 요구되어짐.</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의 견해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기본계획 수립 후 아동용 기본계획 자료 작성은 순서에 맞지 않음. 아동용 초안 작성 배포 후 아동의 의견 반영하여 기본계획 최종안 확정 필요. 추후 기본계획 수립에 이와 같은 절차 마련 필요.</li> <li>• 각급학교 학생회와 분리되어 아동청소년 참여를 형식화하고 이력관리용 아동총회 폐지 필요. 각급 학교 학생회를 바탕으로 한 전국총학생회 구성을 통한 학생참여 제도화 필요</li> <li>•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임</li> <li>• 아동의 의견은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적 정치에서 무시됨. 아동이 직접, 또는 아동 관련종사자를 통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행사성이 아니라) 정기적인 형태로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함. 정기적인 설문조사나 토론회 등.</li> <li>• 아동영향평가를 2019년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li> <li>• 일회성 행사, 또는 형식적인 수준이라 늘 안타까움.</li> </ul>
NGO (기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전체연번 36	아동의 청문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09년)를 고려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서 기술한 것과 중복될 것으로 보여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함.</li> <li>• 중고등학생에게 학칙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 대안학교도 포함, 향후 학생 뿐 아니라 청소년으로 확대.</li> <li>•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으나 아직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항.</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로 TV프로그램에 이런 것이 한 코너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떨지 생각해 봄.</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규칙 제정에 대한 학생참여 보장.</li> <li>• 청문권 보장이 안 된 사례(보고된 사례)에 대한 추적 조사.</li> <li>• 입양 및 파양, 후견인 지정과 철회, 보호조치 결정 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법은 개정 되었으나 어느 수준에서 아동의 의견에 비중을 두어야 할 지 실무자들 대상의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li> <li>• 15세 또는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연령의 성숙도에 맞는 청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자료로 따로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아동권리교육 또는 인권교육 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li> </ul>
NGO (기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전체연번 37	협약 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모의 법적 지위 및 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 되도록 조치하고,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명시되도록 보장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가족 아동은 물론이고 난민 등에 관련된 법적 지위가 아동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출생부터 성장과정에 이르기까지 생애발달 전반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면밀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음.</li> <li>• 출생 신고제도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임. 법령 정비 필요함.</li> <li>•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난민배경 미등록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사실상 무국적의 상태에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또한 그러한 상태로 현재 교육공백기 문제를 겪고 있음. 행정 절차가 좀 더 간소해져야 할 필요 있음.</li> <li>• 출생신고에 따른 생물학적 부모 명시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함.</li> <li>• 다문화 사회를 맞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에게 매우 적절한 과제</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이 즉시 등록이 되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마련을 위한 연</li> </ul>

	<p>구 필요. 이주배경 아동 및 난민 아동 등 출생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필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마련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출생한 아동에 대한 자료를 병원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과 이주아동을 국적과 별개로 등록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은 선택권이 없는 생물학적 부모의 명시는 아동의 인권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 것인지.</li> <li>• 당사국의 관할 구역 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제(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도입으로 한국 내 한국국적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 될 자격 갖추.</li> <li>•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무국적신분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함.</li> <li>• 출생등록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아동의 친생부모 알권리가 지켜질 것임.</li> <li>• 임의 신고제도가 아닌, 자동출생등록제도의 도입 즉각 필요 현행제도를 유지하며 병, 의원의 출생사실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안임, 난민의 경우에도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체류자의 자녀의 경우에도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함.</li> <li>•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국적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없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제도 필요.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국적을 부모의 국적이나 우리나라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 최소한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입법 필요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전체연번 38**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협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모든 경우에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도록 조치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학재단의 탈종교, 종교중립을 가능케 하는 법규와 문화적 규범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 답변처럼 교육과정의 문제가 아님.</li> <li>• 학교가 실제로 권고를 지키지 않지만 방임된 상태임.</li> <li>• 교육부 내 해당 소관 부서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혹은 추진 계획 중에 있는 구체적인 정책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정부는 종교 강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li> <li>• 종교의 강요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도 가능,</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육의 종교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종교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과목 마련 필요. 입학 후 일정 기간 내 전학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독교 + 사립학교 결합의 반대 목소리가 매우 클 듯.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후 추진 필요.</li> <li>• 정부 지침으로 조속 해결 가능할 것으로 봄</li> <li>• 한국의 교육여건상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이 많음. 종교재단이 특정종교를 선택한 학생만 받는 것이 아님에도 종교재단이란 이유로 종교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므로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야 함. 종교재단의 자율성을 더 우위에 놓는 접근은 아동인권에 대한 침해임. 종교교육을 강요하는 교육시설에 대한 당국의 감독과 제재가 요구됨.</li> <li>• 몇몇 종교에 기반한 학교에서 종교교육시간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교실에 남아 있을 것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선택할 자유도 허용하여야 함. 종교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근거리 원칙의 학교배정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로 인한 차별 발견 시 강력한 처벌조항 신설 필요</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b>전체연번 39</b>	<b>식단 등 특정종교의 구체적 요구사항 및 제약을 고려하고 배려하도록 조치할 것</b>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이 실현되면서 개별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문화가 요구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식단메뉴 등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음. 점차 이런 문제의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여러 사례조차 발굴, 수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li> <li>• 극히 일부의 사항으로 판단함. 국내에서 여러 종교가 혼재하지만 별 다른 갈등없이 공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매우 모범적인 국가일 수 있음.</li> <li>• 일단 전수실태조사라도 이뤄져야 할 것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 과제라고 생각함.</li> <li>• 무상급식/강제급식의 타당성도 아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다양성은 아직 요원. 강제급식 자체에 대한 아동권리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 있음.</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부처 구체적 가이드 마련토록 할 것.</li> <li>• 현실적 어려움 인정 필요.</li> <li>• 채식주의의 선택도 학생의 고유한 인권임. 급식은 무조건 다 먹어야 한다는 식의 교육은 지양돼야 함. 또 종교에 따른 선택 등을 '유별나게 군다'고 취급하는 문화도 문제임. 그것이 권리임을 인식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유별나서 따로 해주는게 아니라 권리이므로 그렇게 한다는 교육과 더불어 별도의 메뉴 마련 등.</li> <li>• 외국인 백만명 거주시에 맞추어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식사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교급식 제공 시 고려하여야 할 것임.</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전체연번 40	법률·교육부 발행지침·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	---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아동 및 청소년의 범주로 확대하기까지는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고정관념이 많음. 따라서 법적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인식전환의 문제로 삼아 실천의제로 구안해야 함.</li> <li>• 정치적, 이념적 접근이 아닌(특히 선거권 연령 등), 중립적 입장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내지 신설이 필요할 수 있음.</li> <li>•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li> <li>• 반드시 실시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어짐.</li> <li>• 아동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시행 안하게 되면 조례상의 제제는 무엇인지, 혹은 학교생활규정으로의 학교자율권으로만 한정되는 것인지, 교육부에서의 방침은 어떠한지, 부처간 협의는 가능한 부분인지, 교사 및 학교의 반발 등은 어떠한지에 대한 보다 심층, 면밀한 사례 및 실태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li> <li>•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제도화가 필요함. 현재도 형식상으로는 존재함.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언제,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중요함. 그리고 그 답변의 결과가 어떠한 지 모니터링 하는 제도가 필요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자치활동(학급회의,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확대 필요. 대부분의 학교 학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와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li> <li>•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아이들의 사상, 양심, 정치 등에 대한 자유를 확실히 지켜 주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만 함.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는 것이 시급함.</li> <li>• 관련 부처의 의지가 중요함. 아동의 정치참여에 대한 공무원 및 교사의 인식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함.</li> <li>• 정치 활용 참여 자유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생각되나, 표현의 자유 부분은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사례를 적극 파악하여 제시할 필요).</li> <li>• 교칙 등의 개정은 당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권리의 행사를 이유로 처벌, 제재 받은 사례들에 대한 추적조사와 조치가 필요함.</li> <li>• 대입위주의 경쟁적인 교육제도 하에서 학생의 정치적인 집회 및 참여 기회는 요원할 것임.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의 의사표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급회의부터 부활되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하여 학생 전체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할 것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하면 국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근거가 이를 우선 수정하여야 할 것임.</li> <li>• 단순한 자치 활동이 아니라 권리로서 정치활동과 학내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li> </ul>

	<p>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모든교육과정에 학생참여 명문화. 투표권 만16세로 낮추는 것 필요</li> <li>• 공식 기구만이 아니라 비공식 자발적 모임 지원 활성화. 다양성 촉진</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결사집회의 자유 침해하는 교칙 개정(대자보 사건), 교육부 지침 재검토(예: 도서관 도서검열 지침)</li> <li>• 침해 시 공식적, 효과적인 구제수단 마련</li> </ul>

전체연번 41	가정·학교·기타기관에서 체벌을 전면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할 것
---------	---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벌이 허용되는 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되거나 실현되기는 쉽지 않으나 최근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고, 변화되고 있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학교 체벌의 경우, 여전히 학대 및 폭력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정서학대나 방임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함.</li> <li>•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적 증설도 중요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력보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력을 충원하여 증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와 동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성학대 개입을 위한 해바라기센터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li> <li>•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같이 추구해야 관련 법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훈육으로 생각하는 사회인식이 매우 강한 현 상황에서 학교체벌만 규제해도 효과가 미흡함. 가정 내 폭력도 같이 규제해야 아동에 대한 폭력이 감소할 수 있음.</li> <li>• 모든 유형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함.</li> <li>• 아동에 대한 학교 내 폭력은 제도의 개선과 다수 진보교육감의 혁신적인 교육철학으로 인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사법기관의 낮은 형량으로 인해 아직까지 사회적 관심에 비해서는 법조계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임-사법기관의 아동성폭력에 대한 환기 필요.</li> <li>• 2015년 아동학대법 개정으로 가정 내에서도 체벌 금지가 명문화 됨.</li> <li>• 장기과제라고 생각됨.</li> <li>• 아동학대 및 처벌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확대되었지만 가정, 학교 내의 양육자 내지 교사들의 인식 및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이나 구체적인 행동강령이나 기준이 미흡함. 어디까지 체벌이고 학대인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어떤 행위가 체벌인지 사랑의 매인지에 대한 공방으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행동기준이 제시되어 가정, 학교의 훈육지침으로 생활에서 적용함이 필요.</li> <li>• 교육부는 학교와 교사의 권익 보호를 우선하고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함. 체벌에 대한 정의뿐 아니라, 체벌 교사에 대한 징계 부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li> <li>• 현재의 학대예방은 '학대금지의 홍보'에 치중하는 경향 있음. 학대예방은 학교, 가정 등에서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올바른 훈육방식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실천될 필요가 있음. (소관: 교육부, 여가부) -가정 내 체벌(학대)에 대한 접</li> </ul>
--------	--

	<p>근은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부모체벌이라는 형사적 접근에서 하기보다, 복지적 접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벌피해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li> <li>• 학교 등 기관 내 폭력은 해당법률의 엄격한 적용으로 조기에 정착할 것으로 보이나, 빈곤가정, 결손가정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폭력, 성폭력 등 사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폭력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신고, 조사 등은 아동보호단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소관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추가되어야 함.</li> <li>• 학교에서의 체벌문화 해결.</li> <li>• 체벌의 개념과 형태에 대해서 학교당국과 엔지오 활동가들 간에 인식의 차이가 크다. 현 상황에서는 명백한 신체적 체벌을 최우선으로 금지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된 후에 &lt;기합&gt;과 같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도 금지하는 것으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듯 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학대 조사 병행 필요</li> <li>• 아동관련 시설 학대행위 신고 시부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 필요</li> <li>• 체벌 전면금지 법규정의 위반에 대한 조치 필요. 단, 간접체벌은 훈육과 학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힘든 경우도 많으므로, 체벌행위자인 교사 등에 대한 엄벌주의보다는 학생들의 체벌 의심 신고에 대한 학교차원, 지역사회차원, 정부차원의 심의기구가 필요할 것임.</li> <li>• 가정 내 체벌 금지도 포함되어야 함</li> <li>•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으나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양육 및 지도 방법을 개발하고, 교육하기 위한 메뉴얼 등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음.</li> <li>• 체벌금지에 관한 법이 학교, 시설 뿐 아니라 일반가정에서 기본적으로 부모 및 양육자들이 학대 및 방임하지 않도록 기준설정이 필요함.</li> </ul>
<p>현장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에는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이 있으나 실제 기정이나 사회 교육현장에서는 인권개선이 되고 있지 않음. 대표적으로 각 시도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를 증명하고 있음. 법과 함께 우리사회 전반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뿐 아니라 조례나 규칙에 구체적인 인권 지표를 만들어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li> <li>• 유엔아동권리 헌장이 최근에 아동 권리의 지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봄. 하지만, 대국민 홍보는 아동학대사례 발견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계몽되어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함. 국가는 지속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아동을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li> <li>• 가정 및 대안 양육 시설에서의 체벌, 폭력의 문제 관련,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로 추가되어야 할 것임.</li> <li>• 여전히 가정 내 체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관심이 적음.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인식개선 및 법률적 강제를 해야 함.</li> <li>• 가정 내 체벌, 학대, 폭력에 대한 대처 미흡.</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체벌과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함</li> <li>• 양육시설과 가정위탁의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가 매우 필요</li> <li>• 만약 시설들에서 폭력이나 체벌이 이루어질 경우 강력한 처벌조항 신설</li> <li>• 권고내용은 가정, 학교, 기타기관에서의 체벌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인데, 가정 내 체벌금지가 과제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가정 내 체벌이 전면 금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중요 과제로 추가되어야 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중요. 아동복지법 제5조에 부합하도록 개정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함.</li> <li>• 과제 2. 관련, 이들 기관은 학교와 달리 원칙적으로 징계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체벌금지 조항이 징계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이를 명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오히려 아동복지법 제5조 정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li> <li>• 정신적 학대 포함/ 사교육 학원에서의 학대 사례 연구/ 벌점제는 대안이 되기 어려움. 벌점제에 대한 연구와 함께 대안적 훈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li> <li>• 과제 3. 가정 내 체벌의 전면금지를 위해 민법의 친권자의 징계권(제915조) 폐지</li> <li>• 과제 3.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 보호필요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벌을 전면금지하고 긍정적인 훈육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대리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li> </ul>

<b>전체연번 42</b>	<b>체벌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해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 실시</b>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벌을 금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체벌 대신 아동을 적절하게 훈육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여러 노력이 필요할 것임. 이를 통해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고 교육현장에서 아동을 존중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훈육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임.</li> <li>•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가 일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지속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를 해야 함.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브로셔 등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사료됨.</li> <li>•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기관(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은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지만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아직까지 미비한 수준임. 아동보육시설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아동복지시설 학대에 따른 사후조치와 함께 사전 예방적 조치 강구 필요</li> <li>•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므로 장기과제로 보임.</li> <li>•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에 대한 접근은 잘되고 있으나 일반적 대상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아직도 지엽적임. 전국방송이나 매체를 통한 일반시민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초·중고, 대학 등 각급 학교 내용으로 포함하는 노력도 필요.</li> <li>• 어린이집 등의 아동학대 문제가 부각되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으나,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는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음.</li> </ul>

- 아동의 집단보호 및 양육과정에서 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교재배포 이외에 관련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 교육을 실시(소관: 복지부)
- 아동학대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소관사항 아니라는 답변은 부적절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부모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는 혼인신고서 제출시에 "사이버 부모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함.
- 연중지속 캠페인 필요
- 이러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동학대를 가장 많이 하는 부모에 대한 밀착된 홍보와 교육이 절실함.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 부모교육 인프라 조사
- <적절한 훈육에 대한 교육 강화> 체벌이 불법행위라는 홍보보다 긍정적 훈육의 효과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비중이 더 많을 필요가 있음. 단순 홍보보다는 학교나 시설 등 집단을 통솔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엄격한 훈육 포함)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교육할 필요 있음. 자칫 체벌금지의 강화가 훈육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영국의 경우 공익광고를 통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아동학대가 홍보되고 있음.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 저명인사(전직 대통령 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등)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광고 빈도가 매우 낮다고 생각함. 영국의 경우 드라마를 통해서 또는 기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예방, 신고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숙지하도록 하고 있음. 생애주기적 부모교육 의무화제도는 바람직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맞벌이 부모의 경우 부모교육 의무화제도는 부담감이 높음. 지역사회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전국민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사료됨.
- 부모에 대한 시기별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과 가정방문교육을 연계하여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 체벌의 구체적인 행위 및 기준이 제시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교육으로 긍정적훈육방법이 제시되면 좋을 듯함.

현장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

- 학대와 관련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개선의 의지는 보이나 이를 실행 할 수 있는 전문가, 예산확보에는 아직 미흡함.
- 폭력에 대한 사건은 경찰청의 개입으로 사례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봄. 그리고 2015년 9월에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은 1-2년간 모니터링 후에 학대에 대한 한국의 상황진단이 필요하다고 봄.
- 소관부처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추가 필요. 체벌근절을 위해서는 교사와 가정을 대상으로 체벌금지를 위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함.
- 장애아동에 대한 막연한 동정과 왜곡된 관심의 표현도 신체적 체벌 못지않게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이 또한 학대로 볼 수 있음. 체벌 및 아동학대 관련 캠페인에 장애관련 내용도 포함하는 방법의 연구 필요.
- 복지부 뿐 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특히 다문화 가정 내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 탈북청소년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 등 아동·청소년 관련부처에서도 아동학대에 관련하여 범부처

	<p>연대하여 진행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전반적인 인식 제고 및 홍보 노력 부족, 보육료 지급 시 양육 방식 등에 대한 상담과 조사 등을 의무화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 필요.</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신고 이전에 부모교육, 부부교육을 필수시간 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그리고 아동 발달단계에 따라 미취학, 초등저학령기, 초등고학령기, 청소년기 마다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인프라가 확산되고 각부서(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협력으로 확산되어야 학부모의 분노조절능력, 아동들의 분노조절능력에 기여하는 부부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li> <li>•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아동인권존중), 차별의 부정적 영향, 긍정적인 훈육방법 등을 대중에게 잘 알리는 홍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과제1이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효과성을 파악하고, 보다 적절한 대중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함. 스웨덴의 경우, 매일 마시는 우유팩에 차별금지를 알림으로써, 온 가족이 식탁에서 아동인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누구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음.</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전체연번 43	<p>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및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며,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p>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경우, 여전히 체벌문화가 남아 있어 학생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대체 교육방법이 조기에 개발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li> <li>• 교육현장에는 아동들에 대해 아직까지는 존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아동이 체벌을 신고하도록 하는 권고안의 실현에는 많은 저항이 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함. 이를 아동이 교사를 신고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아동옴부즈맨제도 등의 활성화를 통해 아동권리를 증진하고 아동과 교사 혹은 학교와의 관계를 중재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li> <li>•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자, 피해자 낙인효과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 그린마일리지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 보고되고 있음. 학교폭력은 학교가 전체적으로 상호존중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감수성을 높이면 감소할 수 있는 현상임. 가해자와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사후대처식 대응방안은 한계가 있음.</li> <li>• 학교체벌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 필요, 체벌피해아동의 구제는 현행 학교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명확한 법적 장치의 마련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li> <li>•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적 상황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제도를 입시나 기타 점수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li> <li>• 제도적으로는 권고사항에 대한 접근은 하고 있지만 학교행정의 보수성으로 문화를 바꾸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봄.</li> <li>• '주체선생, 객체학생'으로 접근하는 훈육에 대한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학생 자치법정에서 제재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방안을 적극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이 교육당국을 불신하고 있어서 피해학생이 피해를 호소하는 창구를 마련해도 실효성</li> </ul>

	<p>이 없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양육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체벌에 대하여, 피해아동이 직접 경찰에 신고 하기에 앞서, 1차 신고 및 상담/논의를 할 수 있는 조직 내, 지역사회 내의 기구(학생인권담당 부서)를 만들 필요 있음. 특히 긴급한 폭력사태가 아닌 경우, 이러한 사례 논의를 통해 인권의식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li> <li>• 현행 교육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초, 중, 고 연령등 급별로 체계화하여 2015년부터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의 교육 소프트웨어로 적극 활용함이 필요함. 학생자치법정 등을 청소년자신의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또래간의 인권 존중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기본임.</li> <li>• 정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li> <li>•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화해접근 등이 필요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충분함</li> <li>• 신고는 체벌을 순간 멈추게 할 수는 있으나, 긍정적 훈육방안을 체득하게 하는 것은 아님. 무분별한 신고는 학생과 교사 간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사례가 아닌 경우, 신고위주의 대처보다는 학교 자체내의 전담위원회(예:교사/학생/부모 포함)를 들어 심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li> <li>• 대안적 훈육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의문임. 아동양육은 어른들의 관심과 보호가 우선이고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아동을 폭력적으로 대할 수 없다고 생각함. 학교체벌 신고시스템이 악용될 수 있음. 교사가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아동권리인식을 형성하면 체벌을 할 수 없음.</li> <li>• 학생이 체감하는 학생 중심의 훈육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li> <li>• 신고시스템 보다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의 옴부즈맨제도의 활성화방안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li> <li>• 신고시스템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운영되도록 외부전문가 포함.</li> </ul> <p>현장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과 학대는 범국민적으로 분노조절에 대한 프로그램 및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물론 범죄로서 다루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임. 한국의 청소년의 상황은 폭력과 학대 외에 공부 스트레스로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 삶의 질 최하위, 행복지수 최하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봄.</li> <li>• 보건복지부 추가 필요. 개정 아동복지법(2015.3)에 따르면 보호자의 책무사항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학교 내에서 발생한 체벌 사건도 112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아동학대로 다뤄질 수 있음.</li> <li>• 학교체벌은 학교 내 체벌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노력이 빠져있음. 추가 필요하며 체벌이라는 것이 정서적체벌도 심각함. 학교 내에서 아동차별의 실태도 체벌의 넓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li> <li>• 가해 아동의 자발적인 변화를 위한 지속적 상담 및 피해 아동의 보호/상담 노력 부족. 근본적인 해결책의 제시보다는 구태의연한 상벌제에 의존.</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시스템 강화와 체벌의 약화와의 상관관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조정과 타협, 절차</li> </ul>
--	---

	<p>없이 신고에 대한 교육이 학습될 경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조정과 타협, 절차 없이 바로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경향을 가질 수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들의 인권영역, 학생들의 인권영역의 균형점을 찾으면서 훈육과 학대, 폭력의 점점을 찾아야 한다고 봄.</li> <li>• 학생들이 체벌에 대한 토론이나 토의를 통해 직접적인 규정, 규칙 만들기</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전체연번 44	<p>아동학대 신고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할 법적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p>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의무자의 의무 및 체벌을 강화되었으나 실제로 신고자의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시스템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li> <li>• 신고의무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신고의무자 고지와 교육에 대한 노력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며, 신고의무자 보호에 대한 고민과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함.</li> <li>• 아동학대는 신속하게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보호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해서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확대해야 함.</li> <li>•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보호 직업에 대한 신고의무제는 사후조치의 성격이 강함, 따라서 학대의심행위의 노출이 나타나는 지역사회에서의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li> <li>• 신고자에 대한 법적의무는 강화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비밀보장 및 안전은 여전히 보장되기 어려움.</li> <li>• 지역별 기관설치와 운영예산 확보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대사망사건에 의한 일시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좀 더 전국적인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국가적인 대응과 철학이 필요함. 과제 수행기간이 점진적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li> <li>• 법적 개선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도는 기대하기 어려움.</li> <li>• 비밀보장의 원칙은 신고자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학대부모 등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설사 학대행위자라 하더라도 그 가족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자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 있음.</li> <li>• 사회복지사, 상담사, 의사, 간호사 등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 구비서류에 ‘사이버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증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법률개정 및 현황 등을 관계자대상으로 교육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비함.</li> <li>•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li> <li>•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종사자 &lt;보수교육&gt; 등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좋겠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양성교육 과정에 폭력 및 학대 예방교육이 포함되어야 함.</li> <li>• &lt;효과적인 교육내용과 방법&gt;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임. 내용에서는 종사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방법 소규모 집</li> </ul>

	<p>단으로 구성될 필요 있음. 지역, 시설 등 순회교육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의 익명성과 신변보호는 매우 중요함. 특히 종사자의 경우 기관장의 눈치를 봐야 할 수 있음. 종사자가 외부에 신고할 경우 종사자의 해고 등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함.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의무교육과 연수교육만으로 예방이 가능할 지 의문임. 학대행위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시설과 기관 운영을 개방하도록 해야 함.</li> <li>•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고의무자 규정의 지나친 강화는 아동청소년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신고의 양산을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를 보다 유연하고, 아동중심으로 할 수 있는 절차 또는 메뉴얼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신고가 아동에게 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임.</li> <li>• 신고자의 익명성에 대한 비밀엄수를 한다고 해도 신고자가 너무 뻘 할 경우 당연히 알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음. 따라서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체계 구축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li> <li>• 적극 동의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관련 사항은 2014년 9월 특별법 시행령으로 102년간 모니터링 후 진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봄.</li> <li>•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강화되었음.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단체 종사자 등 아동학대 의심자에 대한 스크리닝 체계 부족. 작년 국내 아동학대예방 중요단체 실무자의 아동학대 사례 발생 등.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부분 교육과 자질 부분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li> <li>• 이주민, 특히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호 시스템 전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 필요. 국민이더라도 지속적으로 특정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부족.</li> <li>• 아동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한 기관(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필요. 각 지자체 단위별로 설치 필요. 아동은 모든 이슈에 대해 이 기관에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리고 아동에게도 역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야 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 아동학대 교육 폭력 관련 의무교육 너무 형식적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일년에 한 번이며 년 5시간 정도임. 교육이 실제화 될 수 있도록 방안 고려되어야 함.</li> <li>• 아동관련 종사자들에게 신고자 의무교육 및 연수 등은 잘하고 있다고 봄.</li> <li>• 아동학대 신고 법적의무는 신고의무자 직군 모두에 해당하므로, 과제2는 맞지 않음. 정책과제.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고의식제고 활동이 필요함. 아동학대 신고 시 신고자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고,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된 사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소한 체벌도 학대라는 인식제고 필요. 이를 위해 사소한 체벌을 포함하여 학대가 되는 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 배포, 홍보가 필요함.</li> <li>• 교육, 홍보 대상은 부모 등 보호자, 지역사회, 수사기관까지 확장되어야 함.</li> <li>• 지역 서비스를 통해 난민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의무 참여 교육 받을 수 있게 안내 (난민 부모님이 아동의 올바른 훈육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국내에서 난민 아동들이 난민 부모들의 훈육 방법이 지나쳐서 아동들이 많은 폭력을 받고 있는 상황)</li> </ul>
--	--

전체연번 4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증설하고, 학대피해자를 위한 재활지원 등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
---------	--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의식의 변화는 쉽지 않은 과제이나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정책결정의 문제이므로 실현가능성이 높고, 빠른 시일 내에 적합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함.</li> <li>• 아동보호기관의 증설과 함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예산 부분은 아직 미미하며, 여전히 중앙과 지방의 매칭형식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점차 중앙정부 예산의 확대를 꾀해야 할 것임.</li> <li>•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국고로 환원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시한 바대로 중앙정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해 나가야 함.</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함.</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호전문기관의 법적 권한이 매우 제한적 이어서 아동학대 발생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 확충과 더해 전문인력의 확충도 필요함.</li> <li>• 아동보호사업을 지방이양사업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가능함. 지금은 범죄 피해자기금으로 진행되고 있어 예산의 안정성 낮음.</li> <li>• 특례법 제정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다수 증설되었고 긍정적으로 평가 됨. 피학대아동쉼터 증설도 수요에 따라 필요함.</li> <li>•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li> <li>• 피해아동의 재활이나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문서비스 인력이 증가되어야함. 특히 방임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인력이 증가되어야함.</li> <li>• 가정 내 학대인 경우, 학대피해아동의 재활과 가정복구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이 경험이 많은 경력자일 필요가 있음. 현재 이직이 잦은 기관의 종사자들이 연령대별로 20대인 경우, 아동 및 그 부모를 다루는데 제한이 많음.</li> <li>• 소관부처 재정보호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li> <li>• 아동학대의 개념을 가정 내 폭행으로 한정하여 보건복지부 정책테두리 안에서만 보고함. 하지만, 청소년성매매 및 성착취 등도 아동권리의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도 소관부처로 참여하여야 하고, 가출로 인한 여성청소년의 성학대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요구됨.</li> <li>• 정부의 강력한 의지 촉구</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생활권역별로 확대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생활가정의 확대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중복 사업이나, 대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li> <li>• &lt;보호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집단 구성&gt; 보호기관수가 증가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각 기관에 배치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음 (전문인력은 경험과 지식을 겸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력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문제임). 지역사회차원에서 권역별로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현재의 사례판정위원회를 기초로 권역별로 구성하여 활용 등) 전문성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li> <li>• 사회경제 계층에 따라 아동학대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인구비례에 따른 자원배정보다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예: 영세민, 임대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아동보호기관 등 확대해 나갈 것.</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시급하게 확대해야 함.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도 확대해서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야 함. 특히 성학대, 그중에서도 친족성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함.</li> <li>•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절대적인 수를 늘리는 노력이 물론 필요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학대를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메뉴얼 개발이 요구됨(현재는 단순 사례나 중한 사례를 모두 단일 메뉴얼로 접근하고 있음).</li> <li>•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쉼터나 공동생활가정보다는 전문가정위탁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li> </ul>
<p>현장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일정정도 늘려가고 있으나 여기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나 예산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li> <li>• 아동학대 특별법 시행으로 추후 1-2년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li> <li>• 인프라 확대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 특히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적, 재정 지원이 미흡함.</li> <li>• 아동보호기관에 장애아동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보호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종사자의 자질 및 종사자 수 확대를 위한 기획예산처의 노력,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li> <li>•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및 전문 인력 확충 노력,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등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공동생활가정 확대는 될 수 없음.</li> <li>• 아동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기보다,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부서)를 설치하고, 아동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옴부즈맨이나 독립적 기구를 마련해야 함.</li> <li>• 아동·청소년 쉼터에 거주하는 아동들에 대한 질적 서비스에 대한 지표와 담당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역량강화에 지원이 필요함.</li> <li>• 장애아동이나 이주아동도 학대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 과제2의 정책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되어 있으나, 장애아동이나 이주아동은 현실적으로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음. 학대피해아동 중에서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장애아동, 이</li> </ul>

	주아동을 과제명 내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NGO (기관 의견)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상담소, 쉼터, 그룹홈, 자활센터, 대안학교 설치, 전문가 배출 방안, 지원방안, 예산 마련</li> </ul>

<b>전체연번 46</b>	<b>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할 것</b>
----------------	---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벌에 익숙하고, 아동에 대한 인권 의식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아동 폭력에 대한 대처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li> <li>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을 분리했을 경우 이 아동이 긴급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전문 시설의 증원이 필요함.</li> <li>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음.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함.</li> <li>구제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함.</li> <li>부처별 아동학대 피해아동 뿐 아니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연도별 대책의 구체적 계획 필요.</li> <li>학교폭력을 교육부가, 아동학대를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으나,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문제는 여성가족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li> <li>아동에 대한 폭력의 가해자는 성인만이 아니라, 아동인 경우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아동 간의 폭력도 근절되어야 함. 어린시절의 또래집단 간의 폭력 경험은 학교폭력, 군대대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함. 따라서 아동이 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어린 시절부터 교육과 책임을 묻는 실천이 필요함.</li> <li>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의지 필요</li> <li>부모교육 상담 반드시 의무화해야 함.</li> <li>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안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처벌 관련법 준수 여부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특히 가정에서는 부모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이나 안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li> <li>〈아동 간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명시〉 성인에 의한 폭력 이외에 학교, 사회 등에서 아동이 폭력행위자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폭력을 행하지 않을 책임에 대한 아동대상의 교육과 캠페인을 명시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음.</li> <li>법의 이행수준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li> <li>처벌 관련법 준수 여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짐.</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 폭력과 학대는 근절되어야 함.</li> <li>폭력에 대한 사회의 용인정도, 성인의 폭력문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전략적 접근 필요함. 특히, 언론, 미디어, 문화 부분(폭력선정성 영화, 드라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효성 없는 정책.</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 준수 여부 모니터링 이 있다는 것도 일반 사람들 잘 모름. 저도 잘 모름. 인식캠페인 더욱 강화해야 함.</li> <li>•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및 폭력예방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은 지속적이고 강화되어 대국민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봄.</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을 개정하여 아동의 권리차원에서 인격을 훼손하는 징계를 받지 않을 권리를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부모의 의무이전에 아동의 권리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 교육에서도 효과적일 것). 또는 형법 사회상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li> <li>• 성매매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li> </ul>

전체연번 47	아동폭력보고서(A/61/299) 권고사항 이행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철폐를 우선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아동을 보다 존중하고 아동에 대한 체벌이나 폭력행사가 아동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대중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을 부모 개인의 소유물로 보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함.</li> <li>• 아동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폭력은 학교, 가정, 사회로 분리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감소될 수 있음.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선적으로 변해야 폭력도 감소될 수 있음. 우리사회는 여전히 아동은 어른의 부속물이고 어른들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음.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변화 정책을 펼치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li> <li>•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UN의 권고처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적 대응보다는 교육적 훈육도 강조되어야 함 학대피해자에 대한 대책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구 필요.</li> <li>• 물리적 폭력뿐 아닌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이 존재함.</li> <li>• 개별 정책 소관부서에서 자율 추진이 어려우므로 보다 구체적인 의무시행 방안이 필요함.</li> <li>• 구체적 지침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 실행할 수 있는 과제라고 봄.</li> <li>• 정부 주도의 정책체제에서 탈피해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함.</li> <li>•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기도 한 만큼, 폭력금지에 대한 관점이 어린 시절부터 정립될 필요가 있음. 본인이 당하는 폭력이 폭력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폭력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성장하는 것도 중요함. 이는 장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요하는 것임(소관: 교육부)</li> <li>• 학교의 폭력 해결 노력 강화 필요성.</li> <li>•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안이라서 단기간에 실현 가능성은 낮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는 정부는 제외하고 NGO 등 공정한 구성을 통해 진행할 것.</li> <li>• 정책평가는 방법에 따라 이행수준의 차이가 극과 극으로 나타날 수 있음.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사료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벌과 학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전통적인 관습에 의한 아동훈육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촘촘히 진행되어야 함. 아동과 관련된 모든 기관, 가정, 학교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권보호 지표가 마련되어야 함.</li> <li>• NGO 의견에 동의함.</li> <li>•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 및 추진은 교육부만 한정할 부분 아님. 안행부와 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모두 조사해야 할 것.</li> <li>•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낙인찍히는 문제 빈번히 발생.</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방향을 계속 평가해서 폭력대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아동폭력은 부모로 폭력이 대물림 되고 있음을 보게됨. 폭력 근절은 가정의 부모교육에 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이어서 아동도 양육발달단계에 따라 부모교육이 진행되고 폭력으로 양육을 다루어서는 안됨을 홍보해야 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포함</li> </ul>

<p>전체연번 48</p>	<p>다음의 내용을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개발</li> <li>-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금지하는 법 도입</li> <li>- 자료 수집, 분석, 보급 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 관련 연구</li> </ul>
<p>학계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의 노력이 진일보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하거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li> <li>•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전략 및 비전(목표 수립) 수립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짐.</li> <li>• 아동에 대한 어떠한 유형의 폭력도 허용될 수 없다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li> <li>• 아동종합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필요, 이에 기초하여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마련 필요.</li> <li>• 아동에 대한 폭력은 입시위주 교육,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 미약 등 우리사회 전반적인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맞물려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사라지기 어려울 것임</li> <li>• 간접체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소관 부처별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li> <li>• 자료 수집, 연구 등에 있어서 정부의 독선적 태도가 문제임.</li> <li>• 법/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중요함</li> <li>• 아동폭력에 관한 법체계는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나, 실제 현황 및 개선책을 폭력영역별로, 연령별로 구체화할 연구 및 서비스체계는 상당히 미흡함.</li> <li>• 법률개정 필요.</li> <li>• 살해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치명적인 학대나 폭력을 너무 가볍게 처벌하는 현재의 사법체계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함.</li> <li>• 모든 폭력의 근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이라서 실현 가능성은 낮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폭력에 대해 소개하거나 알리는 캠페인 필요.</li> <li>• 기존의 국가행동계획을 살펴보면 이미 충분히 수립되었음. 문제는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산이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임.</li> <li>• 각종 폭력 가해자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이의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역시 시급한 문제라 판단됨.</li> <li>• 국가행동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계획에 대한 실시 여부와 그 내실화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li> </ul>
<p>현장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는 아동을 위한 권리보장에 투자의 관점에서 적극적 지원해야 함.</li> <li>•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제정 등 진전이 있었으나, 피해 예방보다는 가해자 처벌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음. 가정과 학교 모두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행해지고 있어서,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제정이 시급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 후 경찰청의 신고조사에 대한 개입은 잘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2-3년간 추이를 지켜보고자 함.</li> <li>• 아동 청소년에게 행해지는 아주 작은 폭력도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선 시급한 것은 모든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등 인권, 폭력교육 필요. 교원임용시험시에 인권과 폭력에 대한 과목 신설.</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포함. 인터넷, 모바일등 사이버 대책 포함</li> <li>•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폭력에 대한 데이터가 발간될 필요가 있음.(현재 학대, 학교폭력 등 산발적인 통계만 존재함.) 이는 아동에 가해지는 모든 폭력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향후 아동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비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유용한 틀이 될 것임.</li> </ul>

전체연번 49	아동폭력에 관하여 UNICEF, UNOHCHR, WTO, ILO 등 관련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NGO에 대해 협력파트너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좀 더 NGO 활동을 지원하고 NGO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는 노력이 필요함.</li> <li>•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함.</li> <li>•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이 우선일 것.</li> <li>• NGO를 중요한 동반자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 시민단체의 중요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민단체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됨.</li> <li>• 관련 단체의 부족 및 운영인력 부족으로 정부와 협력관계에 있어서 적극적 활동여건이 미흡함.</li> <li>•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과 능력이 부족함.</li> <li>• 국가마다 고유한 문화 및 생활행태 등이 상이하므로 각국의 독자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국가 간 공조는 해외 성매매, 이주청소년 문제 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임.</li> <li>• 정부 의지가 약함</li> <li>• 여성가족부도 소관부처인 아동은 18세미만으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시한 청소년연령과 중복 ( 9-18 ) 따라서 청소년보호관련 정책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므로,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복지 관련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을 해나가야 함.</li> <li>• 지속적인 과제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NGO 중에는 정부와 유착하여 민간단체로서의 성격이 의심스러운 곳이 많음.</li> <li>• 관련한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li> <li>• 협력체계 참여의 국내기구를 단일화하고, 아동권리에 관한 국내의 공적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협력내용 및 새로운 정책방안들(번역 포함)에 대한 홍보와 보급을 할 것.</li> <li>• 이미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 국제기구의 제재조치가 없음. 예산을 마련해서 국제기구의 권고조치를 이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의 아동관련 국제기구와 적극적 협력과 네트워크로 한국의 아동권리 위한 캠페인 및 옹호를 위한 활동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li> <li>• NGO 의견에 동의함.</li> <li>• 정부측에서 관련하여 기구를 연락한 바 전혀 없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아동 전문단체들만의 교류가 되고 있음. 보편적이고 일반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연계·협력이 필요함.</li> <li>• 국내에 Korean NPO Coalition for UNCRC, 에 2006년부터 20여개 아동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아시아권의 나라와 국제적 연대 협력을 하고 있음.</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전문가 포함</li> </ul>

전체연번 50	대안돌봄기관의 서비스 질,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 아동권리 교육,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 유형 등에 대한 체계적, 정기적 검토
---------	--

학계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

- 아동 돌봄에 대한 업무를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부서 간 조율 및 조정이 쉽지 않아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안양육체계에 대한 지원예산과 종사자 처우는 아직까지 열악하며, 이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런 현실에서 종사자들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임. 대안양육체계에 대한 중앙정부의 모니터링도 거의 없는 현실임.
-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전문가집단을 통한 권리교육이 수행되도록 해야 함.
- 대안돌봄기관의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함.
- 지역의 아동복지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매우 미비, 지역의 아동복지위원회 주요 안건논의가 거의 없음, 지역아동복지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재정립 시급.
- 종사자의 질이 매우 중요함.
- 대규모 돌봄시설에서 소규모 형태로의 전환은 보다 장기적으로 전환 가능할 것.
- 관련 종사자 교육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대안 양육보호(가정중심)를 위한 지원 및 환경조성 부족 입양 및 가정위탁 활성화 대책이 시급함.
- 대안돌봄은 궁극적으로 가정복귀, 부모양육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가정복귀/부모양육을 위해서는 양육시설, 가정위탁, 보육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안돌봄으로 약화될 수 있는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법무부, 복지부).
- 대안돌봄은 복지부산하 아동양육시설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님. 원 가정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가정 밖 아동청소년(18세미만)에게 적용되므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법무부의 소년원, 치료보호시설(6호시설)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함.
- 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정책 수립 필요.
- 현재 어린이집이나 아동보호센터 외, 초등학교교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부처간 협의 필요(보건복지부, 교육부 관련 부처 협의 필요).
- 대안적 돌봄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느리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과 확보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나 법, 과제가 필요
- 실효성있는 종사자교육 방안의 마련(앞서 지적)
- 가정위탁과 그룹홈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대우수준을 높여주고 이에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요구할 것.
-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함.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종사자들의 아동권리 의무교육도 거의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음.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대안양육기관의 운영체계를 변화시켜야 함
- 대안돌봄기관의 다양화가 시급한 과제라 판단됨. 현재는 양육시설 중심으로 구성되어 제한적인 경우가 많음.
- 돌봄기관의 종사자뿐아니라 돌봄서비스인력의 확대와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필요.

<p>현장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를 위한 의무교육이나 보수교육, 권리교육의 의무화, 평가제도와 같은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운영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에는 아직까지 미진함.</li> <li>• 아동을 위해서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체계는 더욱 더 확대 되어야 함.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국가의 관련부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국가부서들이 협력으로 저출산과 아동의 문제들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봄.</li> <li>• 대안양육시설 자체에 대한 인프라 마련도 필요하나, 대안양육체계내에 포섭되려는 아동이 어떻게 하면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지를 강구하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함. 초기 배치부터 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방향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li> <li>• 대안돌봄기관이 너무 많은데...교육부, 여성가족부, 안행부, 문화체육부 등 아동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아동복지시설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님. 종사자, 교사 등 관계자의 인식개선 절실히 필요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시대에 아동양육이 사회의 큰 이슈. 여성들의 사회생활로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강하게 뒷받침되어야 함. 돌봄체계, 더욱더 각 부처가 협력하여 확산, 확대 되어야 한다고 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대안양육의 그룹홈 제도는 확대되면 좋을 것으로 봄.</li> <li>•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관련, 가정 밖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중심이 없는 것이 문제임. 정책과제: 아동에 대한 상담, 배치, 사후관리를 공적체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li> </ul>
<p>NGO (기관 의견)</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 포함</li> </ul>

전체연번 51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를 보장하고, 학대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진료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양육체계 아동은 사회의 가장 취약 계층 중의 하나인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특히 대안양육 내의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미약함. 이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 마련이 시급함.</li> <li>• 대안가정 내에서 학대 피해 신고는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효과성이 있음. 대안 가정내 신고체계는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음. 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li> <li>• 아동학대 신고함은 설치되어 있지만 신고함 설치에 대한 후속조치는 미흡한 상황 신고함 설치 이후 신고함 관리에 대한 체계적 메뉴얼 필요.</li> <li>•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숫자를 대폭 확대해야 하며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함.</li> <li>• 추진속도를 높여야 함.</li> <li>• 대안돌봄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독 기능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음.</li> <li>• 극단적 사례로 발전하고 난 뒤 학대가 접수되는 경향임. 조기발견 및 아동자신의 옹호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나 대안돌봄 시설과 독립적인 지역사회 기관을 마련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와 권리피해에 대해 문의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해야함.</li> <li>•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만 가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청소년 간에도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행위라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함. 예컨대, 소년원, 소년교도소, 가출쉼터 등 집단 거주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 간에 소위 ‘고참문화’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진정, 신고 등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li> <li>• 아동복지시설 내 건의함은 거의 실효성이 없음. 심리치료사 배치 문제도 효과성은 의문임.</li> <li>• 보호대상 아동의 상당수가 학대받는 아동인데, 체계적/전문적 보호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일원화 필요</li> <li>• &lt;정부차원의 아동인권기구 마련&gt;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간기관으로서 권한의 한계가 있음.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와 지도를 총괄할 수 있는 정부기구의 마련(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 포함)</li> <li>• 민간차원의 아동보호단체가 연대하여 학대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할 것.</li> <li>• 양육시설의 경우 큰아동이 작은아동들을 체벌하거나 폭력을 사용해도 종사자들이 묵인하는 경우가 많은. 아동들 나름의 질서체계를 건들지 않으려는 종사자들의 인식이 매우 강함. 우리나라 양육시설의 경우 전쟁상황에서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서 현재 정부의 개입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으며 외부개입에 대해 거부감이 매우 많음. 그러므로 더욱더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또한 양육시설이 지역사회와 동떨어져서 위치한 경우가 있는데(지방의 경우 매우 심함)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쉼터와 상담서비스도 전국적 분포도를 고려해야 함</li> <li>•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피학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에는 파트너가 되지만 시설 내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사 기관이 되는 양면성을 가짐. 아동보호 전문 기관 내 부서를 분리하여 양육시설과 연계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li> </ul>
--------	--

<p>현장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윤리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학대를 당했을 때 신고 절차나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이나 기관을 찾아보기 어려움. 지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의뢰를 하고 있으나 몇 안되는 인력이 감당하기에는 한계 있음. 심각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움.</li> <li>• 대안돌봄시설, 대안돌봄 체계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협력하여 더욱 확대해주시기를 바람.</li> <li>•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진정절차 마련 필요. 시설거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후 서비스 확대 및 퇴소 후 모니터링 필요함.</li> <li>• 장애를 가진 학대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조치 필요.</li> <li>• 범부처 해당됨.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등등</li> <li>• 정부의 모니터링 부재.</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 서비스에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변수임.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함. 학교를 전학하지 않고 지역에서 등교할 수 있고, 서비스를 청소년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li> </ul>
<p>NGO (기관 의견)</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양육시설 아동생활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등 대안돌봄 서비스 내</li> <li>•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 포함</li> </ul>

전체연번 52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이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

학계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

- 큰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부작용 역시, 적지 않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과거에 비해 친부모만남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친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 부족으로 인해 부모가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 대안양육체계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없는 상태임. 국가가 부모에게 개입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실제 대부분의 대안시설이 부모와 연락이 잘 안된다는 명목 하에 부모와의 연락을 잘 안 하고 있음. 특히 보호치료시설의 경우 심각한 수준임. 그러나 현재 아동의 시설배치 등 과정에서 전문가의 개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대안시설 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요원하다고 사료됨.
- 부모교육과 경제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대부분의 대안양육기관에서 가정복귀 및 부모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음.
- 원가족과의 연락 등에 관한 인식이 국내에서는 금기시되고 있음.
- 시설에서 아동의 부모면접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가 이를 거절하지 않고 부모책임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할 것임.
-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조건자체(예: 부모부재)가 원가족의 자유로운 출현과 방문을 저해하지 않는지도 검토해야 함.
- 시스템 구축필요.
- 원가족과의 교류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복지 관련부처에서도 협의해야 함.
- 아동의 출생신고, 시설아동과 부모와의 교류 등을 점차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 다만 원가족을 찾았을 때 다시 헤어지지 않도록 경제지원과 교육도 병행되어야 함
- <원가족 복귀를 위한 부모책임 강화방안 마련> 부모생존 시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보호조치 시 부모양육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정서적 교류등의 프로그램 만으로 복귀는 어려움
- 원가정 복귀에 앞서 원가정 회복을 위한 문제해결 프로그램 시행
- 대안돌봄시설에 맡기는 가정은 상황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므로, 원가정을 찾더라도 무조건 복귀보다는 부모의 형편/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관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질 것.
- 양육시설이나 보호치료시설의 경우 원가족과의 연계프로그램은 있지만 종사자들의 의지가 매우 약함. 종사자들은 원가정 보호자들이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변경해서 연락이 안된다는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음. 입소시기부터 원가족과 지속적으로 교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함
- 대안돌봄시설과 원가족이 서로 협력 또는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 원가족복귀를 위한 가족복지의 제도가 우선되어야함. 대안서비스로의 의뢰이전에 가족복지서비스가 (위기개입 등) 제공되어야하나 현재 아동복지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면 대안서비스신청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 입소 후 가정복귀는 가족지원없이 더욱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구호로만 그치기 쉬움)

<p>현장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해체 등으로 부모와의 면접권 및 가족기능 서비스 지원 및 강화, 활성화 지속적으로 필요함. 아동들의 경우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보여주기 식의 아동 관련 시설은 지양하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아동들의 접근성문제를 최우선 순의로 해결해주기를 기대함.</li> <li>• NGO의견에 동의함.</li> <li>•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 가정 위탁된 아동 등 원가족 복귀를 위한 시스템, 개념, 노력, 의지 너무 부족함. 원가족 복귀 내지는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 절실히 필요함</li> <li>• 이주 아동 등에 대한 보호 부재. 개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상담 부재.</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족 복귀는 우리가 원하는 바이나, 현실은 쉽지 않음. 먼저 역기능구조하의 원가족을 위한 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 안에서 성장한 부모가 아동양육시 잘못된 양육방법이 대물림 되고 있음을 먼저 인지해야 함. 원가족을 위한 부모의 부모교육 선행되고 이후에 원가족 찾기 교류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봄.</li> <li>• 아동을 배제한 원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은 잘못하면 피해 아동을 두 번 죽일 수 있는 것이니 조심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듯</li> </ul>
<p>NGO (기관 의견)</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p>전체연번 53</p>	<p>200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 대안돌봄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p>
----------------	--

<p>학계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우선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친가정에 대한 지원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함</li> <li>•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미혼모 아동에 대한 사회편견이 심각한 수준이고, 미혼모에 대한 국가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친가정보호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미혼모 아동지원금, 가정위탁 아동 지원금, 입양아동 지원금, 시설 아동 지원금을 비교해 보면 시설아동 지원금이 제일 높은 상황임. 즉, 국가가 합법적으로 친가정 보호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 미혼모 아동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사료됨.</li> <li>• 장기적 과제라 생각됨.</li> <li>• 아동보호서비스 통합지원 기구 설치를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보건복지부 뿐 만 아니라 교육부도 소관부처가 될 수 있음.</li> <li>• 아동복지와 가족복지가 연계되어 아동의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나 가족복지에 대한 제도나 지원이 미흡한 상태에서 아동의 가정복귀 권고는 형식적 가능성이 큼.</li> <li>• 현재의 대안돌봄의 결정은 부모의 책임을 묻지 않고 대신 보호의사를 확인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편임. 대안돌봄 선택과 이후 보호과정에서 친부모의 참여와 책임을 의무화하고, 아동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li> <li>• 제도정착 노력 강화.</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정책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영향력은 낮은 상황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기구 아니라 현재 기관의 전문성 강화 필요</li> <li>• &lt;대안양육 및 원가정 복귀결정에서 공적 권한의 강화&gt; 법적 보호조치 및 가정복귀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으나, 현실적으로 책임있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보호조치의 결정에서 부모/아동조건을 심사하고, 보호기간을 제한하는 등 책임있는 결정의 주체가 부재함. 전문기관을 두기보다, 담당 공무원의 증가와 책임강화가 필요</li> <li>• 아동학대의 경우 원가정의 학대행위자의 치료적 개입 등 행위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선행되어야 함. 전문가의 개입으로 가정복귀가 타당한지 먼저 점검받아서 재학대 발생을 차단시켜야 함</li> <li>• 전문기구 마련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에 친부모와 가족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가족기능 서비스, 부모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li> <li>• 친가정 보호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NGO의견 동의.</li> <li>• OECD 국가 내 일본과 한국만이 아동양육시설(고아원)이 있음 한국의 오랫동안 기득권을 가져온 아동양육시설을 전면 아동그룹홈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빅딜이 필요함. 복지부와 기획예산처 정부의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봄.</li> <li>• 아동 본인의 의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부재.</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주도로 가족관련 정책들이 있으나 사회를 변화시키기에는 현재까지는 역부족으로 생각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처도 협력해야 한다고 봄.</li> <li>• 가정복귀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할 듯</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전체연번 54	<p>중앙입양정보원이 헤이그협약 제6조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권한을 규정하고,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p>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홀트 등 민간입양기관에 대한 재정감사 등 입양기관에 대한 국가의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li> <li>•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필요.</li> <li>• 중앙입양정보원에게 보다 큰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여 민간기관과 협력체제를 갖추게 할 필요 있음.</li> <li>• 정부의 진전된 노력이 시간적으로 너무 지체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li> <li>• 중앙입양원을 설치하고서도 구체적인 관리감독권을 부여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문제임.</li> <li>• 법적 규정은 가능하지만 실질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까지는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임. 법원에 의한 입양허가의 경우에도 학대가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보다 상세한 정보와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GO 의견 중요 반영해야 함.</li> <li>• 협약에 가입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시켜야 할 것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홀트나 다른 입양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의 통합과 일원화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할 것</li> <li>• 해외입양의 경우 여전히 민간 입양기관의 역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해외입양이나 국내입양이나 민간기관에서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함. 입양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현재 국가는 국내외 입양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회계업무에 대해 얼마나 개입하고 있는지 궁금함. 입양기관의 자산규모를 보면 복지기관에서 그렇게 많은 자산을 어떻게 쌓았는지.....많은 의문이 나옴</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제도가 개정되면서 찬성반대가 대립하고 있다고 봄. 앞으로 1-2년간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봄.</li> <li>• NGO의견 동의.</li> <li>• 중앙입양원이 생겼는데 솔직히 아동복지 전문가로서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음.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정체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함.</li> <li>• 입양은 사설기관(홀트 등)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님. 궁극적으로는 해외 입양은 중단되어야 하며, 현 상황에서 최선의 대처 방법은 적어도 국가기관이 입양을 관리해야 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입양관행을 현저히 아동들의 인권을 감안하여 개정하였다고 봄. 다만 아동들의 인권을 보는 시각에서 큰 변화를 주었다고 보며, 당분간 현실에서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입양법 개정은 긍정적으로 봄.</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전체연번 55	<p>중앙입양정보원의 서비스에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할 것</p>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입양인을 위해 보다 다양한 언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외입양인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li> <li>• 민간기관과 협력해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음.</li> <li>• 현실화방안과 지속적 지원 방안 필요.</li> <li>• 현재 한국의 아동입양은 국내입양보다는 해외입양이 많은 실태이므로, 중앙입양원 직원은 해외 입양신청자 및 입양아동과의 소통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제화 능력(외국어)이 가장 중요한 직무능력으로 선발되어야 함.</li> <li>• 민간기관 협력 강화.</li> <li>• 단기 달성 가능사업.</li> <li>• 해외입양인(성장한 입양인 포함)이 20만여명에 이르기에는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li> </ul>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 능통 직원의 채용이 자원봉사자 활용보다 훨씬 선행되어야 함</li> <li>• 책임있는 정책수행을 위해서 직원채용이 바람직함. 해외입양아에 대한 정부의 보호를 확대해야 함. 해외입양아들이 파양되어서 결국 국제 미아가 되는 경우가 있음</li> </ul>
현장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GO의견 동의.</li> <li>• 복지부, 외교부 관계됨.</li> <li>• 이 문제 역시 정부기관에서 입양을 담당한다면 해결될 일.</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원 내 온라인 통역시스템을 마련하여 어디서든 쉽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도록 할 필요</li> <li>• 뿌리가 한국인이었음을 알도록 서비스 제공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봄</li> </ul>
NGO (기관 의견)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전체연번 56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과하며, 아동 이익최우선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할 것
학계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세에서 13세까지 연령을 낮추어 최대한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려는 법 개정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것이 실제 입양 과정이 의사결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논의가 부족함.</li> <li>•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입양아동의 연령은 거의 영아임.</li> <li>• 입양 시 13세 미만 아동의 의견이라도 충분히 반영하고 수렴하는 것도 제도와 법에 포함되어야 함.</li> <li>•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li> <li>• 13세 이상 의견청취제도는 각급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됨.</li> <li>• 특례법 적용 현실화.</li> <li>• 동의 연령을 좀 더 낮추어야 할 것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관련 해외 사례 연구 혹은 해외에 이미 입양되어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도 필요</li> <li>• 아동의 의견청취는 가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므로, 오히려 입양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법부 교육 필요.</li> <li>• 국내외 입양아들이 대부분 영유아인데....의견청취제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의문임. 의견청취제도의 강화보다 입양과정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입양이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함</li> </ul>
현장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족의 부모와 입양아동과의 가치충돌을 적절하게 협의되어야 한다고 봄. 1-2년간 모니터링이 필요함.</li> <li>• NGO 의견 동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되지 않고 국내에서 미혼모/부 가정에서 아동이 양육될 수 있도록 입양과정을 부모들을 지지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li> <li>• 모든 연령의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이익 최우선 고려.</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전체연번 57	<p>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입양 보내고자 할 때 미혼모의 동의를 있어야 하며, 동의를 실질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도록 할 것</p>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미혼모에 대해 직접적 강요는 아니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없이는 간접적 강요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li> <li>• 청소년 미혼모라도 아동양육의 의사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어야 함. 아동의 관점에서 친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지원해야 함.</li> <li>• 미혼모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함.</li> <li>• 입양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미혼모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짐 다만 미성년미혼모의 경우 원치 않거나 숨어버리는 경우 대응책이 필요함.</li> <li>• 미혼모의 책임있는 결정을 위해, 적절한 시간과 정보, 지원을 제공.</li> <li>•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모 뿐 만 아니라 미혼부에 대한 지원 정책 고려 필요</li> <li>• 청소년 미혼모든 성인 미혼모든 미혼모들의 양육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저출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비한 점은 국가가 반성해야 함. 프랑스와 같이 부모의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누구나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7월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폐쇄 또는 용도 변경을 앞두고 임신 중인 미혼모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여가부는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 부족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li> <li>• 미혼모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인식 필요(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해당)</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li> <li>• 과제1. 청소년 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 지원(양육 지원, 본인 학업 지속성,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뒤 직접 양육 및 입양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책과제: 직접 양육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양육 돌봄, 본인 학업 지속,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미혼모의 직접 양육 또는 입양의사 확인</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b>전체연번 58</b>	해외입양을 포함한 모든 입양이 명확한 임무권한을 가지고 사법적 감독과 규제를 담당할 역량을 가진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입양원을 통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사료됨.</li> <li>• 법적으로 명시화할 필요 있음(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 등)</li> <li>• 입양을 위해 유기하지 않도록, 부모배경과 무관하게 아동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할 필요 있음.</li> <li>• 법률보완 및 시스템 구축.</li> <li>• 사법기관을 통한 입양을 제도화시킴.</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마련됨</li> <li>•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입양을 원하는 경우는 신속한 절차와 입양가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요함</li> <li>• 이미 허가절차가 마련되어 있음.</li> <li>• 입양은 반드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li> <li>• 가정법원의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방안도 필요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입양 아동에 대한 중앙기구의 사후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임.</li> <li>• 유기 아동에 대한 고려 및 대응 방안 필요. 특히 외국인 유기 아동에 대한 대책 부재.</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부모의 친권취소에 대한 동의는 아직도 부모가 아동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아동 인권도 소중하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임을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서 알려야 한다고 봄.</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b>전체연번 59</b>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1993년) 비준을 고려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입양문제에 대해 정부가 헤이그가입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사료됨.</li> <li>• 비준함.</li> <li>• 과제추진속도가 느림.</li> <li>• 서명을 했으니 비준 절차를 신속하게 밟기 바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입양아들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준은 필요하다고 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상태로 있으면서 단계적 시기를 거쳐서 비준하면 될 것으로 생각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전체연번 60	위원회의 일반논평 9호(CRC/CGC/9)를 고려하고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p>학계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개선과 이들을 위한 지원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거나 내실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은 정책결정에 의해 이른 시일 내에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li> <li>•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 전반의 배려와 서비스 마련은 아직까지 매우 미흡함.</li> <li>•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적 지원이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지자체의 치료적 개입 수준이 매우 편차가 크다고 사료됨.</li> <li>• 발달장애아동 관련 시행령 제정 등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재원지원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음.</li> <li>• 통합교육체계 안에서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현실화 방안과 교사 양성과 지원방안 필요.</li> <li>•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 통합교육 등은 대단히 미흡함.</li> <li>• 현재 장애아동지원원은 계층적인 차별적인 소득 지원이 주를 이룸. 부모배경과 무관하게 아동의 장애 유형과 이에 다른 필요한 지원을 할 필요.</li> <li>• 조속히 시행해야할 과제.</li> <li>•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고사안이라서 실현가능성은 다소 낮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은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만약 장애가 있다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li> <li>• 일반교육기관이 특수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요구됨</li> <li>• 장애인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규정이나 지원체계 필요 법적 지원체계가 전혀없어서 사회생활이 가능한 것 같지만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음</li> </ul>
<p>현장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해당.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li> <li>• 정부의 적극적 예산 확보 노력 필요. 이주아동의 경우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li> </ul>
<p>NGO (기관 의견)</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기관의 수 확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특수학교와 장애아동 어린이집, 유아특수학교를 말하는데 장애아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국 4만3천여 개 어린이집 중 200여개 시설밖에 되지 않고, 유아특수학교는 그 수가 더 적음. 그리고 시설들이 도심권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의 장애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 수 확대보다는 현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장애아동보육이 가능하도록 반 증설을 통하여 특수교사, 치료사 배치를 지원하는 방향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짐.</li> <li>•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 장애 아동청소년 분야 포함</li> <li>• 과제2번에 대해선 장애아동의 지원체계가 현실에서는 치료 바우처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또한 만 6세 이상이고, 장애영유아의 개별육구를 지원하는 곳은 어린이집, 유치원뿐이라 그 또한 한계가 있음. 개별화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지만 장애아동 대 치료사, 특수교사 배치가 9:1인 시점에서는 한계가 드러남.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수교사 배치가 나아지긴 했지만 실제 특수교사 배치가 법을 따라가는 수준만큼 되지 않음. 처우가 낫다보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li> <li>• 과제 3. 아동복지시설 내 경중 장애아동(경계선 지적 인지기능 장애 아동 등)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li> </ul>

전체연번 61	장애아동의 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와 감독관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조치를 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완이 필요한 영역.</li> <li>•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노력은 아직까지 미흡함.</li> <li>• 특수교사의 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함. 특히 특수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함.</li> <li>•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사 양성을 계속 확대할지가 의문임.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학급에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교사의 배치도 논의되어야 함.</li> <li>• 특수교사의 증원율이 낮아진데서 정부의 소극적 대처를 알 수 있음. 적극적 대처로 통합 교육 및 전문적 서비스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li> <li>• 특수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li> <li>• 법제화 및 시행 강화.</li> <li>•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율이 낮은 상황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특수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낮음</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분리양성을 폐지하고 모든 교사가 장애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사 외 교사에 대한 장애아동 특성 등에 대한 보수교육</li> <li>•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어 현재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별도의 이수과정이 있어야만 취업이 되지만 특수교육기관의 특수교사의 처우에 비해 너무도 낮은 처우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만 우수한 교사들의 확충과 전문성이 따라오리라 보여짐</li> <li>• 과제 # 감독관 전문교육 및 훈련 정례화 체계 구축(년 2회)</li> </ul>

전체연번 62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동안 예산 증액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임.</li> <li>• 장애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급증하고 있음.</li> <li>• 지자체에 예산을 증대할 수 있도록 강조하거나 의무화할 필요 있음.</li> <li>• 지속적인 과제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를 가진 부모/가족은 평생 마음의 부담과 고통을 갖고 있으므로, 장애아동 자신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심리상담, 자조집단 지원 등이 추가로 필요함.</li> <li>•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 장애영유아 복지 예산 및 전문 인력 확충 노력 필요.</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의 경우 조기발견, 조기 개입과 치료로서 장애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음. 조기발견과 개입 치료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소속의 특수교육기관의 예산과 복지부 소속의 장애아동 어린이집 예산차이가 현실적으로 갭이 크기에 이 부분에 대해 토론회 및 간담회도 수차례 가졌지만 관할부서가 다르고 예산범위가 다르다며 이원화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는 계속 차이가 날수 밖에 없을 듯 함. 예산지원의 일원화를 해주던지, 복지부가 특수교육기관의 예산만큼 확충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li> </ul>

<b>전체연번 63</b>	<b>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b>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교육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며,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함. 통합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준비 안 된 통합교육이 부작용을 가져오는 경우가 적지 않음..</li> <li>• 여건과 여력이 안되는 학교에 무조건 통합교육을 강요하지 말고 인력배치와 체계적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인프라 개선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임.</li> <li>•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급증하고 있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예산은 많이 증가되지 않다고 사료됨.</li> <li>• 통합교육에 대한 물리적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지만 통합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이나 계획은 부족.</li> <li>•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환경의 개선도 필요.</li> <li>• 중장기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의 질적 양적 확대 추진 필요.</li> <li>• 일반학교의 학부모 인식이 문제.</li> <li>• 장애유형의 다양성과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통합을 이루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통합교육에서 필요한 보조교사로 (원하는)장애아 부모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li> <li>• 시행에 대한 의지 중요.</li> <li>• 통합교육은 양을 넘어 질적인 변화가 요망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교육이 바람직하나, 조건은 장애아 전문 특수교사를 함께 배치해야만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모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음.</li> <li>• 장애아동과의 통합교육은 비장애아동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을 차별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킨 다음에 통합교육이 확대되어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이 감소될 수 있음.</li> <li>• 무조건적 통합교육의 실행보다는 학교, 장애아동, 비장애아동이 모두 준비된 후에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즉 통합교육 확대 정책에 준비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함.</li> <li>• 통합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통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조사가 먼저 필요함.</li> </ul>

<p>현장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으로 특수학교를 폐지하고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으로 정책방향 정립필요.</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교육이 물리적 내용의 통합이 아닌 장애, 비장애 개별화가 보장된 통합이 필요</li> <li>• 통합교육이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음. 적절한 균형점을 찾았으면 함.</li> </ul>
<p>NGO (기관 의견)</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장애아동편의시설 완비</li> <li>• 장애아동의 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최근에 채택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2014.CRPD/C/KOR/CO/1) 내용에 따라, “① 현재 시행 중인 통합교육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시행 ② 접근가능한 학습환경의 제공을 포함하며, 교실 내 보조기술 및 지원, 접근가능하고 적절하게 개조된 교육자료와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및 기타 학습 기관에서 통합교육과 합리적인 편의의 제공 노력 강화 ③ 일반학교의 교사와 행정가를 포함하여 교육 담당자에 대한 훈련 강화”가 필요함. 이 최종견해의 내용에는 어디에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구분지음으로써 차별과 배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의 증가, 특수교육의 예산 증액, 특수교사 증원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음. 장애아동 역시 비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일반학교(‘특수학급’의 형태로 고립 및 배제되지 않고 같은 학급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형태)에서 동등한 교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받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이행·평가할 것.</li> <li>• 장애아동에 대한 법은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특수교육법이 해당되는데 실제 복지부 소관인 장애아동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대로 하고 있어서 장애아동교육권 및 보육에 대한 지원이나 차별부분에서 교육부 소속인 특수교육기관과는 엄청난 차이가 남. 장애아동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사회통합인데 통합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인력 총원 없이 현 시점에서 기관이나 시설이 그 부분을 다 맡고 있는데 대한 한계.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장애아동을 책임지고 맡아야 하는데 그림은 그렇게 그려놓고서도 정책이나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음.</li> <li>• 4) 장애아동이 비 장애아동과 통합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하고, 장애아동이 교육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할 것</li> </ul>

전체연번 64	<p>보건예산을 증액하고 저소득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시설 체계를 구축하고, 전 지역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인적 자원 지원을 늘리는 조치를 이행할 것</p>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의료적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나 당장 드러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과 제도 마련이 부족한 상태임.</li> <li>• 아동을 위한,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는 보완이 더욱 필요함.</li> <li>• 공공의료보건체계가 구축되어야 함.</li> <li>• 농촌지역 아동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취약하고, 특히 농촌 산간오지 지역의 영유아 의료 접근성은 매우 취약한 상황.</li> <li>• 공공의료시설 체계의 확장과 확보가 영리병원의 이익에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치 사회적으로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반드시 알려져야 함.</li> <li>• 저소득가정 아동은 중산층에 비해 건강문제 및 의료수요가 더 많은 대상자이므로,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건강검진으로는 한계가 있음. 저소득, 다문화, 대안돌봄 시설 거주자 등은 여성가족부의 '특별지원청소년' 범위 안에 포함하여 특별한 건강/의료지원 및 관리가 필요함.</li> <li>•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고라서 실현 가능성이 낮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소외 계층 아동의 범주는 법률적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특별지원청소년"으로 확대해야 함.</li> <li>• 이주 아동 특히 불법체류부모의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함.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개선이 필요함</li> <li>• 건강검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보다 정밀한 진단이나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현재의 건강검진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유의미한 예방정책으로 작동하기에 한계를 가짐.</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및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노력 미흡.</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단위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내실화</li> <li>•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증가. 지원체계는 있으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부처의 협력과 전달체계 확대와 연대가 필요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5세 미만 무상의료에 대한 정치권의 공약이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음. 아동대상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필요함.</li> </ul>

전체연번 65	아동의 우울증 및 자살원인에 대한 조사에 기반하여 아동정신 건강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자살예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개발에 투자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으로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함.</li> <li>•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치료 인프라 구축도 더욱 필요하지만 정신건강을 해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예를 들어, 경쟁적 입시 체제와 사교육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이 필요할 것임.</li> <li>• 정부가 아동의 정신건강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해야 함.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문제가 향후 정신건강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li> <li>• 상담이나 행동수정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의 긍정적 활동참여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li> <li>•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조치 및 대처에 집중적 서비스 확대 필요(복지부 정신건강부서).</li> <li>• 대학입시 열풍과 학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존재하는 한, 아이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li> <li>• 아동검사결과를 통보받는 교사나 담당자들의 비밀보장의 원칙 준수를 엄격히 하여, 조사 기피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li> <li>• 교육부내 대상자인 학생에 대하여는 "Wee project"강화,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망은 "CYS-net", 법무부의 청소년시설에는 신규 "상담교사" 배치, 지역주민 및 가족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는 "보건센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단계-다기관으로 정신건강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언제 어디서든 초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li> <li>•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 학교 내 상담실, 지역사회 상담실 전문성강화, 어릴 때부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사회환경 및 교육강화 매스미디어에서의 자살에 대한 보도지침 마련해야. 우리사회에서 자살이 미화되거나, 자살이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사법적인 사례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위험), 자살 청소년과 가해청소년에 대한 총동적인 사회반응이 청소년자살 총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도 포함되어야( 청소년정신건강, 청소년보호, 측면).</li> <li>•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노력을 한 것이 돋보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조기발견을 위한 진단의 실효성 강화&gt;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단조사는 응답의 정확성이 낮음. 또한 비밀보장에 대한 불신도 진실성을 낮추는 요인이 됨. 따라서 조기발견을 위한 전수 진단조사등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것</li> <li>• 교육부 wee 프로젝트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 시스템을 더 확충할 것.</li> <li>• 현재 영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부족함. 행동장애나 정서장애문제가 조기발견되고 조기치료 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대책이 필요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자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근본적으로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li> <li>• 앞으로 이 영역에 매우 필요하다고 봄.</li> <li>• 같은반 친구 등의 자살사건은 다른 아동·청소년이나 교사에게도 큰충격을 주는 긴급위</li> </ul>

	<p>기사건임. 사건을 둘러싼 학교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할지를 안내하는 프로토콜이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 청소년 자살원인을 조사하고 조사에 근거한 자살예방책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모든 범부처 해당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건강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입시제도개선,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여가시설 확충</li> <li>• 아동의 정신건강문제가 앞으로 큰 사회문제. 성인이 되기 전, 아동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서순화 프로그램(예, 인성교육, 품성개발 교육 등) 등이 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확대와 강화가 필요</li> <li>• 정책과제: 학교에서 자살발생시의 대응 프로토콜 수립 및 적용</li> </ul>
<p>NGO (기관의견)</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분야 구축</li> <li>• 과제 3. 이용 가능한 지역 서비스 구축 및 강화</li> <li>• 과제 3.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정신건강종합실태조사 실시 및 대책 수립</li> <li>• 장애아동에 대한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을 정례화(분기1회)하고, 교사/학부모 생명존중교육을 정례화(년 2회)하고, 관련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확인, 전문상담여건 보장</li> </ul>

전체연번 66	담배, 알코올, 인터넷 중독 등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 캠페인을 확대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 및 알코올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위험 노출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그러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조속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li> <li>• 아동보건 교육은 매우 중요함.</li> <li>• 반드시 보건교사가 아니어도 청소년지도사도 이러한 교육과 캠페인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면 보다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음.</li> <li>• 교육, 캠페인은 활발하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음.</li> <li>• 한국은 좁은 땅, 바쁜 일상으로 이해 다양한 놀이/여가문화가 부족한 환경에서 IT 인프라는 초고속으로 깔려 인터넷 효율성은 있으나, 그 부작용으로 인터넷중독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중독"의 유해성에 대한 홍보차원으로 해소되지 않고, 인터넷을 대체할 놀이/여가 기회를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더욱 확대하는 공공정책이 필요함.</li> <li>• 개인의 생활습관과 관련되어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중독대상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은 그 특성상 별도로 다룰 필요. 매일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하게 할 것인가는 '중독'을 다루는 방안으로 대하기 부적절 할 수 있음</li> <li>• 이미 중독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해결책 홍보 캠페인 실시</li> <li>• 현행법이 있으나, 형식상에 그치고 있음.</li> <li>• 흡연, 음주, 약물 등 중독 연령이 초등학생 고학년에서 점차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저연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과 현장성 있는 교육방법이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li> <li>• 보건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lt;성교육표준안&gt;에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적인 시각이 없고, 성을 절제가 아닌 금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여성계의 지적이 있음. 아동청소년 보건교육의 방향이 흡연, 금연, 중독 예방에만 맞춰져 있고, 건강하게 인식해야 할 성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li> <li>• 적극적 캠페인 노력 및 인력확충 부재.</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li> <li>• 한국의 10대는 이미 영상세대라고 불리고 있음. 뇌구조가 다르게 발달함. 약물 오남용 예방 프로그램, 미디어 노출에 대한 중독 예방프로그램 필요함. 청소년기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2.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연구 및 공익광고 실시</li> <li>• 과제 3. 스마트폰의 유해매체 정보 차단과 중독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 공론화</li> </ul>

전체연번 67	아동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식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
<p>학계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함.</li> <li>•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정보가 공유되고 안전한 식품의 섭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li> <li>• 식품안전 및 영양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이 강화되어야 함. 실제 식단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필요함.</li> <li>•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제 부재.</li> <li>• 고열량, 유해식품은 값싼 식품에 의존하는 저소득, 가출 등 가정 밖 청소년에게 특히 문제가 되고 있음. 전체 아동/가정 대상 홍보도 필요하지만, "건강식품 소외계층"에 대한 별도의 식품지원 및 관리정책이 추가로 필요함.</li> <li>•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고라서 실현 가능성이 낮음.</li> </ul> <hr/>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 식품에 대한 규정 및 안내 필요</li> <li>• 유해식품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가난한 아동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공급할 대안도 찾을 것.</li> <li>• 아동에 대한 유해식품이나 장난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함</li> </ul>
<p>현장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hr/>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건강과 관련한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학교 등의 영양교육강화. 아동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과자류 음료에 대한 규제강화</li> <li>• 앞으로 아동기, 청소년기의 건강한 먹을거리 홍보 침 캠페인을 중요하다고 봄. 취약계층을 위한 특히 소아 비만 등, 먹을거리 홍보 캠페인을 우리같은 아동 ngo는 지속적으로 홍보</li> </ul>
<p>NGO (기관 의견)</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교육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해매체 대책으로 청소년이 주체적·자율적으로 판단·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있어야 함 (차단, 통제방식 지양).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가활동시간' 확보, 문화활동 시간제공이 필요함.</li> <li>• 음주, 흡연의 문제는 음주문화 개선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 따라서 전국민 대상 건강증진의 관점에서 청소년 대책도 다뤄져야 함.</li> <li>• 아동출연 프로그램에서의 식품 PPL 및 아동식품광고에 대한 관리 필요</li> </ul>

**전체연번 68** 학교 교육 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조치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에 폐쇄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이 미진한 상황이며,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제적인, 현실을 반영한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li> <li>• 성에 대한 이중적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건강한 성문화와 성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li> <li>• 성교육은 아동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실제로 아동이 제일 알고싶어 하는 내용은 피임방법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li> <li>• 성교육 시간과 대상 확대함.</li> <li>• 지속적인 교육과 대처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li> <li>• 학업교육 우선인 현실에서 성교육 등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li> <li>• 청소년 원조교제, 성폭력 피해아동연령 저하, 성폭력가해 청소년 연령저하 및 증가 등을 고려한 대책 마련 시급.</li> <li>• 청소년의 "성"에 대한 솔직한 공개적 소통이 필요한 시점임. 기성세대는 청소년 성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하지 않고, 청소년은 그들 나름대로 생활해 나가고 있음. 청소년 "성"문제는, 이후의 "학대", "성폭력"등 유해행위와 연결되고 있는 근본적 주제임.</li> <li>• 생물학적인 내용 외에, 어릴 때부터 가정·학교·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 배려 (상대방 인격 존중) 이성에 대한 사랑과 에티켓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매스미디어와, 학교,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내용 구성 및 전파.</li> <li>• 아동청소년의 성개방화 속도에 비교하여 성교육의 실효성이 낮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내용이 적절한 뿐만 아니라 교육방법도 소집단 교육, 질의응답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대규모 강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시청각 자료를 틀어주는 시간 땀질식 교육은 제외되어야 할 것임.</li> <li>• 해외 성교육 교재나 프로그램 공유를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이나 국제 세미나 개최 필요</li> <li>• 성인의 "청소년에 관한 성의식"과 청소년자신의 "성의식"간 격차를 진단하고, 사회적 성담론을 활성화할 것.</li> <li>• 성교육은 인권적 시각보다는 아동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아동 수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아동청소년 발달 단계를 고려한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성교육은 필수적이고 성인들 또한 성희롱, 성추행 예방교육은 필수적임.</li> <li>• 학교교육을 통해서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임.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이 소수자를 차별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li> <li>• 아동의 변화된 성의식에 맞는 성교육 필요함.</li> <li>• 체계적 성교육 프로그램 조기 필요.</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적인 성교육이 필요하지만 표준안이라는 함정에 갇힐 수 있음.</li> <li>• 법개정 이후에 대국민 인식면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인권침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과제 1의 ( )의 괄호는 빼야 할 것임. 정책과제: 인권에 기반하며 반차별적인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발 및 성교육 실시.</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면 재검토(가치편향적 사고, 성폭력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귀속하는 문제, 청소년의 성적 주체성 반영 미흡)</li> <li>•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분야 포함</li> <li>• 과제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국제성교육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며, 성차별적 요소 배제하고, 장애 및 비장애 통합, 청소년이 성적자기결정권 등의 내용 포함</li> </ul>

전체연번 69	아동복지재원 배정 관련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하며,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
---------	--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예산 배정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지금의 상황이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에 큰 부담 또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li> <li>• 아동 예산은 잘 알려졌다시피 매우 미미한 예산 중의 하나이므로 일정 기준을 국가가 아동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매우 힘든 일 중의 하나임. 아동예산 증원에 대한 주장에 대한 정부의 반대의견으로는 항상 교육부에서 쓰는 아동예산과 보육예산이 작지 않다는 주장이 포함되었음. 이 논리에 밀려 저소득층 아동과 가정외보호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예산은 더욱 미미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적어도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일정 수준의 최소한으로라도 국가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보건복지부 소관).</li> <li>• 아동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보육제외)예산을 1인당 비용으로 계산해서 비교 제시해야 함.</li> <li>• 아동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반드시 필요함.</li> <li>• 드림스타트 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주요 사업에 대한 중복성 검토 등 필요.</li> <li>• 시설아동에 대한 평등권 강화.</li> <li>• 드림스타트 등 예방사업을 통한 접근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요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평등, 형평성지원은 아직도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함(건강, 교육, 여가, 특기지원 등).</li> <li>• 빈곤의 문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쉽게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적 경제적 정의실현과 이념의 문제와 연결됨.</li> <li>• 아동관련 예산이 매우 광범위하기에 모든 영역의 예산에서 &lt;성인지적 접근&gt;처럼 &lt;연령인지적 접근&gt;이 필요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예산은 국가 및 지체에서 일정 비율을 차지하도록 해야 함. 빈곤아동에 대한 계획수립보다 예산배정이 더 우선임</li> <li>•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또는 영향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li> <li>• 빈곤아동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빈곤아동을 어떻게 지원하고(예, 가정을 통해 지원할 것인지, 국기초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인지) 빈곤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색이 먼저 필요할 것임</li> </ul>
--------	--

<p>현장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빈곤층과 사각지대 아동들의 발달권 관련하여 관련부처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고 서비스전달체계 확대해야 된다고 봄.</li> <li>• 아동청소년의 빈곤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마련 필요함. 빈곤아동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그것의 영향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영향평가나 빈곤감소를 보여주는 다양한 통계, 지역조사 등이 필요함.</li> <li>• 빈곤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정부의 관심 미흡. 기재부, 아직도 복지를 잔여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은 미래사회에 투자 관점으로 봐야함.</li> <li>• 미등록 및 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노력 부재. (특히, 건강 등의 이유로 가정이 취업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더욱 열악한 상황.) 국내 아동 중 최빈층 및 한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 가정 등의 아동들에 대한 노력 부족.</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예산은 OECD 국가의 평균 3%에 못 미침. 미래를 짊어질 아동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때가 됨. 한국의 아동인구 940만명 중에 취약계층은 100여만으로 추측하고 있음. 이들을 위한 계획과 2015년 처음으로 아동기본 정책 5개년 계획(보건복지부 주관) 수립 되어 첫 스텝을 내디뎠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함.</li> </ul>
<p>NGO (기관 의견)</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의무제, 장애인등급제가 빈곤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li> <li>•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분야 종합대책 및 기본계획 수립추진</li> <li>• 과제 3. 난민 아동 교육 (어린이집 &amp; 유치원) 지원금 제공 또는 교육비 절감</li> </ul>

<p>전체연번 70</p>	<p>협약 제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2001)를 고려하여 교육 및 시험제도를 평가할 것</p>
----------------	---

<p>학계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서열화, 학력위주의 사회구조를 혁파하기 전에는 쉽지 않은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사회가 가질 필요가 있음.</li> <li>• 국내의 교육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li> <li>• 학생에 대한 각종 평가가 너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li> <li>• 문화체육관광부 포함.</li> <li>• 시험의 종류별 규모별 접근이 필요함.</li> <li>• 부모들의 불안감과 이기적 태도를 극복하기 어려울 듯.</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주도의 공공성 담보, 평가와 대안 논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등에 관한 강제사항의 마련에 대한 의구심</li> </ul>
<p>현장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및 시험제도 평가에 기반하여 교육 제도 개편 노력 필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서열화를 지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특기 등을 전적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li> <li>• 경쟁적이며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산출해온 수많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최근 학교 당국과 학교 공동체에 제도적인 변화가 시작 됨. 점진적인 변화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취업 시 입사원서에 학력란 폐지 의무화. 평가방식 변경.</li> <li>• 교육을 더 고등단계의 교육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만 여기는 풍토에서 배제되는 아동의 교육권을 고려해야 함. 남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이런 접근을 더 많은 입시교육을 받기 위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됨.</li> <li>• 경쟁적인 교육제도 개선 없이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3주체에 학생 포함 여부 확인 필요. 학생들의 의견이 꼭 포함되어야 할 것임.</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을 비롯하여 내신 성적 산출에 있어서도 성취평가(절대평가)도입 - 성취평가를 실시할 경우 완전학습을 추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경쟁이 아닌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교육의 본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li> </ul>

전체연번 71	사교육 의존에 대한 근본원인과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 강화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임.</li> <li>• 공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인해 대학이 결정되고 학력이 직업을 결정하는 불평 등 사회라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음.</li> <li>• 여성가족부에서도 추가 정책 수립 필요.</li> <li>•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히려 자유학기제로 인해 사교육 시장은 더 고가화, 더 빈번화 되었음. 공공전달체계의 예산 지원 및 시설 확충이 병행되거나 선행되어야 할 것임.</li> <li>•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과제임</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GO의 의견 만이라도 수용한다면 아동청소년에게 큰 힘이 될거라고 생각. 적극 찬성함.</li> <li>•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입시제도로 인한 과열경쟁이 점진적인 제도의 변화로 인해 강제성을 띤 제도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에 의하여 개선될 전망이 있음. 진정한 교육목적의 의미와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놀고 쉬고, 여가를 활용하여 예술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이 현장에서 인지되고 적용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음.</li> <li>•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관련부처 구체적 답변 보완필요. 대학교 및 고등학교 서열화하는 정책 및 관행 개선 필요. 특목고 폐지 후 각급 학교에 특별반을 구축하여 운영하여 특별반의 일반화 필요. 모든 아동의 특별한 재능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운영체계 구축. 이를 위한 공교육강화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필요.</li> <li>• 공교육 강화 필요.</li> <li>• 무엇보다도 입시를 목표하지 않은 학생이 받고 싶은 교육도 같은 비중으로 고려해야 함.</li> <li>• 앞의 설명과 동일.</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입시제도를 개혁해야만 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음. 점진적인 철폐로는 부족함</li> <li>• 대학진학과 사교육을 교육의 중심문제로 설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재고 필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교육의 근본목적은 강화하는 교육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학, 자퇴 등의 이유로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대안교육 법제화, 대학입시기준 개선 등)</li> <li>• 대학으로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에서 다양한 진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것</li> </ul> <p>- 진로교육법이 최근(2015. 6. 22.) 제정됨에 따라 진로상담교사와 진로교육학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유학기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공교육에서 진로탐색과 적성에 맞는 직업경험의 기회를 확대할 것</p>

전체연번 72	협약 제31조에 따라 여가·문화·오락 활동에 아동권리를 보장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과 시설/장소/공간의 문제로 압축, 시간은 여가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여가를 즐길 실질적인 시간 부여가 관건임. 시설/장소/공간의 문제로는 지방자치단체 우선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함</li> <li>•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아닌, 보다 단기적이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접근 필요함.</li> <li>• 놀 권리의 확보에 매우 인색함.</li> <li>• 입시에 청소년활동 기록 강제 반영해야 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현 가능성이 문제제기 될 수 있음, 이로 인한 다른 병리적 문제, 편법의 가능성도 우려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여가 시설의 확충과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그저 재원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여가시설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li> <li>• 변화의 속도는 느리다 할지라도, 교육제도의 변화와 학생당사자와 학부모의 가치관과 입시제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교육환경과 풍토가 조성되어가고 있음.</li> <li>• 과 수준의 답변이 아니라 부처수준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보완할 것.</li> <li>• 어른과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동과 청소년은 알아서 놀 수 있음. 지나친 관리를 벗어나 알아서 놀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간 마련에 집중해야 함.</li> <li>• 앞의 설명과 동일.</li> <li>• 입시제도와 연관되어 있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 미시적인 과제임. 입시제도 개혁하고 공교육을 현실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의문되는 방안임.</li> <li>• 저녁이 있는 삶이 노동자들의 희망이라면 최소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에게는 "주말이 있는 삶" 필요 토, 일요일 학원 휴업제 실시하는 것으로 학원법 개정해야 함.</li> <li>• 아동의 학습시간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 필요. 가령 명절과 연휴 앞뒤의 시험 폐지, 강제 야자 폐지 등</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시간 축소, 방학 확대 연구</li> <li>• 학원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학원 교습시간 규제를 위한 학원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학원법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시도조례로 위임하여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24:00까지를 학원 교습시간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건강권과 여가권 더불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습시간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li> </ul> </li> <li>• 영유아의 놀 권리 회복을 위해 활동과 체험위주의 유치원 어린이집 특별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는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특별활동 및 방과후 과정이란 이름으로 영어 수학 등의 교과교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아동의 발달단계에도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영유아의 놀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시간에 교과교습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li> </ul> </li> </ul>

전체연번 73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루도록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주제(학력위주의 사회, 대학서열화)에서 벗어나 소주제 중심으로 고려해야 할 권고사항. 그렇다고 해서 대주제를 포기하거나 간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오히려 이 권고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 등 학교를 벗어나 청소년들이 학교접근성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소 범주를 좁혀 나갈 필요가 있음.</li> <li>• 학생 간 괴롭힘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시도에 아동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함. 이러한 조치는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교실과 학교 운동장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어야 함. 이에 대한 내용추가 필요.</li> <li>• 정보의 종류별로 수집 방법의 체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한 점검이 우선되어야 함</li> <li>•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탁교육(인문계에서 특성화 교육을 위탁하는 제도)을 확대하는 방안도 좋을 수 있음.</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 미등록 이주아동 등의 교육 접근성 제고 필요. 특히 영유아 교육기관과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필요.</li> <li>• 전장의 언급과 동일함.</li> <li>• NGO 의견에 동의함</li> <li>• 학교진학률과 졸업률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다녀도 반문맹상태인 문제에 주목해야 함. 문해력을 실제로 기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li> <li>• 의무교육제도이므로 대체로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더욱 필요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으로 교육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수업료 면제 추진 및 지원 확대. 특성화고등학교 탈락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안이 없음 그들에 대한 대안 필요. 현재 고3에만 실시하는 직업위탁학교를 1, 2학년으로 더욱 확대해야 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영재를 찾는 기존의 영재고 입시에서 벗어나 가정형편이나 사교육과 관계없이 영재성을 지닌 아동들을 발굴하고 키워낼 수 있도록 영재고 입학 전형이 개선되어야 하는바, 지필고사 형태의 시험으로 영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닌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입학 사정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li> <li>• 영유아교육기관이 부족하여 학원 등의 사립교육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을 절감하고 국·공립 영유아교육기관 확대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함</li> </ul>

전체연번 74	<p>학생 간 괴롭힘, 따돌림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p> <p>-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교실과 학교운동장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p>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대책법(줄임표현)의 실질적인 실현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및 학교단위의 개입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 피해학생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해학생 개입전략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li> <li>• 법적, 제도적 장치는 상당한 정도의 진전을 이루었음.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체감 수치는 여전히 낮음.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li> <li>• 개인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에 개입에 한계가 있음.</li> <li>• 여성가족부도 추가해야 함.</li> <li>• 사이버공간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1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 제시 필요, 선언문 같음. 예절교육이라는 용어가 왠지 청소년들에게 더 거부반응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음. 한글 표현상의 문제이기는 하나 용어가 좀 더 가볍게 다뤄졌으면 함(에티켓, 매너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 최종 선택 되었을 것은 같음).</li> <li>• 처벌기준 강화 등의 방법은 근본적인 접근이 되지 못함. 핸드폰 문화 및 핸드폰 사용에 따른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연아동권리협약 4개 일반원칙 부문에서 비차별 관련 의견제시와 동일함.</li> <li>• 학교 관련 정책의 경우 지역 교육청 포함 필요. 교육부는 최소한 해당 지역교육청 내용이라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할 것임</li> <li>• 학교는 사회의 반영이고, 사회적 차별을 답습하는 것이므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빈곤차별 등 사회전반적인 차별 문제 시정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함. 차별과 폭력에 대한 거부와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배운다는 것이 인권교육의 기본임.</li> <li>• 차별과 차이에 대한 인식 및 배려하는 문화의 확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li> <li>• 과제 1: 정책과제로서 구체성이 없음. 구체적 정책과제 보완 필요 과제 2: 엄벌주의 방식보다는 교육적 방식 우선시할 필요가 있음. 교육도 예절교육이 아니라 인권교육이 되어야 함.</li> <li>• 어설플 갈등중재나 화해의 접근이 '따돌림' 등의 폭력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될 수는 . 존엄성과 존중이라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교육 강화 사회경제적 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한 판단력을 강화하는 교육 필요.</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보적 징계 위주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비판적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 폐지 등)</li> <li>• 사이버폭력 처벌기준 강화에 의문. 사이버환경 개선이 더욱 중요한 문제임.</li> <li>• 성매매 등 성범죄 포함.</li> </ul>

전체연번 75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등록이 되도록 하고, 망명희망자와 가족에게 재정·교육·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 및 해외이주자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이 먼저 필요함</li> <li>• 출생등록제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함. 미등록체류자, 난민아동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체계가 필요함.</li> <li>• 난민이 발생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이 교육과정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필요 있음.</li> <li>• 국내아동과의 동등한 권리와 지원이 필요.</li> <li>• 난민에 대해 근본적으로 아무런 고민을 안 함.</li> <li>• NGO의견 동의.</li> <li>• 한국에서는 "탈북"주인이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난민"에 해당되는 계층임.</li> <li>• 이념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임. 법무부 의견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봄.</li> <li>• 난민, 미등록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 등은 아직 낮은 편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부모의 지위에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등록 자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함.</li> <li>• 대안돌봄기관에서 조차 불법체류자의 아동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li> <li>• 장기적으로 국가의 제도 및 정책은 개선하여 수행해야 함.</li> <li>•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시급함.</li> <li>• 정부의 적극적 노력 전무. 중앙에 하나의 주무 부처가 없고, 서로 해당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는 추세.</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들이 출생등록이 되도록 권고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출생등록에 관한 정책과제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외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던가 현재의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외국인들도 출생등록, 즉, 출생의 신고, 등록, 증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함. 법무부에서는 난민들이 외국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출생등록의 개념과 완전히 다름. 또한 외국인은 본국 대사관을 통해 출생등록을 할 수 있다고는 하나 난민들은 본국 대사관에 접근이 불가능함. 법무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만큼, 관련 부처들, 즉 가족관계등록을 주관하는 대법원, 의회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 출생등록은 아동들의 무국적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만큼 조속한 조치가 시급함.</li> <li>•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봄.</li> <li>• 정책과제: 난민(신청자)아동, 인도적체류아동, (미등록)이주아동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출생등록제도 마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교육-무국적 아동들도 고등학교 입학 할 수 있도록)</li> <li>• 과제3.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아동들이 출생 시 출생신고, 등록, 증명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칙/지침 등을 규정.</li> </ul>

<p>전체연번 76</p>	<p>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을 가급적 배제하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설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최대구금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p>
<p>학계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도 필요함.</li> <li>• 난민신청자는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무부의 입장이 이해가 안되며,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li> <li>• 건강 교육권에 대한 규정필요.</li> <li>• 장기적인 과제임.</li> </ul>
<p>현장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구금 사례들에서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함께 가두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맞지 않음. 이와 같은 경우, 부모를 일시보호해제 등의 방법으로 석방하여 아이와 함께 출국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구금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권고가 있음에도 그에 대한 정책과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난민신청자의 경우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장기구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난민신청자와 그의 아동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금에 대한 상안이 반드시 정해져야 하며 아동의 경우 구금은 가급적 배제해야 하므로 구금에 대한 대안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li> <li>• 지속적으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li> <li>• 과제 1,2에서 난민신청자아동도 명시되어야 함. 과제 1: 난민아동, 난민신청자아동에 대한 구금배제 원칙~ 정책과제: 인도적체류아동의 가족결합 원칙에 대한 관련법 마련</li> </ul>
<p>NGO (기관 의견)</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1. 난민 아동(신청자 포함)에 대한 구금배제 원칙에 대해 관련법/규칙/지침 등 명시</li> <li>• 과제 2. 난민 아동(신청자 포함) 이익의 최우선 원칙에 따른 시설보호에 대한 상세 규칙/지침 마련</li> <li>• 과제 3. 인도적 체류아동의 가족결합원칙에 대한 관련법 마련</li> </ul>

전체연번 77		불법체류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의 교육을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 청소년에 대한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li> <li>• 이주아동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는 되었으나 이들을 함께 포함하여 그들의 욕구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려는 학교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함.</li> <li>• 불법체류자 아동에 대한 교육권은 비교적 보장되고 있다고 사료됨.</li> <li>• 이주아동의 입학과 전학이 지금보다 간소화되고 자유로워야 함</li> <li>• 기본적으로 난민아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없음.</li> <li>• 이념적으로는 반드시 시행해야하나,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li> <li>• 정책의 방향은 맞게 설정되어 있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 재량으로 편입학 결정에 있어 지역적 편차 등이 발생하는 만큼 미등록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광역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조치 등이 필요함.</li> <li>• 불법체류자 아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책 시행 미흡(심지어 대안돌봄기관인 지역아동 센터에서도 불법체류자 아동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li> <li>• 아동의 교육권은 인종, 국적에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함.</li> <li>•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같은 시행령 단위가 아니라 법령 단위에서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명시하는 법 조항이 필요함.</li> <li>• (미)등록 이주 아동 및 난민,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아동은 다문화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의 재량으로 입학이 거부되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함. 아이들이 미등록인 것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부모들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므로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됨. 그러므로 의무교육은 체류 지위에 상관없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임.</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또는 최소한의 교육비 절감 제공</li> </ul>	

<b>전체연번 78</b>	<b>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b>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 정책과 사회인식의 제고가 먼저 있어야 협약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li> <li>•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나타나고 있음. 이주노동자 아동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국제협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함</li> <li>• 이주노동자 국제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사회의 역할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함.</li> <li>• 난민에 대한 기본 인식의 전환 필요.</li> <li>•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li> <li>•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국제 협약의 수준에 미치지 못 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아동권리법안의 제정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음.</li> <li>• 점진적으로 국가가 제도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봄.</li> <li>• 기 발의된 이주아동의 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이 시급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가 필요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b>전체연번 79</b>	<b>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b>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li> <li>• 가출청소년이나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노동현장에서의 권리보호 노력이 더욱 필요하고 사업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함(노동부).</li> <li>• 아동노동에 대한 관련 법률을 마련해야 함.</li> <li>•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수립이나 인식의 개선 필요.</li> <li>• 아동노동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li>• 한국은 외국에 비해 아동노동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li> <li>• 아동 노동에 대한 법률 강화.</li> <li>•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공적 개입의 사각지대에 있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노동하지 않고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체계가 필요함. 예를 들면, 아동수당을 통해서 일정부분 양육이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청소년 알바를 포함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한 청소년 노동의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임. 청소년 노동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책무 역시 고용노동부에 있음.</li> </ul>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취업, 근로가능 하도록 투자 차원에서 지원해야 함.</li> </ul>
NGO (기관 의견)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방안 마련, 생계지원방안 마련</li> </ul>

<b>전체연번 80</b>	<b>18세 미만 아동의 야간근무 금지, 최저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할 것</b>
----------------	---

학계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li> <li>• 근로기준법 준수가 반드시 필요함.</li> <li>• 위반 시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 있음.</li> <li>• 최저임금 및 미성년자 불법노동에 대한 단속 중요.</li> <li>• 청소년의 심야 노동과 저임금 약탈 노동의 현실에 대해 관심이 없는 정부.</li> <li>• 근로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 영세자영업 등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생존 /노동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오토바이배달 등은 위험행위에 심야야간대에 빈번함.</li> <li>• 관련법률강화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추가.</li> <li>•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사각지대에 있음.</li> </ul>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미만 아동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li> </ul>
현장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적 장치는 있으나 현장에서 시행에는 아직 미흡함. 특히 연예계 18세 미만 아동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 규정이 필요함.</li> <li>• 청소년의 근로권과 발달권은 충돌할 수 있음.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의 근로권 보다는 교육을 받는 발달권리를 강조해야 된다고 봄.</li> <li>• NGO의견에 동의.</li> <li>• 잘하고 있음.</li> <li>• 적발 벌금 등의 처벌형 정책 문제 있음. 보다 근본적인 아동 및 청소년 노동에 대한 대책 필요.</li> </ul>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미만의 아동은 국가가 건강한 발달을 위해 지도/ 지원해야 함.</li> <li>• 일이 필요한 청소년이 착취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함. 정책과제: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일자리 마련</li> </ul>
NGO (기관 의견)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심알바신고센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안심알바신고센터'에 대한 인지율은 20%에 불과함. '안심알바신고센터'에 대한 실태조사 등 피해지원체계를 점검이 필요. 학교 교과과정에도 노동인권 교과과목을 추가해야 하며, 일반고에 확대할 필요 있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근로보호전문인력을 두거나 보수교육을 통해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근로보호역량을 높여야 함.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할</li> </ul>

	<p>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등 성범죄 이용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을 이용하는 영업행위, 매수자에 대한 처벌강화</li> <li>• 청소년들이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진입. 부당한 대우 받아도 대처하지 못함. 청소년 대상 정규교육 과정 필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근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관련법, 노동권, 개선 요청 프로세스 등)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li> </ul>
--	--

<b>전체연번 81</b>	<b>아동의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을 제정할 것</b>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노동의 고용주에 대한 관련 법률이 필요함.</li> <li>• 관련법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li> <li>• 미성년자 착취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구체적 증거확보 후에 구체적 대책필요).</li> <li>• 성인노동에는 관심이 있으나 아동노동에는 관심이 없는 노동부 그리고 여성가족부</li> <li>• 현실에서의 불법 관행의 근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li> <li>•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대상 근로감독관"을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하여 불법 업주에 대한 신고, 고발을 처리해야 함.</li> <li>•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공적 개입이 아직 미약한 상황</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제정 뿐 만 아니라 법률에 따르도록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임</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GO의견 동의.</li> <li>• 정부의 적극적 실천 의지 없음.</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b>전체연번 82</b>	<b>아동의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할 것</b>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노동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노동합의서 등을 마련해야 함.</li> <li>• 근로감독의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감독 체계도 필요함.</li> <li>• 지속적 점검 필요.</li> <li>• 지극히 형식적인 감독, 아동에는 관심이 없는 노동부의 점검.</li> <li>• 전문계 고등학교, 소년원, 가출쉼터 등 현재 또는 곧 근로를 할 대상자가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노동권 및 구체적 권리조항을 교육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노동 NGO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청렴회원단체로 활동하게 함.</li> <li>• 청소년 아르바이트 여건 개선</li> <li>•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대한 공적 개입이 더욱 체계화되어야 함</li> </ul>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센터 설치 적절치 않음</li> <li>• 청소년고용사업장은 대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이므로, 출석교육 등은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고용감독관(예) 등 업무담당자가 업소 방문교육하고 안내지 등을 배부토록 함.</li> </ul>
현장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근로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권리를 지켜주어야 함.</li> </ul>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아동은 18세까지 그 이상의 나이까지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국가가 가능한 지원해야 함.</li> </ul>
NGO (기관의견)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이용하는 노동시장 신고센터 설치, 경찰 감시 체계 마련</li> </ul>

전체연번 83	아동의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 및 재발을 돕는 효과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학계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법률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더욱 중요함.</li> <li>• 아동노동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관련 법률을 구체화해야 함.</li> <li>• 형량 및 처벌 강화.</li> <li>• 중소자영업내의 지속적 점검 및 교육.</li> <li>• 직장 등지에서의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의 호소에 의존할 뿐, 정기적인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li> <li>• 경찰에는 소년경찰이 있고, 법원에는 소년법원이 있듯이, 노동감독기관에는 "청소년 근로감독관"이 신규 배치되어야 함. 청소년은 단시간 알바가 많고, 부모 동의 없이 불법근로하는 가출청소년 등이 법의 보호밖에 없음.</li> <li>• 여성가족부 추가.</li> <li>• 이러한 문제는 캠페인이나 교육만으로 되지 않고, 적발 시 엄벌 등을 통해 공적 모니터링이 필요함.</li> </ul>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 뿐 만 아니라 다른 고용인들 모두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의무화</li> <li>• 과제1의 실태점검 및 교육만으로는 불충분. 사건발생 후 대처 및 피해자보호 및 고용보장 등의 대책이 필요</li> <li>• 근무지에서 폭력 또는 성추행을 당한 청소년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운영</li> <li>• 청소년근로감독관(예) 제도가 반드시 필요함.</li> </ul>
현장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자체의 문제 인식 부족.</li> </ul>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 대한 성추행 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 등을 포함한 법개선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 필요</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b>전체연번 84</b>	<b>18세 미만 아동연예인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폭력과 성추행 문제에 대한 조치</b>
----------------	--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이고 그 실태를 잘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입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실태 및 현황조사 및 구체적 문제 파악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li> <li>• 아동연예인에 대한 규제를 외국과 같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특히 교육권.</li> <li>• 아동연예인을 희망하는 아동과 부모의 인식개선도 필요.</li> <li>• 미성년 근로현장의 예외적인 사례 근절- 연예인 노동시간 엄수 적용.</li> <li>• 청소년 연예인의 노예계약 현실과 매스컴에의 무리한 출현, 학업활동의 소홀.</li> <li>•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원칙적 적용이 필요.</li> <li>• 여성가족부 추가.</li> <li>•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공적 개입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자 청소년 연예인을 포함하여 당사자들 모두에게 예방교육 의무화</li> <li>• 외국처럼 아동연예인의 노동시간을 규제하여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예계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 노동관계법으로써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청소년들의 연예계활동 및 업무에서의 성추행은 근절되어야 함.</li> <li>• 고용노동부 추가.</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도 중요하지만 처벌에 대해 확실한 조치가 필요함.</li> <li>•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우선순위로 성추행, 성폭력 예방교육과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전체연번 85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p>학계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성폭력은 아동의 문제와 여성의 문제가 공존하는 영역이므로 공조를 통한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li> <li>•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미디어, 사회인식을 제고해야 함.</li> <li>•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피해대상자가 아동이므로 가중처벌을 해야 함</li> <li>• 아동성폭력가해자 재범 처벌 강화.</li> <li>•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임.</li> <li>• 사법체계 내 아동성범죄 전담 법원과 판검사 마련. 사생활과 인권침해를 하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의 수준 제한. 성범죄가해아동에 대한 교육 및 부모책임 강화.</li> <li>• 법률 개정하여 처벌 강화.</li> <li>• 노력하고 있지만 성은 사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개입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피해나 보복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 필요</li> <li>•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보도내용에 대한 규제. 상세한 피해묘사 등으로 인한 피해자 인권 침해와 범죄방식 학습효과 차단.</li> <li>• 아동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감형조치나 공소시효가 없어야 함. 오히려 아동성폭력 행위자는 가중처벌을 받도록 해야 함. 외국의 경우 200-300년을 판결 받아서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길어야 10년 정도임. 10년 이후에 행위자가 피해자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 특히 친족성폭력 행위자의 경우 아동보호를 이유로 행위자에게 집유를 판결하는 사례도 있음. 성폭력 행위자가 친부인데 다시 친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판사나 검사 등 법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함.</li> <li>•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 보다는 실제적인 서비스를 마련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인프라구축 방안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함.</li> </ul>
<p>현장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개선이 필요.</li> <li>• 국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봄.</li> <li>• 교육부 추가-초중고에서 성폭력예방교육 필요. 아동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사후 지원 필요.</li> <li>• 복지부도 추가 해당 됨.</li> <li>•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피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 전반적인 인식 제고 및 성폭행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거주 정보 공개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단 필요.</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에 대한 수위를 높이고 명확하게 하는것 또한 예방이 될 수 있음.</li> </ul>
<p>NGO (기관 의견)</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4. 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조정</li> <li>• 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성인 남성이 정서적, 인지적으로 취약한 중학생 연령의 여자청소년을 만나 강간하고 서로 좋아서했다는 주장하는 피해사건들이 많이 의뢰되고 있음.</li> <li>• 과제 5.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연령 미확인 시 고의 책임 인정 입법화 필요</li> </ul>

전체연번 86	<p>성적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p>
<p>학계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 대한 성폭력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성착취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임.</li> <li>•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흡함.</li> <li>• 전담검사 및 수사관 전문 교육 강화.</li> <li>• 제도변화로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책 등이 발전적임.</li> <li>• NGO의견과 동일.</li> <li>• 노력하고 있지만 은폐된 성범죄가 많기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li> </ul> <hr/>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및 실태에 대해 일반인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함(단 가해자 가족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하는 방법도 동시에 논의 필요)</li> <li>•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과 사생활보장, 치유를 최상의 목표로 하는 사법시스템 운영(이에 대한 사법절차상의 구체적인 절차와 지침 마련)</li> <li>• 피해아동이 반복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해야 함. 특히 법원에서 행위자를 만나지 않도록 해야 함</li> </ul>
<p>현장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부, 교육부 추가.</li> <li>• 법원 및 정부 부처의 인식 부재.</li> </ul> <hr/>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의 성문화에 대한 고찰이 선행</li> <li>• 정책과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 강화를 위한 법조인 대상 성범죄예방교육 및 전담조사관 제도 마련 아무리 법정형이 높아도 선고형이 낮거나 실제 처분이 되지 않으면 법정형 강화 의미없음.</li> </ul>
<p>NGO (기관 의견)</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피해자’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아청법의 대상청소년 규정 삭제), 수사기관, 법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 개선</li> <li>•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상담소 신설 시급,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 경검찰의 전담부서 신설/ 경찰 조사 시 국선변호사 동석 의무화/ 경검 처벌 통계 세분화 하여 연간 보고서 작성, 보고 의무화/ 실태조사 실시</li> </ul>

전체연번 87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처벌이 형사사법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아동성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함.</li> <li>• 아동 성범죄장에 대해 한국정부는 여전히 매우 관대함</li> <li>• NGO의견에 동의.</li> <li>•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함.</li> <li>• 아동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원칙적 적용. 2차 피해 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li> <li>• 영향 강화.</li> <li>• 성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양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범죄자처벌과정에서 피해아동 권리 보장 및 강화&gt; 피해상황 진술을 위해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팀 운영</li> <li>• 사법기관에서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가볍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됨. 피해자의 피해수준이 영구적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li> <li>• 성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상향조정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실행하기위한 제도가 병행되어야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적인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처벌에 있어서는 관대하여 피해자와 피해가족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됨.</li> <li>• 아동 성폭력관련 범죄는 가능한 조속하게 근절되고 제도화되어야 함.</li> <li>•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법정형과 판결 차이가 큼. 성폭력범죄가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은 판례 해석 확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이런 측면에서 검찰, 법관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li> <li>• 경찰청, 교육부 추가.</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형 상향 조정에 대한 의문이 있음. 오히려 법정형과 선고형의 일치가 필요하며, 처벌 불원(합의)을 감경요소에서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동으로” 인식하였음이 쉽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입증책임 전환도 고민해볼 필요).</li> <li>• 과제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li> <li>• 과제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강화된 법정형 또는 양형기준이 재판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한 조치 필요/ 집행유예 불가하도록/ 최근 아동 성범죄의 형량은 강화되었으나 오히려 선고되는 형량은 낮아져 징역형은 줄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짐. 법원이 양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한형을 지향하고 있는 경향 때문이라고 함.</li> <li>• 과제 4.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등의 전문직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필요</li> <li>• 과제 5. 공무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 확정시까지 사직처리 불가 조항 추가</li> </ul>

전체연번 88	형사책임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해 노력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이후에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들에 대한 근본적 치료 및 교육서비스마련 노력이 더 필요함.</li> <li>• 아동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재범이 많음. 즉 상습적으로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나 처벌은 여전히 미흡함.</li> <li>•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 형량 강화.</li> <li>• 학대행위자의 치료감호 및 프로그램이수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과 시설 증가 필요.</li> <li>• 지극히 형식적인 교정교육과 재범예방교육.</li> <li>• 원칙적 법 적용.</li> <li>•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성범죄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이 된 전문 상담 치유자를 확보하는 예산 및 제도 도입이 필요함.</li> <li>• 치료제도 보완.</li> <li>• 성범죄는 누범이 많기에 모니터링이 절실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군 성범죄자는 비행청소년시기부터 길러지기 때문에,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비행 청소년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 및 심리상담,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확대할 것.</li> <li>•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 삼범이 매우 높음. 치료적 개입이 병행해야 하고 화학적 거세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li> <li>• 단기적 프로그램보다 수형기간동안 심리치료의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만 출소할 수 있도록 조치</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적인프로그램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임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li> <li>• 경찰청, 여성가족부, 복지부 추가.</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제: 성범죄자 가족이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 마련 필요.</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 아동청소년에 특화, 분리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활성화가 필요함.</li> <li>• 손해배상시 국가 구상권 도입</li> </ul>

<b>전체연번 89</b>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까지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인식이 만연함.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함. 또한 남아에 대한 치료서비스도 대폭 마련해야 할 것임.</li> <li>• 최근 남아에 대한 성범죄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수준은 여전히 낮음.</li> <li>• 남아 여아 모두 포기한 법 개정.</li> <li>• 피해자를 여자아이로 고정해서 바라보는 시각의 만연.</li> <li>• 성폭력대책을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여성피해자에 비해 남성피해자(예: 군대, 교도소 등)에 대한 문제제기 및 재활서비스가 매우 미흡함.</li> <li>• 제도보완.</li> <li>• 성문제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인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에 개입한 한계가 있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라서 더 잠재적인 피해자군이 될 수 있음</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해당.</li> <li>• 관계 당국의 문제 인식 부재.</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 프로그램 강화 필요</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b>전체연번 90</b> 인신매매 및 성착취 피해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하여 지원활동이 다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이주여성을 위한 통역서비스가 마련되었음.</li> <li>•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상담소의 설치 및 인력 양성.</li> <li>• 한국적 상황에서 이 권고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부수적 권고임.</li> <li>• 시도별 개입이 어렵다면, 권역별 접근이 필요할 것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고 봄</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과 관련된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li> <li>• 이들이 피해자라는 인식 자체가 당국 관계자들에게 없음.</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2. 다국어 상담가 교육 (언어 능력 뿐만 아니라 상담할 수 있는 스킬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 및 강화</li> </ul>

전체연번 91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에서 아동인신매매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임.</li> <li>• 해외성매매자도 처벌해야 함.</li> <li>• 인신매매의정서 비준.</li> <li>• 인신매매 발견을 위한 인프라 기반 취약.</li> <li>• 국내법률은 어느정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됨.</li> <li>• 국회가 의정서 비준에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현황이 어떠한지 현황파악부터 우선해야 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음.</li> <li>• 아동매매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아동청소년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li> <li>• 정부 및 법원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재.</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분하여 대상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처분 등 실제로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국제법에 준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급/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마련</li> </ul>
전체연번 92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2조와 제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을 사용한 신종 아동성매매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거의 없음.</li> <li>• 인터넷 만화 및 소설, 게임 등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음란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 필요.</li> <li>• 청소년보호법에서 필요한 기준 및 조치는 취하고 있음.</li> <li>• 법률에 반영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 모니터링 강화</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추가.</li> <li>• 아동음란물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정부 당국의 인식제고 활동 강화 필요.</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형 상향 조정에 대한 의문이 있음. 오히려 법정형과 선고형의 일치가 필요하며, 처벌 불원(합의)을 감경요소에서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동으로” 인식하였음이 쉽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입증책임 전환도 고민해볼 필요).</li> <li>• 경찰에 전담 부서 신설, 기업의 책임강화 및 책임제 신설</li> <li>• 과제 3. 연 1회 아동대상 성범죄 판결 및 판례에 대한 연구사업 실시</li> </ul>

전체연번 93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4조 제2항에 의거,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해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아동성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전히 관대하다고 사료됨.</li> <li>• 진전되고 있음.</li> <li>• 입법추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경우 해외아동 성매매자도 국내 아동성매매와 같은 처벌을 하고 있음. 해외아동 성매수자에게 300년 등을 판결해서 사회적 격리를 시키고 있음</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GO의견 동의.</li> <li>• 외교부 추가.</li> <li>•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3. 해외 아동 성매매·성범죄에 대한 민관합동 체계 구축</li> <li>• 과제 4. 한국 국적자에 의해 해외아동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체계 구축</li> </ul>
전체연번 94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하여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쟁교육중 비교육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뉴스로 보고됨.</li> <li>• 외교부를 소관부처로 지정할 필요 있음.</li> <li>• 해병대에 미성년자가 지원 가능한 현실.</li> <li>• 우리나라에서 아직 중요과제 아닌 것으로 보임.</li> <li>• 해당 소관부처가 어디인지 명확히 해야 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사례가 없으나, 관련한 조항이 없음으로 인해 향후 사례 발생 가능.</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b>전체연번 95</b>	모든 법률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할 것
학계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 • 해당소관부처가 어디인지 명확해야.
현장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 • 관련 사례 없으나 조항의 부재로 인해 향후 발생 가능.
NGO (기관 의견)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 의견 없음.

<b>전체연번 96</b>	모든 군사법, 소책자 및 기타 군사 지침서들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되도록 할 것
학계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 • 군대 내 청소년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임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집회나 시위 등에서 아동(특히 영유아)을 참여시키지 못하도록 할 것 • 우리나라 군사교육을 살펴봐야 함. 이전 신문기사에서 군사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음 • 별도 교육자료 배포보다는 아동권리교육에서 자신의 보호, 사회적 참여부분에서 다루어 지도록 함
현장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 • 외교부, 법무부 추가.
NGO (기관 의견)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 의견 없음.

<b>전체연번 97</b>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학계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 • 소년사법체계의 구축은 아동인권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법무부나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나 개선 노력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 사료됨(법무부소관). • 아동의 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소년전문법원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함. 유럽연합의 경우 소년법원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은 아동권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설립되어야 함. 소년전문법원은 가정법원과 차별성이 있음. • 소년전문법원 필요. • 계획만 있고 실현 의지가 없는 상황. •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사법체계의 진전이 있었으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관행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함. • 현재도 법원 "소년부"가 있긴 하나, 법관의 구성이 전문적이 아니고 일반법관이 일반법원

	<p>과 소년부를 순환·보직하는 형태로 단지 "소년보호사건"만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소년부"라는 명칭을 갖고 있음. 필히 소년전문법관이 소년사건만을 사법복지적 측면에서 판단하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추가설치 필요.</li> <li>• 가정법원과 소년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시 필요. (현재의 가정법원이 소년법원의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 일부 포함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보고해야)</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전문법원에는 반드시 소년사건만을 전담하는 소년전문판사를 임용해야 함.</li> <li>• 소년전문법원을 설치해서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좋겠음.</li> <li>• 법무부, 기재부, 경찰청 추가.</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정서상,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교화과정에서 치리했다고 보나, 최근 6만여명의 아동들이 소년사건으로 분리되어 거주함. 이제는 아동의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개선되어야 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전체연번 98	형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지원을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제공할 것
---------	--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절차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유럽연합의 경우 관련 내용을 문서로 제시하였음.</li> <li>• 수사개입단계부터 법적보호 및 변호인 지원필요.</li> <li>• 비행소년에게 냉엄한 사회의 시각과 미비한 법제도.</li> <li>•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에 관한 유럽평의회 지침'을 반영하여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li> <li>• 국선변호인제도가 있긴 하나, 저소득/무가족 청소년들의 법률적 지원을 충분히 해 주지 못하는 실정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정보 제공 및 변호인 지원 이외에, 기타지원(전 사법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아동의 권리-의견표명권, 청문권, 대리권 등등-를 보장)에 대한 세부원칙 명시화</li> <li>• 소년법상 "보조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보조인을 국가에서 "국선"으로 지명할 것.</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범죄에 오염될 소지가 있음. 소년분류심사원에 체류하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그 동안에도 청소년 피의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마련되어야 할 것임.</li> </ul>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 피의자 뿐 아니라 가해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심리적 지원 필요
NGO (기관 의견)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 의견 없음.

전체연번 99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화시설 또는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고, 안전하고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받고,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음식·교육·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학계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 • 과거 소년원이라고 불리던 교정시설에 대해 교육이나 재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꾼 노력은 환영할만하나 보다 다양한 교육과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며 특히 재범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퇴소 후에도 지속적 모니터링 노력이 필요할 것임(법무부). • 소년원의 경우 아동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소년원의 개방처우 시설화를 위한 예산 확보. • 기소과정이나 수형기간 중의 환경은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안정, 특성 및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므로 물리적 환경은 매우 중요. • 교정보다 수용에 중점이 주어진 소년사법시설의 현실. • 법적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심한 실무지침과 실행조치가 중요. • 소년원이 학교체제로 전환되어, 다양한 인성, 교과,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전문인력(공무원) 확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예산, 시설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부분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음. • 제도개선.
--------	---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 구금시설에서 범죄학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마련(다양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 전과자 멘토제 등 운영) • 현행 소년교도소(김천)를 교정보부 지휘체계에서 별도로 독립시키는 방안 강구할 것. • 전문가 개입도 필요함
--	---

현장 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 • 아동이 위탁시설이나 소년원에 가면 새로운 범죄 방법을 배워와 성인범죄로 가게 된다고 함. 이는 소년원등 교화시설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결과임.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교화시설운영의 변화가 필요함. •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고 봄. • 6호 처분을 받고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위탁되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체계 점검 필요함. 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하고, 학교 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조 필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소관부처로 추가될 필요 있음.
--------	--

NGO (기관 의견)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 • 의견 없음.
----------------	-------------------------------------

전체연번 100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	--

<p>학계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치료시설이나 소년원의 경우 외부전문가와 협력해서 입소 아동의 권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실태조사 필요.</li> <li>• 법 규정의 문제라기보다 소년사법체계 전반의 아동친화적 실천을 위한 현실적 준비가 필요함.</li> <li>• 결정/판결을 내린 판사가 주기적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있음.</li> <li>• 현 제도에서의 실효성 정확하게 분석해야 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이나 진정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배치결정의 적절성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 필요</li> <li>• 보호소년의 보호처분 변경에 대한 법원의 주체적 역할 모색할 것.</li> <li>• 실제 현장조사를 나가보면 기관 종사자들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외부기관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보호소년에 대한 정원 진정제도의 운영과 함께 가족지원이 없는 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교육이 병행되어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부실한 가족을 가진 소년의 재활기회 확보 필요</li> </ul>
<p>현장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시설이나 소년원 배치 전에, 배치되는 과정과 배치가 연장되는 경우에 부모 뿐 만이 아동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을 신변의 위협없이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li> </ul>
<p>NGO (기관 의견)</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p>전체연번 101</p>	<p>아동의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유박탈 대신 보호관찰·상담·사회봉사·집행유예 등 대안을 장려할 것</p>
<p>학계 전문가</p>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몇 년 전 제주소년원에 만 10세 아동이 입소된 사례가 있었음</li> <li>• 사회는 특별아동에 대한 사회적응의 기회를 주고 청소년기의 전환과정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li> <li>• 다이버전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li> <li>• 형벌적 접근이 아닌 교정과 선도를 위한 보호조치는 있으나, 형식적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그치고, 비전문가에 의한 보호관찰 등으로 내용이 부실함. 실무 현장에서의 구체적 개선방안이 필요.</li> <li>• 시설처우보다는 사회 내 처우로 법원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회 내에서 교육, 치료, 지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인력, 예산)이 갖추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자유방면되고 있는 실정임.</li> <li>• 보호관찰위원 확대.</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1, 2의 프로그램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도록, 전문가의 연구와 참여에 의한 내용 마련. 또한 그 실효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개선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하는 제도적 강화 및 민간지도자가 참여하도록 재정적,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할 것.</li> <li>• 발달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관찰이나 상담요원들의 전문성이 필요함. 현재는 상담요원들은 지역사회 유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훈련된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 배치되어 아동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아동구금이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자의적 구금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움. 개선 필요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b>전체연번 102</b>	유엔청소년사법정의를 위한 기구 간 패널과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비정부기구 등 패널 회원기구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패널 회원기구로부터 청소년사법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대한 특별한 개선 노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임.</li> <li>• 청소년사법분야에 국제협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li> <li>• 법무당국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의 공식적 개입이 쉽지 않은 상태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1, 2의 구체적 방안 제시</li> <li>• 현행 의료소년원(대전) 1군데로는 절대 역부족인 상황이므로 지역별 정신과의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토록 할 것.</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아동청소년피의자를 지원하는 청소년전문변호사 및 민간단체의 자문 필요.</li> <li>•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 없음.</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전체연번 103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아동이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프라이버시, 존엄성 등)를 받도록 하며, 유엔 사법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 부분이 강화되었다고 하여 결과까지 담보된 것은 아니니,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함.</li> <li>• 법률조력인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인력활보를 위해 법률조력인에 대한 안정적 지위확보와 처우개선이 필요함.</li> <li>• 피해아동에 대한 선택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도 통제해서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함. 언론 보도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li> <li>• 관련 연구와 전문가 양성.</li> <li>• 피해아동 및 목격자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필요.</li> <li>• 범죄피해아동에 관한 보호규정이 부족하고(성폭력 관련만 있음), 목격아동의 인권보호에 관한 법 규정은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법규정화 할 필요 있음. 또한 범죄피해아동 및 목격아동의 사생활과 인격존중을 준수하도록 법조계는 물론 언론인, 관련 실무 종사자들의 교육과 윤리의식의 제고가 필요함.</li> <li>• 경찰, 검찰 등에서 수사관들이 피해자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절차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li> <li>• 2차 피해는 주로 언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모니터링이 필요함.</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피해아동 및 목격아동의 권리에 관한 관련 법률의 법규정 마련.-현재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은 성범죄피해와 관련한 것 이외에는 없음</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분야 포함</li> </ul>
전체연번 104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국가인권행동계획에 이 부분을 꼭 강조해야 함.</li> <li>• 이주자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임</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하지는 않지만 과거청산이 진행되었고 민주화가 흔들리지만 공고화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강제실종협약은 신속히 가입해야 할 것임. 이주노동자협약도 최소한 유보조항을 두고서라도 신속하게 가입해야 할 듯.</li> <li>• 국제인권협약의 가입과 비준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li> <li>•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하여야 할 것임</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2. 이주 아동과 그 가족의 권리 관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li> </ul>

전체연번 105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내에서 협약과 다른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해 아세안여성아동위원회와 협력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간 인권에 관한 분쟁 및 갈등은 앞으로 커질 소지가 있음. 이를 위한 예방적 조치로 중요한 권고사항으로 생각됨. 특히 아세안 국가대상 국가 간 인권협약 준수 등은 꼭 필요하며, 아동권리 및 인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의 순위를 가질 것으로 사료됨.</li> <li>• 권고사항이 왜 나왔는지 이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이러한 개별적 사안에 대한 권고사항은 굳이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li> <li>•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화된 해당 담당 부서 지정 필요</li> <li>• 이러한 권고사항이 나온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움.</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나 교육부 등이 주축이 되어서 외국의 아동인권단체와 우리나라 단체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함.</li> <li>• 유럽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등 지역적인 교류를 통하여 아동인권에 대한 Regional Issues를 함께 해결하는 등, 많은 협력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매우 소극적이고 활동이 미흡함.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국제아동인권 NGO 들과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li> <li>• 권고내용의 신뢰성이 의심스러움</li> <li>• 협의를 책임질 국가 기구가 분명해야 하는데, 인권담당 주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인사로 파행이 된 지금, 별 의미가 없다고 봄</li> <li>• 2013년 아세안 +3 회의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직원 2명이 참석하여 활동하였으나 그 이후 전혀 아무런 연락이 없음.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전체연번 106	정부, 국회, 지역기관 등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달하여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권리에 대한 범사회적 중요성 인식을 고취시켜야 함. 이것이 이 모든 문제(권고사항)의 핵심임을 명확히 해야 함.</li> <li>• 범 부처 및 지자체와의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함(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실무).</li> <li>• 포괄적인 권고사항임.</li> <li>• 국가인권위원회 추가.</li> <li>• 실질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달할 필요가 있음.</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전달체계에 대한 고려도 상당히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포 대상을 일반 대중도 필요하지만, stakeholder 중심으로, opinion leader 중심으로</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회, 지역단체,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 필요.</li> <li>• 유엔아동권리협약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관련 NGOs, 시민단체들이 협력하여 노력중임.</li> <li>•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배포하고 공유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과제임</li> <li>• 상설 사무국을 가진 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혹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 각 부처별 권고이행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도록 자극을 주어야 할 것임.</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go와 결합하여 적극적인 정책 만들기와 시행 필요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b>전체연번 107</b>	위원회 권고사항 등이 번역되어 인터넷 및 기타매체를 통해 일반대중,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단체, 아동 등에게 널리 제공되도록 하며 협약 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
학계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전략 및 방안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을 고려해야 함. 의식고취를 위한 전제임</li> <li>• 보다 효율적인 전략 개발이 필요함.</li> <li>• 일상과제이면서 장기과제임.</li> <li>• 스마트폰 앱, 메신저, sns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 있어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정도로만 활동 전개.</li> </ul>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필요한 항목임. 예산은 매우 많이 들지만 효과성에는 의문임.</li> </ul>
현장 전문가	<p>[권고사항에 대한 의견(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권리협약과 권고사항을 다양한 매체(방송광고방법으로 알리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li> <li>• 여태껏 권고사항 등이 나오면 민간단체에서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공유하곤 했음. 정부부처는 영어본 조차 제때 게시하지 않고 있음</li> <li>• 관심과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자료 제작도 필요함.</li> </ul>
NGO (기관 의견)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추가 의견	조사완료 후 자유의견 제시
<p>학계 전문가</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필요 아동학대 신고 시점부터의 공권력의 개입 필요.</li> <li>• 불법체류자 자녀와 난민자녀들에 대한 교육권 및 제반 권리보장은 현실적 해결이 어려운 부분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li> <li>• 법 개정 및 기구설립 등 외형적개선 이외에 제도의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는 개선방안이 나오길 바람.</li> <li>• 이행을 점검을 정부의 공시자료보다 현황에 근거해서 진행하시길 바람.</li> <li>• 권고사항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자료와 정부 보고서가 축적되어야 하나 현재는 연구의 범위나 정부 보고서 및 통계자료가 여전히 부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함. 따라서 권고사항 이행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맞춤형 연구 및 통계자료의 축적을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li> <li>• 이행을 점검추진을 위한 예산의 확보와 더불어 해당법률의 신설 및 개정을 위해 국회에도 많은 성과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음.</li> <li>• 사회문화적, 정치·환경적, 재정적 등의 현실적 한계가 있는 과제보다는 실천적 파급효과가 크면서, 실효성 있는 과제를 우선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li> <li>• 권고 사항 점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일부 NGO 의견 중 편향적인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해당 영역의 대표적 기관이나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보다 중립적이고 보편적일 수 있다고 생각함.</li> <li>• 개별 권고사항에 대하여 정책추진과제가 모두 따로 마련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권고 내용에 부합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추진과제가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li> </ul>
<p>현장 전문가</p>	<p>[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헤이그협약 등 관련 문서들의 정확한 이해에 기반하여 근본적인 체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들이 많음. 특히 대안양육, 학대아동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함. 하지만 본 연구 조사에서 그러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까움. 권고사항들을 따로 떼어놓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협약에 근거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li> <li>• 교육부는 다문화청소년, 난민청소년 등의 학력인정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를 광역시도 교육청 교육감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러나 광역시도마다 학력심의 방식이나 절차 등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학령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최소한 모든 학령기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광역시도 교육청의 학력심의 운영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로 학교 편입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li> <li>• 이행과제의 방안마련, 확대, 강화 등과 같은 추상적 목표보다 좀 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면 좋겠음. 인식개선 강화, 교육 강화, 심리치료 상담 등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제와 함께 청소년을 둘러싼 편견에 대한 평가와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음.</li> <li>• 전세계 193개국에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복지의 종사자로서 업무수행의 기준근거가 되었음. 물론 각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 수준에 따라 적용 수준은 다르지만, 세계적인 준거들이 되었으므로 이를 따르려는 국가 정부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li> <li>• 정부에서 유엔위원회들의 권고사항을 형식적으로 좋게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보다 통합적인 범정부적인 단기/중장기정책개발을 해야 하고, 각 단계별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함.</li> </ul>

## 6.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A/RES/66/138

유엔총회

2012년 1월 27일

제66차 총회

의제 64

### 2011년 12월 19일 유엔총회에 의해 채택된 결의안

[3차 위원회의 보고 건 (A/66/457)]

### 66/138.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총회는,

인권이사회가 이사회의 2011년 6월 17일 결의안 17/18을 통해 청원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본 결의안 부록에 포함된 청원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하고, 선택의정서가 2012년 예정된 조인식에서 서명될 수 있기를 권고하며, 사무총장과 인권고등판무관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89차 본회의

2011년 12월 19일

본 의정서 가입국들은,

유엔헌장이 천명한 원칙에 따라, 인류 구성원들의 내재적 존엄과 평등, 양도 불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이 그 관할 안에 있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권리협약이 제창하는 모든 권리를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혹은 기타 견해, 국적, 인종 혹은 사회 출신, 재산, 장애, 출생 혹은 기타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인정할 것을 주지하며,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을 재확인하고,  
권리 주체자로서, 그리고 존엄을 가진,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지위 또한 재확인하며,

아동은 그 특수하고 의존적인 위치로 인해 권리 침해 시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 선택의정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침해에 대한 고충을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및 지역 체계를 강화하고 보완할 것을 고려하며,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해결방안은 아동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뒤야 하고 모든 수준에서  
아동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을 인식하고,

가입국에게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이 국내에서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국가적 체계를 개발하도록 격려하며,

아동의 권리를 증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국가 인권 기관과 기타 유관 특수 기관들이 이러한  
측면에서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유념하고,

그러한 국가적 체계를 강화,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동권리협약과, (해당될 경우)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 분쟁 개입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위원회가 본 의정서에 규정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제1부

### 총칙

#### 제 1 조

##### 아동권리위원회의 권한

본 선택의정서 가입국은 본 협정서에 규정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이 가입하지 않은 협약에 제정된 권리 침해에 대한 사안에 관해서는  
본 선택의정서 가입국에 관해 본 의정서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본 선택의정서 가입국이 아닌 국가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는다.

#### 제 2 조

##### 아동권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총칙

본 선택의정서가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와 견해를 존중하되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 제 3 조

#### 의사진행에 대한 규칙(Rules of procedure)

아동권리위원회는 본 선택의정서가 부여한 기능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의사진행에 대한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을 고려한 규칙의 수립을 위해 특별히 본 의정서 제 2조를 고려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그 의사규칙에 아동을 위해 혹은 그 대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동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하며 아동의 이익에 최우선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청원에 대한 조사는 거절할 수 있다.

### 제 4 조

#### 보호 조치

가입국은 본 선택의정서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협력한 결과로 그 관할 하에 있는 개인이 인권 유린, 부당한 대우 혹은 협박에 종속되지 않도록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정보는 그들의 동의 없이 대중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

## 제2부

### 청원 절차

### 제 5 조

#### 개별 청원

가입국의 관할 내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 혹은 그 대리인은 가입국이 가입한 다음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중 어느 하나라도 침해 받을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 (a) 아동권리협약;
- (b)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 (c) 아동의 무력 분쟁 개입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대리인이 개인이나 집단을 대신해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그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한 동의 없이 제출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제 6 조

### 임시 조치

청원을 받은 후 사안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기 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가입국에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입국이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

아동권리위원회가 위 1항에 관한 결정은 청원의 허용성이나 이에 대한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니다.

## 제 7 조

### 허용성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청원을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청원이 익명일 때;
- (b) 청원이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을 때;
- (c) 청원제출권이 남용되거나 아동권리협약 그리고/혹은 선택의정서의 규정에 맞지 않을 때;
- (d) 동일 사안이 이미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었거나 다른 국제조사나 협의 절차에 따라 검토되었거나 검토 중일 때;
- (e) 모든 국내적 조치가 다 소진된 것이 아닐 때. 그러나 그러한 조치에 따른 해결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거나 효과적인 해결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 (f) 청원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거나 충분한 내용이 없을 때;
- (g) 청원의 요지인 사실들이 해당 가입국에 대한 본 의정서의 효력 발생 전에 발생했을 때, 다만 그러한 사실들이 효력 발생 일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에는 예외;
- (h) 국내의 해결방안 소진 후 1년 이내에 청원이 제출되지 않았을 때, 다만 작성자가 기한 내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는 예외.

## 제 8 조

### 청원서 전달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된 가입국에 조회 없이는 청원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모든 청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가입국에 비밀리에 알려야 한다. 가입국은 그 사안과 이를 위해 제공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명확히 진술하는 서면 설명서나 성명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국은 그 응답을 6개월 내 최대한 빨리 제출해야 한다.

## 제 9 조

### 우호적 합의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그리고/혹은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의무를 존중하는 원칙하에

사안에 대해 우호적인 합의를 이끌기 위해 사안의 당사자들을 위한 중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관장 하에 우호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이로써 본 의정서에 따른 청원은 결론이 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0조

### 청원 검토

아동권리위원회는 본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청원들을 제출된 모든 문서와 함께 신속히 검토하며 이 문서가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본 의정서에 따라 받은 청원들을 검토할 때는 밀실회의를 개최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임시 조치를 요청한 청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를 수행한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는 청원을 검토할 때,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이 아동권리협약 제4조에 따라 취한 조치들이 합리적이었는지 검토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이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이행하는 데는 매우 폭넓은 정책적 수단들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청원을 검토한 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의견을 권고안과 함께(만약 권고안이 있다면) 당사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 제11조

### 후속조치

가입국은 아동권리위원회의 의견과 그 권고안(만약 있을 경우) 신중히 검토하고 아동권리위원회의 의견과 권고안에 입각해 이미 취한 조치 또는 예상되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서면 응답을 제출해야 한다. 가입국은 그 응답을 6개월 내 가능한 빨리 제출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이 아동권리협약 제44조,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제 12조, 아동의 무력 분쟁 개입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제8조에(해당될 경우)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보고서에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과 권고안에 대해 가입국이 취한 조치나 우호적 합의 이행에 대한 정보 혹은 아동권리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포함해 제출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제12조

### 국가 간 청원

본 선택의정서 가입국은 다른 가입국이 다음의 의무조항들의 불이행에 대한 청원을 아동권리위원회가 접수 및 검토할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천명할 수 있다:

- (a) 아동권리협약;
- (b)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c) 아동의 무력 분쟁 개입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아동권리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가입국에 관한 청원이나,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청원을 받을 수 없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의무조항들을 존중하는 원칙 하에서 그러한 사안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가입국들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조 제 1항에서의 선언은 가입국이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다른 가입국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선언문은 사무총장에 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로 인해 본 조항에 따라 이미 제출된 청원의 주제인 사안에 대한 검토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무총장이 선언문의 철회 통지를 받은 후에는, 철회한 가입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본 조항에 따라 가입국이 제출한 더 이상의 청원은 받지 않게 된다.

## 제3부

### 조사 절차

#### 제13조

##### 중대한 위반이나 체계적 위반에 대한 조사 절차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 분쟁 개입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제시된 권리를 가입국이 중대하게 혹은 체계적으로 위반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가입국에게 이러한 정보에 대한 조사에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지체 없이 관련된 정보에 관한 진술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가입국이 제출한 진술과 기타 관련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검토한 후 아동권리위원회는 위원 중 한 명 이상을 선정해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긴급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필요할 경우, 가입국이 동의하면 조사를 위해서 가입국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사는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절차에서 가입국은 협력해야 한다.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련 가입국에게 관련된 평가나 권고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련 가입국은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결과, 평가의견, 권고안을 받은 후 6개월 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진술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아동권리위원회는 관련 가입국과의 논의 후, 본 선택의정서 제16조에 따른 보고서에 결과 요약 보고서를 포함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모든 가입국은 본 선택의정서에 조인하거나 비준할 때 1항에 명시된 일부 혹은 모든 제도들에 규정된 권리들에 관한 본 조에서 규정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본 조 제7항에 따라 선언을 한 가입국은, 언제라도 유엔사무총장에게 공지함으로써 이러한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 제14조

##### 조사 절차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할 경우, 아동권리위원회는 제13조 제5항에서 언급된 6개월의 기한이 끝난 후, 가입국에게 가입국이 본 선택의정서 제13조에 따라 수행된 조사에 대해 이미 취한 조치나 예상되는 조치에 대해 보고하도록 권할 수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이 아동권리협약 제44조,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제 12조, 아동의 무력 분쟁 개입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제8조에(해당될 경우)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제13조에 따라 수행한 조사에 대응해 가입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 혹은 아동권리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포함해 제출하도록 권할 수 있다.

#### 제4부

##### 최종 규정

#### 제15조

##### 국제 원조 및 협력

아동권리위원회는 관련 가입국의 동의를 얻어 유엔 특수 기관들과 기금, 프로그램, 기타 역량 있는 기구들에게 기술적 조언이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 청원이나 조사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나 권고안, 그리고 그러한 견해나 권고안에 대한 가입국의 진술이나 제안을 전달할 수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관련 가입국의 동의를 얻어, 이러한 기관들이 본 의정서에 따라 검토된 청원들 중 부각된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이 기관들이 권한 영역 내에서 아동권리협약 그리고/혹은 선택의정서에서 인정한 권리를 가입국이 이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들을 결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 제16조

### 총회에 대한 보고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제44조 5항에 따라 매 2년마다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본 의정서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 요약보고를 포함해야 한다.

## 제17조

### 선택의정서 배포와 선택의정서에 관한 정보

각 가입국은 장애인을 포함한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적합하고 적극적인 수단과 접근이 용이한 형식으로 가입국에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안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 의정서를 널리 알리고 배포해야 한다.

## 제18조

### 조인, 비준, 가입

본 의정서는 아동권리협약과 처음 두 선택의정서 중 어느 것 하나에 조인, 비준, 혹은 가입한 국가가 서명할 수 있다.

본 의정서는 아동권리협약과 처음 두 선택의정서 중 어느 것 하나에 조인, 비준, 혹은 가입한 국가가 비준할 수 있다. 비준 문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보관된다.

본 의정서는 아동권리협약과 처음 두 선택의정서 중 어느 것 하나에 조인, 비준, 혹은 가입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가입 문서가 사무총장에게 공탁될 때 발효된다.

## 제19조

### 발효

본 의정서는 10번째 비준 혹은 가입 문서가 공탁된 후 3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10번째 비준 문서나 가입문서가 공탁된 후 본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게, 본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 혹은 가입 문서의 공탁일 이후 3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 제20조

### 발효 후 발생하는 위반

아동권리위원회는 본 의정서가 발효된 후 발생하는 아동권리협약 그리고/혹은 첫 번째 두 선택의정서에서 규정된 권리에 대한 가입국의 위반에 관해서만 권한을 가진다.

한 국가가 본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본 선택의정서의 가입국이 되면 그 국가와 아동권리위원회의 의무는 오직 본 선택의정서가 관련 국가에게 발효되는 시점 이후부터 발생하는 아동권리협약 그리고/혹은 첫 번째 두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권리 위반에만 관계한다.

## 제21조

### 개정

어떤 가입국도 본 선택의정서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개정안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결정을 위한 회의 개최 여부를 묻는 공지와 함께 가입국들에게 개정안을 공지해야 한다. 이러한 공지일로부터 3개월 내 적어도 가입국들의 3분의 1이 그러한 회의를 선호할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 관할 하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참여 국가들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된 개정안은 사무총장에 의해 총회에 제출되어 승인되어야 하고 그 후 최종 수용을 위해 모든 가입국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본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공탁된 수용 문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가입국들의 수 3분의 2에 도달한 후로부터 13일 째 되는 날 발효된다. 그 후 개정안은 가입국이 자국의 수용 문서를 공탁한 후로부터 13일 째 되는 날 그 가입국을 위해 발효된다. 개정안은 개정안을 수용한 가입국들에만 유효하다.

## 제22조

### 폐기 통고

가입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문서로 공지함으로써 어느 때에라도 본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는 사무총장이 공지를 접수할 날로부터 1년 후 효력을 받는다.

폐기가 발효되는 날 전에는 본 의정서 제5조 혹은 12조에 따라 제출된 통지나 제13조에 따라 시작된 조사에 대한 본 의정서 규정의 적용은 침해되지 않는다.

## 제23조

### 사무총장의 공탁과 공지

유엔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의 공탁인이다.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들에게 다음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 (a) 본 의정서에 따른 조인, 비준, 가입;
- (b) 본 의정서의 발효일과 제21조에 따른 그 후 개정
- (c) 본 의정서 제2조에 따른 폐기 통고

## 제24조

### 언어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된 본 의정서는 모두 동등하게 인증된 문서이며 유엔 공문서로 보관된다.

유엔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의 인증된 사본들을 모든 국가에 전달해야 한다.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 집필진 ◆

박 선 영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 교수)

이 민 희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 교수)

### ◆ 전문가협의회 및 검토 · 자문진 ◆

김 형 욱 (경기도교육청 · 학생인권옹호관)

박 병 식 (동국대 법학과 · 교수)

박 선 영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 교수)

서 여 정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담당자)

이 민 희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 교수)

이 용 교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 교수)

이 호 균 (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센터장)

정 병 수 (국제아동인권센터 · 사무국장)

천 정 웅 (대구카톨릭대 사회복지학과 · 교수)

### ◆ 전문가의견조사 참여 ◆

강 지 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 교수)

강 현 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 교수)

구 정 화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 교수)

김 경 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기획조정본부장)

김 광 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김 도 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역량개발본부 · 본부장)

김 미 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위원)

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 교수)

김 수 정 (법률사무소 지향·변호사)  
김 영 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교수)  
김 윤 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김 은 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소장)  
김 은 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옹호팀·팀장)  
김 인 숙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권리교육훈련소·소장)  
김 진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교수)  
김 진 호 (부천실업고등학교·교감)  
김 철 홍 (국가인권위원회 전 인권교육과·과장)  
김 형 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김 형 욱 (경기도교육청·학생인권옹호관)  
류 은 숙 (인권연구소'창'·연구 활동가)  
박 병 식 (동국대학교 법학과·교수)  
박 선 영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교수)  
박 영 숙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단장)  
박 창 남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교수)  
방 은 령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교수)  
변 창 기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난민보호팀·담당관)  
성 종 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팀장)  
신 혜 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수)  
안 동 현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교수)  
오 동 석 (아주대 법학부·교수)  
오 선 영 (한국인권재단·사무국장)  
유 성 렬 (백석대 사회복지학부·교수)  
윤 상 석 (전 무지개청소년센터·부소장)  
이 경 림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상임이사)  
이 명 숙 (경기대 교정보호학과·교수)  
이 석 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소장)  
이 용 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이 은 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이 중 섭 (전북발전연구원 · 연구위원)  
이 현 정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이 호 균 (아동행복포럼 · 고문, 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센터장)  
장 영 인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전 경 숙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실장)  
전 명 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 · 본부장)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조 금 주 (상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 교수)  
채 현 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난민보호팀 · 법무관)  
천 정 웅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현 소 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부교수)  
황 옥 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교수)

◆ 민간단체 의견제출 ◆

국제아동인권센터  
재단법인 동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이브더칠드런  
십대여성인권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엔난민기구  
유엔인권정책센터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탁틴내일  
사단법인 피난처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자살예방센터



연구보고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인 쇄** 2015년 7월 31일

**발 행** 2015년 7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연구보고 15-R21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http://www.nypi.re.kr)